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제3집

농 립 법 령

제 II 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찬

농 립 부



담당자	직 위	담당 분야
이 정 환	수석연구위원	편찬 책임자, 편찬 업무 총괄
박 석 두	부 연구위원	「한국농정50년사 I·II」 편찬 및 행정·진행 책임
김 태 곤	부 연구위원	「농정반세기 증언」 편찬 책임
김 홍 상	부 연구위원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전4집 편찬 책임
김 진 현	연구 원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I·II·III집 편찬 실무
김 상 현	연구 원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IV집 편찬 실무

일 리 두 기

1.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은 제1집 「농정일지」 3권, 제2집 「농림예산」 3권, 제3집 「농림법령」 2권, 제4집 「농업통계 및 농림직제」 1권 등 전 4집 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료집 제3집 「농림법령」의 경우 자료집 편집 및 자료구분의 편의상 제 I 권에서는 공포일자별 농림법령, 분야별 농림법령, 주요 법률 변천도, 법령의 주요내용 등을 수록하였고, 제II권에서는 폐지법률(미군정하 폐지법령 포함)만을 정리해 놓았다. 1987년 이전까지의 내용은 「농정40년사」 자료집 제8집의 법령 자료를 복각 또는 보완·정리한 것이다.
3. 본 자료집 제 I 권(법령목록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획관리, 농업일반, 농산(원예·자재·특작), 농산물 유통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 이유는 정치·사회 변화에 따라 농림직제 및 소관별(각 국·실·청)법령의 변동이 심한 관계로 일관성 있게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농정40년사」 자료에서 소관별(각 국·실·청)로 분류되어 있던 법령도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4. 본 자료집 제II권(폐지법률)에서는 1998년말까지 폐지된 모든 농림관계 법률의 공포당시 전문을 수록하였다. 1987년 이전의 내용은 「농정40년사」의 자료를 복각한 것이며 1988년 이후의 내용에서는 폐지법률 전문 뿐만 아니라 개정사항과 내용, 폐지근거 법률도 포함시켰다.
5. 이번 자료집이 미비한 점이 많겠지만 한국농정50년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료집의 발간과정에서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농림부 담당자에게 감사 드린다.

목 차

제 I 권(법령목록 및 주요내용)

1. 법령목록	1
1) 공포일자별 법령 목록	1
2) 분야별 법령 목록	8
3) 주요법을 변천도	16
2. 분야별 법령의 주요내용	23
1) 기 획 관 리	23
2) 감 사	29
3) 농 림 통 계	30
4) 농 업 일 반	34
5) 농 산(원예·자재·특작)	59
6) 농 촌·농 지	86
7) 식 량 정 책	118
8) 농 산물 유통	137
9) 축 산	148
10) 무역·검역	184
11) 농 촌 진 흥	187
12) 산 림	195
<부록> 국민의 정부 4대개혁 법률	227

제 II 권(폐지법률)

1. 정부수립 이후 폐지법률 목록	315
1) 제정연도별 목록	315
2) 가나다순별 목록	318
2. 폐지법률 내용	321
가. 1987년 이전 폐지된 법률	321
1) 양곡매입법	321

2)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323
3) 식량임시긴급조치법	323
4) 축우도살제한법	324
5) 영림관서설치법	326
6)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326
7) 귀속농지특별조치법	327
8)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327
9) 산림보호임시조치법	329
10) 임시토지수득세법	330
11)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338
12) 가축보호법	339
13) 농사교도법	343
14)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345
15)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	345
16)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346
17) 비료단속법	348
18) 축견취재규칙폐지에 관한 법	351
19) 토지개량사업법	352
20) 농산종묘법	381
21) 농가대여양곡법	382
22) 개간촉진법	384
23) 한국수산개발공사법	391
24)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395
25)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397
26) 잠사가격안정기금법	399
27) 농지세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	401
28) 양곡과비료의교환에 관한 법	403
29) 연안어업등육성법	405
30)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409
31)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409
32) 농경지조성법	410
33) 농어촌개발공사법	418
34)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421
35)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423
36) 산림개발법	424

37) 농수산물도매시장법	436
나. 1988년이후 폐지된 법률	442
1) 농지개혁법	442
2) 농업창고업법	451
3) 주요농작물종자법	455
4) 농업협동조합임원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467
5)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470
6) 지력증진법	473
7) 미강착유장려법	476
8) 농지담보법	479
9)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82
10) 농촌근대화촉진법	486
11) 양곡관리기금법	557
12)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561
13)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	571
14) 종묘관리법	593
1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597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620
17)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621
18)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625
19)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626
20) 농지임대차관리법	633
21)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640
22)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645
3. 미군정하 농업관련 법령	647

1. 정부수립이후 폐지법률 목록(총55건)

1) 제정 연도별 목록

법률	제정		폐지		
	년도	법번호	년도	법번호	법률명
양곡매입법	'48. 10. 9	7	'50. 2. 16	97	양곡관리법부칙26 조제3항
식량임시긴급조치법	'49. 7. 22	35	'50. 2. 16	97	양곡관리법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49. 4. 28	24	'53. 9. 9	295	수산업법
농지개혁법	'49. 6. 21	31	'94. 12. 22	4817	농지법
축우도살제한법	'49. 7. 26	37	'54. 1. 23	306	가축보호법
영림관서설치법	'50. 2. 9	92	'73. 1. 15	2437	정부조직법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50. 2. 13	93	'52. 4. 12	241	농지개혁사업특별 회계법
양곡관리특별회계법	'50. 5. 8	140	'62. 10. 4	1165	동법 폐지법률
귀속농지특별조치법	'51. 4. 5	185	일시경과	사무종료	실 효
중앙도매시장법	'51. 6. 22	207	'73. 2. 6	2483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51. 7. 18	214	일시경과	사무종료	실 효
산림보호임시조치법	'51. 9. 21	18	'61. 12. 27	881	산림법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52. 4. 12	241	'61. 12. 31	930	동법 폐지법률
가축보호법	'54. 1. 23	306	'63. 6. 26	1363	축산법
농사교도법	'57. 2. 12	435	'62. 3. 21	1039	농촌진흥법
농업은행법	'57. 2. 14	437	'61. 7. 29	670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60. 6. 10	620	일시경과	사무종료	실 효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61. 6. 27	635	'80. 1. 4	3232	산림법개정법률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	'61. 8. 25	701	'61. 12. 31	948	토지개량사업법
비료단속법	'61. 12. 27	882	'76. 12. 31	2985	비료관리법부칙2항

법 률	제 정		폐 지		
	년 도	법 번호	년 도	법 번호	법 률 명
농업창고업법	'61. 12. 30	906	'96. 8. 14	5160	동법 폐지법률
수렵법	'61. 12. 31	949	'67. 3. 30	1931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토지개량사업법	'61. 12. 31	948	'70. 1. 12	2199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산종묘법	'62. 1. 15	976	'73. 2. 26	2555	종묘관리법
주요농작물종자법	'62. 1. 15	975	'95. 12. 6	5024	종자산업법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 치법	'62. 2. 12	1025	'88. 12. 31	4079	동법 폐지법률
농가대여양곡법	'62. 2. 19	1026	'73. 6. 15	2621	농가대여양곡의전 용에관한법률
개간촉진법	'62. 2. 22	1028	'67. 6. 16	1872	농경지조성법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63. 2. 9	1266	'64. 12. 31	기간완료	실 효
토지개량사업법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63. 3. 5	1291	'71. 1. 22	2299	농지개량조합육성 에관한특별조치법
잠사가격안정기금법	'63. 5. 14	1342	'71. 1. 19	2289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65. 7. 1	170	'76. 12. 31	2984	양곡관리법개정법률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65. 12. 16	1718	'93. 12. 31	4676	국유재산관리특별 회계법
지력증진법	'66. 3. 15	1766	'94. 12. 22	4817	농지법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66. 4. 23	1777	'81. 12. 31	3518	정부조직법
미강착유장려법	'66. 7. 15	1798	'97. 3. 7	5298	동법 폐지법률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66. 8. 3	1815	'76. 12. 31	2962	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
농지담보법	'66. 8. 3	1813	'93. 6. 11	4552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
농경지조성법	'67. 1. 16	1872	'75. 4. 11	2767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8. 3. 13	1993	'94. 12. 22	4817	농지법

법 률	제 정		폐 지		
	년 도	법 번호	년 도	법 번호	법 률 명
지하수개발공사법	'69. 1. 17	2080	'70. 1. 12	2199	농촌근대화촉진법
국립종축장설치법	'69. 8. 4	2132	'83. 12. 30	3688	정부조직법개정법률부칙제2항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	'69. 8. 4	2134	일시경과	사무종료	실 효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70. 1. 1	2178	'76. 12. 22	2901	동법 폐지법률
농촌근대화촉진법	'70. 1. 12	2199	'95. 12. 29	5077	농지개량조합법
양곡관리기금법	'70. 8. 12	2237	'91. 1. 5	4707	양곡관리기본법개정법률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71. 1. 22	2299	'95. 12. 29	5077	농지개량조합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특별조치법	'72. 12. 18	2373	'94. 12. 22	4817	농지법
산림개발법	'72. 12. 30	2432	'80. 1. 4	3232	산림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	'73. 2. 6	2483	'76. 12. 31	296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종묘관리법	'73. 2. 26	2555	'95. 12. 6	5024	종자산업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75. 4. 11	2767	'94. 12. 24	4823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78. 12. 5	3122	'99. 1. 29	5733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농어민후계자육성기본법	'80. 11. 5	3262	'90. 4. 7	42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80. 12. 15	3277	'88. 12. 31	4081	동법 폐지법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83. 12. 31	3689	'90. 4. 7	42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86. 12. 31	3884	'90. 4. 7	42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임대차관리법	'86. 12. 31	3888	'94. 12. 22	4817	농지법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87. 12. 4	3985	'99. 1. 29	5733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 가나다순별 목록

법 률	제 정		폐 지		
	년 도	법 번호	년 도	법 번호	법 률 명
가축보호법	'54. 1. 23	306	'63. 6. 26	1363	축산법
개간촉진법	'62. 2. 22	1028	'67. 6. 16	1872	농경지조성법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66. 4. 23	1777	'81. 12. 31	3518	정부조직법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70. 1. 1	2178	'76. 12. 22	2901	동법 폐지법률
국립종축장설치법	'69. 8. 4	2132	'83. 12. 30	3688	정부조직법개정법 률부칙제2항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63. 2. 9	1266	'64. 12. 31	기간완료	실 효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50. 2. 13	93	'52. 4. 12	241	농지개혁사업 특 별회계법
귀속농지특별조치법	'51. 4. 5	185	일시경과	사무종료	실 효
농가대여양곡법	'62. 2. 19	1026	'73. 6. 15	2621	농가대여양곡의 전 용에관한법률
농경지조성법	'67. 1. 16	1872	'75. 4. 11	2767	농지확대개발촉 진법
농사교도법	'57. 2. 12	435	'62. 3. 21	1039	농촌진흥법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66. 8. 3	1815	'76. 12. 31	2962	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
농산종묘법	'62. 1. 15	976	'73. 2. 26	2555	종묘관리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	'73. 2. 6	2483	'76. 12. 31	2962	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민후계자육성기본법	'80. 11. 5	3262	'90. 4. 7	4228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60. 6. 10	620	일시경과	사무종료	실 효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 한특별조치법	'69. 8. 4	2134	일시경과	사무종료	실 효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83. 12. 31	3689	'90. 4. 7	4228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

법 률	제 정		폐 지		
	년 도	법 번호	년 도	법 번호	법 률 명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86. 12. 31	3884	'90. 4. 7	42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은행법	'57. 2. 14	437	'61. 7. 29	670	농업협동조합법
농업창고업법	'61. 12. 30	906	'96. 8. 14	5160	동법 폐지법률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62. 2. 12	1025	'88. 12. 31	4079	동법 폐지법률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71. 1. 22	2299	'95. 12. 29	5077	농지개량조합법
농지개혁법	'49. 6. 21	31	'94. 12. 22	4817	농지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8. 3. 13	1993	'94. 12. 22	4817	농지법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52. 4. 12	241	'61. 12. 31	930	동법 폐지법률
농지담보법	'66. 8. 3	1813	'93. 6. 11	455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특별조치법	'72. 12. 18	2373	'94. 12. 22	4817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86. 12. 31	3888	'94. 12. 22	4817	농지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75. 4. 11	2767	'94. 12. 24	4823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70. 1. 12	2199	'95. 12. 29	5077	농지개량조합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51. 7. 18	214	일시경과	사무종료	실 효
미강착유장려법	'66. 7. 15	1798	'97. 3. 7	5298	동법 폐지법률
비료단속법	'61. 12. 27	882	'76. 12. 31	2985	비료관리법부칙2항
산림개발법	'72. 12. 30	2432	'80. 1. 4	3232	산림법
산림보호임시조치법	'51. 9. 21	18	'61. 12. 27	881	산림법
수렵법	'61. 12. 31	949	'67. 3. 30	193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	'61. 8. 25	701	'61. 12. 31	948	토지개량사업법

법 률	제 정		폐 지		
	년 도	법 번호	년 도	법 번호	법 률 명
식량임시긴급조치법	'49. 7. 22	35	'50. 2. 16	97	양곡관리법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65. 7. 1	170	'76. 12. 31	2984	양곡관리법개정법률
양곡관리기금법	'70. 8. 12	2237	'91. 1. 5	4707	양곡관리기본법개정법률
양곡관리특별회계법	'50. 5. 8	140	'62. 10. 4	1165	동법 폐지법률
양곡매입법	'48. 10. 9	7	'50. 2. 16	97	양곡관리법부칙26 조제3항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49. 4. 28	24	'53. 9. 9	295	수산업법
영림관서설치법	'50. 2. 9	92	'73. 1. 15	2437	정부조직법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65. 12. 16	1718	'93. 12. 31	4676	국유재산관리특별 회계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61. 6. 27	635	'80. 1. 4	3232	산림법개정법률
잠사가격안정기금법	'63. 5. 14	1342	'71. 1. 19	2289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종묘관리법	'73. 2. 26	2555	'95. 12. 6	5024	종자산업법
주요농작물종자법	'62. 1. 15	975	'95. 12. 6	5024	종자산업법
중앙도매시장법	'51. 6. 22	207	'73. 2. 6	2483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지력증진법	'66. 3. 15	1766	'94. 12. 22	4817	농지법
지하수개발공사법	'69. 1. 17	2080	'70. 1. 12	2199	농촌근대화촉진법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 조치법	'80. 12. 15	3277	'88. 12. 31	4081	동법 폐지법률
축우도살제한법	'49. 7. 26	37	'54. 1. 23	306	가축보호법
토지개량사업법	'61. 12. 31	948	'70. 1. 12	2199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개량사업법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63. 3. 5	1291	'71. 1. 22	2299	농지개량조합육성 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78. 12. 5	3122	'99. 1. 29	5733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 에관한법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87. 12. 4	3985	'99. 1. 29	5733	

2. 폐지법률 내용

가. 1987년 이전 폐지된 법률

1) 糧穀買入法 (法律 第7號, 1948.10.9)

國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糧穀買入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李 承 晚 田

檀紀 4281 年 10 月 9 日

國務委員	國務總理兼國防部長官	李 範 奭
國務委員	農 林 部 長 官	曹 奉 岩
國務委員	內 務 部 長 官	尹 致 暎
國務委員	財 務 部 長 官	金 度 演
國務委員	法 務 部 長 官	李 仁

第1條 本法은 國民의 均等한 食生活의 保障及 國民經濟의 安定을 圖謀하기 爲하여 政府에서 行하는 主要糧穀買入에 關하여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本法에 있어서 主要糧穀이라 함은 米穀, 麥類를 云한다.

第3條 糧穀의 生産者와 地主는 自家用 食糧及 種穀을 除外한 糧穀을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政府에 賣渡하여야 한다.

但, 自家用食糧을 爲한 少量의 運搬과 賣買는 此限에 不在한다.

第4條 地主는 그 土地를 耕作하는 者로 하여금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主를 代理하여 그 土地에서의 糧穀生産量의 三分之一을 指定된 期日內에 政府에 賣渡케 하며 耕作者는 此를 履行할 義務가 있다.

第5條 本法에 있어서 地主라함은 土地에 對하여 權利를 가진 自然人, 法人, 公共團體, 其他 大統領令으로써 定하는 者를 云한다.

第6條 南朝鮮 過渡政府法令 第173號에 依하여 中央土地行政處로부터 土地買收를 契約한 者, 買收한 者 또는 그 小作人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拂下年賦納付量 또는 小作料의 全部를 政府에 納付 또는 賣渡하여야 한다.

第7條 本法에 依하여 政府가 買入하는 糧穀價格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生産費, 生計費及 物價 其他 經濟事情을 參酌하여 此를 定한다.

第8條 本法에 依하여 政府에 賣渡 또는 納付하는 糧穀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 9 條 第 3 條, 第 4 條, 第 6 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糧穀을 賣買한 者는 3 年以下의 懲役 또는 30 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 10 條 糧穀을 政府의 許可없이 國外에 流出시키는 者는 死刑이나 無期 또는 1 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前項의 罪를 犯한 者에게는 流出糧穀價格 10 倍以下의 罰金を 併料할 수 있다.

第 11 條 糧穀의 買入, 賣渡를 妨害하거나 또는 流出케 하도록 煽動, 教唆, 幫助한 者는 無期 또는 10 年以下의 懲役に 處하고 50 萬圓 以下의 罰金を 併料할 수 있다.

第 12 條 犯人이 所有 또는 所持한 糧穀은 이를 沒收하며 萬若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價格을 追徵할 수 있다.

第 13 條 本法의 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前項의 大統領令에는 그 違反者에 對하여 6 箇月 以下의 懲役 또는 10 萬圓 以下의 罰金を 科하는 罰則을 規定할 수 있다.

附 則

第 14 條 本法 施行期日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 15 條 本法 施行前에 發布된 法令으로 本法과 矛盾되는 것은 그 矛盾된 範圍에서 廢止한다.

大 統 領 令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 制定한 糧穀買入法 施行期日에 關한 件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李 承 晚 印

檀紀 4281 年 10 月 9 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李	範	奭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曹	奉	岩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尹	致	暎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金	度	演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李		仁

大統領令第 11 號 糧穀買入法 施行期日에 關한 件

糧穀買入法은 檀紀 4281 年 10 月 9 日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漁業에 關한 臨時措置法 (法律 第 24 號, 1949. 4. 28)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漁業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李 承 晚 印

檀紀 4282 年 4 月 28 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李 範 奭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任 永 信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李 仁

第 1 條 檀紀 4282 年 4 月 15 日 期間滿了된 漁業에 關한 免許 또는 許可의 期間은 檀紀 4282 年 7 月 31 日까지 在續한다. 但, 犯則者는 例外로 한다.

第 2 條 漁業에 關한 新規 免許 또는 許可는 할수 없다.

附 則

第 3 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3) 食糧臨時緊急措置法 (法律 第 35 號, 1949. 7. 22)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食糧臨時緊急措置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李 承 晚 印

檀紀 4282 年 7 月 22 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李 範 奭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李 宗 鉉

第 1 條 本法은 檀紀 4282 年 米穀年度의 緊急한 食糧事情에 對處하기 爲하여 檀紀 4281 年 10 月 9 日附 法律 第 7 號 糧穀買入法及 同年 10 月 15 日附 大統領令 第 12 號 糧穀買入法 施行令의 一部 條項의 效力을 一時停止하고 檀紀 4281 年產 米穀及 檀紀 4282 年產 麥類의 買入 및 消費에 關하여 臨時緊急措置를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糧穀買入法 第 3 條는 檀紀 4282 年 10 月 31 日까지 그 效力을 停止하고 糧穀의 買入과 運搬을 自由로 한다.

第 3 條 自家用食糧에 必要한 以上の 糧穀을 占有하는 者는 10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하고

情狀에 依하여 6個月以下の懲役に 處한다. 營利의 目的으로 買占한 糧穀을 賣惜하는 者는 5年以下の懲役に 處하고 占有 糧穀價格 5倍以下の罰金を 併科한다. 前2項의 罪를 犯한 者의 占有한 糧穀은 이를 沒收한다.

第4條 本法의 有效期日은 本法 施行日로부터 檀紀 4282年 10月 31日까지로 한다.

附 則

第5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6條 本法 施行前에 發布된 法令으로 本法의 規定과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本法 有效期間中 그 效力을 停止한다.

4) 畜牛屠殺制限法 (法律 第37號, 1949. 7. 26)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畜牛屠殺制限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李 承 晩 印

檀紀 4282年 7月 26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李	範	爽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金	孝	錫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林	炳	稷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申	性	模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金	度	演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權	承	烈
國務委員	文教部長官	安	浩	相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李	宗	鉉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尹	潛	善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李	允	榮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具	永	淑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許		政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張	基	永

第1條 本法은 畜牛屠殺을 制限하여 營農에 必要한 數의 畜牛를 確保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妊娠牛와 8歲未滿의 牝牛 및 4歲未滿의 牡牛의 屠殺은 禁止한다.

第 3 條 前條의 規定은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 搾乳種의 牝牛
2. 學術試驗研究用으로 必要한 畜牛
3. 不慮의 災害로 因한 負傷 또는 難産, 産褥痲痺 및 急性鼓腸症 등으로 因하여 生命이 危殆하거나 完治할 可能性이 없는 畜牛

前項 第 3 號에 該當한 畜牛로서 切迫屠殺을 하여야 할 境遇에는 獸醫師의 診斷 또는 邑·面長의 證明에 依하여야 한다.

第 4 條 畜牛屠殺은 屠殺許可를 받은 後에 行하여야 한다. 前項의 屠殺許可는 條 2 條 및 第 3 條에 規定된 事項에 關한 檢査를 한後에 하여야 한다.

第 5 條 屠場以外的 場所에서 또는 第 4 條第 1 項의 屠殺許可를 받지 않고 屠殺한 畜牛는 8 歲未滿의 牝牛 또는 4 歲未滿의 牡牛로 看做한다. 但, 第 3 條第 1 項第 3 號의 切迫屠殺은 屠場以外的 場所에서도 行할 수 있다.

第 6 條 第 2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 年以下の 懲役 또는 10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 7 條 第 4 條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 8 條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畜牛屠殺에 關하여 虛偽의 申告를 한者
2. 診斷書 作成交付에 關하여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不正한 行爲를 한者

第 9 條 畜牛屠殺의 檢査許可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으로서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本法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 10 條 屠場 所有者, 管理者 또는 屠場に 勤務하는 者로서 그 情을 알고 本法 違反行爲를 容認하거나 그 行爲에 加擔한 境遇에는 3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하고 許可官廳은 屠場 經營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 11 條 本法의 規定에 違反된 行爲에 供用된 畜牛는 屠殺의 前後를 不問하고 이를 沒收한다. 前項의 畜牛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格을 追徵한다.

第 12 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前項의 大統領令에는 그 違反者에 對하여 2 萬圓以下の 罰金を 科하는 罰則을 規定할 수 있다.

附 則

第 13 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14 條 西紀 1947 年 6 月 9 日 軍政法令 第 140 號는 廢止한다. 畜牛屠殺에 對한 衛生檢査 및 屠場規定에 關한 現存規定은 存續한다.

5) 營林官署設置法 (法律 第 91 號, 1950. 2. 9)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營林官署設置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李 承 晚 印

檀紀 4283 年 2 月 9 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李 範 奭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尹 永 善

第 1 條 林野行政에 關한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農林部長官 所屬下에 營林署를 두고 營林署 所屬下에 管理所와 作業所를 둔다. 營林署, 管理所와 作業所의 名稱, 位置와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2 條 營林署에 署長, 管理所와 作業所에 所長을 둔다. 營林署長은 農林部長官의 指揮監督을 받아 署務를 掌理하여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管理所長과 作業所長은 營林署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그 所의 事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 3 條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의 職制, 公務員의 種類, 定員과 報酬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6) 歸屬農地管理特別會計法 (法律 第 93 號, 1950. 2. 13)

條 1 條 歸屬農地와 그 附屬財産을 管理하기 爲하여 特別會計을 設置한다.

第 2 條 本會計의 決算上 生한 剩餘金은 一般會計의 歲入에 轉入한다.

第 3 條 本會計의 收入·支出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4 條 本法은 檀紀 4282 年度부터 施行한다.

第 5 條 前 新韓公社와 中央土地行政處의 債務와 債權은 本會計에서 承繼한다.

第 6 條 前條에 關한 必要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第 7 條 過去法令 第 174 號도 廢止한다.

7) 歸屬農地特別措置法 (法律 第 185 號, 1951. 4. 5)

第 1 條 本法은 法律 第 31 號 農地改革法 (以下 法이라 한다)을 實施함에 있어서 歸屬農地에 對한 償還方法의 統一公平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南朝鮮過渡政府法令 第 173 號에 依하여 이미 償還한 農地代價는 法 第 13 條의 規定에 依한 償還部의 一部로 한다.

第 3 條 이미 償還한 農地代價는 償還期間의 最終年度로부터 順次 溯及하여 償還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 4 條 이미 償還한 農地代價가 法 第 13 條의 規定에 依한 償還額에 比하여 超過된 境遇에 는 그 超過分은 新償還額 決定年度의 政府法定 穀價로 換算한 現金을 返還한다.

第 5 條 南朝鮮過渡政府의 法令 第 173 號와 第 216 號에 依한 土地所有權 移轉登記 履行請求 訴訟이 本 法令 公布日以後 原告의 勝訴로 그 判決이 確定된 農地代價는 法의 新償還額을 當該年度의 政府法定 穀價로 換算한 現金을 支拂한다. 但, 法令 公布日 以前에 徵收한 農地小作料 또는 償還額은 農地管理費를 控除한 金額을 一時拂로서 賠償한다.

第 6 條 本法에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 7 條 本法令 公布日로부터 行한다.

8) 文教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 (法律 第 214 號, 1951. 7. 18)

第 1 條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政府에서 買收하는 文教財團의 所有農地에 對한 補償은 農地改革法에 依하는外에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 2 條 本法에서 文教財團이라 함은 文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幼稚園, 學校, 獎學會 또는 教化事業을 經營하는 財團法人을 말한다.

第 3 條 文教財團의 所有農地에 對한 評價에 있어서는 農地改革法 第 7 條第 1 項의 15 割을 30 割로 하여 그 補償을 定한다. 前項의 補償額中 15 割에 該當하는 額은 歸屬으로서 補償한다.

第 4 條 農地를 買受한 文教財團이 歸屬財團의 買收을 申請할 때에는 文教部長官과 農林部長官의 定한 文教財團間의 順位에 依하여 政府는 모든 申請者에 優先하여 文教財團에 賣却하여야 한다. 前項의 買收代金은 그 全部 또는 1 部를 農地證券으로써 納付할 수 있다.

第 5 條 本法에 依하여 補償을 받은 文教財團이 解散될 때에는 그 財産은 國庫에 歸屬한다.

附 則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文教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施行令 (4286. 5. 7. 大統領令 第 788 號)

第 1 條 文教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 (以下 法 이라 한다) 第 2 條의 文敎部長官이라 함은 大韓民國 樹立以前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의 文敎部長官에 相當한 職權을 行使한 官廳을 指稱한다.

第 2 條 寺利은 法 第 2 條에 規定된 敎化事業을 經營하는 財團法人中에 包含된다.

第 3 條 法 第 4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文教財團 所有農地라 함은 檀紀 4283 年 4 月 30 日까지 設立許可를 받은 法 第 2 條에 該當하는 法人의 所有農地中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國家에 買上된 農地 또는 國家에 買上될 農地를 말한다.

第 4 條 法 第 3 條第 2 項에 依하여 補償할 15 割에 該當하는 地價證券 (以下 特別證券 이라 한다) 은 文敎部長官이 發給한다.

第 5 條 文敎部長官은 法 第 3 條第 2 項에 依한 文教財團特別補償臺帳과 特別證券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

第 6 條 文教財團이 法 第 3 條第 2 項에 依하여 特別補償을 받고저 할때에는 歸屬財產公賣入札에 參加하여야 한다.

第 7 條 文教財團이 前條에 依하여 歸屬財產公賣入札에 參加하고자 할때에는 當該 公賣入札에 充當하고자 하는 特別補償額과 法 所定の 文教財團이라는 것을 證明하는 文敎部長官이 發付하는 證明書를 入札 前日까지 管財廳長 또는 地方管財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前項의 證明書를 後日에 提出하여 追完할 수 있다.

第 8 條 文教財團이 特別補償으로서 買受할 수 있는 歸屬財產은 그 代金이 法 第 3 條第 2 項의 補償額 限度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 그 數割에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第 9 條 文教財團으로서 第 4 條의 特別證券의 發給을 받고저 하는 者는 文敎部長官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文敎部長官에게 그 發給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文敎部長官은 前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그 財團法人의 資格을 審査한 後 法 第 2 條의 財團法人에 該當할 때에는 그 財團名義로 農林部長官이 發給한 地價證券과 同額의 特別證券을 發給한다.

第 10 條 本令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文敎部令으로 定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9) 山林保護臨時措置法 (法律第 218 號, 1951. 9. 21)

第 1 條 本法은 當面한 林相破壞의 現象을 防止하기 爲하여 따로 山林法이 制定될 때까지 山林保護 또는 造林에 關하여 臨時緊急의 措置를 取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政府는 林木의 保護育成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一定한 地域과 期間을 定하여 保護林區를 設定한다. 前項의 保護林區의 設定과 解除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3 條 政府는 前條의 保護林區에 對하여 立木伐採의 禁止以外에 生枝, 落葉, 切芝, 上石, 株根, 草根, 樹皮, 松脂의 採取 또는 掘採, 開墾, 放牧에 關한 行爲의 禁止 또는 制限과 造林施設物保護에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 4 條 農林部長官은 林政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地方住民과 山林所有者에게 山林·契의 組織 또는 解散과 監督上 必要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組織된 團體는 全員에게 勞力의 分擔을 賦課시킬 수 있다. 前 2 項의 規定에 依한 團體의 規約에는 2 千圓以下의 違約金을 徵收하는 規定을 둘 수 있다.

第 5 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組織된 團體에는 國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 6 條 農林部長官은 山林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造林과 山林保護의 業務를 遂行할 수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山林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對하여 造林 또는 山林의 管理의 全部 또는 一部를 第 4 條의 規定에 依하여 組織된 團體에 委託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또는 山林의 造林管理의 全部 또는 一部를 委託하였을 때에는 農林部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費用의 補償 또는 收益의 分收를 實行한다.

第 7 條 農林部長官은 本法에 規定한 職權의 一部를 地方長官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 8 條 第 3 條와 第 6 條의 命令에 違反하는 者는 1 年以下의 懲役 또는 5 萬圓以下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附 則

第 9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第 10 條 從前에 公布된 法令으로서 本法에 抵觸되는 規定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效力을 喪失한다.

- 10) 臨時土地收得稅法 (法律 第 220 號, 1951. 9. 25)
 개정 (法律 第 301 號, 1953. 12. 18)
 (法律 第 315 號, 1954. 3. 25)
 (法律 第 334 號, 1954. 4. 14)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法은 6·25 事變으로 因한 國家經濟의 不安定을 調整하기 爲하여 土地收益에 對한 租稅를 主로 物納으로 統合함으로써 通貨膨脹政策의 防止와 糧穀政策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田畓에는 本法에 依하여 第 1 種 土地收得稅를 賦課한다.

第 3 條 下에 揭記하는 土地에는 本法에 依하여 第 2 種 土地收得稅를 賦課한다.

1. 岱, 鹽田, 鐵泉地, 池沼, 雜種地
2. 教會地, 寺刹地, 公園地, 鐵道用地, 水道用地

第 4 條 國有의 土地 또는 前條 第 2 條의 土地로서 無料借地인 境遇에는 前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土地收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但 國有의 土地中에서 他人이 耕作 또는 管理를 하며 所得이 있을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5 石以下	100 分の 8
5 石을 超過하는 數量	100 分の 14
10 石을 超過하는 數量	100 分の 24
20 石을 超過하는 數量	100 分の 24
30 石을 超過하는 數量	100 分の 26
50 石을 超過하는 數量	100 分の 28

乙 類

各期別 所得金額을 下의 各級에 區分하여 累進으로 各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金額을 稅額으로 한다.

4,000 圓 以下의 金額	100 分の 25
4,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30
1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35
2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40
3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45
5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50
10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65
50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70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土地의 分配를 받은 土地에 對하여는 年賦償還하는 그 土地의 第 1 種土地收得稅는 第 1 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下에 依한다. 農地改革法에 依한 分配對象에서 除外된 國有의 土地 또는 歸屬土地에 對한 稅率適用도 또한 같다.

甲 類

各期別 收穫量을 下의 各級에 區分하여 累進으로 各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數量을 稅額으로 한다.

5 石以上	100 分の 5
5 石을 超過하는 數量	100 分の 11
10 石을 超過하는 數量	100 分の 17
20 石을 超過하는 數量	100 分の 21
30 石을 超過하는 數量	100 分の 23
50 石을 超過하는 數量	100 分の 25

第 2 章 第 1 種土地收得稅

第 1 節 總 則

第 5 條 第 1 種土地收得稅의 課稅標準은 다음과 같다.

1. 甲類(田畝으로 乙類以上の 土地) 그 土地의 收穫量
2. 乙類(田畝中 大統領令으로써 指定한 作物 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政府의 許可를 얻어 特殊한 作物을 生産하는 土地) 그 土地의 所得金額

第 6 條 第 1 種土地收得稅의 稅率은 다음과 같다.

甲 類

各期別 收穫量을 下의 各級에 區分하여 累進으로 各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數量을 稅額으로 한다.

乙 類

各期別 所得金額을 下의 各級에 區分하여 累進으로 各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金額을 稅額으로 한다.

4,000 圓以下の 金額	100 分の 15
4,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20
1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25
2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30
3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35
5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40

10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50

500,000 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 分の 60

第 1 項 및 第 2 項의 收穫量 또는 收得金額에 있어 同一戶籍內에 同居家族으로서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에 對하여는 이를 主된 納稅義務者分에 合算하여 稅率을 適用한다.

第 7 條 前條에 依하여 各 納期에서 徵收할 第 1 種土地收得稅는 下의 區分에 依한다.

1. 甲 類

그 年分을 下의 2 期로 區分하여 各 期中 收穫한 또는 收穫할 作物의 收穫量

第 1 期 1 月 1 日부터 7 月末日까지

第 2 期 8 月 1 日부터 12 月末日까지

2. 乙 類

그 年分을 下의 2 期로 區分하여 各 期中 收入한 또는 收入할 金額에서 必要한 經費를 控除한 金額

第 1 期 1 月 1 日부터 7 月末日까지

第 2 期 8 月 1 日부터 12 月末日까지

第 8 條 第 1 種土地收得稅는 納期開始當時 現在의 第 1 種土地收得稅臺帳에 登錄된 所有者 또는 農地改革에 依하여 土地의 分配를 받은 者로부터 徵收한다. 但 質權이나 地上權을 設定한 土地에 對하여는 質權者 또는 地上權者로부터 徵收한다. 前項에 該當하는 者가 그 土地를 直接 耕作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土地의 耕作者로부터 第 1 種土地收得稅를 徵收한다.

第 9 條 市(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區, 以下 또한 같다) 邑面에는 第 1 種土地收得稅臺帳을 備置하고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1. 土地의 所在地
2. 地番
3. 地目
4. 地積
5. 收穫量 또는 所得金額
6. 納稅義務者의 所在와 姓名 또는 名稱
7. 前 各號以外에 第 1 種土地收得稅의 賦課, 證收에 必要한 事項

第 2 節 免稅와 減稅

第 10 條 非課稅地에 勞費를 加하여 課稅地로 하였을 때에는 土地所有者의 申請에 依하여 그 情況에 따라 課稅地가 된 해로부터 5 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第 1 種土地收得稅를 免除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은 國有財産法 第 25 條의 規定에 依하여 賣却 또는 讓與의

豫約을 한 土地로서 事業成功으로 因하여 賣却 또는 讓與를 받아 課稅地가 된것과 國有未墾地利用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貸付받은 土地로서 豫定의 事業成功으로 因하여 付與를 받아 課稅地가 된것에 準用한다.

第11條 公有水面을 埋立 또는 干拓하여 그 所有權을 取得하여 課稅地가 되었을 때에는 土地所有者의 申請에 依하여 그 情況에 따라 課稅地가 된 日로부터 10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第1種土地收得稅를 免除할 수 있다.

第12條 災害로 因하여 地形이 變更되었거나 또는 作土가 損傷되어 荒地가 된 土地에 對하여는 納稅義務者의 申請에 依하여 그 情況에 따라 荒地가 된 日로부터 5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第1種土地收得稅를 免除할 수 있다. 前項의 期間이 滿了하여도 그 土地의 被害狀況이 尙存한 때에는 다시 5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第1種土地收得稅를 免除할 수 있다.

第13條 荒地로 免稅中인 土地가 再次 荒地가 되어 免稅期間을 定하였을 때에는 前에 依한 免稅期間은 그後 消滅된다.

第14條 第10條와 第11條의 規定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을 免除한 土地에 對하여 第12條의 規定에 依하여 免稅하였을 때에는 荒地로 免稅하는 期間을 除外하고 그 期間이 通行된다.

第15條 災害 또는 天候不順으로 因하여 田畝의 作物의 收穫量 또는 所得金額이 顯著히 減少된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該期分 第1種土地收得稅를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15條의1 納稅義務者가 災害 其他 不可抗力의 事由로 因하여 顯著히 資力을 喪失하여 納稅 困難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第1種土地收得稅를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納稅義務者가 戰爭 또는 事變으로 因하여 從事하였을때 또는 勤勞動員法에 依하여 徵用되었을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한 바에 依하여 土地收得稅를 輕減 免除 또는 徵收를 猶豫할 수 있다.

第16條 政府, 道, 서울特別市, 市, 邑, 面 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公共團體에서 公用 또는 公共用에 供하는 土地에 對하여는 納稅義務者의 申請에 依하여 그 第1種收得稅를 免除한다. 但 有料借地인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17條 大統領令의 定하는 學校의 用에 供하는 土地에 對하여는 納稅義務者의 申請에 依하여 그 第1種土地收得稅를 免除한다. 但 有料借地인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18條 第10條 乃至 第12條, 第16條와 第17條의 規定에 依하여 第1種土地收得稅를 免除하는 土地에 對하여는 그 免稅의 申請이 있는 後에 開始되는 納期로부터 그 第1種土地收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第3節 申告, 申請, 調査와 決定

第19條 非課稅地가 課稅地가 되었을 때나 課稅地가 非課稅地가 되었을 때 또는 새로이 課稅地가 生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土地所有者는 30日以內에 政府에 申告하여야 한다. 但 第4條에 該當하는 土地가 되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20條 土地所有者의 變更이 있을 境遇에 舊所有者가 하여야 할 申告는 所有者의 變更이 있을 날로부터 30日以內에 新所有者가 하여야 한다.

第21條 不法에 依하여 土地所有者로부터 하여야 할 申告 또는 申請을 質權 또는 地上權을 設定한 土地에 對하여는 質權者 또는 地上權者로부터 할수 있다. 鐵道用地, 水道用地, 道路, 河川, 溝渠, 溜池, 堤防, 鐵道線路 또는 水道線路가 될 土地에 對하여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는 工事施行官廳 또는 企權者가 土地所有者에 代身하여 할수 있다.

第22條 乙類 第1種土地收得稅에 對하여 納稅義務있는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每年 各納期別로 所得金額 其他 必要한 事項을 詳記하여 所管市, 邑, 面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市, 邑, 面長은 이를 一括하여 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23條 課稅標準이될 土地의 收穫量은 그 土地의 賃貸價格의 基準이될 收穫量으로 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기 困難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農地調査委員會의 調査에 依하여 政府에서 그 收穫量을 決定할 수 있다. 前項의 土地收穫量의 決定에 있어서 納期開始前 20日까지에 農地調査委員會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調査를 終了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調査가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政府가 調査 決定한다. 第1項의 收穫量이 決定된 後에는 主作物의 變動이 없는 限 이를 變更하지 아니한다. 課稅標準이될 收得金額은 政府의 調査에 決定한다.

第24條 前條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의 收穫量을 決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土地所有者 其他 納稅義務者의 縱覽에 供하여야 한다. 前條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所得金額을 決定한 때에는 政府는 納稅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4節 農地調査委員會

第25條 市, 邑, 面に 農地調査委員會를 둔다. 市, 邑, 面內 各里, 洞에 農地調査委員會分會를 둔다.

第26條 農地調査委員會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7條 農地調査委員會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當과 旅費를 支給한다.

第5節 審査請求와 決定

第28條 納稅義務者가 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政府가 決定한 土地의 收穫量 또는 所得金額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縱覽期間日 滿了한날 또는 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5日以內에 不服의 事由를 具備하여 政府에 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但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그 所得金額에 對하여 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前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도 政府는 第1種土地收得稅의 徵收를 猶豫하지 아니한다.

第29條 前條 第1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農地調査委員會의 調査에 依하여 政府에서 決定한다.

第30條 各 稅務署에 農地審査委員會를 둔다. 農地審査委員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31條 農地審査委員會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當과 旅費를 支給한다.

第6節 徵 收

第32條 第1種土地收得稅는 다음의 納期에 徵收한다.

甲 類

第1期 該年 7月1日부터 8月末日限

第2期 該年 11月1日부터 12月末日限

田에 對한 第1種土地收得稅는 第1期에 菴에 對한 第1種土地收得稅는 第1期에 徵收한다. 但 田으로서 麥類(夏穀)를 生産하지 아니하는 土地에 對한 田의 第1種土地收得稅義務者의 申請에 依하여 第1期에 徵收할 수 있다.

乙 類

第1期 該年 9月1日부터 末日限

第2期 翌年 2月1日부터 末日限

第32條의 1 政府는 第15條의 1의 規定에 依하여 輕減 또는 免除된 土地收得稅에 對하여 輕減 또는 免除에 關한 區分이 確定될 때까지 稅金의 徵收를 猶豫할 수 있다.

第33條 甲類의 第1種土地收得稅는 田에 있어서는 大麥, 小麥, 稗麥, 大豆, 玉蜀黍, 粟, 菴에 있어서는 正租로써 徵收한다. 但 納稅義務者가 願하는 境遇에는 粗穀을 玄米로 田에 있어서는 正租로 徵收하되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條에 規定된 穀物 相互間에 代替하여 徵收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收하는 作物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檢査合格品이라야 한다.

第 1 條에 依하여 粗穀을 精穀으로 徵收할 때에는 納稅義務者에게 加工料의 實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乙類의 第 1 種土地收得稅는 現金으로 徵收한다.

第 34 條 甲類의 第 1 種土地收得稅는 各 納稅義務者에 對하여 各期의 收穫量의 合計數量에 依하여 算出하여 納稅義務者의 住所地 市邑面長이 徵收한다. 但 各期의 稅種이 1 斗에 未達하는 境遇에는 第 1 種土地收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前項의 依하여 稅額을 算出한 結果 升位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切捨한다.

第 35 條 乙類의 第 1 種土地收得稅는 各 納稅義務者에 對하여 各期의 所得全額의 合計金額에 依하여 算出하여 納稅義務者의 住所地 市, 邑, 面長이 徵收한다. 但 各期의 稅額이 10 圓 未達하는 境遇에는 第 1 種 土地收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第 36 條 政府는 土地의 移動 其他 第 1 種土地收得稅의 徵收에 必要한 事項을 市, 邑, 面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37 條 第 1 種土地收得稅의 徵收에 關한 事項은 本法에 依한 것을 除外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3 章 第 2 種土地收得稅

第 38 條 第 2 種土地收得稅의 課稅標準은 土地의 賃貸價格으로 한다. 土地의 賃貸價格은 貸主가 公課, 修理費 其他 土地의 維持에 必要한 經費를 負擔할 條件으로써 賃貸하는 境遇에 貸主가 收得하는 1 年分의 金額에 依하여 定한다.

第 39 條 第 2 種土地收得稅의 稅率은 賃貸價格의 100 分의 12 로 한다.

第 40 條 第 2 種土地收得稅의 納期는 每年 5 月 1 日부터 末日限으로 한다.

第 41 條 第 2 種土地收得稅는 納期開始 當日現在의 第 2 種土地收得稅臺帳에 登錄된 所有者, 農地改革法 또는 歸屬財產處理法에 依하여 土地의 分配를 받았거나 賣却을 받은 者로부터 徵收한다. 但 質權이나 地上權을 設定한 土地에 對하여는 質權者 또는 地上權者로부터 徵收한다.

第 42 條 市, 邑, 面에는 第 2 種土地收得稅臺帳을 備置하고 下의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1. 土地의 所在
2. 地番
3. 地目
4. 地積
5. 賃貸價格
6. 納稅義務者의 住所와 姓名 또는 名稱
7. 納稅管理人의 住所와 姓名 또는 名稱

8. 前 各號以外에 第 2 種土地收得稅의 賦課, 徵收에 必要한 事項

第 43 條 納稅義務者가 그 土地所在의 市, 邑, 面에 現住하지 아니하는 때에 第 2 種土地收得稅에 關한 事項을 處理하게 하기 爲하여 그 市, 邑, 面內에 現住하는 者로서 納稅管理人을 定하여 所管 市, 邑, 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納稅管理人을 變更할 때에 도 또한 같다.

第 44 條 土地의 賃貸價格은 政府의 調査에 依하여 決定한다.

第 45 條 第 2 種土地收得稅는 各 納稅義務者에 對하여 同一 市, 邑, 面內의 土地賃貸 價格의 合計額에 依하여 算出하여 土地所在地의 市, 邑, 面長이 徵收한다. 但 稅額이 10圓에 未達하는 境遇에 第 2 種土地收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第 46 條 第 10 條 乃至 第 14 條, 第 16 條 乃至 第 21 條, 第 36 條와 第 37 條의 規定은 第 2 種土地收得稅에 準用한다.

第 4 章 雜 則

第 47 條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土地의 檢査를 하며 土地의 所有者 其他 納稅義務者 또는 利害關係에 對하여 必要한 事項을 質問할 수 있다.

第 48 條 農地調査委員과 農地審査委員은 各其 委員會 區域內의 土地所有者 其他 納稅義務者 또는 地方事情精通者에 對하여 必要한 事項을 質問할 수 있다.

第 49 條 道, 서울特別市, 市, 邑, 面 其他의 公共團體는 第 1 種土地收得稅와 第 2 種土地收得稅附加稅를 賦課하지 못한다. 本法에 依하여 徵收한 第 1 種土地收得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2,000 分の 50 을 徵收한 地方團體에 還付한다. 前項의 還付金은 每年度 當初 臨時土地收得稅 還付金 豫算計上額에 依하여 그 12 分の 1 을 每月 還付하여야 한다. 但 每年 12 月以後의 還付에 있어서는 當該年度의 調定額 및 徵收狀況을 考慮하여 每月 送付할 還付金의 額을 加減할 수 있다.

第 50 條 道, 서울特別市, 市, 邑, 面 其他의 公共團體는 第 1 種土地收得稅를 賦課하는 土地에 對하여는 地方稅法 第 23 條, 第 38 條와 第 46 條에 依하여 賦課할 戶別稅, 戶別稅附加稅, 戶別稅附加金, 特別賦課金의 課稅標準이 될 資力計算으로부터 除外한다.

第 51 條 第 1 種土地收得稅를 賦課하는 土地의 所得에 對하여는 取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法人이 各 事業年度에서 納付한 第 1 種土地收得稅額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에 對한 法人稅額에서 控除한다. 前項의 境遇에 控除할 第 1 種土地收得稅는 法人의 所得計算上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 2 項의 規定은 法人의 清算所得에 對한 法人稅에 對하여 準用한다.

第 52 條 租稅臨時增徵法 第 3 條의 規定은 削除한다.

第 53 條 第 1 種收得稅를 賦課하는 農家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副業的인 畜産養蠶 其他에

서 생한 所得에 對하여는 課稅하지 아니한다.

附 則 (4286. 12. 18)

第 54 條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第 55 條 地稅法은 本法 施行中 그 施行을 停止한다. 但 本法 施行前의 地稅에 關하여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第 56 條 第 49 條第 2 項의 地方團體에 對한 還付率은 檀紀 4284 年에 限하여 1,000 分의 235 로 한다. 本法은 檀紀 4287 年 4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4287. 3. 25)

第 57 條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本法 第 32 條는 田의 檀紀 4286 年度 第 2 期分 第 1 種 甲類 土地收得稅에 限하여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 則 (4287. 4. 14)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11) 農地改革事業特別會計法 (法律 第 241 號, 1952. 4. 12)

第 1 條 農地改革法에 依한 農地代價의 償還과 補償, 歸屬農地와 그 附屬財産의 管理 이에 附帶한 農地改良과 農村建設을 爲하여 特別會計를 設置한다.

第 2 條 本會計는 農地代價 計定과 歸屬農地管理計定으로 區分한다. 農地代價計定은 分配 農地에 對한 償還金を 歲入으로 하고 買收에 對한 補償金과 農地改革事業費를 歲出로 한다. 歸屬農地管理計定은 歸屬農地와 그 附屬財産에서 生하는 一切의 收入으로 하고 歸屬農地와 그 附屬財産을 管理하기 爲한 一切의 費用과 第 3 條에 規定한 農地改良費와 農村建設費를 歲出로 한다.

第 3 條 歸屬農地와 그 附屬財産의 歲入이 歸屬農地와 그 附屬財産의 管理費를 礎過할 때에는 農地改良과 農村建設事業에 充當하여야 한다.

第 4 條 農地代價計定の 買收農地代價 補償에 必要한 때에는 公債의 發行 또는 借入을 할 수 있다.

第 5 條 本會計에 있어서 支拂上限金이 不足할 境遇에는 本會計의 負擔으로 一時借入金을 할 수 있다. 本會計의 各 計定에서는 相互資金의 繰替를 할 수 있다.

第 6 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 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各 計定歲

出에 豫備金을 設置할 수 있다.

第7條 本會計의 收入支出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第8條 歸屬農地管理特別會計法은 廢止한다.

第9條 前 新韓公社와 歸屬農地管理特別會計의 債權과 債務는 本會에 引繼한다.

第10條 前條에 關한 必要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1條 本法은 檀紀 4285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12) 家畜保護法 (法律 第306號, 1954. 1. 23)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本法은 種畜을 確保하여 家畜의 改良增殖 利用을 促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家畜의 種類) 本法에서 家畜이라 함은 牛, 馬, 羊, 豚을 稱한다. 但 本法 第2章 第4章, 第5章第32條 第1章과 第32條에서는 牛馬만을 稱한다.

第2章 家畜의 登錄

第3條 (家畜의 登錄) 家畜의 登錄에 關한 事務는 서울特別市の 區 (以下 區라 稱한다) 市, 邑, 面의 長이 管掌한다.

第4條 (家畜登錄證) 家畜의 登錄은 區, 市, 邑, 面內에서 飼養되는 家畜에 對하여 1頭마다 作成하여 (以下 畜籍이라 稱한다) 種類別로 備置하고 家畜登錄證을 家畜의 所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交付한다.

第5條 (登錄의 事項) 畜籍 또는 家畜登錄證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名稱 但 名稱이 없으면 記載하지 아니한다.
2. 番號
3. 品種
4. 性別
5. 毛色
6. 特徵
7. 生年月日
8. 用役
9. 所有者의 住所, 姓名

10. 管理人이 있을 때에는 그 住所・姓名

第 6 條 (移種申告)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家畜의 所有者 또는 管理人은 當該事實이 發生한 날로부터 20日以內에 그 家畜을 管掌하는 區, 市, 邑, 面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家畜의 所有權 또는 管理權에 移動이 있을때
2. 家이의 出生 또는 斃死하였을때
3. 家畜이 行方不明이 되었을때
4. 前 3 號에 揭記한 事項 以外에 畜籍의 記載事項에 變更이 生하였을때

第 7 條 (家畜의 調査) 區, 市, 邑, 面의 長은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管內에 있는 家畜의 調査를 하여야 한다.

第 8 條 (標識) 區, 市, 邑, 面의 長은 畜籍整理를 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家畜體에 烙印 其他의 標識을 附할 수 있다.

第 3 章 種 畜

第 9 條 (種畜과 種畜保護地區의 設置) ①家畜을 改良 增殖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은 本法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種畜을 設定할 수 있다.

②主務部長官은 前項의 種畜増産을 하기 爲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地域을 種畜保護地區로 設定할 수 있다.

第 10 條 (種畜의 檢査) 前條의 種畜은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檢査에 合格한 것 에 設定한다.

第 11 條 (種畜以外의 交配禁止) ①主務部長官은 前條의 檢査에 合格한 種畜에 對하여 種畜證明書를 그 所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交付한다.

②前項의 證明書가 없는 種牡畜은 交配할 수 없으며 繁殖에 不適當한 牡畜은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去勢를 命할 수 있다.

第 12 條 (種畜保護料) 種畜의 保護者 또는 管理人에 對하여서는 保護料를 支給한다.

第 13 條 (種畜賣買 交換의 制限) 主務部長官은 保護地區內의 種畜에 對하여 一定한 期間內의 賣買交換을 禁止 또는 制限할 수 있으며 種畜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을 所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命할 수 있다.

第 14 條 (種畜飼養管理規則) 種畜飼養管理 또는 標識에 關하여 必要한 規定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第 15 條 (豫防注射) ①種畜은 年 1 回以上 品種 資質의 檢査와 傳染病의 豫防注射를 實施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豫防注射는 一般家畜에도 適用한다.

第 4 章 家畜屠殺의 制限과 禁止

第 16 條 (屠殺의 禁止制限) 主務部長官은 家畜의 保護育成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비에 依하여 一定한 地域期間 또는 家畜의 種類와 年齡을 定하여 家畜의 屠殺을 制限 또는 禁止할 수 있다.

第 17 條 (屠殺禁止 制限에 對한 例外) 前條의 規定에 依한 制限 또는 禁止는 다음 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學術試驗用으로 必要한 家畜
2. 獸醫師의 診斷에 依하여 切迫屠殺을 必要로 하거나 또는 使用能力이 없다고 認定되는 家畜
3. 主務部長官이 屠殺을 許可한 家畜

第 5 章 家畜市場

第 18 條 (家畜市場 開設의 許可) ①家畜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市場業務規程과 事業計劃書를 添附한 申請書를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말아야 한다.

②前項 業務規程과 이 事業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19 條 (市場開設者) 家畜市場은 地方自治團體가 아니면 開設할 수 없다.

第 20 條 (市場業務管理者) 家畜市場의 開設者는 家畜의 改良増殖을 目的으로 하는 公益法人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行하게 하여야 한다.

第 21 條 (仲介收入의 用途) 家畜仲介事業으로 因하여 生한 收入은 家畜改良増殖 共濟防疫等事業에 使用하여야 한다.

第 22 條 (市場外 賣買의 禁止) 家畜의 賣買 또는 交換은 家畜市場 以外の 場所에서 行할 수 없다.

第 23 條 (賣買交換 拒否의 禁止) 家畜市場의 開設者는 正當한 理由없이 그 市場에서 家畜의 賣買 또는 交換을 拒否할 수 없다.

第 24 條 (市場에 關한 規定) 家畜市場과 그 附屬建物의 構造設備, 家畜의 去來方法, 仲介業者의 資格, 仲介手數料 其他 必要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第 25 條 (家畜市場에 關한 檢査) 主務部長官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該 公務員으로 하여 家畜市場 또는 그 附屬建物에 臨檢하여 家畜市場開設者 第 20 條 規定의 公益法人 또는 仲介業者들의 帳簿書類 其他 物件을 檢査하게 하여 家畜市場과 그 附屬建物에 있는 家畜의 移動을 停止시킬 수 있다.

第 26 條 (監督市場 開設許可의 取消) ①主務部長官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은 公益을 爲하

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家畜市場과 其附屬 建物の 位置 構造設備 또는 市場業務規程의 變更을 命하거나 其他 監督上 必要한 處分을 할수 있다.

②主務部長官,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은 家畜市場 開設者 또는 第 20 條에 規定된 公益法人의 行爲가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違反할 때에는 家畜市場의 開設許可를 取消하거나 業務의 停止 또는 制限을 할수 있다.

第 6 章 家 畜 共 濟

第 27 條 (共濟) 主務部長官은 家畜所有者에 對한 不應의 損失을 補償하기 爲하여 生後 6 個月以上된 健康한 家畜에 對하여 共濟를 하여야 한다.

第 28 條 (共濟規定) 前條에 依한 共濟規定 其他 必要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第 7 章 罰 則

第 29 條 第 6 條, 第 22 條 및 第 32 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200 圓以下の 料料에 處한다.

第 30 條 第 18 條, 第 24 條 또는 第 26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 또는 處분에 違反하거나 第 26 條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停止 또는 制限에 違反하는 者는 2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 31 條 第 16 條의 規定에 依하여 制限 또는 禁止된 家畜을 屠殺한 者는 屠殺된 家畜의 時價의 5 倍以上의 罰金에 處한다. 但 累犯者에 對하여는 10 倍까지를 限度로 한다.

附 則

第 32 條 本法 施行日 現在에 家畜을 所有 또는 管理하는 者는 本法 施行日부터 20 日以內에 그 畜籍을 管掌하는 區, 市, 邑, 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 33 條 ①本法 施行前에 開設된 家畜市場은 本法에 依하여 開設된 것으로 看做한다. 但 主務部長官,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은 市場設備 其他 必要한 事項에 關한 命令을 말할 수 있다.

②開設者가 前項 但書의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家畜市場의 開設許可를 取消한다.

第 34 條 本法 施行日 現在 政府 地方公共團體가 所有하는 種牡 또는 種牝牛는 本法에 依한 種畜으로 看做한다.

第 35 條 家畜市場에 關한 市場規則 其他 從前의 法令으로서 本法에 抵觸되는 것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效力을 잃는다.

第 36 條 本法 第 20 條 規定의 公益法人은 畜産同業組合으로 한다.

第 37 條 法律 第 37 號 畜牛屠殺制限法은 廢止한다.

第 38 條 本法은 公布日부터 30 日을 經過한 後 施行한다.

13) 農事 教 導 法 (臨 時 國 會 第 11 次 本 會 議 通 過)
(法 律 第 435 號 , 1957. 2. 12)

第 1 條 (目 的) 本 法 은 農 事 의 改 良 發 達 을 爲 한 必 要 한 研 究 試 驗 을 하 여 農 事 및 生 活 改 善 에 關 한 知 識 과 技 術 을 農 民 에 게 教 導 함 으 로 써 農 產 物 을 增 產 하 고 그 의 生 活 向 上 을 期 함 을 目 的 으 로 한 다 .

第 2 條 (事 業) 本 法 에 서 農 事 教 導 事 業 이 라 함 은 다 음 의 事 業 을 말 한 다 .

1. 農 事 (農 業 , 林 業 , 畜 產 業 , 園 藝 業 과 各 農 家 副 業 等) 의 改 良 發 達 을 爲 한 研 究 , 試 驗 및 知 識 과 技 術 의 教 導 普 及
2. 農 業 土 壤 이 改 良 및 保 存 方 法 에 對 한 研 究 試 驗 과 그 指 導
3. 協 同 組 織 體 의 運 營 方 法 의 指 導
4. 農 村 靑 少 年 의 指 導 教 養
5. 農 村 家 庭 生 活 의 向 上 을 爲 한 指 導
6. 前 各 號 의 事 業 에 從 事 할 公 務 員 의 養 成
7. 前 各 號 의 事 業 遂 行 에 直 接 關 聯 된 事 業

第 3 條 (農 事 院 의 組 織) ① 農 事 에 關 한 研 究 試 驗 과 教 導 事 業 을 掌 理 하 기 爲 하 여 農 林 部 長 官 所 屬 下 에 農 事 院 을 둔 다 .

② 農 事 院 에 試 驗 局 과 教 導 局 을 둔 다 .

③ 農 事 院 에 院 長 一 人 을 두 며 局 에 局 長 을 둔 다 .

④ 院 長 은 農 事 에 關 한 學 識 과 經 驗 이 豐 富 한 者 중 에 서 農 林 部 長 官 의 提 請 으 로 大 統 領 이 任 命 한 다 .

⑤ 局 長 은 技 監 으 로 이 에 補 한 다 .

⑥ 院 長 은 院 務 를 統 理 하 며 所 屬 職 員 을 指 揮 監 督 한 다 .

第 4 條 (試 驗 場 研 究 所) 農 事 에 關 한 研 究 試 驗 의 目 的 을 達 成 하 기 爲 하 여 大 統 領 令 의 定 하 는 바 에 依 하 여 農 事 院 長 所 屬 下 에 各 科 의 試 驗 場 또 는 研 究 所 및 그 支 場 · 支 所 를 둘 수 있 다 .

第 5 條 (道 農 事 院 과 教 導 所) ① 農 事 에 關 한 研 究 試 驗 및 教 導 事 業 의 事 務 를 分 掌 하 기 爲 하 여 農 事 院 長 所 屬 下 에 道 에 道 農 事 院 을 두 며 市 郡 에 市 郡 農 事 教 導 所 를 둔 다 .

② 市 郡 內 의 主 要 地 區 에 市 郡 農 事 教 導 所 를 둘 수 있 다 .

③ 道 農 事 院 에 試 驗 局 과 教 導 局 을 둔 다 .

④ 道 農 事 院 에 院 長 一 人 을 두 며 局 에 局 長 을 둔 다 .

⑤ 院 長 은 技 監 으 로 局 長 은 技 正 으 로 이 에 補 한 다 .

⑥ 道 農 事 院 은 市 郡 農 事 教 導 所 를 指 揮 監 督 한 다 .

第 6 條 (研 究 教 導 公 務 員) ① 農 事 에 關 한 研 究 試 驗 에 從 事 하 게 하 기 爲 하 여 農 事 院 에 研 究

公務員을 둔다.

②農業敎導事業에 從事하게 하기 爲하여 農事院과 農事敎導所에 敎導公務員을 둔다.

③敎導公務員은 敎導師와 敎導員으로 한다.

④敎導師는 三級公務員으로 하며 敎導員은 四級公務員으로 한다.

⑤研究公務員과 敎導公務員은 專門學術을 修了한 者로서 大統領令에 定하는 바에 依한 資格을 가진者이어야 한다.

⑥敎導公務員은 任用後에도 每年所定の 修鍊을 받아야 한다.

⑦敎導公務員은 本法에 定한 農事敎導事業以外의 事務에 關與 또는 兼務하지 못한다.

第 7 條 (研究敎導公務員의 優待) ①研究公務員과 敎導公務員은 그 職務와 責任의 特殊性에 비추어 一般公務員에 比하여 優待되어야 하며 그 給與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前項의 公務員에 對하여는 研究手當과 敎導手當을 支給한다.

第 8 條 (他機關의 協助)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各機關은 農事敎導事業과 研究敎導公務員의 業務遂行에 關하여 必要한 協助와 便宜를 供與하여야 한다.

第 9 條 (助成金과 補助金) 地方公共團體 또는 其他本法에 定한 農事敎導事業을 實施하고 있는者에 對하여는 國費로써 助成金 또는 補助金を 支給할 수 있다.

第 10 條 (他機關의 敎導事業의 實施) ①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各機關은 本法에 依한 農事敎導事業에 呼應하여 財政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農事敎導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②前項機關 또는 團體로서 本法所定の 事業을 實施코저 할 때에는 事前 및 進捗中에 恒時 本法에 依한 行政機關과 密接한 連絡을 取하여야 한다.

第 11 條 (施行令) 農事院 道農事院과 農事敎導所의 職制 公務員의 定員 報酬 其他本法에 定한 以外의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②大統領令 第 45 號 第 798 號 第 863 號 第 1136 號 農業技術院職制에 依하여 設置된 中央農業技術院과 그 支院 및 道農業技術院은 各其本法에 依하여 設置된 農業試驗場과 그 支場 및 道農事院으로 한다.

③大統領令 第 790 號에 依하여 設置된 中央園藝技術院과 그 支院, 大統領令 第 640 號에 依하여 設置된 中央畜產技術院과 그 支院, 大統領令 第 57 號에 依하여 設置된 中央林業試驗場과 그 支場, 大統領令 第 193 號에 依하여 設置된 中央家畜衛生研究所와 그 支所는 各其 本法에 依하여 設置된 園藝試驗場 畜產試驗場 林業試驗場 및 家畜衛生研究所와 그 支場 支所로 하되 그 施行期日은 檀紀 4291 年 1 月 1 日로 한다.

14)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 關한 特別措置法 (法律第 613 號, 1961. 5. 5)

第 1 條 本法은 分配農地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簡略·迅速하게 할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①農地改革法에 依하여 分配된 農地로서 分配받은者의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舉하기 前에 同法所定의 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分配農地의 權利를 이어받은 事實上 現所有者에게 政府는 直接 그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履行한다.

②前項의 現所有者는 農地改革法이 定한 適格農家이어야 한다.

第 3 條 ①本法實施에 있어 區廳長, 市長 또는 邑面長이 그 區, 市 또는 邑·面의 農地委員會의 確認에 依하여 發付하는 償還完了 및 事實上의 所有를 證明하는 書面은 登記原因을 證하는 書面으로 한다.

②區, 市 또는 邑·面의 農地委員會가 前項의 確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農地所有地 里洞 農地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 4 條 本法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附 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施行한 날로부터 2年間 有效로 한다.

15) 林產物團束에 關한 法 (法律第 635 號, 1961. 6. 27)

國家再建最高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林產物團束에 關한 法律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尹 潛 善 印

檀記 4294 年 6 月 19 日

內 閣 首 班 張 都 暎

農 林 部 長 官 張 炯 淳

第 1 條 (目的) 本法은 山林被害와 不正林產物의 運搬을 團束함으로써 山林保護를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被害의 防止) 許可없이 林野內에서 林木의 伐採나 開墾 또는 生枝, 株根, 樹脂, 土石의 採取 및 毀損이나 그 搬出을 하지 못한다.

第 3 條 (搬出의 範圍) 林產物을 搬出하고자 하는者는 生產品搬出確認證을 所持하여야 하며

當該林產物에는 搬出確認用 極印을 押打하거나 또는 木炭生産確認票를 貼付하여야 한다.

第 4 條 (不正物件의 沒收) 前 2 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伐採, 採取 또는 搬出하는 林產物은 이를 沒收한다.

第 5 條 (車輛等의 處分) 不正林產物을 積載하거나 輸送하는 車輛 또는 船舶은 그 運行許可를 取消하고 運轉士의 運轉免許를 取消한다.

第 6 條 (製材所의 處理) 不正林產物의 製材는 이를 禁하며 不正林產物을 製材하기 爲하여 設置된 簡易移動式 製材機具는 이를 沒收한다.

第 7 條 (罰則) ①第 2 條, 第 3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와 不正林產物을 運搬 및 製材한 者는 3 年以下의 懲役 또는 30 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常習 또는 營業으로 前項의 罪를 犯한者는 6 年以下의 懲役이나 5 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但, 罰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 8 條 (許可等) 林產物의 伐採, 採取等의 許可 또는 搬出確認 其他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攬紀 4294 年 5 月 15 日以前에 한 伐採 또는 採取許可나 搬出確認은 本法에 依한 許可 또는 確認을 받아야 한다. 但,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 26 號와 同第 41 號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 또는 確認된 것은 本法에 依하여 許可 또는 確認된 것으로 看做한다.

③國家再建最高會議 布告第 5 號,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 26 號와 同第 41 號는 이를 廢止한다.

16) 水利組合合併에 關한 特別措置法 (法律第 701 號, 1961. 8. 25.)

第 1 條 (目的) 本法은 水利組合 (以下組合이라 한다)을 適正規模로 合併하여 組合의 經費 節減과 合理的인 運營을 圖謀하여 組合員의 福利增進과 國家經濟再建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合併의 原則) 組合의 合併은 1 郡 1 組合을 原則으로 한다. 但, 自然的, 經濟的條件으로 不得已한 境遇에는 例外한다.

第 3 條 (合併計劃) ①서울 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農林部令에 依據 前條의 合併原則에 따라서 管轄組合의 合併計劃을 作成하여 農林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서울 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合併計劃을 調整綜合하여 全國組合合併計劃

(以下合併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合併事務開始日 40日以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合併計劃에는 다음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合併의 理由
2. 合併될 組合名과 合併後의 組合名
3. 合併方法(吸收 또는 新設合併)
4. 合併事務開始日과 終了日

第4條(異議申請) ①合併計劃에 異議가 있는 組合은 組合員의 過半數의 同意을 얻어 公告日로부터 15日以內에 管轄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를 經由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前項의 異議申請을 接受하였을 때에는 그 事實을 調査하고 意見을 附하여 接受한 날로부터 10日以內에 農林長官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을 接受하였을 때에는 接受한 날로부터 15日以內에 釐末을 決定하여 管轄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를 經由하여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5條(合併計劃의 拘束力)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合併計劃이 確定된 關係組合은 朝鮮水利組合令第5條의 1에 依하여 準用되는 第3條 規定에 依한 組合員의 同意없이 合併할 수 있다.

第6條(諮問委員會의 設置) ①本法에 依한 組合合併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諮問하기 爲하여 農林部에 水利組合合併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前項의 諮問委員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部長官이 定한다.

第7條(權利義務의 確定)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合併事務開始日前에 管內組合의 事務監査를 實施하여 引受引繼될 權利義務를 確定하여야 한다.

第8條(組合長의 解任等) ①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組合의 合併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組合長을 解任하고 市長 또는 郡守로 하여금 組合長의 職務를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②組合이 吸收合併될 때에는 存續될 組合의 任員은 새로 任命한다.

第9條(合併의 認可) ①本法에 依하여 合併기로 確定된 組合은 組合規約을 定하여 合併節次를 完了하고 豫算을 編成하여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の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③合併으로 因하여 新設 또는 吸收될 組合 第1項의 認可를 받은날에 成立 또는 解散된다

合併으로 인하여 吸收된 組合은 吸收合併이 認可된 날에 解散된다.

第 10 條 (權利義務의 承繼) 組合이 合併되었을 때에는 合併으로 인하여 解散된 組合의 一切의 權利義務를 合併後 存續하거나 合併으로 인하여 새로이 設置된 組合이 承繼한다. 但 合併되는 組合間에 施設負債等의 差異로 인하여 組合費의 負擔에 差等を 두어야 할 境遇에는 組合規約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區別로 特別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 11 條 (罰則) 本法에 依한 組合의 合併에 關하여 故意로 合併을 妨害하거나 遲延시키는 者는 5 月以下の 懲役 또는 5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 12 條 水利組合에 關한 法令規定中 本法과 抵觸되는 規定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效力을 停止한다.

第 13 條 本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17) 肥料團束法 (法律第 882 號, 1961. 12. 27)

第 1 條 (目的) 本法은 肥料의 品質을 保全하고 公正한 去來를 確保함으로써 農業生産力의 維持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①本法에서 肥料라함은 植物에 榮養을 供給하거나 植物의 栽培를 도우기 爲하여 흙에 化學的 變化를 줄 目的으로 土地에 베푸는 物質을 말한다.

②本法에서 生産業者라함은 肥料의 生産(調合, 配合, 加工, 採取와 細菌肥料의 製造 및 肥料의 製造에 隨伴하여 肥料가 되는 副産物의 産出을 包含한다)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하고, 輸入業者라함은 肥料의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하며, 販賣業者라함은 肥料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로서 生産業者와 輸入業者以外的 者를 말한다.

第 3 條 (公定規格) ①農林部長官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肥料의 種類를 指定하여 그 含有하여야 할 主成分의 最少量 또는 最大量과 含有할 수 있는 有害成分의 最大量 其他 必要한 事項에 關한 規格(以下公定規格이라 한다)을 定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肥料의 公定規格을 設定 또는 變更하거나 廢止하고자 할 때는 이를 實施할 期間의 30 日前에 告示하여야 한다.

第 4 條 (許可) ①肥料를 生産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許可받아야 한다. 但 化學肥料를 生産하고자 하는 者는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肥料를 販賣하고자 하는 者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前二項의 許可 및 登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5 條 (登錄票) ①生産業者, 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肥料의 容器나 包裝의 外部에 保證票를 붙여야 한다.

②前項에 의하여 붙여진 保證票가 自己의 所有 또는 管理에 屬하고 있는 期間中에 滅失되었거나 保證票의 記載事項이 不明하게 되었을 때에도 前項과 같다.

第 6 條 (讓渡의 制限) ①生産業者, 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保證票가 붙여진 肥料가 아니면 讓渡하지 못한다.

②天災, 地變으로 因하여 肥料가 保證票에 記載된 內容과 맞지 아니하게 된 境遇 또는 關令으로써 定하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農林部長官,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았을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肥料를 讓渡할 수 있다.

第 7 條 (不正使用等の 禁止) ① 누구든지 保證票를 偽造 또는 變造하거나 不正하게 이를 使用 또는 偽造, 變造한 保證票 其他 保證票로 誤認하기 쉬운 것을 自己가 販賣하는 肥料의 容器나 包裝의 外部에 붙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른 生産業者, 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의 姓名, 商標, 商號, 肥料의 名稱 또는 成分 등이 記載되었거나 表示된 肥料의 容器나 包裝은 이를 지우지 아니하고는 自己가 生産, 輸入 또는 販賣하는 肥料의 容器 또는 包裝으로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8 條 (異物混入의 禁止) 生産業者, 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그가 生産 또는 輸入하거나 販賣하는 肥料에 그 品質을 低下시킬 수 있는 다른 物質을 混入하여서는 아니된다. 但, 關令으로 定하는 種類의 肥料의 生産業者가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肥料의 主成分의 含有量을 調整하기 爲하여 行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 9 條 (虛偽宣傳等の 禁止) ①生産業者, 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生産 또는 輸入하거나 販賣하는 肥料의 主成分의 含有量 또는 그 效果에 關하여 虛偽의 宣傳을 하지 못한다.

②生産業者, 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그가 生産 또는 輸入하거나 販賣하는 肥料의 主成分 또는 그 效果에 關하여 誤認할 憂慮가 있는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10 條 (報告의 徵收) 農林部長官,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生産業者, 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와 肥料의 運送業者, 運送取扱業者 또는 倉庫業者로부터 그 業務에 關한 報告를 받을 수 있다.

第 11 條 (公務員의 臨檢等) ①農林部長官,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 肥料의 團束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生産業者, 輸入業者, 販賣業者, 肥料의 運送業者, 運送取扱業者 또는 倉庫業者의 事業場, 倉庫, 船車 其他 肥料의 生産, 輸入, 販賣, 運送, 保管의 業務에 關係있는 場所에 들어가서 肥料, 그 原料 또는 業務에 關한 帳簿 其他 書類를 檢査하게 하며 關係者에 對하여 質問하거나 肥料나 그 原料를 分析, 檢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最少量에 限하여 無償으로 이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當該公務員이 檢査 또는 收去할 境遇에는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이를 關係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 12 條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 農林部長官,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肥料의 生産業者, 輸入業者, 販賣業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第 4 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 또는 登錄한 날로부터 1 年以內에 開業하지 아니하거나 1 年以上 그 營業을 休止한 때에는 그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第 13 條 (營業의 停止等) 農林部長官,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肥料의 生産業者, 輸入業者, 販賣業者가 本法 또는 本法에 依據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肥料의 讓渡, 引渡를 制限禁止하거나 그 營業을 制限, 停止하거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第 14 條 (適用의 例外) ①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肥料를 工業用 또는 飼料用に 供給하기 爲하여 生産, 輸入, 讓渡, 運送 또는 保管하는 境遇에는 本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關令으로 定한다.

第 15 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 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 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또는 이를 併科할 수 있다.

1. 第 5 條의 規定에 依한 保證票에 虛偽의 記載를 한다.
2. 第 6 條第 1 項, 第 7 條第 1 項 또는 第 8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 16 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 年以下의 懲役 또는 이를 併科할 수 있다

1. 詐罔의 行爲로써 第 4 條에 規定된 許可를 받았거나 登錄을 한 者
2. 第 4 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또는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肥料를 生産 輸入하거나 販賣한 者
3. 第 7 條第 2 項 또는 第 9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 17 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0 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5 條의 規定에 依한 保證票를 붙이지 아니한 者
2. 第 10 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偽의 報告를 한 者
3. 第 11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妨害, 忌避하거나 關係者에 對한 質問에 虛偽의 陳述을 한 者

第 18 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的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者가 그 法人이나 個人的 業務에 關하여 前 3 條의 規定에 依한 違反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 各 本條의 規定에 依한 罰金刑을 料한다. 但, 法人 또는 個人的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者의 當該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爲하여 그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다하였을 때에는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附 則

-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檀紀 4260 年制令第 14 號 朝鮮肥料取締令은 이를 廢止한다.
- ③本法施行當時 本法에 規定된 肥料에 關한 營業을 하는者가 그 營業을 繼續하고자 할 때에는 本法 施行日부터 1 月以內에 本法第 4 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 또는 登錄의 申請를 하여야 한다.
- ④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 또는 登錄을 申請한 者는 申請에 對한 處分이 있을 때까지 營業을 繼續할 수 있다.

18) 畜犬取締規則廢止에關한 法 (法律 第 909 號 1961.12. 30)

京畿道令第 21 號 畜犬取締規則은 이를 廢止한다.

附 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 土地改良事業法 (法律第 948 號, 1961. 12. 30)

國家再建最高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土地改良事業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尹 潁 善 印

檀紀 4294 年 12 月 31 日

內 閣 首 班	宋 堯 讚
經 濟 企 劃 院 長	金 裕 澤
農 林 部 長 官	張 炯 淳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①本法은 農業經營의 合理化와 農業生產力의 發展을 爲하여 農地를 改良, 開發, 保全하여 食糧 其他 農產物生產의 維持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土地改良事業은 國土資源의 綜合的 開發과 保全에 이바지되고 國民經濟의 發展에 適合한 것이어야 하며 土地利用, 山林其他資源의 保全開發을 適切히 考慮하여 閣令으로 定하는 計劃基準에 依據하여 施行되어야 한다.

第 2 條 (定義) ①本法에서 農地라함은 耕作의 目的에 使用되는 土地를 말한다.

②本法에서 土地改良事業이라 함은 本法에 依하여 施行하는 다음의 事業을 말한다.

1. 灌溉排水施設, 農業用道路 其他農地의 保全 및 그 利用에 必要한 施設의 新設, 管理 廢合 또는 變更
2. 農地의 交換, 分合과 區劃整理
3. 開畝 및 開田
4. 埋立 및 干拓
5. 農地 및 그 利用에 必要한 施設의 災害復舊
6. 農地에 對한 權利 및 그 農地의 利用에 必要한 土地에 關한 權利, 農業用 施設과 用水에 關한 權利의 交換, 分合
7. 其他 農地의 改良 또는 保全을 爲하여 必要한 事業

第 3 條 (土地改良事業의 參加資格) ①土地改良事業의 施行區域內에 있는 土地의 所有者는 그 土地改良事業에 參加할 資格을 가진다.

②本法의 適用에 있어 다음에 揭記하는 者는 土地의 所有者로 본다.

1.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의 分配를 받은者
2. 歸屬財產處理法에 依하여 農地以外의 土地의 賣却을 받은者
3. 國有財產法에 依하여 國有地의 貸付를 받은 者

4.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公有水面埋立의 免許를 받은者

第 4 條(利害關係人) 本法에서 利害關係人이라함은 當該土地改良事業에 關係가 있는 土地의 所有者 및 그 以外의 登記된 權利를 가진者를 말한다.

第 5 條(土地改良事業施行者) 土地改良事業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土地改良組合이나 土地所有者가 施行한다.

第 2 章 土地改良組合 및 土地改良組合聯合會

第 1 節 總 則

第 6 條(法人格)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하는 土地改良組合과 土地改良組合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第 7 條(名稱使用과 類似名稱使用의 禁止) ①土地改良組合과 土地改良組合聯合會는 그 名稱中에 土地改良組合 또는 土地改良組合聯合會의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②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土地改良組合 또는 土地改良組合聯合會가 아니면 그 名稱中에 土地改良組合, 土地改良組合聯合會 또는 위와 類似的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 8 條(監督) ①土地改良組合과 土地改良組合聯合會는 農林部長官이 監督한다.

②本法에 의한 土地改良組合과 土地改良組合聯合會의 監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2 節 土地改良組合

第 9 條(認可申請) 土地改良組合(以下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 3 條의 規定에 依한 資格을 가진者(以下 資格者라 한다) 15 人以上이 發起人이 되어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地域에서 施行할 土地改良事業計劃과 定款 其他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組合設立의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請에는 第 3 條의 資格者 3 分の 2 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國有地 또는 國家나 地方公共團體의 公用 또는 公共用 土地를 包含하여 組合의 區域으로 定할때에는 그 土地를 管理하는 行政廳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10 條(審査와 告示) ①農林部長官은 前條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土地改良事業 計劃과 定款을 審査하여 適否를 決定하고 그 事實을 當該申請人에게 通知하여인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當該申請을 適當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事實을 告示하고 20 日 以上の 期間을 定하여 그 決定된 土地改良事業計劃과 定款의 寫本을 一般人에게 閱覽시켜야 한다.

第 11 條(異議申請) ①利害關係人은 前條 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農林部長官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30 日以內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前條 第 2 項의 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60日以內에 이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을 正當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却下하여야 한다.

第12條(設立의 認可와 組合의 成立) ①農林部長官은 前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이 없을때 또는 同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却下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組合의 設立을 認可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組合設立을 認可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組合은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함으로써 成立한다.

第13條(組合員) 組合區域內에 있는 第3條의 資格者와 定款으로 定하는 家屋其他의 工作物을 所有하는 者는 그 組合의 組合員이 된다.

第14條(國家가 施行하는 事業等의 移讓에 依한 設立)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依한 土地改良事業이 施行中에 있거나 竣功하였을 境遇에 當該行政廳은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土地改良事業의 施行區域과 그 區域內에 있는 第3條의 資格者를 定하여 組合을 設立하게 하고 그 工事 또는 施設을 當該組合에게 移讓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第3條의 資格者는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但 同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5條(設立費用負擔) 組合의 設立에 關한 費用은 當該組合이 負擔한다. 但 組合이 成立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費用은 設立申請人이 負擔한다.

第16條(事業) ①組合은 그 區域內의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한다.

②組合은 前項의 土地改良事業의 附帶事業과 關聯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區域內 土地의 農業上 利用을 增進하기 爲한 施設을 할 수 있다.

第17條(定款) ①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區域
4. 事務所의 所在地
5. 組合員에 關한 事項
6. 經費의 分擔에 關한 事項
7. 總會 또는 總代會와 評議會에 關한 事項
8. 任員에 關한 事項
9. 事業年度에 關한 事項
10. 業務執行과 財政에 關한 事項
11. 公告의 方法에 關한 事項

12. 其他 必要한 事項

②組合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18 條 (登記) ①組合은 그 設立認可가 있는 날로부터 30 日以內에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前條 第 1 項 第 1 號乃至 第 4 號에 揭記한 事項
2. 設立認可의 年月日
3. 組合長과 監事의 住所姓名

②前項에 揭記한 事項中 變更이 있을 때에는 2 週日以內에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登記한 後가 아니면 第 3 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 19 條 (任員의 選任과 任期) ①組合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組合長 1 人
2. 監事 2 人

②組合長은 總代會에서 滿 30 歲以上の 組合員中에서 選任하고 그 任期는 4 年으로 한다. 但 設立當時의 組合長은 第 9 條의 規定에 依한 發起人會議에서 選任하고 그 任期는 1 年으로 한다.

③監事는 總代會에서 選任하고 그 任期는 3 年으로 한다. 但 設立當時의 監事는 發起人會議에서 選任하고 그 任期는 1 年으로 한다.

④發起人은 組合長을 選任한 때에는 遲滯없이 組合長에게 그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任員은 그 任期가 滿了되기 10 日前까지에 選任하여야 한다.

⑥任員이 闕員되었을 때에는 遲滯없이 補闕選舉를 하여야 한다.

⑦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⑧組合은 組合長 또는 監事が 就任 또는 辭任하였을 때에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⑨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前項의 申告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 20 條 (任員의 兼職禁止等) ①組合長은 그 組合의 監事나 職員을 兼하지 못하며 監事는 그 組合의 職을 兼하지 못한다.

②組合長은 專任으로 하고 監事는 名譽職으로 하되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第 21 條 (任員의 職務) ①組合長은 組合을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理하고 總會 또는 總代會와 評議會의 議長이 된다.

②監事는 組合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여 評議會에 報告한다.

③組合과 組合長과의 契約이나 訴訟에 關하여는 監事가 組合을 代表한다.

第 22 條 (評議會) ①組合에 評議會를 둔다.

②評議會는 組合長과 評議員으로써 構成한다.

第 23 條 (評議員의 任期 및 實費辨償) ①評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關員이 생겼을 때에는 補選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②評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第 24 條 (評議員의 定數) 評議員의 定數는 定款으로 定한다. 但 30人을 超過할 수 없다.

第 25 條 (評議員의 資格) ①評議員은 組合員으로서 滿 25歲以上된者 中에서 組合員이 互選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評議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禁錮以上の 刑을 받고 執行中에 있는 者 또는 執行하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3. 公民權이 停止 또는 剝奪된 者
4. 組合費를 滯納하고 있는 者

第 26 條 (選舉管理) ①評議員의 選舉는 評議員選舉委員會에서 管掌한다.

②前項의 評議員選舉委員會에 關하여는 定款으로 定한다.

第 27 條 (評議員의 兼職禁止) 評議員은 組合의 任員 또는 職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 28 條 (評議會의 召集) ①組合長은 每事業年度에 1回 定期評議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組合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隨時臨時評議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評議員이 그 在籍評議員 3分の 1以上の 同意를 얻어 會議의 目的, 召集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組合長에게 提出하여 評議會의 召集을 請求하였을 때에는 組合長은 그 請求가 있는 날로부터 10日以內에 評議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組合長의 職務를 行하는 者가 없거나 前項의 請求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組合長이 正當한 事由없이 評議會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監事가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⑤前項의 境遇에는 監事가 議長의 職務를 行한다.

第 29 條 (會議召集의 通知) 評議會를 召集할 때에는 늦어도 開會日 5日前에 會議의 時日, 場所 및 附議事項을 評議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但 緊急을 要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 30 條 (評議會의 議決事項) 다음事項은 評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業務規約의 制定, 變更 또는 廢止
3. 起債 또는 借入金의 借入의 方法, 利率 및 償還의 方法

4. 歲入 歲出豫算과 事業計劃의 設定 또는 變更
5. 豫算外에 組合의 負擔이될 契約의 締結
6. 賦課金과 夫役, 現品の 賦課, 徵收方法
7. 歲入歲出決算書와 事業報告書 및 財産目錄의 承認
8. 不動產의 取得, 管理 또는 處分
9. 積立金의 設定, 管理 또는 處分
10. 其他法令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第 31 條 (議決權) 評議員은 各各 1 個의 議決權을 가진다.

第 32 條 (議事) ①評議會의 議事は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評議員 過半의 數贊成으로써 議決한다.

②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③다음事項은 在籍評議員 3 分の 2 以上の 出席과 出席評議員 3 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1. 定款의 變更
2. 組合의 合併, 分割, 區域變更 또는 解散
3. 事業의 停止 또는 廢止
4. 事業計劃의 設定 또는 變更

第 33 條 (會議錄의 作成) ①議長은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議의 顛末 및 出席한 評議員의 姓名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會議錄에는 議長 및 出席評議員 2 人以上이 署名하여야 한다.

第 34 條 (總代會) ①組合에 組合長, 監事를 選舉하기 爲하여 總代會를 둔다. 但 組合員數가 100 人未滿일 때에는 組合員總會로써 이에 代身한다.

②總代會는 組合長과 總代로써 構成한다.

③總代는 組合員으로서 滿 25 歲以上인 者 中에서 組合員이 互選한다.

④總代의 定數는 定款으로 定한다. 但 組合員의 數가 1,000 人未滿일 때에는 30 人, 1,000 人以上 5,000 人未滿일 때에는 50 人, 5,000 人以上 10,000 人未滿일 때에는 80 人, 10,000 人以上일 때에는 100 人으로 한다.

⑤總代의 任期는 4 年으로 한다. 但 補選된 總代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⑥總代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한다.

第 35 條 (民法의 準用) 組合 또는 組合長에는 民法 第 35 條, 第 36 條, 第 60 條, 第 62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36 條 (經費賦課) ①組合은 定款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事業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하기 爲하여 그 區域內의 土地 또는 家屋 其他 工作物에 對하여 그 組合員으로부터 金錢 또는

夫役現品을 賦課할 수 있다. 但 經費賦課에 있어서는 當該事業으로 因하여 받는 利益을 考慮하여야 한다.

②夫役 또는 現品은 金錢으로 換算하여야 하며 金錢으로 代納할 수 있다.

③組合은 組合區域內의 一部에 限하여 特히 利益이 있는 事業에 關하여는 그 一部에 特別한 經費를 賦課할 수 있다.

④組合은 脫退한 組合員에 對하여 定款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그가 組合員인 때에 생긴 組合債務의 履行을 爲하여 그 組合員이 負擔하여야 할 金額을 一時 또는 分割하여 賦課할 수 있다.

第 37 條 (水害豫防을 爲한 夫役, 現品の 賦課) 組合은 水害를 豫防하기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區域內에 居住하는 者에 對하여 夫役, 現品을 賦課할 수 있다.

第 38 條 (加入金の 徵收) 組合은 組合員에게 새로이 編入되는 區域內의 土地 또는 家屋 其他의 工作物에 對한 加入金を 徵收할 수 있다.

第 39 條 (營造物의 使用) ①組合은 그의 營造物을 事業에 妨害가 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다른 目的에 使用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使用에 關하여는 業務規約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 40 條 (過怠金の 賦課) 組合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組合員에게 過怠金を 賦課할 수 있다.

第 41 條 (賦課金の 徵收委任) ①組合은 組合費 其他 組合收入의 徵收를 區·市·郡에 委囑할 수 있다. 但 이 境遇에는 組合은 區·市·郡에서 徵收한 金額의 100 分の 4 를 그 區·市·郡에 交付하여야 한다. 不可避한 災害로 因하여 區·市·郡에서 徵收한 組合費 其他組合의 收入金を 亡失하였을 때에는 組合은 關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納入의 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

第 42 條 (異議申請) ①組合費, 夫役現品, 加入金 또는 使用料의 賦課를 받은 者로서 그 賦課에 關하여 違法 또는 錯誤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異議申請은 納入告知書를 받은 날로부터 20日內에 組合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組合長은 20日以內에 그 適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組合長の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決定書를 받은 날로부터 14日以內에 서울 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④서울 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20日 以內에 裁決을 하여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43 條 (賦課金の 徵收方法) 組合費 其他組合의 徵收金の 督促, 滯納處分, 追徵과 還付에 關하여는 關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方稅徵收의 例에 依한다.

第 44 條 (積立金) 組合은 特定한 目的을 爲하여 金品을 積立할 수 있다.

第 45 條(補助) 組合은 그의 事業을 施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人에게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

第 46 條(起債와 借入金) ①組合은 負債元利의 償還이나 組合의 恒久的 利益이 되는 事業을 하는 境遇 또는 天災地變等으로 因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組合債를 起債할 수 있다.

②組合은 豫算內의 支出을 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 一時借入金を 借入할 수 있다. 但 그 借入금은 當該會計年度內의 收入으로 償還하여야 한다.

第 47 條(豫算編成) ①組合은 會計年度마다 歲入, 歲出豫算을 編成하여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認可로 받아야 한다.

②組合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 48 條(繼續費) 數年에 걸쳐 支出하여야할 費用은 各年度의 支出額을 定하여 繼續費로 할 수 있다.

第 49 條(豫備費) ①組合은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豫備費를 設定한다.

②豫備費의 支出에 對하여는 次期評議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50 條(時效) 組合의 收入金과 支出金에 關한 時效는 政府의 收入金과 支出金의 例에 依한다.

第 51 條(定款變更等の 制限) ①組合은 組合債나 借入金이 있는 境遇에 그 債權者의 同意 없이 區域을 縮小하거나 經費의 分擔에 關한 定款을 變更하거나 그 事業을 廢止하거나 解散 또는 合併하지 못한다.

②組合이 債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前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그 債權者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但 그 行爲의 認可에 關한 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20 日을 經過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③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60 日以內에 適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 52 條(委任規定) 本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 組合의 財務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關令으로 定한다.

第 53 條(資格得喪의 通知義務) ①組合區域內의 土地의 全部 또는 一部에나 家屋 其他의 工作物에 關하여 組合員의 資格을 取得하였거나 喪失한 者는 그 事實을 組合에 通知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通知를 하지 아니하면 當該資格의 得喪을 第3 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 54 條(組合員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 組合의 組合員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는 組合員名簿에 記載한 住所에 依한다.

第 55 條(工事의着手와 竣工의 申告) ①組合은 土地改良事業에 着手하기 前에 管轄稅務官署 및 登記所에 農林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組合은 一地番의 一部가 土地改良事業의 施行區域으로 編入되었을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와 同時에 分割의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

③組合은 土地改良事業의 工事に 着手하거나 그 工事を 竣工할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와 管轄稅務官署 및 登記所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 56 條(事業計劃의 變更等) ①組合은 土地改良事業計劃을 變更, 廢止 또는 새로이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境遇에는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評議會의 議決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의 廢止를 認可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土地改良事業의 廢止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없이 組合員以外の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 57 條(國有地의 讓與 또는 編入) ①國家는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기 爲하여 道路, 灌溉用水路, 排水路, 堤防, 溝渠, 貯水池等의 全部 또는 一部를 廢止한 境遇에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國有地를 組合 또는 組合區域內에 있는 土地所有者에게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②土地改良事業의 施行에 依하여 開設한 道路, 灌溉用水路, 排水路, 堤防, 溝渠, 貯水池等으로서 前項의 廢止한 것에 代身할 수 있는 것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無償으로 國有地에 編入할 수 있다.

第 58 條(一時利用地의 指定) ①組合은 土地改良事業의 工事が 完了하기 前에 必要한 境遇에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從前의 土地에 代身할 一時利用地 및 그 使用開始의 날을 指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一時利用地는 從前의 土地의 地目, 地積, 土性, 水利, 傾斜 및 溫度等を 標準으로 하여 定하여야 한다.

③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指定을 한 때에는 一時利用地와 從前의 土地에 對하여 所有權, 地上權, 賃借權 또는 使用賃借에 依한 權利를 가진 者에게 그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

④從前의 土地에 對하여 權原에 依據하여 使用 또는 收益할 수 있는 者는 第1項의 使用開始의 날로부터 第59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가 있을 때까지 一時利用地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性質에 依하여 定하여진 用法에 따라 從前의 土地에 對한 것과 同一한 條件으로 使用하거나 收益할 수 있다.

⑤前項의 境遇에 從前의 土地에 對하여 權利를 가진 者는 그 土地에 對하여 그가 가졌

던 權利의 內容인 使用 또는 收益을 하지 못한다.

⑥一時利用地에 對하여 權利를 가진 者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通知를 받은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使用開始의 날로부터 第59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가 있을 때까지 그 一時利用地의 使用 또는 收益을 하지 못한다.

⑦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指定으로 因하여 普通 生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⑧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指定으로 因하여 利益을 받는 者로부터 그 利益에 相當하는 金額을 徵收할 수 있다.

第59條(換地計劃의 認可와 告示) ①組合은 土地改良事業의 工事が 完了하였을 境遇에 事業의 性質上 必要한 때에는 遲滯없이 換地計劃을 定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前項의 換地計劃은 耕作者의 農業經營의 合理化에 이바지 되도록 定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換地計劃을 定함에는 그 計劃에 關한 土地의 所有者와 家屋, 其他 工作物의 所有者 3分の 2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認可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告示하고 이를 管轄稅務官署 및 登記所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60條(換地處分) ①換地計劃에는 從前의 土地와 交換될 土地를 定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交換될 土地는 從前의 土地에 地目, 地積, 等位, 土性, 水利, 傾斜 및 溫度等を 標準으로 하여 定하여야 한다.

③耕作者의 農業經營을 合理化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交換될 土地를 定할 수 있다.

④前2項의 境遇에 地目, 地積, 等位, 土性, 水利, 傾斜 및 溫度等を 綜合的으로 勘案하여 相計할 수 없는 部分이 있는 境遇에는 金額에 依한 清算을 하되 當該換地計劃에서 그 金額支拂 및 徵收方法과 時期를 定하여야 한다.

⑤從前의 土地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所有權以外的 權利나 處分の 制限이 있는 境遇에 이와 交換될 土地는 그 權利나 處分の 制限의 目的이 되는 土地 또는 그 部分을 指定하여야 한다.

⑥換地는 一地番의 區域이 2以上の 道·市·郡·邑·面に 걸치게 定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1條(換地處分の 效果와 清算金) ①第59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換地計劃의 定하는 交換될 土地는 第68條第1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告示한 날로부터 이를 從前의 土地로 본다.

②前項의 規定은 行政上 또는 裁判上의 處분에 依하여 從前의 土地에 專屬하는 權利에 對하여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第59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가 있을 때에는 組合은 告示된 換地計劃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清算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境遇에 組合은 當該換地計劃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清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第 62 條(換地處분에 依한 登記等) ①第 59 條第 1 項의 認可가 있을때에 組合은 遲滯없이 當該換地計劃에 定하여진 土地와 建物에 對하여 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換地處분이 없는 境遇 既登記의 土地表示에 變更이 생겼을 때에도 前項에 準한다.

第 63 條(施設의 管理) 組合은 土地改良事業의 工事が 完了된 境遇에 그 事業에 依하여 開設된 灌溉, 排水의 施設, 農業用道路 其他農地의 保全 또는 利用上 必要한 施設을 管理하여야 한다.

第 64 條(緊急施行의 境遇) 災害로 因하여 緊急히 第 2 條第 2 項第 5 號의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할 境遇에는 組合은 評議會의 議決을 거쳐 應急工事計劃을 定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65 條(地料等の 減額 또는 返還請求)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因하여 地上權, 地役權 또는 賃借業의 目的이 되는 土地의 利用이 侵害當하였을 境遇에는 그 土地에 對한 地上權者, 地役權者 또는 賃借人은 地料, 地役의 對價 또는 借賃의 減額이나 先拂한 地料地役의 對價 또는 借賃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 66 條(權利의 拋棄 또는 契約解止) ①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因하여 地上權, 地役權의 設定이나 賃借 또는 使用借한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게 된 境遇에는 地上權者, 地役權者, 賃借人 또는 借主는 그 權利를 拋棄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權利를 拋棄하거나 契約을 解止하는 境遇에는 前項의 權利者는 當該組合에 對하여 權利의 拋棄 또는 契約의 解止로 因하여 생긴 損失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損失을 補償할 때에는 組合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組合員에 對하여 求償할 수 있다.

第 67 條(地料等の 增額請求) ①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因하여 地上權, 地役權 또는 賃借權의 目的이 되는 土地의 利用이 增加된 境遇에는 組合員인 所有者나 賃貸人은 地料, 地役의 對價 또는 借賃貸料의 相當한 增額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地上權者, 地役權者나 賃借人은 그 權利를 拋棄하거나 契約을 解止하고 그 義務를 免할 수 있다.

第 68 條(地役權의 效力) ①換地計劃에 定하여진 土地위에 存在하는 地役權은 第 59 條第 4 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가 있는 後에도 從前의 土地위에 存在한다.

②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因하여 地役權者가 그 權利를 行使하는 利益을 받을 必要가 없게된 때에는 그 地役權은 消滅된다.

③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因하여 從前과 같은 利益을 받지 못하게된 地役權者는 그 利

益을 保存하는 範圍內에서 地役權의 設定을 請求할 수 있다. 但 第 65 條의 規定에 依한 請求로서 地役權의 對價의 減額이 있었을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 69 條 (地料等の 請求의 期限) 第 59 條第 4 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30 日을 經過한 때에는 第 67 條第 2 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前 4 條의 規定에 依한 賃貸借의 解除, 地上權의 拋棄, 地役權의 拋棄나 設定, 賃貸料, 地料, 地役의 對價의 減額이나 還拂 또는 增額의 請求를 하지 못한다.

第 70 條 (區域變更) ① 組合은 區域의 變更에 關하여 定款變更의 認可를 申請하고자 할 境遇에 區域에 編入하여야 할 土地가 있을 때에는 定款과 土地改良事業計劃을 公告하여 編入하여야 할 土地에 關한 第 3 條의 資格者 3 分の 2 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 境遇에는 第 9 條第 3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組合區域內에 있는 土地가 그 組合의 事業에 依하여 利益을 받지 못함이 明白하게 된 境遇에 그 土地에 關한 組合員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組合은 關涉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土地를 組合區域에서 除外하여야 한다.

③ 組合區域에 編入하여야 할 土地가 組合의 事業에 依하여 現在 組合區域內의 土地와 同一한 利益을 받고 있는 境遇에는 第 1 項의 同意가 없더라도 農林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그 區域에 編入할 수 있다.

第 71 條 (合併, 分割, 解散의 認可) 組合을 合併, 分割 또는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組合員 3 分の 2 以上の 同意를 얻고 評議會의 議決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72 條 (解散의 告示) 農林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組合의 解散을 認可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 73 條 (清算) ① 組合이 解散하였을 때에는 清算을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組合長이 清算人이 된다. 但 評議會에서 清算人을 選任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③ 清算人은 就任後 遲滯없이 組合財産의 現況을 調査하여 財産目錄을 作成하고 財産處分方法을 定하여 이를 評議會에 報告하고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④ 清算人은 組合의 債務를 辨濟한 後가 아니면 그 殘餘財産을 處分하지 못한다.

⑤ 清算事務가 終結하였을 때에는 清算人은 遲滯없이 報告書를 作成하여 이를 評議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74 條 (吸收合併) ① 合併하는 組合의 一方이 合併後 存續하는 境遇에는 그 組合은 關係各組合의 合併決議書를 添附하여 第 17 條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定款變更의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認可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合併後 存續하는 組合에 對하여는 定

款變更의 告示, 合併에 依하여 消滅하는 組合에 對하여는 解散의 告示를 하여야 한다.

第 75 條 (新設合併) ① 合併에 依하여 組合을 設立하고자 할 境遇에는 關係各組合의 評議會에서 選出된 者가 第 9 條第 1 項의 發起人이 되어 組合設立에 必要한 行爲를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第 9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할 때에는 關係各組合의 合併決議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③ 第 1 項의 境遇에 農林部長官은 第 12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合併에 依하여 消滅하는 組合에 對하여는 解散의 告示를 하고 合併에 依하여 設立되는 組合에 對하여는 設立의 告示를 하여야 한다.

第 76 條 (分割) ① 組合을 分割하고자 할 境遇에는 그 組合의 評議會에서 選出된 者가 第 9 條第 1 項의 發起人이 되어 組合의 設立에 必要한 行爲를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第 9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할 때에는 各發起人會의 分割決議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③ 第 1 項의 境遇에 農林部長官은 第 12 條第 1 項의 認可를 한 때에는 分割의 告示를 하여야 한다.

第 77 條 (合併 또는 分割에 依한 權利義務의 承繼) ① 合併後 存續하는 組合 또는 合併에 依하여 設立하는 組合은 合併에 依하여 消滅된 組合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 分割에 依하여 設立한 組合은 分割로 因하여 消滅된 組合의 權利義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承繼한다.

第 78 條 (民法準用) 土地改良組合의 解散 및 清算에는 民法 第 81 條, 第 88 條, 第 89 條, 第 90 條, 第 91 條, 第 92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3 條 土地改良組合聯合會

第 79 條 (目的) 土地改良組合聯合會(以下 聯合會라 한다)는 組合의 業務를 指導 監督하고 其 共同利益의 增進을 圖謀하며 農地의 開發에 關한 事業과 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을 代行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80 條 (區域과 會員) ① 聯合會의 業務區域은 全國으로 한다.

② 聯合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各道에 支部를 둘 수 있다.

③ 聯合會는 組合을 會員으로 한다.

第 81 條 (定款) ① 聯合會의 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區域
4. 事務所의 所在地

5. 任員과 職員에 關한 事項
6. 評議會와 評議員의 定數 및 運營에 關한 事項
7. 資產에 關한 事項
8. 會費와 特別會費의 分賦에 關한 事項
9.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10. 前各號外에 特히 必要한 事項

② 聯合會는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82 條 (登記) ① 聯合會는 本法을 施行한 날로부터 3 週日以內에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前條 第 1 項第 1 號 乃至 第 4 號에 揭記한 事項
2. 設立年月日
3. 會長, 副會長, 理事와 監事의 住所, 姓名

② 前項에 揭記한 事項中 變更이 있을 때에는 2 週日以內에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登記가 아니면 第 3 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 83 條 (事業) ① 聯合會는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組合의 業務指導監督
2. 事業計劃의 設定, 調査測量設計 및 工事監督과 換地事務의 代行
3. 組合의 業務에 必要한 資金의 轉貸
4. 組合의 業務에 必要한 資材等의 生産加工 및 購入斡旋
5.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組合에 對한 經理의 監査
6. 第 2 條第 2 項第 4 號의 事業과 그 附帶事業
7. 土地改良事業과 農事改良의 調査, 研究, 普及 및 宣傳에 關한 事業
8. 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의 代行
9.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組合에 對한 更生에 關한 事業
10. 其他 聯合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業
11. 前各號以外에 法令에 依하여 委任된 事業이나 農林部長官이 委囑한 事業

② 聯合會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業務에 支障이 없는 限度內에서 組合以外의 土地改良事業에 關하여 前項 第 2 號乃至 第 4 號의 事業을 行할 수 있다.

第 84 條 (任員 및 理事會) ① 聯合會에서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 人
2. 副會長 1 人
3. 理事若干人

4. 監事 2 人

- ②會長 및 副會長은 評議會에서 選出하여 農林部長官의 提請으로 內閣首班이 任命한다.
- ③理事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評議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 ④理事會는 會長, 副會長과 理事로써 構成하며 會長이 召集하고 法令, 定款과 評議會의 議決에 依하여 業務執行에 關한 事項을 議決한다.
- ⑤監事는 評議會에서 會員組合長中에서 選任하고 名譽職으로 하되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 ⑥聯合會에 評議會의 同意를 얻어 顧問을 둘 수 있다.

第 85 條 (任員의 任期와 職務) ①會長, 副會長과 理事의 任期는 4 年, 監事의 任期는 3 年으로 한다.

- ②會長은 聯合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하며 評議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 ③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事故가 있을때 또는 關位된 때에는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④理事는 會長, 副會長을 補佐하여 業務를 執行하며 會長, 副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의 定하는 順序에 따라 會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 ⑤監事는 聯合會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여 評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86 條 (評議會) ①聯合會에 評議會를 둔다.

- ②評議會는 會長, 評議員으로써 構成하며 會長이 召集하고 法令과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聯合會의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第 87 條 (評議員의 選任과 議事) ①評議員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會員인 組合이 選任한다.

- ②評議會는 在籍評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評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 ③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 88 條 (代理權의 制限) 評議會에서 評議員은 다른 評議員을 代理人으로 定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第 89 條 (會費 및 財務) ①聯合會는 關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會員에게 그 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經費를 充當하기 爲하여 會費를 賦課할 수 있다.

- ②聯合會의 財務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關令으로 定한다.

第 90 條 (土地改良債券) 聯合會는 그 事業을 爲하여 必要할 때에는 關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土地改良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第 91 條 (準用規定) 聯合會의 事業施行에 關하여는 組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3 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土地改良事業

第 92 條 (施行의 申請) ① 第 3 條의 資格者는 關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地域을 定하여 國家에서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할 것을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할 때에는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地域內에 있는 土地에 關하여 第 3 條의 資格者 3 分の 2 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 93 條 (審査와 告示) ① 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이 있을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그 申請事項을 審査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家가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기 爲하여 土地改良事業計劃을 定하여야 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改良事業計劃을 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告示하고 20 日以上の 期間을 定하여 當該土地改良事業計劃書의 寫本을 利害關係人에게 閱覽시켜야 한다.

③ 前項의 利害關係人은 當該土地改良事業計劃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前項의 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20 日以內에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④ 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이 있을 때에는 第 2 項의 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60 日以內에 適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⑤ 國家는 第 3 項의 異議申請이 없을 때 또는 異議申請이 있는 境遇에 前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이 있는 後가 아니면 當該 土地改良事業計劃에 依한 工事に 着手하지 못한다.

第 94 條 (申請에 依하지 아니한 施行) ① 農林部長官은 第 1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는 關令으로 定하는 土地에 對한 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計劃을 定하여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改良事業計劃을 定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土地改良事業計劃의 概要 其他 必要한 事項을 告示하고 그 事業施行에 關한 地域內에 있는 土地에 對한 第 3 條의 資格者 3 分の 2 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前項의 境遇에는 前條 第 2 項乃至 第 5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95 條 (計劃의 變更) 農林部長官은 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에 對하여 重要한 部分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土地改良事業計劃變更의 概要 其他 必要한 事項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 96 條 (緊急施行) 災害로 因하여 緊急히 第 2 條第 2 項第 5 號의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國家는 第 92 條乃至 前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應急工事計劃을 定하여 그 事業의 工事に 着手할 수 있다.

第 97 條 (工事의 委任) 農林部長官은 關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에 對한 工事의 一部를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 90 條(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의 負擔金) ① 國家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의 施行地域의 全部 또는 一部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 또는 道에 對하여 그 事業에 所屬되는 費用의 一部를 負擔시킬 수 있다.

② 前項의 서울特別市 또는 道는 閣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條例로써 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에 依하여 利益을 받는 第3條의 資格者 또는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者로부터 그가 받는 利益의 限度內에서 前項의 規定에 依한 負擔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徵收할 수 있다.

③ 前項의 規定은 서울特別市 또는 道가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④ 前2項의 負擔金은 地方稅의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다.

第 99 條(權利關係의 調整) ① 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으로 因하여 地上權, 地役權 또는 賃借權의 目的인 土地의 利用度を 增加시킨 境遇에 그 土地에 關하여 前條 第2項에 規定한 負擔金을 負擔하는 者는 地料, 地役의 對價 또는 借賃의 增額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請求를 받은 者는 그 權利를 拋棄하거나 契約을 解止하고 그 義務를 免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規定은 서울特別市 또는 道가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 100 條(國有土地, 物件의 管理等) ① 다음에 揭記하는 公共用財産 또는 普通財産(以下 土地改良財産이라 한다)은 農林部長官이 管理하거나 處分한다.

1. 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으로 因하여 생긴 工作物 其他의 物件 또는 用水에 關한 權利

2. 第 94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가 施行하는 第 2 條第 2 項第 4 號의 事業에 依하여 생긴 土地

3. 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을 爲하여 取得한 土地, 權利 또는 立木工作物 其他의 物件

4. 國有의 土地, 權利 또는 立木, 工作物 其他의 物件으로서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에 提供된 것

② 農林部長官은 前項 各號의 土地改良財産을 서울特別市, 道 또는 土地改良組合等に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③ 前2項에 規定한 것外에 土地改良財産의 管理 또는 處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101 條(土地配分計劃) ① 農林部長官은 第 94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가 施行하는 第 2 條第 2 項第 4 號의 事業에 依하여 造成될 埋立地는 干拓地(以下 埋立豫定地라 한

다)에 대하여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事業이 完了되기 前에 地區別로 土地配分 計劃을 定하여 埋立豫定地의 所在, 豫定配分座數와 豫定配分面積을 告示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埋立豫定地에 對하여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所有權을 取得하고자 하는者는 그 告示의 날로부터 30日以內에 農林部令으로 定하는 節次에 따라 配分申請書를 農林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前項의 規定에 依한 配分申請書를 接受한 境遇 配分함이 適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申請人에게 다음에 揭記한 事項을 記載한 配分 通知書를 交付할 수 있다.

1. 配分을 받은者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
2. 配分하는 埋立豫算地의 所在地와 面積
3. 土地의 用途
4. 配分의 條件
5. 第5項의 規定에 依한 使用에는 使用期間과 條件
6. 其他 農林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④前項의 規定에 依한 配分通知書를 받은者는 當該配分通知書에 記載된 地域의 土地改良 事業의 完了期日에 當該埋立豫定地에 造成되는 埋立地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이 境遇에 當該埋立地에 對한 國家의 所有權은 消滅된다.

⑤農林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配分通知書의 交付를 받은者에 對하여 當該配分 通知書에 記載된 埋立豫定地를 農林部長官의 定하는 條件으로 使用시킬 수 있다.

⑥前項의 規定에 依한 埋立豫定地의 使用은 無償으로 한다.

第102條(地方自治團體의 施行) ①서울特別市, 道 또는 市·郡은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 고자 하는 境遇에 當該 서울特別市, 道 또는 市, 郡議會의 議決을 거쳐 土地改良事業計劃 의 概要 其他 必要한 事項을 公告하고 土地改良事業施行 地域內에 있는 第3條의 資格者 3分의 2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하며 當該土地改良事業의 施行에 關係된 地域의 全部 또 는 一部를 그 區域으로 하는 土地改良組合이 있을 때에는 그 土地改良組合의 同意를 얻 어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第104條乃至 第10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農林部長官은 前項에서 準用하는 第107條의 認可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告 示하여야 한다.

第103條(準用規定)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에는 第36條, 第55條 乃至 第62條, 第65條乃至 第69條와 第1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章 1人 또는 數人共同的 土地改良事業

第104條(認可申請) 第3條의 資格者로서 1人이나 數人이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고자할 때에는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土地改良事業計劃과 規約(數人共同的 境遇에 限한다) 其他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農林部長官에게 土地改良事業施行의 認可를 申請할수 있다.

第105條(審査와 告示) ①農林部長官은 前條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土地改良事業計劃과 規約를 審査하고 그 適否를 決定하여 그 事實을 當該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當該申請을 適當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告示하고 20日以上の 期間을 定하여 그 決定된 土地改良事業計劃과規約의 寫本을 閱覽시켜야 한다. -

第106條(異議申請) ①利害關係人은 前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農林部長官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30日以內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前項에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이 있을 때에는 前條 第2項의 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60日以內에 그 適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이 正當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第104條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却下하여야 한다.

第107條(施行의 認可) 農林部長官은 前條 第1項의 異議申請이 없을때 또는 異議申請에 對하여 同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却下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을 認可하여야 한다.

第108條(事業計劃 또는 規約의 變更) ①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를 받은 土地改良事業 施行者는 그 事業計劃 또는 規約를 變更하거나 土地改良事業을 停止, 廢止하고자 할때에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債務의 分擔에 關한 規約의 變更, 土地改良事業의 廢止 또는 土地改良事業 施行地域의 縮小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境遇 土地改良事業을 爲한 借入金이 있을 때에는 債權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但 同意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를 陳述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109條(認可의 告示) 農林部長官은 土地改良事業이 施行, 停止, 廢止 또는 土地改良事業 施行地域의 變更에 關하여 認可를 한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110條(告示의 效果) 土地改良事業의 施行, 停止, 廢止 또는 土地改良事業施行 地域의 變更은 前條의 告示後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11條(共同施行者이 連帶責任) 數人이 共同으로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 共

同施行者が 그 事業을 爲하여 얻은 借入金과 그 利息 其他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因하여 생긴 債務에 對하여는 共同施行자가 連帶責任을 진다. 但 規約에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112條(準用規定) 第104條의 規定에 依하여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에 關하여 第55條乃至 第6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에 第55條乃至 第69條의 規定中 組合이라함은 土地改良事業施行者로, 定款이라함은 規約으로 본다.

第5章 交換分合

第113條(市·郡의 交換分合) ①農地의 所有者 2人以上이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農地의 所有者 및 家屋 其他工作物의 所有者 3分の 2以上の 同意를 얻어 第2第2項第6號의 事業(以下 交換分合이라 한다)을 施行할 것을 申請하였을 境遇에 그 農地가 1市·郡의 區域에 屬할 때에는 當該市·郡이, 그 農地가 2以上の 市·郡의 區域에 亙할 때에는 當該關係 市·郡이 協議하여 交換分合計劃을 定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이 없을 境遇에도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交換分合하여야 할 農地가 1市·郡의 區域에 屬할 때에는 當該 市·郡이 그 農地가 2以上の 市·郡에 亙할 때에는 當該 關係 市·郡이 協議하여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交換分合을 行하여야 할 農地와 交換分合計劃의 概要를 公告하고 그 農地에 對하여 前項의 權利者 3分の 2以上の 同意를 얻어 그 農地에 關하여 交換分合計劃을 定할 수 있다.

③第2項의 境遇에 當該 農地의 全部 또는 一部가 土地改良組合의 區域內에 있을 때에는 그 土地改良組合의 意見を 들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個月以內에 市·郡이 交換分合計劃을 定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申請人은 農林部長官에게 交換分合計劃을 定하도록 指示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⑤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를 받은 境遇에는 그 請求가 있는 農地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交換分合計劃을 定하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30日以內에 前項의 規定에 依한 指示를 하여야 한다.

第114條(異議申請) ①市·郡은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交換分合計劃을 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公告하고 30日以上 交換分合計劃書를 利害 關係人에게 閱覽시켜야 한다.

②前項의 交換分合計劃에 依하여 交換分合하여야 할 農地의 所有者 또는 家屋 其他의 工作物의 所有者는 當該交換分合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前項의 閱覽期間內에 市·郡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③市·郡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閱覽期間이

滿了된 後 60 日以內에 그 適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④ 第 2 項의 異議申請이 없거나 異議申請이 理由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市·郡은 遲滯 없이 當該交換分合計劃에 關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⑤ 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認可를 한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 115 條(土地改良組合의 交換分合) ①組合은 交換分合을 行하고자 할 境遇에는 交換分合計劃을 定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交換分合計劃을 定하는 境遇에는 第 59 條第 3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農林部長官은 第 1 項의 認可申請이 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遲滯없이 그 申請事實을 告示하고 30 日以上 交換分合計劃을 利害關係人에게 閱覽시켜야 한다.

④ 前條 第 2 項의 權利者가 前項의 交換分合計劃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前項의 閱覽期間內의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⑤ 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 3 項의 閱覽期間이 滿了된 後 60 日以內에 그 適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⑥ 農林部長官은 第 4 項의 異議申請이 없을 때 또는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이 있는 後가 아니면 第 1 項의 認可를 하지 못한다.

⑦ 農林部長官은 第 1 項의 認可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 116 條(交換分合의 決定方法) ①處分の 制限이 있는 農地로서 農林部令으로 定하는 것과 地上權 또는 賃借權이 設定된 農地로서 當該權利가 押留 또는 假處分の 目的으로 되어 있는 것에 對하여는 交換分合計劃을 定하지 못한다.

② 農地의 所有權에 對한 交換分合計劃에는 交換分合에 依하여 所有權者가 取得할 農地와 喪失할 農地 및 所有權의 移轉時期를 定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境遇에 所有者가 喪失할 農地에 對하여 抵當權이 있는 때에는 이에 代身할 抵當權을 設定하여야 할 農地 및 設定時期와 存續期間 其他의 條件을 定하여야 한다.

④ 第 2 項의 境遇에 所有者가 喪失할 農地에 對하여 地上權, 賃借權 또는 使用借權을 가졌을 때에는 이에 代身하는 地上權, 賃借權 또는 使用借權을 設定하여야 할 農地의 設定時期와 存續期間, 對價 其他의 條件을 定하여야 한다.

⑤ 第 2 項의 境遇에는 交換分合에 依하여 地役權을 設定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地役權을 設定하여야 할 土地, 地役權者 및 그 設定時期와 地役權의 目的 其他의 條件을 定하여야 한다.

⑥ 本法에 規定한外에 交換分合計劃의 決定方法 其他 必要한 事項은 關令으로 定한다.

第 117 條(交換分合의 效果) ① 第 114 條第 5 項, 또는 第 115 條第 7 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가 있는 때에는 그 告示된 交換分合計劃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所有權이 移轉되거나

抵當權, 地上權, 賃借權 또는 使用借權이 設定되거나 地役權이 設定 또는 消滅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抵當權, 地上權, 賃借權 또는 使用借權이 設定된 때에는 이에 對應하는 從前의 權利는 消滅된다.

第 118 條 (所有權以外的 權利에 關한 交換分合) 農地의 地上權, 賃借權 또는 使用借權에 關한 交換分合의 對하여는 第 116 條 및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119 條 (清算金) 第 114 條第 5 項 또는 第 115 條第 7 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가 있을 때에는 市·郡 또는 土地改良組合은 그 告示된 交換分合計劃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清算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第 120 條 (農地의 形質變更等의 禁止) 第 114 條第 5 項 또는 第 115 條第 7 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가 있을 後에는 그 告示된 交換分合計劃에서 定한 農地에 對하여 所有權 其他의 權利를 가진者는 交換分合에 支障이 미칠 念慮가 없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의 許可없이 그 農地의 形質을 變更하지 못한다.

第 121 條 (農地以外的 土地等의 權利에 關한 交換分合) 第 113 條乃至 前條의 規定은 農地의 利用上 必要한 土地에 關한 權利, 農業用施設에 關한 權利와 用水에 關한 權利의 交換分合에 準用한다.

第 6 章 雜 則

第 122 條 (測量設計 및 工事監督의 委託) ① 組合 또는 土地所有者는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必要할 때에는 測量, 設計 및 工事監督을 國家나 서울特別市, 道 또는 聯合會에 委託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範圍를 定하여 國家나 서울特別市, 道 또는 聯合會에 測量設計費 및 工事監督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123 條 (免稅) ① 組合과 聯合會의 業務 및 財産에 對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稅金과 公課金을 免除한다.

② 土地改良事業을 爲하여 必要로 하는 登記 또는 等錄에 對하여는 登錄稅를 免除한다.

③ 土地改良事業施行者가 土地改良事業을 爲하여 作成하는 證書에 對하여는 印紙稅를 免除한다.

④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因하여 非課稅地가 課稅地로 되었을 境遇에는 閣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限하여 土地稅를 免除한다.

⑤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因하여 土地의 價格이 增加된 境遇에 그 增加된 部分에 對하여 閣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限하여 土地稅를 免除한다.

第 124 條 (告示 또는 公告)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한 境遇 其他書類의 送付를 할 수 없는 境遇에 行政廳 또는 組合이나 聯合會가 送付에 代身하여 告示 또는 公告한 때에는 그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날에 書類를 發送한것으로하고 그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을 經過한 때에 相對方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

第 125 條 (處分行爲等の 承繼人에 對한 效力) ① 本法 또는 本法에 依據한 命令의 規定에 依한 處分, 節次 其他의 行爲는 土地改良事業에 關한 土地, 物件 또는 權利에 對하여 所有權 其他의 權利를 가진者의 承繼人에 對하여 效力을 가진다.

第 126 條 (權利義務의 承繼) 土地改良事業施行地의 所有者에 屬한 土地改良事業에 關한 權利義務는 土地所有權과 더불어 그 承繼人에게 移轉한다.

第 127 條 (土地分割의 代行) 土地改良事業의 施行者는 그 事業을 施行하기 爲하여 土地를 分割하여야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土地의 所有者를 代身하여 이에 關한 節次를 行할 수 있다.

第 128 條 (登記의 特例) 土地改良事業의 施行地域內에 있는 不動產의 登記에 關하여는 따로 閣令으로 定할 수 있다.

第 129 條 (他登記의 停止) 第 59 條第 4 項 (第 103 條와 112 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告示가 있는 後에는 土地改良事業의 施行地域內에 있는 土地에 關하여는 그 土地改良事業에 依한 登記를 한後가 아니면 다른 登記를 하지 못한다. 단, 登記의 申

請人이 確定日附가 있는 書類에 依하여 同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를 하기前에는 登記原因이 發生한 事實을 證明하였을 境遇에는 例外한다.

第 130 條 (測量, 檢査 또는 書類等 閱覽) ① 다음에 揭記하는 者는 土地改良事業에 關하여 土地等を 調査하기 爲하여 必要할 境遇에는 미리 土地의 占有者에게 通知하고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서 測量하거나 檢査할 수 있다.

1. 國家,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2. 組合 및 聯合會의 任員 또는 職員

3. 第 9 條, 第 92 條와 第 104 條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하는 者

② 前項 第 3 號에 揭記한 者가 同項의 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當該土地가 屬하는 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通知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告를 하여야 한다.

④ 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測量 또는 檢査를 하는 者로서 同項 第 1 號와 第 2 號에 揭記한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同項 第 3 號에 揭記한 者는 第 2 項의 許可를 받은 證明書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⑤ 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行爲로 因하여 損失이 生겼을 때에는 普通생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⑥ 第 1 項 第 1 號 및 第 2 號에 揭記한 者는 當該 事業에 關한 土地를 管轄하는 登記所, 稅務官署 또는 市, 郡, 邑, 面의 事務所에서 無料로 必要한 書類簿冊 또는 圖面의 閱覽, 謄寫를 하거나 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 131 條 (障礙物의 移轉等) ① 國家, 서울特別市, 道·市·郡 또는 組合이나 聯合會는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施行地域內에 있는 物件으로서 그 事業에 障礙가 되는 것을 移轉하거나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그 物件의 所有者나 占有者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③ 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障礙物의 移轉變更 또는 除去로 因하여 損失을 받은者는 前項의 土地改良事業施行者에게 普通반을 損失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 132 條 (急迫한 境遇의 使用等) ① 國家, 地方自治團體, 組合 또는 聯合會는 그 管轄하는 灌溉排水施設, 農業用道路 其他 農地의 保全이나 利用에 必要한 施設 (土地改良事業의 工事中에 있는 것을 包含한다)의 風雪, 出水, 海溢 또는 土砂의 崩壞等に 依한 急迫한 災害를 防止하기 爲하여 他人의 土地를 一時使用하거나 그 土石, 竹木 其他 現物을 使用 또는 收用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使用 또는 收用으로 因하여 損失을 받은 者는 時價에 依한 그 損失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指示를 行하거나 事業의 目的인 施設을 檢査하거나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其他 必要한 處分을 行할 수 있다.

② 農林部長官은 補助金의 交付를 받은자가 補助金交付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者에 對한 補助金의 全部 또는 一部の 交付를 停止하거나 交付한 補助金의 全部 또는 一部の 返還을 命할 수 있다.

③ 返還하여야 할 補助金은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다.

④ 本法에 規定한 것 以外에 補助金 交付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139 條 (期間計算等) ① 本法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의 期間計算은 郵便局에서 그 書類의 輸送에 要하는 日數는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異議의 申請, 裁決 또는 裁定의 申請에 對한 決定은 文書로써 그 理由를 明示하여 當事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第 140 條 (權利變動의 通知) 第 59 條第 4 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前에 土地改良事業의 施行地域內에 있는 土地에 對하여 權利의 設定, 移轉, 變更, 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이 있을 때에는 그 當事者는 遲滯없이 그 土地改良事業 施行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7 章 監 督

第 141 條 (土地改良事業施行者에 對한 監督) ① 本法에 依한 土地改良事業施行者에 對한 監督은 農林部長官이 行한다.

② 前項의 監督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한 것 以外에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142 條 (組合聯合會職員의 服務規律) 組合 또는 聯合會의 任員 및 職員의 報酬, 服務規律 賠償責任, 身元保證 및 任用基準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143 條 (報告와 檢査) ① 農林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組合 또는 1 人이나 數人 共同으로서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法令, 法令에 依據하여 行하는 行政廳의 處分 또는 定款, 規約, 土地改良事業計劃, 換地計劃 및 交換分合計劃을 遵守시키기 爲하여 그 者로부터 그 事業에 關한 報告를 받거나 그 業務 또는 會計狀況을 檢査할 수 있다.

② 農林部長官은 聯合會에게 法令, 法令에 依據한 處分 또는 定款을 遵守시키기 爲하여 그 로부터 事業에 關한 報告를 받거나 事務會計의 狀況을 檢査할 수 있다.

第 144 條 (組合員의 檢査請求) ① 組合 또는 聯合會의 組合員이나 會員의 10 分の 1 以上의 同意를 얻어 그 事業 또는 會計가 法令, 法令에 依據하여 行하는 處分, 定款, 土地改良事業計劃, 換地計劃 및 交換分合計劃에 違反된다는 理由로 檢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農林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組合이나 聯合會의 事業 또는 會計狀況을 檢査하여야 한다.

第 145 條 (違反行爲에 對한 措置) ① 農林部長官은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前 2 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行할 境遇에 當該 組合 또는 1 人이나 數人 共同으로서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는 者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 法令에 依據하여 行하는 行政廳의 處分, 定款, 規約, 土地改良事業計劃, 換地計劃 및 交換分合計劃에 違反된다고 認定될 때에는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組合이 前項의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當該 組合에 對하여 期間을 指定하여 그 任員의 全部 또는 一部の 改選을 命할 수 있다.

③ 組合이 前項의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關係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④ 農林部長官은 前條第 2 項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行하는 境遇에 聯合會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 法令에 依據하여 行하는 處分 또는 定款에 違反된다고 認定될 때에는 聯合會에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 146 條 (決議選舉等の 取消請求) ① 組合의 組合員은 組合員의 10 分の 1 以上の 同意를 얻어 評議會, 總代會 및 總會의 召集節次, 議決方法 또는 任員, 評議員, 總代의 選舉方法이 法令, 法令에 依據하여 行하는 處分 또는 定款에 違反된다는 것을 理由로 그 議決, 選舉 또는 當選의 取消를 農林部長官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③ 前項의 境遇에 農林部長官은 그 違反된 事實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決議, 選舉 또는 當選을 取消할 수 있다.

第 147 條 (職權委任) 農林部長官은 本法의 規定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 8 章 罰 則

第 148 條 (罰則) 第 120 條 (第 121 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 年以下의 懲役 또는 50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 149 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6 月以下の 懲役 또는 30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第 130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公務員이 行하는 測量, 檢査를 拒否하거나 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2. 第 131 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公務員이 行하는 移轉變更 또는 除去를 拒否하거나 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3. 第 143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偽의 報告를 한 者
4. 第 143 條第 2 項, 第 144 條第 2 項 또는 第 145 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 또는 措置를 拒否하거나 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第 150 條 (同前)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에 關하여 設置한 標識를 移轉, 汚損, 毀損 또는 除去한 者는 30 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 133 條 (損失補償) ① 土地改良事業施行者は 그 事業의 利害關係人이 그 事業으로 因하여 普通받은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 第 12 條第 2 項, 第 56 條第 2 項 (第 103 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 93 條第 2 項 (第 94 條第 2 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 95 條, 第 102 條第 3 項 第 109 條, 第 114 條第 5 項, 第 115 條第 7 項의 告示가 있는 後에 許可없이 그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거나 工作物을 新築, 改築, 修繕하거나 物件을 附加增置를 한 境遇에는 이에 對한 損失은 補償하지 아니한다.

③ 共同 施行者 또는 組合의 組合員은 第 131 條乃至 前條에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事業으로 因하여 받은 損失의 補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但, 本法 또는 規約이나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 134 條 (補償金의 決定) ① 第 130 條第 5 項, 第 131 條第 3 項, 第 132 條第 2 項 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補償하여야 할 金額은 當事者間의 協議에 依하여 決定한다. 但,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가 決定한다.

② 前項 但書의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農林部長官에게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第 135 條 (補償金 또는 清算金의 供託) ① 土地改良事業施行者は 換地計劃이나 交換分合計劃에서 定하는 清算金 또는 第 131 條와 第 133 條의 規定에 依한 補償金을 支拂할 境遇에 當該 土地, 物件 또는 權利에 對하여 質權이나 抵當權이 있을 때에는 그 清算金 또는 補償金을 供託하여야 한다. 但, 質權 또는 抵當權을 가진者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 前項의 質權 또는 抵當權을 가진者는 供託된 清算金 또는 補償金에 對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第 136 條 (數道에 걸친 事項의 處理) 土地改良事業施行地域 또는 組合의 區域이 2 個以上の 서울特別市나 道에 亙하는 境遇에는 本法에서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權限에 屬하게 한 事項은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가 處理한다.

第 137 條 (補助金) ① 國家는 農地의 改良, 開發, 保全을 爲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 對하여 補助金を 交付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補助金의 交付를 받고자 하는者는 補助金의 交付申請書에 事業計劃書 其他 必要한 書類를 添附하여 農林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農林部長官은 前項의 提出書類를 審査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補助金의 交付를 決定한다.

第 138 條 (被補助者에 對한 監督) ① 農林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補助金交付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補助金의 交付를 받은者에 對하여 當該 事業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第 151 條 (同前) ① 組合 또는 聯合會의 任員, 總代, 評議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賂物을 授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3 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그로 因하여 不正行爲를 하거나 相當한 行爲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7 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② 前項에 揭記한 任員, 總代 또는 評議員이었던 者가 그 在職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行爲를 하거나 相當한 行爲를 하지 아니한 것에 關하여 賂物을 授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3 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③ 第 1 項에 揭記한 任員, 總代 또는 評議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請託을 받고 第 3 者에게 賂物을 提供하거나 約束한 때에는 3 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④ 犯人 또는 事情을 안 第 3 者가 授受한 賂物은 이를 沒收한다.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하지 못한 때에는 그 價格을 追徵한다.

第 152 條 (同前) ① 前條第 1 項乃至 第 3 項에 揭記한 者에 對하여 賂物을 提供, 請託 또는 約束을 한者는 3 年以下의 懲役 또는 2 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하거나 免除할 수 있다.

第 153 條 (同前)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的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從業者가 그 法人, 個人的 業務 또는 財産에 關하여 第 149 條 또는 第 150 條의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 各 本條의 罰金을 科한다.

第 154 條 (同前) 다음의 境遇에는 組合이나 聯合會의 組合長, 會長, 副會長, 理事, 監査 또는 清算人은 30 萬圓以下의 過料에 處한다.

1. 第 16 條 또는 第 83 條에 規定한 事業以外의 事業을 行한때
2. 第 73 條第 3 項乃至 第 5 項의 規定에 違反한때
3. 本法의 規定에 依한 公告나 登記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公告를 한 때

附 則

① (施行日) 本法은 西紀 1962 年 1 月 21 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法令) 檀紀 4260 年 12 月制令 第 16 號 朝鮮土地改良令, 檀紀 4250 年 7 月制令 第 2 號 朝鮮水利組合, 檀紀 4275 年 12 月制令 第 34 號 朝鮮農地開發營團令과 檀紀 4294 年 8 月 法律 第 701 號 水利組合合併에 關한 特別措置法은 이를 廢止한다.

③ (現存의 土地改良事業) ㉞ 本法의 施行當時 朝鮮土地改良令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 또는 認可를 받아 施行中인 土地改良事業은 本法에 依하여 認可를 받고 施行하는 것으로 본다.

㉟ 本法의 施行當時 朝鮮土地改良令 施行規則에 依한 小規模事業으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助成한 小規模地區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市 또는 郡에서 移讓을 받아 維持管理한다.

④ (申請中의 土地改良事業) 本法의 施行當時 朝鮮土地改良令 또는 朝鮮水利組合令의 規定

에 의하여 土地改良事業施行이나 水利組合設置의 認可申請中에 있는 것은 本法에 의한 土地改良에事業의 施行이나 土地改良組合設立의 認可申請으로 본다.

⑤ (處分節次等 行爲) 本法의 施行當時 朝鮮水利組合令 其他 從前의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處分 其他의 行爲로서 本法에 相當하는 것은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⑥ (現存水利組合等の 措置) ㉞本法의 施行當時 朝鮮水利組合令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水利組合으로서 現存하는 것은 本法에 依하여 設立된 土地改良組合으로 본다.

㉟前項의 規定에 依한 土地改良組合은 本法施行後 2週日以內에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㊱前項의 登記節次가 終了될때까지 從前의 規約은 本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效力을 가진다.

㊲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土地改良組組合에 對하여는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㊳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登記에 對하여는 登錄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⑦ (水利組合聯合會의 措置) ㉞從前의 大韓水利組合聯合會는 本法에 依하여 設立된 土地改良組合聯合會로 한다.

㉟前項의 規定에 依한 土地改良組合聯合會는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함으로써 成立한다.

㊱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登記에 對하여는 登錄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⑧ (農地開發營團의 措置) ㉞從前의 朝鮮農地開發營團은 本法에 依하여 設立되는 土地改良組合聯合會가 成立된 때에 解散하고 그 權利義務는 土地改良組合聯合會가 承繼한다.

㉟朝鮮農地開發營團의 清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⑨ (任員에 對한 經過措置) 土地改良組合과 土地改良組合聯合會의 任員의 選任 選出에 關하여는 그 選任, 選出하는 機關이 構成될 때까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土地改良組合의 任員은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가 土地改良組合聯合會의 任員은 農林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內閣首班이 任命한다.

⑩ (評議會에 關한 經過措置) ㉞土地改良組合의 評議會 또는 總會 및 總代會와 土地改良組合聯合會의 評議會는 第22條, 第34條, 第86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施行日부터 2年間 이를 構成하지 않는다.

㉟土地改良組合과 土地改良組合聯合會의 評議會가 構成될때까지 그 議決을 要하는 事項은 土地改良組合에 있어서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土地改良組合聯合會에 있어서는 農林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施行한다.

20) 農産種苗法 (法律 第976號, 1962. 1. 15)

第1條(目的) 本法는 農産物의 優良한 種苗生産과 普及을 促進하여 農業生産性 促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本法에서 種苗라 함은 農作物의 繁殖用에 提供되는 種子, 果實, 莖根, 母本, 苗, 苗木, 穗木, 台木을 말한다.

②本法에서 保證種苗라 함은 閣令으로 定하는 種類 및 品種의 種苗로서 本法의 規程에 依하여 圃場檢査와 室內檢査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③本法中 種苗業者라 함은 保證種苗의 生産 및 販賣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申告) ①種苗業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 및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를 한 種苗業者가 아니면 保證種苗를 販賣할 수 없다.

第4條(圃場指定) 保證種苗를 生産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圃場을 指定 받아야 한다.

第5條(保證申請) 種苗에 對하여 保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第6條(檢査) 前條의 申請이 有할 時는 農林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第7條(保證票交付) 前條의 檢査에 合格된 種苗에 對하여는 保證票를 交付한다.

第8條(種苗의 標識) ①種苗業者는 種苗의 包裝에 다음 號의 事項을 表示하여야 한다.

1. 「保證種苗」라는 文字
2. 種苗業者의 姓名과 營業所
3. 種類와 品種
4. 生産地
5. 生産年度
6. 發芽率
7. 農林部長官이 定하는 病害蟲 有無

②種苗業者가 保證種苗를 販賣함에 있어서 包裝單位로 販賣하기 困難할 때에는 包裝을 解體하여 少量의 分包裝으로 하여 販賣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需要者가 保證種苗임을 知得할 수 있도록 檢査內容을 包裝에 表示하여야 한다.

第9條(販賣禁止等 處分) ①農林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6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種苗業者에 對하여는 違反行爲에 關聯된 種苗의 賣買를 禁止할 수 있으며 第8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는 表示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10條(報告書徵收等) ①農林部長官은 保證種苗檢査의 結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種苗業者에 對하여 當該 公務員으로 하여금 檢査에 必要한 分量에 限하여 種苗를 無償

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그 義務에 關하여 必要한 報告를 命하거나 또는 帳簿 其他의 書類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②前項의 公務員은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提示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 11 條 (權限委任) 農林部長官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法에 規定한 그 權限의 一部를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 12 條 (助成) 政府는 本法의 規定에 依한 保證種苗의 生産 및 普及에 必要한 經費를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 13 條 (罰則)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者는 1 年以下의 微役 또는 50 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第 3 條 또는 第 4 條의 規定에 違返한 者
2. 第 8 條의 規定에 依하여 表示하여야 할 事項에 對하여 虛偽表示를 하여 種苗를 販賣한 者
3. 第 10 條의 規定에 依한 試料收去의 拒否 또는 書類의 提出을 懈怠하거나, 虛偽의 報告 또는 虛偽의 書類를 提出한 者

第 14 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從業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前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 前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1) 農家貸與糧穀法 (法律 第 1026 號, 1962. 2. 19)

第 1 條 (目的) 本法은 農家貸與糧穀制를 實施함으로써 絕糧農家의 生活安定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①本法에서 農家貸與糧穀制라 함은 市長, 郡守가 春窮期 其他 必要한 時期에 食糧 또는 種子用의 糧穀을 農家に 貸與하고 (貸與하는 糧穀을 以下 元穀이라 한다) 收穫期에 그 利子 (利子로 回收하는 糧穀을 以下 利穀이라 한다.) 를 加하여 回收함을 말한다.

②本法에서 農家라 함은 家口主 또는 同居家族이 그 勞力의 大部分을 營農에 消費하여 生計維持를 主로 營農所得에 依存하는 家口를 말한다.

第 3 條 (元穀의 確保) ①市長, 郡守는 農家に 貸與할 元穀을 確保하기 爲하여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所要元穀의 數量을 道知事를 經由하여 農林部長官에게 政府販賣糧穀의 買受를 申請한다.

- ②農林部長官은 前項의 申請을 接受하였을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賣渡한다.
- 第 4 條 (代金決算) ①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賣渡한 糧穀의 代金은 市·郡別로 買收當時의 政府糧穀 販賣價格에 依하여 三年据置, 10年 均等年賦로 糧穀管理特別會計에 納付하여야 한다.
- ②前項에 依한 賣渡糧穀代金의 納期는 每年 12月末日까지로 한다.
- 第 5 條 (貸與基準) 市長, 郡守는 元穀의 貸與를 希望하는 農家에 對하여 自家糧穀의 生産量, 世帶家族數, 還納能力 等を 參酌하여 貸與하되 一家口當 2石을 超過할 수 없다.
- 第 6 條 (貸與方法) ①市長, 郡守는 春窮期 其他 元穀을 貸與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미리 그 申請期限을 定하여 公告한 後에 貸與를 希望하는 農家로 하여금 里, 洞內의 統, 坊 單位로 共同出願하게 한다.
-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共同出願者가 元穀의 貸與를 받았을 때에는 그 貸與 받은 糧穀에 對하여 全員 連帶하여 返濟의 責任을 진다.
- 第 7 條 (元利金の 徵收) 市長, 郡守는 元穀을 貸與한 農家에 對하여 貸與한 後 最初의 收穫期에 納付告知書를 發付하여 元利穀을 徵收하여야 한다. 但, 凶年 其他 不可避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閣令 또는 市, 郡 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음 收穫期까지 徵收를 猶豫할 수 있다.
- 第 8 條 (利穀) 利穀은 元穀의 年 1割 以內로 한다. 但, 貸與期間이 6月末滿일 境遇에는 元穀의 6分以內로 한다.
- 第 9 條 (利穀의 管理) ①前條의 規定에 依한 利穀은 農林部長官으로부터 買入한 糧穀代金を 完全히 償還할때까지 他目的에 使用할 수 없다.
- ②徵收한 利穀의 用途에 關하여는 閣令 또는 市, 郡 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 第 10 條 (換穀率) ①市長, 郡守는 貸與 받은 農家の 希望에 따라 貸與한 元穀과 다른 種穀의 糧穀을 元穀 또는 利穀으로 徵收할 수 있다.
- ②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 換穀率은 農林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 第 11 條 (滯納處分) 元穀을 貸與받은 農家가 正當한 事由없이 所定の 期限內에 元利穀을 還納하지 아니할때에 國稅徵收法中 滯納處分의 例에 準하여 徵收하되 糧穀을 押留하였을 때에는 이를 元利穀에 充當하고 其他 財産을 押留하였을 때에는 이를 公賣하여 그 代金으로 糧穀을 購入하여 元利穀에 充當하였다.
- 第 12 條 (保管) 元穀과 利穀은 閣令 또는 市, 郡 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市長, 郡守가 이를 保管한다.
- 第 13 條 (辨償責任) 市長 또는 郡守는 그 故意 또는 重過失로 因하여 保管糧穀이 變質, 腐敗, 盜難 등으로 滅失되거나 減量되었을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辨償의 責任을 진다.

第14條(會計) 本法에 의한 糧穀을 運營하기 爲하여 市, 郡의 歲入, 歲出 豫算에 農家貸與糧穀計定을 두되 一般經費로부터의 補助는 받을 수 있으나 農家貸與糧穀計定에서 他計定에 轉用할 수는 없다.

第15條(監督) 農林部長官은 道知事로 하여금 本法에 의한 市, 郡 農家貸與 糧穀運營狀況을 報告하게 하거나 必要한 措置를 命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の 懲役 또는 元穀價格의 2倍에 相當하는 金額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家가 아니고서 虛偽의 手段으로서 元穀의 貸與를 받은 者
2. 虛偽의 手段으로써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貸與基準을 超過하여 貸與받은 者

第17條(同前) 農家貸與糧穀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때에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하고 50萬圓 以下の 罰金を 併科할 수 있다.

1. 本法에 의한 農家貸與糧穀을 다른 目的에 流用 또는 不正處分하였을 때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貸與基準을 超過하여 貸與한때

附 則

①(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本法 施行前에 糧穀理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貸與한 糧穀으로서 未回收된 糧穀에 對하여는 本法에 의하여 賣渡한 것으로 한다.

③(減免措置) 前項의 未回收糧穀中 償還無能力者, 行方不明者, 財産相續人이 없는 者 等に 對한 貸與糧穀은 關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減免 또는 缺損處分을 할 수 있다.

④(裁判의 效力) 國家를 當事者로 한 貸與糧穀訴訟에 關한 確定判決의 效力과 本法 施行當時에 繫屬中인 裁判은 市長, 郡守가 本法 公布日에 自動的으로 繼承한다.

22) 開墾促進法 (法律 第1028號, 1962. 2. 22)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本法은 農業生産力의 增強과 農家經濟의 安定을 期하기 爲하여 開墾을 促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①本法에서 未墾地라 함은 荒蕪地, 草生地, 沼澤地, 廢鹽田 또는 林野로서 開墾할 수 있는 土地를 말한다.

②本法에서 私有未墾地라 함은 國有 以外の 一切의 未墾地(公有地 包含)를 말한다.

③本法에서 開墾이라 함은 農地의 造成과 그 附帶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는 것을 말한다.

④本法에서 農地라 함은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를 말한다.

第3條(開墾審議會) ①本法에 依하여 開墾하고자 하는 土地의 適否 및 開墾에 關한 事項을 審査하기 爲하여 中央 및 서울特別市 또는 道에 開墾審議會를 둔다.

②前項의 開墾審議會의 構成, 任務 其他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2章 開墾豫定地의 調査決定

第4條(開墾適地의 調査) ①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開墾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開墾하고자 하는 土地의 傾斜土性 其他 開墾地로서의 適否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調査를 爲하여 必要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은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서 調査 또는 測量을 하고 不得已할 때에는 그 土地 위에 있는 障礙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③土地의 所有者, 占有者 其他 利害關係人은 前項의 調査 또는 措置를 妨害하지 못한다.

④第2項의 處分으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그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第5條(開墾豫定地의 決定)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適地의 調査를 하였을 境遇에는 서울特別市 또는 道開墾審議會의 意見을 들어 開墾豫定地를 決定한다. 但, 開墾適地의 全部 또는 一部가 國有未墾地일 境遇에는 中央開墾審議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6條(開墾豫定地의 告示) ①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豫定地를 決定하였을 境遇에는 다음에 揭記하는 事項을 告示하여야 한다.

1. 土地의 所在地, 地目, 地番, 地積 및 所有者의 住所, 姓名
2. 土地利用 豫定의 概要
3. 工事費概算額
4. 豫資補助率
5. 土地代價豫定額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할 때에는 告示와 同時에 그 土地所有者에게도 通知하여야 한다.

第7條(開墾豫定地의 使用制限)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土地에 對하여는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거나 工作物의 設置, 植樹 其他 開墾에 支障이 있는 施設物을 設置할 수 없다.

第3章 開墾許可

第8條(私有未開墾地의 開墾許可)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私有未墾地는 通知日로

부터 45日 以內에 그 土地所有者가 申請할 境遇에는 優先으로 開墾을 許可한다.

第9條(國有未墾地の開墾許可)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國有未墾地 및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政府가 買收한 未墾地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農家當 二町步를 基準으로 하는 限度內에서 다음 順位에 依하여 開墾을 許可한다. 但, 開墾에 能力이 있는 者에게는 許可面積을 制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零細農家
2. 一般農家
3. 其他 營農의 能力이 있는 者

第10條(開墾許可의 節次) ①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開墾許可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書를 受理하였을 境遇에는 申請者의 資格, 能力 등을 審査하여 開墾을 許可하여야 한다.

③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前項의 許可를 할 境遇에는 다음에 揭記한 條件을 붙여야 한다.

1. 開墾豫定面積 및 用途
2. 開墾의 着手 및 竣功期日
3. 土地代價
4. 工事費豫定額
5. 工事費 豫定額에 對한 補助率
6. 其他 必要한 事項

④前項의 條件中 開墾의 着手 및 竣功期日은 延長할 수 없다.

第11條(許可의 讓渡, 相續, 資格) ①開墾許可를 받은 者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の 許可를 받아 그 權利를 讓渡할 수 있다.

②開墾許可를 받은 者에 權利는 이를 相續할 수 있다.

③土地改良事業法의 適用에 있어서는 開墾許可를 받은 者는 同法 第3條第1項의 土地의 所有者로 본다.

第12條(開墾竣工認可) ①第10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許可를 받은 者가 工事を 竣功하였을 境遇에는 竣功期日로부터 1月內에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竣功認可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請書를 受理한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遲滯없이 竣功檢査를 實施하여 所定의 開墾이 完了되었을 때에는 竣功認可를 하여야 한다.

第13條(許可의 取消) ①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開墾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境遇에는 開墾許可를 取消하고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1. 開墾에 關한 法令 또는 處分에 違反하였을 때
 2. 開墾許可條件에 違反하였을 때
 3. 詐僞의 手段으로써 許可를 받았을 때
 4. 開墾에 關한 工事施行의 方法이 公共의 利益을 阻害할 때
-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許可를 取消하였을 境遇에 그 地上에 設置된 土石 其他 施設物이 있을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無償으로 國有로 編入할 수 있다.

第 4 章 私有未墾地の 買收

第 14 條 (私有未墾地の 買收)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私有未墾地는 政府가 이를 買收한다.

1. 土地所有者가 第 6 條의 規定에 依한 通知日로부터 45 日以內에 開墾許可申請을 하지 아니한 土地
2. 第 10 條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開墾許可를 받은 者가 開墾許可條件에 明示된 期日內에 工事を 着手 또는 竣功하지 아니한 土地. 但, 開墾許可地中 이미 開墾된 部分의 土地가 있을 境遇에도 이를 包含하여 買收한다.

②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買收한 土地를 農林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買收의 效力은 前項의 告示에 依하여 發生하며 그 效力의 發生과 同時に 引渡된다.

④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買收된 土地에 設定된 抵當權 其他 權利는 買收와 同時に 消滅하며 그 權利의 消滅로 因하여 發生하는 損害는 買收代價의 範圍內에서 優先補償한다. 但,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は 開墾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그 權利의 全部 또는 一部를 存續시킬 수 있다.

第 15 條 (私有未墾地の 買收代價) ①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買收한 私有未墾地의 代價는 第 6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日 現在의 時價에 依하여 閣令의 定하는 基準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が 決定한다.

②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有未墾地를 買收한 境遇에 그 土地 위에 地上物이 있을 境遇에는 그 補償額을 勘案하여야 한다. 但, 土地所有者 및 其他 權利者가 이를 收去할 境遇 또는 第 6 條第 1 項의 告示가 있는 後에 새로이 設置한 地上物을 包含하지 아니한다.

第 16 條 (買收代價의 補償) ①農林部長官은 第 14 條第 2 項의 規定에 依하여 買收하기로 告示된 土地의 代價를 告示日로부터 5 年間 均分補償한다. 但, 小額인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時補償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被補償者에게 前項의 土地代價를 額面으로 하는 證券을 發給할 수 있다.

第 5 章 國有土地의 賣渡

第 17 條 (國有土地의 賣渡) ①農林部長官은 第 12 條第 2 項의 規定에 依하여 竣功認可를 한 國有土地를 竣功認可를 받은 者에게 遲滯없이 賣渡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有土地를 賣渡하였을 境遇에는 賣渡證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買收한 權利의 讓渡 및 相續에 對하여는 第 11 條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18 條 (國有土地의 代價) ①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賣渡한 國有土地의 代價는 第 15 條第 1 項의 規定을 準用하되 第 14 條第 1 項第 2 號의 規定에 依하여 私有未墾地를 買收한 土地中 이미 開墾된 部分이 있을 때에는 그 部分에 對한 土地代價를 增額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이미 開墾된 部分의 土地代價는 未開墾部分과의 比較評價에 依하여 査定하되 第 6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한 土地代價의 倍額을 超過할 수 있다.

第 19 條 (國有土地代價의 償還) 第 17 條의 規定에 의하여 賣渡한 土地代價는 賣渡한 翌年부터 5 年을 據置한 後 10 年間 均分償還하여야 한다. 但, 買收者의 希望에 依하여 期間을 短縮하여 償還하거나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承認을 받아 償還期間內에서 年賦額을 增減하여 償還할 수 있다.

第 20 條 (償還不履行에 對한 措置) ①第 17 條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를 買收한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償還金을 納付하지 아니할 境遇에는 國稅徵收法中 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滯納處分을 할 境遇에는 그 土地를 買收한 者의 所有로 看做하여 處分할 수 있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償還期間內에 賣渡한 土地를 公賣하여도 賣却되지 아니할 境遇에는 그 土地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賣渡를 取消할 수 있다.

第 6 章 特別開墾

第 21 條 (特別開墾豫定地) ①第 6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開墾豫定地 以外의 未墾地로서 一般開墾豫定地로 適合하지 않은 30 町步 以上의 一團地를 開墾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農林部長官에게 開墾豫定地 決定申請을 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受理하였을 境遇에는 遲滯없이 第 4 條 및 第 5 條의 規定에 準하여 開墾豫定地로서의 適否를 決定하고 適地에 對하여는 第 6 條의 規定에 準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但, 第 6 條第 1 項第 3 號 및 第 4 號에 規定한 事項은 告示하지 아니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豫定地로서 決定告示된 土地는 第 7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22 條 (特別開墾許可申請) ①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開墾豫定地中, 私有未墾地가 있을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開墾豫定地 決定申請者가 國有開墾地일 때에는 開墾豫定地 決定申請者가 各各 前條의 告示日로부터 45 日內에 農林部長官에게 開墾許可를 申請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申請이 없을 때에는 그 事實을 遲滯없이 告示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한 開墾豫定地에 對하여 開墾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에게 開墾許可를 申請할 수 있다.

第 23 條 (特別開墾許可) ①農林部長官은 前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開墾許可申請을 受理하였을 境遇에는 그 能力을 審査하여 適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다음 順位에 依하여 開墾을 許可한다.

1. 土地所有者. 但, 1 團地面積中 3 分の 1 以上을 所有한 者 中에서 最大의 面積을 가진 者.

2. 第 21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豫定地決定申請을 한 者.

3. 1 團地面積中 3 分の 1 未滿을 所有한 土地所有者 中에서 最大의 面積을 가진 者.

②農林部長官은 前條第 3 項의 規定에 依한 開墾許可申請을 受理하였을 境遇에는 그 能力을 審査하여 適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公益上 또는 經濟上의 價値가 큰 者에게 開墾을 許可한다.

③前 2 項에 있어서는 그 1 團地를 分割하여 許可할 수 없다.

④農林部長官은 前條의 許可를 할 境遇에는 다음에 揭記한 條件을 붙여야 한다.

1. 開墾豫定面積 및 用途

2. 開墾의 着手 및 竣功期日

3. 土地代價

4. 其他 必要한 事項

第 24 條 (他人所有 土地의 賣買) ①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許可를 한 1 團地內에 許可를 받은 者 以外의 者의 所有土地가 있을 境遇에는 許可를 받은 者는 이를 買收하여야 하며 土地所有者는 이를 賣渡하여야 한다. 但, 當事者間에 土地使用에 關한 다른 約定이 成立되었을 境遇에는 賣買하지 아니하여도 無妨하다.

②前項의 境遇에 土地의 賣買代價決定은 第 15 條의 規定을 準用하며 土地上에 設定된 權利의 效力에 關하여는 第 14 條第 4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25 條 (他人土地代價의 支給) ①第 23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許可를 받은 者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賣買한 土地代價를 開墾許可日로부터 2 年內에 土地所有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前條의 境遇에 土地所有者가 土地代價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土地所有者 또는 그 居住地가 分明하지 아니하여 直接 支給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代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③第 23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許可를 받은 者는 前 2 項의 規定에 依한 初年度分의 土地代價를 支給 또는 供託한 後가 아니면 開墾工事を 着手할 수 없다.

第 26 條(國有地의 賣渡代價 및 償還) ①第 23 條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許可를 한 1 團地內에 國有地가 있을 境遇에는 第 17 條의 規定에 準하여 賣渡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國有地의 代價 및 償還에 關하여는 第 18 條 乃至 第 20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27 條(特別開墾許可의 讓渡, 相續, 資格, 竣功認可, 取消) 第 23 條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許可를 받은 者에게 權利의 讓渡, 相續, 資格, 竣功認可 및 取消에 關하여는 第 11 條 乃至 第 13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28 條(特別開墾豫定地의 調査測量) ①第 21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豫定地決定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에 關한 準備를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미리 區廳長, 市長, 郡守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서 測量 또는 調査를 하고 不得已할 때에는 그 土地에 있는 障礙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②前項의 處分으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開墾豫定地決定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가 그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第 7 章 雜 則

第 29 條(所有權 移轉登記) ①農林部長官은 第 16 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有未墾地의 代價를 支給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土地所有權 移轉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 19 條 및 第 20 條의 規定에 依한 土地代價 償還을 完了한 土地에 對하여는 遲滯없이 所有權移轉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第 24 條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를 賣渡한 者는 第 25 條의 規定에 依한 土地代價의 金額을 受領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所有權 移轉에 應하여야 한다.

④第 1 項 및 第 2 項의 登記費用은 政府가 負擔하며 前項의 登記費用은 買收者가 負擔한다.

第 30 條(開墾에 關한 監督) 開墾許可 官廳은 本法에 依하여 開墾許可를 받은 者에 對하여 開墾에 關하여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第 31 條(開墾事業의 助成) 農林部長官은 本法의 規定에 依한 開墾事業에 必要한 工事費 또는 營農資金을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第 32 條(補指金 交付의 停止, 返還) 前條의 規定에 依한 補助金에 對하여는 土地改良事業法 第 138 條의 規定에 準하여 交付의 停止 또는 返還을 命할 수 있다.

第 33 條(國有未墾地의 管理) 開墾豫定地로 決定된 國有未墾地에 對하여는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農林部長官이 管理處分한다.

第 34 條 (公簿의 閱覽) 開墾에 關하여 必要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은 所轄登記所, 稅務署, 區, 市 郡 其他 機關에 備置된 公簿를 無償으로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第 35 條 (免稅) 本法에 依하여 開墾된 農地에 關하여는 登錄稅 및 不動產 取得稅를 免除하고 開墾竣工認可를 받은 後 20 年間 農地稅를 免稅한다.

第 36 條 (權限의 委任) 本法에 依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울 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그 一部를 委任할 수 있다.

第 37 條 (閣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38 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 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7 條 및 第 21 條 第 3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本法에 依하여 開墾事業을 施行할 境遇에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妨害한 者.
3. 本法에 依하여 開墾許可를 받고 正當한 理由없이 開墾豫定工程을 達成하지 못하거나 未墾地를 放置 또는 他目的에 使用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者는 50 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4 條 第 3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 11 條 第 1 項 및 第 27 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權利를 讓渡한 者
3. 第 29 條 第 3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開墾事業의 施行에 關하여 設置한 標識을 移轉, 汚損, 毀損 또는 除去한 者.

③第 1 項 第 3 號 또는 前項 第 2 號에 該當하는 者가 不當하게 取得한 利得이 있을 境遇에는 그 取得額의 倍額에 該當하는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

附 則

(施行日) 本法은 1962 年 2 月 5 日부터 適用한다.

23) 韓國水產開發公社法 (法律 第 1229 號, 1962. 12. 24)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本法은 水産業의 發展을 圖謀하기 爲하여 借款導入과 漁業發展에 必要한 施設을 管理運營하는 韓國水產開發公社 (以下 “公社”라 한다)을 設立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法人)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第 3 條 (公社 및 支社等) 公社는 本社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必要한 곳에 支社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第 4 條 (資本金等) ①公社의 資本金은 50 億圓으로 하고 이를 株式으로 하되 政府가 이의 過半數를 保有하여야 한다.

②株式의 第1回 納入金額은 商法の 規定에 不拘하고 閣令으로 定한다.

第5條(商法の 準用) 公社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商法中 株式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定款) ①公社の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本社 및 支社의 所在地
4. 資本金에 關한 事例
5. 任員에 關한 事項
6. 理事會에 關한 事項
7. 業務에 關한 事項
8. 社債에 關한 事項
9. 會計에 關한 事項
10. 公告의 方法

②定款의 變更은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條(登記) 公社は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社의 所在地에서 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8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水產開發公社 또는 이에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第9條(解散) 公社の 解散에 關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第2章 任 員

第10條(任員) 公社에 社長, 副社長 各 1人과 理事 7人以內 및 監事 2人以內를 둔다.

第11條(任員의 任命) ①社長은 主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內閣首班이 任命한다.

②副社長, 理事는 社長의 推薦으로 主務部長官이 任命하고 監事는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財務部長官이 任命한다.

第12條(任員의 任期) 社長, 副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各各 重任할 수 있다.

第13條(任員의 職務) ①社長은 公社를 代表하여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副社長은 社長을 補佐하며 社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社長, 副社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社長이 指定하는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理事를 指定할 수 없을 때에는 主務部長官이 指定하는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理事는 社長 및 副社長을 補佐하며 公社の 業務를 分掌한다.

⑤監事는 公社の 會計와 會計에 隨伴되는 業務를 監査한다.

第 14 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禁治產者, 限定治產者와 破產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の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4. 法令에 依하여 懲戒免職의 處分을 받은 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第 15 條 (任員의 身分) 公社의 任員은 國家公務員에 準하는 身分을 가진다.

第 16 條 (任員의 兼職禁止) 公社의 任員은 公社의 業務와 利害關係있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하며 主務部長官의 承認없이는 다른 職務를 兼할 수 없다.

第 17 條 (任員의 身分保障) 任員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任期中 解任되지 아니한다.

1. 本法이나 本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였을 때
2.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公社運營上 損失을 招來하였을 때
3. 身體 또는 精神上의 故障으로 職務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禁治產, 限定治產 또는 破產宣告를 받았을 때
5. 禁錮以上の 刑을 받았을 때

第 18 條 (理事會) ① 公社의 重要한 事項을 審議하기 爲하여 公社에 理事會를 두며 理事會는 社長, 副社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② 社長은 理事會의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③ 理事會의 議事は 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議長은 前項의 境遇에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⑥ 理事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第 19 條 (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社長이 任免한다.

第 3 章 業 務

第 20 條 (事業) 公社는 第 1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1. 水產業에 必要한 漁船과 漁撈用 資材의 導入 및 建造
2. 前號에 依한 船舶의 管理運營 및 處分
3. 漁撈 및 水產物의 加工施設事業 (冷凍과 製氷을 包含한다)
4. 水產物의 販賣 및 輸出
5. 關係技術者의 訓練과 養成
6. 前各號에 附帶되는 事業

- 第 21 條 (他企業에의 出資) ①公社는 財産의 管理와 水産業의 發展을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公社의 業務와 同種의 企業體에 出資할 수 있다.
- ②主務部長官이 前項의 承認을 하고자 할때에는 閣議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 4 章 監督 및 助成

- 第 22 條 (監督) 主務部長官은 公社의 業務를 指督監督한다.
- 第 23 條 (業務의 檢査等) ①主務部長官은 公社의 業務, 會計 및 財産에 關한 事項을 檢査할 수 있으며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主務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의 結果 違法 또는 不當한 處事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 第 24 條 (公課金의 免除) ①公社의 財産과 業務에 關하여 公社設立의 年과 그 翌年부터 7 年間 法人稅 및 取得稅를 免除한다.
- ②公社設立 및 新株發行에 關한 登錄稅를 免除한다.
- ③漁業用 船舶 및 導入資財에 對한 關稅, 登錄稅, 取得稅 및 物品稅를 免除한다.
- 第 25 條 (社債) ①公社는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財務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②政府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社債의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한다.
- 第 26 條 (助成) 政府는 公社의 技術者 養成과 試驗調査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 5 章 會 計

- 第 27 條 (會計) 公社의 會計에 關하여는 政府投資機關 豫算會計法에 依한다.
- 第 28 條 (餘裕金의 運用) 公社는 餘裕金을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方法 以外에는 運營할 수 없다.
1. 國債의 保有
 2. 主務部長官이 承認하는 金融機關에의 預入
- 第 29 條 (益金處理) 公社는 每事業 年度의 利益金은 다음 順位로 處理한다.
1. 利益金의 10 分之 1 該當額의 積立
 2. 株式에 對한 配當
 3. 其他積立金
 4. 次年度의 移越

第 6 章 罰 則

第 30 條 (罰則) 第 8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는 3 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設立委員의 任命) 公社의 設立委員은 主務部長官이 任命한다.

第 3 條 (設立委員의 職務) ① 設立委員은 遲滯없이 定款을 作成하여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前項의 承認을 얻었을 때에는 商法 第 167 條 (新商法 第 292 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4 條 (新商法の 不適用) 本 公社 設立에 있어서는 新商法 第 298 條 및 第 299 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5 條 (株式의 引受) 公社設立 當時의 株式은 政府가 全額 이를 引受한다.

24) 國土綠化促進에 관한臨時措置法 (法律 第 1266 號, 1963. 2. 9)

國家再建最高會議의 議決로 決定된 國土綠化促進에 관한臨時措置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權 限 代 行

國 家 再 建 最 高 會 議

議 長 朴 正 熙 閣
陸 軍 大 將

1963 年 2 月 9 日

內 閣 首 班 金 顯 哲

農 林 部 長 官 張 炯 淳

第 1 條 (目的) 이 法은 國土綠化事業을 조속히 完수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法에서 國土綠化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事業을 말한다.

1. 황폐된 山林을 복구하기 위한 事業
2. 國土의 綠化를 위한 造林事業

第 3 條 (事業實施) 이 法에 의한 國土綠化事業은 地域單位로 하여 國民의 自發的인 참가에 의하여 實施함을 原則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賦役을 課할 수 있다.

第 4 條 (賦役命令등) ①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國土綠化事業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對象者에게 賦役을 命할 수 있다. 그러나, 同一人이 다음 各號의 2 以上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其中 1 號에 의하여 賦役을 命한다.

1. 山林契員
2. 1930年 1月 1日부터 1934年 12月 31日까지 사이에 出生한 者로서 現役に 編入되지 아니한 者와 現役服務를 마치지 아니한 者
3. 公務員 및 學生
4. 公共團體에 종사하는 者
5. 各種企業體에 종사하는 者
6. 各級 再建委員會 會員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役의 命을 받은 者가 특별한 事情으로 인하여 賦役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他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거나, 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賃으로 代納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勞賃을 代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稅 徵收의 例에 의하여 당해 勞賃을 徵收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役의 命을 받은 者中 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救護對象者에게는 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賃을 支給할 수 있다.

⑤이 法에 의한 賦役免除對象者는 閣令으로 정한다.

第5條(綠化誠金) 大韓山林組合聯合會長은 國土綠化事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寄附金品 募集禁止法의 節次에 따라 綠化誠金을 募集할 수 있다.

第6條(關係機關의 協調) 農林部長官은 國土綠化事業의 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의 協調를 요구할 수 있다.

第7條(國庫負擔) 이 法에 의한 賦役과 募金으로 國土綠化事業을 完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필요한 經費를 國庫에서 負擔한다.

第8條(特典) 第4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對象者로서 이 法에 의한 賦役을 畢한 者는 公職에 從事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兵役義務 不履行을 理由로 拒否되지 아니한다.

第9條(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閣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1963年 2月 1日부터 適用하여 1964年 12月 末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25) 土地改良事業長期債整理特別措置法(法律 第 1291 號, 1963. 3. 5)

國家再建最高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土地改良事業長期債整理特別措置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權 限 代 行

國 家 再 建 最 高 會 議

議 長 朴 正 熙 印
陸 軍 大 將

1963 年 3 月 5 日

內 閣 首 班 金 顯 哲
農 林 部 長 官 張 炯 淳

第 1 條 (目 的) 이 法은 土地改良事業을 위하여 融資된 長期債를 合理的으로 整理하고 誤用된 政府補助金을 迅速히 回收함으로써 農民負擔의 適正을 기하고 土地改良組合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 義) ① 이 法에서 長期債라 함은 土地改良事業施行者가 1946 年 1 月 1 日부터 1961 年 12 月 31 日까지 사이에 產業復興 國債金特別會計·糧穀管理特別會計·農地改革事業特別會計·歸屬財產處理特別會計·對充資金特別會計 또는 一般會計의 豫算에서 土地改良事業을 위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를 받음으로써 생긴 債務를 말한다.

② 이 法에서 長期債整理對象者라 함은 土地改良組合聯合會·土地改良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 기타 土地改良事業施行者를 말한다.

第 3 條 (償 還 期 間 과 利 率) ① 長期債의 償還期間은 이를 負擔하는 者의 能力을 考慮하여 당해 工事が 竣工된 해의 翌年 1 月 1 日부터 起算하여 30 年의 期間內에 延長시킬 수 있으며 그 利率은 財政資金運用法의 規定에 의해 財務部長官의 決定에 불구하고 年 3 分 5 厘로 引下시킬 수 있다.

② 產業復興國債發行額으로 貸下된 長期債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償還期間이 延長된 때에는 同產業復興國債의 政府에 대한 償還期間도 同一하게 延長된다.

③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政府에 대한 償還期間이 延長될 때에는 政府의 同產業復興國債償還도 同一하게 延長한다.

第 4 條 (政府補助의 擬制)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長期債로서 第 6 條의 規定에 의하여 整理하기로 決定된 金額은 政府에서 補助한 것으로 본다.

1. 土地改良事業施行의 認可를 받은 面積中 그 事業으로 인하여 利益을 받지 아니하는 區域에 관하여 負擔하는 長期債
2. 長期債額이 당해 事業으로 인한 30 年間的 利益相當額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超過額

3. 第 5 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이 解散되거나 區域이 除外된 경우에 그 組合 또는 區域에 관하여 負擔할 國債

②前項 第 2 號의 利益相當額의 算定方法은 閣令으로 定한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에서 補助한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 長期債額에 相應하여 金融機關의 政府에 대한 償還義務는 免除된다.

第 5 條 (解散과 區域 除外) ①農林部長官은 다음 事由로 維持管理費의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永續적으로 歲入缺陷이 生한다고 인정되는 組合 또는 地區에 대하여는 그 解産 또는 그 一部區域을 組合의 區域에서 제외할 것을 命할 수 있다.

1. 貯水池堤岸의 地質 關係로 貯水가 不能할 때

2. 蒙利地가 砂質土로서 灌溉의 實效를 얻지 못할 때

3. 揚水場의 立地의 條件이 不良하여 揚水가 不能하거나 維持費가 過多히 所要될 때

4. 前 3 號의 경우 외에도 組合의 解散 또는 地區의 제외가 經濟的인 價値로 보아 有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의 解散 또는 區域의 제외를 命할 때에는 당해 組合의 意見を 參酌하여야 한다.

③土地改良事業法 第 72 條·第 73 條 및 第 78 條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 6 條 (整理의 申請과 決定)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債의 整理는 長期債整理對象者의 申請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이 査定하여 閣議의 議決을 거쳐 이를 決定한다.

第 7 條 (長期債整理委員會) ①長期債의 整理와 組合의 解散 및 區域 제외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 및 道에 長期債整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당해 道の 管轄區域에 관련되는 事項을 管掌하되 서울特別市の 管轄區域에 관련되는 事項은 京畿道委員會에서, 釜山市의 管轄區域에 관련되는 事項은 慶尙南道委員會에서 각각 이를 管掌한다.

③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8 條 (不正工事로 인한 回收金의 運用) ①1962年 4月 12日부터 同年 9月 5日까지 監察委員會가 實施한 監察의 結果 不正 또는 不當하게 施工된 것으로 인정된 土地改良事業工事に 관련하여 組合에 回收된 金額中 政府補助金에 해당하는 金額은 組合에 이를 回收하는 즉시로 土地改良組合財政安定基金에 充當하여야 한다.

②土地改良組合財政安定基金은 土地改良組合聯合會가 運營하되 그 運營方法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9 條 (罰則) 第 6 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있어서 申請書에 虛偽의 事實을 記載하거나 記

載하게 하거나 또는 정당한 申請을 방해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萬圓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0條(同前) ①長期債整理事務에 증사하는 者가 그 職務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기타 부정한 行爲를 한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받은 賂物은 沒收한다. 이를 沒收하기 不能할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6) 蠶絲價格安定基金法(法律第1342號, 1963. 5. 14)

國家再建最高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蠶絲價格安定基金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權 限 代 行

國 家 再 建 最 高 會 議

議 長 陸 軍 大 將 朴 正 熙 閣

1963年 5月 14日

內 閣 首 班 金 顯 哲

農 林 部 長 官 張 炯 淳

第1條(目的) 이 法은 蠶絲價格의 安定에 關한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養蠶農家의 經濟向上과 生絲輸出의 增進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蠶絲”라함은 桑苗·蠶種·蠶繭과 生絲를 말한다.

第3條(安定基金의 積立) ①國際生絲價格의 低落으로 인한 損失을 補填하기 위하여 蠶業法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製絲業의 免許를 받은者(이하 “製絲業者”라 한다)는 蠶絲價格安定基金(이하 “安定基金”이라 한다)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安定基金의 積立額은 輸出生絲價格 또는 國內用絲販賣價格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價格(이하 “告示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超過額의 半額으로 한다.

③安定基金에 대하여는 稅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4條(安定基金의 管理) 安定基金은 蠶絲業者로 構成된 法人중에서 農林部長官이 指定한

者(이하 “安定基金管理者”라 한다)가 이를 管理한다.

第5條(製絲業者에 대한 補償) 安定基金管理者는 輸出生絲價格 또는 國內用絲販賣價格이 告示價格에 未達할 때에는 製絲業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未達額의 半額이하를 安定基金에서 補償한다.

第6條(政府補助) 政府는 安定基金이 不足되어 前條의 補償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不足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安定基金管理者에게 補助할 수 있다.

第7條(安定基金의 短期融資) 安定基金管理者는 安定基金에 상당한 餘裕금이 있을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蠶絲業의 獎勵를 위하여 필요한 事業에 短期融資할 수 있다.

第8條(生産과 輸出의 勸獎) 農林部長官은 生絲의 生産·輸出을 獎勵하기 위하여 製絲業者에 대하여 生産量과 輸出量을 配定할 수 있으며, 製絲業者는 配定된 量을 生産·輸出하여야 한다.

第9條(蠶絲價格의 決定) ①農林部長官은 蠶絲價格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蠶絲價格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每年 蠶絲의 價格을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같다.

②蠶絲價格審議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閣令으로 정한다.

第10條(價格決定의 基準) ①桑苗·蠶種과 蠶繭의 價格은 당해 生産費·利潤과 一般農產物 價格 기타 經濟事情을 參酌하여 決定한다.

②生絲價格은 生産費·利潤과 國際 또는 國內生絲價格을 參酌하여 決定한다.

第11條(價格決定의 時期와 價格의 適用期間) ①桑苗價格은 每年 10月31日까지 決定하고 當年 秋植과 翌年春植桑苗에 이를 適用한다.

②蠶種價格은 每年 7月31日까지 決定하고 當年 秋蠶種과 翌年春蠶種에 이를 適用한다.

③蠶繭價格은 每年 5月31日까지 決定하고 當年春秋蠶繭에 이를 適用한다.

④生絲價格은 每年 5月31日까지 決定하고 當年 7月1일부터 翌年 6月31日까지 이를 適用한다.

第12條(價格등의 變更) 農林部長官은 經濟事情의 急激한 變動 기타 부득이한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된 蠶絲價格을 變更할 수 있다.

第13條(生産費調査) ①農林部長官은 蠶絲의 生産費를 調査하기 위하여 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蠶絲生産業者의 施設·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경우에 당해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14條(免許의 取消) 農林部長官은 製絲業者가 第3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蠶絲生産業者

가 前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때에는 당해 製絲業의 免許를 取消하거나 業務의 制限 또는 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 15 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7) 農地稅徵收에 關한 臨時措置法 (法律 第 1662 號, 1964. 10. 29)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農地稅徵收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朴 正 熙 閣

1964 年 10 月 29 日

國 務 總 理 丁 一 權

國 務 委 員 官 楊 燦 宇
內 務 長 官

國 務 委 員 官 車 均 禧
農 林 部 長 官

第 1 條 (目的) 이 法은 糧穀收穫期에 있어서 穀類의 過剩出荷로 인한 穀價의 低落을 防止하고 政府管理糧穀의 適期確保를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稅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甲類 農地稅 (이하 “農地稅”라 한다)를 現穀으로 徵收하기 위한 措置를 臨時的으로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徵收穀種) ①農地稅는 그 農地의 基準收穫量을 算定한 穀種을 粗穀으로 徵收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粗穀인 正粗·大麥·裸麥·小麥·胡麥·燕麥·麥酒麥·蕎麥·玉蜀麥, 粟 및 大豆를 相互間에 代替하여 徵收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現穀은 農產物檢査法에 의한 檢査合格品중 大統領令으로 指定하는 等級의 것이어야 한다.

③農地稅로 徵收하는 現穀에 대하여는 農產物檢査法 第 11 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料를 免除한다.

第 3 條 (端數計算) 農地稅納稅義務者가 納付할 稅額에 “리터”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第 4 條 (政府의 買上) ①政府는 서울特別市·釜山市·市·郡 (이하 “市·郡”이라 한다)

에서 農地稅로 徵收한 現穀을 糧穀管理法 第 8 條의 規定에 의한 價格으로 全量을 買上한다. 다만, 農地稅의 納期限까지에 當해 年產의 糧穀에 대한 價格決定이 없을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이 經濟企劃院長官·內務部長官 및 財務部長官과 合議하여 當해 穀種의 暫定的 價格을 決定하여 買上하고 糧穀管理法 第 8 條의 規定에 의한 價格이 決定된 때에는 그 價格으로 精算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이 決定하는 糧穀의 買上價格은 農家生産費·購入品價格 등을 參酌하여 適正價格으로 하여야 한다.

第 5 條 (買上資金의 先金給 및 精算) 前後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買上に 있어서 農林部長官은 糧穀管理特別會計豫算에 計上된 農地稅의 現穀買上資金總額을 每分期別로 均等히 그 分期初에 市·郡에 직접 交付하여야 하며, 當해 年度의 出納閉鎖期까지에는 이를 精算하여야 한다.

第 6 條 (糧穀의 引渡와 管理) ①市·郡은 農地稅로 徵收한 現穀을 그 檢査場所에서 直接 糧穀管理特別會計에 引渡하고 糧穀管理特別會計가 이를 管理한다.

②現穀收納에 있어서 1가마 未滿의 現穀의 包裝費等 附帶費用은 糧穀管理特別會計에서 負擔하여야 한다.

第 7 條 (專擔職員 配置) 市 (서울特別市·釜山市와 大邱市에 있어서는 區를 말한다)·郡과 邑·面 또는 市의 出張所에 現穀收納事務를 專擔하는 職員을 配置하고 그 人件費는 國家에서 負擔한다.

第 8 條 (過誤納穀 처리) 過誤納된 現穀은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買上價格으로 換算하여 地方稅法 第 45 條 내지 第 47 條의 規定에 의한 過誤納金으로 當해 米穀年度內에 처리한다.

第 9 條 (地方稅法과의 관계) 이 法에 의한 農地稅의 徵收에 있어서는 地方稅法중 基準收入金額·收入金額 또는 金額과 加算金を 基準收穫量·收穫量 또는 量과 加算穀으로 본다.

第 10 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1964 年 11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中에는 地方自治團體를 통하여 행하는 糧穀管理法 第 4 條에 의한 糧穀의 賣渡를 命令하지 아니한다.

③ (施行日) 이 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6 米穀年度까지 施行한다.

④ (期限內 納付의 特典) 農地稅納付義務者가 地方稅法 第 229 條에 規定된 納付期日內에 納付하는 때에는 納付할 稅額의 100 分의 1을 控除한다.

28) 糧穀과肥料의交換에 관한法 (法律 第1,704號, 1965. 7. 1)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糧穀과肥料의交換에 관한法律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朴 正 熙 印

1965年 7月 1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丁 一 權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車 均 禧

第1條(目的) 이 法은 肥料과 糧穀을 適正率에 의하여 交換함으로써 肥料價格과 糧穀價格의 安定을 도모하여 農産物의 增産과 國民食糧需給의 圓滑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 이 法에서 “肥料”라 함은 肥料團束法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定된 3要素系肥料中 無機質肥料를 말한다.

② 이 法에서 “糧穀”이라 함은 正租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夏穀 및 秋穀을 말한다.

③ 이 法에서 “同時交換”이라 함은 肥料과 糧穀을 交換(第4條第1項但書의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그 目的物의 引渡가 동시에 行하여 지는 것을, “外上交換”이라 함은 肥料의 引渡後 一定期間이 경과한 때에 他方의 目的物의 引渡가 行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第3條(交換) ① 政府의 肥料需給計劃에 의하여 供給하는 肥料는 每年 糧肥交換率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의 同意를 얻은 交換率에 의하여 糧穀과 交換한다.

② 前項의 糧肥交換率審議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과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肥料과 糧穀의 交換業務는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者(이하 “糧肥交換取扱者라 한다)가 이를 行한다.

第4條(糧穀收納等) 前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하는 肥料과 交換될 糧穀은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한다. 다만, 그 肥料의 供給을 받은 者가 現金으로 納付할 것을 願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交換될 糧穀의 價格에 相當하는 金額을 現金으로 收納할 수 있다.

1. 米穀生産用으로 供給한 때에는 正租

2. 米穀生産用以外로 供給한 때에는 正租 또는 正租以外의 다른 糧穀

第5條(外上交換에 있어서의 糧穀의 加算納付) ① 外上交換을 條件으로 肥料를 받은 者는 그 納付할 糧穀에 肥料를 받은 날로부터 納付日까지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率에 의하여 同種의 糧穀을 加算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加算率은 月 7厘以下로 하되 30日未滿의 日數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第 6 條 (納付期限) ① 外上交換에 있어서의 納付期限은 다음 各號의 期間內에서 農林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다만, 災害等으로 인하여 不得已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履行의 全部 또는 一部를 納付할 糧穀의 다음 收穫期까지 猶豫할 수 있다.

1. 夏穀으로 納付할 경우 7月 1日부터 8月 31日까지

2. 正租 또는 正租 이외의 秋穀으로 納付할 경우 10月 1日부터 翌年 1月 31日까지

② 前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期限을 猶豫하였을 때에는 그 猶豫期間동안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糧穀의 加算納付를 免除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된 糧穀에 해당하는 金額은 一般會計에서 負擔하여야 한다.

第 7 條 (收納糧穀의 賣渡) ① 糧肥交換取扱者는 收納된 糧穀을 農產物檢査法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場所에서 農林部長官에게 賣渡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糧穀의 賣渡價格은 當該年度에 供給된 總肥料購買原價에 操作費·金利 기타 필요한 費用을 加算한 金額을 糧肥交換率에 의하여 換算한 總糧穀으로 나누어 算出된 價格으로 한다.

③ 前項의 操作費·金利 기타 필요한 費用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서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第 8 條 (買收糧穀의 處分等) ① 農林部長官은 前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收한 糧穀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處分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 인하여 糧穀管理特別會計에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그 全額을 一般會計에서 補償하여야 한다.

第 9 條 (糧肥交換調整計定) 糧肥交換取扱者는 다음 各號에 제기한 利益金과 損失金을 調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糧肥交換調整計定을 두어야 한다.

1. 第 4 條但書의 規定에 의한 現金의 收納으로 인하여 생긴 利益金 또는 損失金

2. 肥料의 供給에 隨伴된 剩餘金 및 共同海損 기타 不可抗力에 의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損失金

② 前項의 糧肥交換調整計定으로 肥料代金의 調整이 不可能할 경우에는 그 不足額을 一般會計에서 補償하여야 한다.

第 10 條 (買收糧穀代金의 前渡) 農林部長官은 糧穀管理特別會計의 豫算의 범위 안에서 買收 糧穀代金의 一部를 糧肥交換取扱者에게 前渡할 수 있다.

第 11 條 (監督) ① 農林部長官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糧肥交換取扱者에 대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命하거나 當該公務員으로 하여금 관계된 書類와 帳簿를 調查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該公務員이 調查를 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이를 關係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12條(違反行爲에 대한 措置) 農林部長官은 糶肥交換取扱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3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65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 1965年 1月 1日부터 1965年 12月 31日까지 糧穀과 交換을 條件으로 外上供給되었거나 供給될 肥料는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交換率에 의하여 糧穀과 交換한다.

1. 硫安(窒素 21%) 每키로그램當 正租(國定檢査 2等品) 0.522키로그램
2. 重過石(可溶性磷酸 46%) 每키로그램當 正租(國定檢査 2等品) 0.732키로그램
3. 鹽化加里(水溶性加里 60%) 每키로그램當 正租(國定檢査 2等品) 0.472키로그램

③ 前項以外的 肥料와 糧穀의 穀種別·等級別交換率은 前項의 交換率을 基準으로 1965年度 肥料販賣價格과 政府管理糧穀買入價格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이 決定 告示한다.

29) 沿岸漁業等育成法(法律 第1,705號, 1965. 7. 1)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沿岸漁業等育成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朴 正 熙 印

1965年 7月 1日

國務總理 丁 一 權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車 均 禧

第1條(目的) 이 法은 沿岸漁業等の 近代化 및 合理化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樹立施行함으로써 沿岸漁業等の 育成發展을 促進하고 그 從事者의 生活 및 地位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 이 法에서 “沿岸漁業”이라 함은 水産業法 第8條·第12條·第13條 및 第23條에 해당하는 漁業을 말한다.

② 이 法에서 “沿岸漁業等”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漁業을 말한다.

1. 沿岸漁業
2. 沿岸漁業以外的 漁業으로서 그 漁業에 관계되는 漁業生産活動의 大部分이 大統領令이 中

小業者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것.

第3條(國家의 施策) ①國家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施策을 綜合的으로 講究한다.

1. 水産資源의 適正한 利用과 開發, 水産動·植物의 増殖 및 漁場效用의 低下와 喪失의 防止等에 의하여 永續的인 水産資源의 維持増大를 도모하는 것.
2. 漁港의 整備, 漁場의 整備와 開發, 漁業技術의 改良向上等에 의하여 漁業生産性의 振興을 도모하는 것.
3. 經營規模의 擴大, 生産過程의 協業化, 高生産性漁業으로의 轉換, 資本과 裝備의 高度化, 漁場利用의 合理化等에 의하여 經營의 近代化를 도모하는 것.
4. 水産業協同組合이 행하는 販賣事業의 改善, 水産物(加工水産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保藏 및 輸送의 施設의 整備, 水産加工業의 育成, 水産物의 生産 및 流通의 調整等에 의하여 水産物의 流通의 合理化, 加工 및 需要의 増進과 價格安定을 도모하는 것.
5. 海外市場의 開拓, 輸出水産物의 品質向上, 輸出去來의 秩序確立等에 의하여 水産物의 輸出振興을 도모하는 것.
6. 水産用資材의 需給調節에 의하여 그 價格의 適正과 安定을 도모하는 것.
7. 災害損失에 대한 合理的인 補填으로 再生産阻害의 防止 및 經營의 安定을 도모하는 것.
8. 水産에 관한 教育, 試驗研究 및 技術의 改良普及事業을 積極 推進함으로써 近代的인 沿岸漁業等에 適應한 從事者로서의 養成과 그 확보를 도모하는 것.
9. 職業訓練 및 職業紹介事業의 充實化, 漁村地方에 있어서 農業·工業等の 育成에 의하여 沿岸漁業等の 經營과 그 從事者의 家計를 安定化하는 同時에 沿岸漁業等の 從事者 및 그 家族의 希望과 能力에 따라 적당한 職業에 就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0. 漁村의 交通·衛生·文化等の 環境의 整備, 生活改善等에 의하여 沿岸漁業等の 從事者의 福利増進을 도모하는 것.

②前項의 施策은 그 地域의 自然的·經濟的·社會的인 諸條件을 考慮하여 講究한다.

第4條(地方公共團體의 施策) 地方公共團體는 前條의 國家施策에 準한 施策을 講究하는데 努力한다.

第5條(財政上の 措置等) ①關係部長官은 農林部長官의 要請에 따라 第3條第1項 및 第4條에 規定된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施策을 實施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制上 또는 財政上の 모든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措置를 取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優先的으로 講究하여야 한다.

1. 漁業用의 油類 기타 資材에 대한 免稅 또는 減免措置
2. 水産物의 公定輸送料金의 割引措置

3. 沿岸漁業等の整備에 필요한補償財源의 확보

4. 기타 沿岸漁業等 育成에 필요한措置

第6條(沿岸漁業等 從事者의 活動助長) 國家와 地方公共團體는 第3條第1項 또는 第4條의 施策을 講究함에 있어 沿岸漁業等の 從事者 또는 그와 관계되는 團體의 自主的인 活動을 長한다.

第7條(沿岸漁業等 施策에 관한 年次報告) 政府는 漁業動向에 관한 報告書, 沿岸漁業에 대하여 施行한 施策에 관한 報告書 및 施行하려고 하는 施策計劃書를 每年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8條(沿岸漁業等の 構造改善事業) 國家는 沿岸漁業等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施行하는데 필요한 構造改善事業이 綜合的이고 效率的으로 施行되도록 필요한 助言 또는 育成等の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1. 高生産性漁業으로서의 轉換 및 漁場利用關係의 改善

2. 人工魚礁의 設置, 養殖場의 造成等 生産基盤의 整備 및 開發

3. 集團漁業에 있어서의 主漁船의 建造, 能率的인 漁具 및 漁撈裝備의 設置等 經營의 近代化를 위한 施設의 導入

4. 水産物의 冷凍 및 冷蔵을 위한 共同利用施設, 水産物共同加工工場等 水産物의 流通 및 加工施設의 整備

5. 기타 沿岸漁業等の 構造改善에 필요한 事項

第9條(中小漁業의 振興) 國家는 第2條第2項에 해당하는 沿岸漁業等の 業種으로서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 改善 育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改善의 方案을 정하여 公表하고 그 業種에 관계있는 中小漁業者 및 직접 또는 間接으로 中小漁業者를 構成員으로 하고 있는 團體에 대하여 助言·指導 또는 資金融通의 斡旋을 행하는등 그 育成에 필요한 措置를 取한다.

1. 水産資源의 利用開發에 관한 事項

2. 漁船·漁具·漁撈裝備 기타 設備와 水産物의 保藏 및 輸送施設에 관한 事項

3. 水産物의 流通 및 販賣에 관한 事項

4. 賃金勞動條件 기타 勞動關係 및 勞動環境에 관한 事項

5. 기타 當該沿岸漁業等に 관하여 필요한 事項

第10條(調査와 試驗研究事業의 強化等) 國家는 沿岸漁業等に 관계있는 水産資源의 維持 增大, 生産性의 向上, 水産物의 利用 및 加工에 관한 技術의 改良發達을 도모하기 위하여 國家의 試驗研究機關이 행하는 沿岸漁業에 관한 調査 및 試驗研究事業을 強化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取한다.

第11條(改良普及事業에 대한 助言 및 助成等) 國家는 沿岸漁業等の 生産性向上과 經營의

近代化 및 그 從事者의 生活改善을 도모하기 위하여 地方公共團體가 沿岸漁業等에 관한 技術 및 知識을 普及하고 또한 沿岸漁業等 從事者의 生活改善指導員을 養成하며 沿岸漁業等에 관한 專門的인 事項에 대한 調査研究員을 配置하고자 할 때에는 助言 및 助成을 행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取한다.

第 12 條 (沿岸漁業等育成審議委員會의 設置) 農林部長官所屬下에 沿岸漁業等育成審議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 13 條 (委員會의 權限) ①委員會는 農林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이 法 施行에 관한 重要한 事項을 調査·審議한다.

②委員會는 그 所管業務에 관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關係部長官에게 의견을 陳術할 수 있으며 關係部長官에게 資料의 제출, 의견의 陳述, 說明 기타 필요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第 14 條 (委員會의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과 9人 이상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은 水産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農林部長官이 委囑하되 非常任으로 한다.

③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한다.

④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 15 條 (委員의 手當) ①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②委員의 手當支給基準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 16 條 (幹事 및 職員) ①委員會에 幹事 1人과 書記若干人을 둔다.

②幹事와 書記는 農林部所屬公務員中에서 委員長이 이를 委囑한다.

③幹事와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한다.

第 17 條 (委員會規程) 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후 6月을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30) 國立農業資材檢査所設置法 (法律 第1,777 號, 1966 年 4 月 23 日)

國會的 議決로 確定된 國立農業資材檢査所設置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朴 正 熙 印

1966 年 4 月 23 日

國務總理 丁 一 權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朴 東 昂

◎ 法律 第 1,777 號

國立農業資材檢査所設置法

第 1 條 (設置) 農業資材의 檢査에 관한 事項을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所屬下에 國立農業資材檢査所 (이하 “資材檢査所”라 한다)를 둔다.

第 2 條 (檢査對象) 資材檢査所는 다음 各號의 農業資材를 檢査한다.

1. 肥料
2. 農藥管理法 第 2 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
3. 農藥用機械 機具

第 3 條 (所長) ① 資材檢査所에 所長을 둔다.

② 所長은 2 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③ 所長은 農林部長官의 命을 받아 그 所管事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 4 條 (委任規定) 資材檢査所의 職制 및 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事項은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31) 農產物價格安定基金法 (法律 第 1,815 號, 1966. 8. 3)

國會的 議決로 確定된 農產物價格安定基金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朴 正 熙 印

1966 年 8 月 3 日

國務總理 丁 一 權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朴 東 昂

第1條(目的) 이 법은 農產物價格安定基金을 設置함으로써 農產物價格의 安定을 기하고 農家經濟의 향상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農產物의 범위) 이 법에서 “農產物”이라 함은 米穀·麥類 기타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農業生産品을 말한다.

第3條(安定基金의 設置) ① 政府는 이 법의 目的을 達成함에 필요한 融資金의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產物價格安定基金(이하 “安定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安定基金은 200 억원 이상으로 한다.

第4條(安定基金의 管理) 安定基金을 管理하는 機關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安定基金의 運營)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安定基金을 管理하는 機關에 대하여 安定基金의 사용을 指示할 수 있다.

1. 農產物의 價格調節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農產物의 輸出에 필요할 때
3. 其他 農產物의 保管 또는 管理上 필요할 때

② 이 基金의 管理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農產物價格安定基金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

第6條(監督) ① 農林部長官은 安定基金의 運營을 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該 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書類 및 帳簿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人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7條(施行令) 이 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政府는 이 법 施行後 5 年以內에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定基金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農耕地造成法(法律 第 1,872 號, 1967. 1. 16)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農耕地造成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朴 正 熙 印

1967 年 1 月 16 日

國務總理 丁 一 權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朴 東 昂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農業生産力을 增強하여 食糧의 增産을 기함과 아울러 安定農家를 育成하고, 나아가서는 國民經濟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未墾地를 農耕地로 造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①이 법에서 “未墾地”라 함은 荒蕪地·草生地·沼澤地·廢鹽田 또는 林野로서 農耕地 造成에 적합한 土地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私有未墾地”라 함은 國有이외의 모든 未墾地(公有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農耕地”라 함은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와 牧野地·桑田 및 園藝 기타 特殊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開墾”이라 함은 農耕地의 造成과 그 附帶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는 것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許可官廳”이라 함은 未墾地開墾許可에 있어 未墾地의 1團地面積이 10町步미만인 때에는 市長 또는 郡守를, 10町步이상인 때에는 道知事를, 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面積의 多寡에 불구하고 서울特別市長 또는 釜山市長을 말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開墾事業을 하는 경우에 市 또는 郡인 때에는 道知事를,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인 때에는 農林部長官을 말한다.

第3條(開墾委員會) ①이 법에 의하여 開墾하고자 하는 未墾地에 대한 開墾의 適否에 관한 事項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서울特別市·釜山市·道·市 및 郡에 開墾委員會를 둔다.

②前項의 開墾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開墾豫定地의 調査決定

第4條(未開墾地利用區分調査) ①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耕作地·造林地·牧野地·桑田 기타의 目的을 위한 開墾의 適否에 관하여 基本的인 未墾地利用區分調査를 한다.

②前項의 調査를 할 때에는 對象地域을 미리 告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墾地利用區分調査 및 이에 隨伴되는 測量設計는 土地改良組合聯合會로 하여금 代行시킬 수 있다.

④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를 그 地域을 管轄하는 許可官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5條(開墾地調査申請) ①前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利用區分調査對象地域으로 告

示된 地域이외의 未墾地를 開墾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書를 첨부한 開墾地調査申請書를 許可官廳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6 條 (開墾豫定地の 調査 및 決定) ① 許可官廳이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未墾地利用區分 調査書 또는 前條의 規定에 의한 開墾地調査申請書를 受理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開墾하고자 하는 土地의 傾斜·土性 기타 開墾地로서의 適否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 許可官廳이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墾適否에 관한 調査를 한 때에는 해당 開墾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開墾豫定地로 決定한다.

③ 許可官廳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가 第 4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未開墾地利用區分調査結果와 다른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決定한다.

④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결과 牧野地로 開墾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土地가 酪農地帶로 指定된 때에는 酪農振興法을 適用한다.

第 7 條 (調査對象地에의 出入등) ① 第 4 條 및 第 6 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거나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開墾地調査申請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公務員, 土地改良組合聯合會職員 또는 開墾地調査申請者는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 調査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土地 위에 있는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할 수 있다. 다만, 第 5 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墾地調査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가 그 申請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土地를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그 事實을 미리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人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③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기타 利害關係人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措置를 正當한 理由없이 妨害하지 못한다.

④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開墾地調査申請者는 第 1 項의 行爲로 인한 損害를 받은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第 8 條 (開墾地の 제외)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는 開墾할 수 없다.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法人이 公用 또는 公共用的 目的에 사용 하기 위하여 使用計劃을 確定한 土地
2. 保安林·採種林 및 要存國有林
3. 墳墓地와 政府가 指定한 名勝·古蹟 및 寺刹의 保存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土地
4. 傾斜 15 度이상의 林野로서 立木本數度 30 이상의 林野와 傾斜 20 度이상의 林野

第 9 條 (開墾豫定地の 決定) 許可官廳은 第 6 條의 規定에 의한 開墾適否에 관한 調査를 한 때에는 해당 開墾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開墾豫定地로 決定한다.

第 10 條 (開墾豫定地の 告示) ① 許可官廳은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墾豫定地를 決定한 때 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掲기하는 事項을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開墾地調査申請者의 私有 土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土地의 所有地·地目·地番·地積 및 所有者의 住所·姓名
2. 土地利用豫定の 概要
3. 工事費概算額
4. 豫定補助率
5. 土地代價豫定額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할 때에는 告示와 동시에 土地所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 11 條 (開墾豫定地の 使用制限) 前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土地에 대하여는 許可官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거나 工作物의 設置, 植樹 기타 施設物을 設置할 수 없다.

第 3 章 開 墾 許 可

第 12 條 (開墾許可申請) 開墾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開墾許可申請書를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13 條 (開墾許可) ① 許可官廳은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墾許可申請書를 受理한 때에는 申請者의 事業計劃 및 資格과 能力을 審査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掲기한 條件을 붙여 開墾을 許可하여야 한다.

1. 開墾豫定面積 및 用途
2. 開墾의 着手 및 竣工 期日
3. 土地賣渡豫定價格 (國有地에 限한다).
4. 工事費 豫定額 및 補助率
5. 기타 필요한 事項

②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市의 行政區域안에 있어서의 許可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制限할 수 있다.

第 14 條 (開墾許可의 順位) 許可官廳이 第 10 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開墾豫定地에 대하여 開墾을 許可할 때에는 다음 順位에 의한다.

1. 土地所有者 또는 土地所有者의 同意를 받은 者로서 土地所有者가 第 10 條의 規定에 의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 日이내에 申請한 者
2. 이 法 施行당시 國公有未墾地의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받고 계속 사용중인 者
3. 耕作地가 5 反步미만인 農家 및 政府計劃에 의하여 定着하기로된 農家
4. 기타 開墾의 能力이 있는 者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開墾許可申請者로서 同順位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許可한다.

第 15 條 (土地所有者의 看倣) 다음에 계기한 者는 所有權登記未畢중이라도 開墾許可에 있어서는 이를 土地의 所有者로 본다.

1. 農地改革法에 의하여 農地의 分配를 받은 者
2. 國有財産法에 의하여 土地의 拂下 또는 讓與를 받은 者
3. 歸屬財産處理法에 의하여 土地의 拂下를 받은 者

第 16 條 (他人所有地의 開墾後 分配) ① 第 10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墾豫定地로 告示된 他人所有土地에 대한 開墾許可를 받은者가 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10 分의 5 내지 7, 土地所有者가 10 分의 3 내지 5의 比率에 의하여 開墾으로 造成된 農耕地를 分配한다.

② 土地所有者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配받을 農地에 갈음하여 代價를 받고자 할 때에는 第 10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開墾豫定地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45 日이내에 그 뜻을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 許可官廳이 土地所有者로부터 前項의 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事實을 開墾許可의 條件으로 붙여야 하며, 開墾許可를 받은 者는 開墾竣工認可日이전에 土地所有者에게 그 代價를 一時로 支給하여야 한다.

④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分配土地의 位置 및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代價에 관하여는 土地所有者와 開墾許可를 받은 者가 協議하여 決定한다. 이 경우에 그 協議가 成立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開墾委員會가 이를 裁決한다.

⑤ 前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開墾委員會의 裁決에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裁決書의 正本이 送達된 날로부터 1 月이내에 上級開墾委員會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中央開墾委員會의 裁決에 대한 異議에 관하여는 中央開墾委員會에 申請할 수 있다.

⑥ 前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裁決書의 正本이 送達된 날로부터 1 月이내에 行政訴訟를 提起할 수 있다.

第 17 條 (許可의 讓渡·相續·資格) ① 開墾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官廳의 許可없이 他人에게 그 權利를 讓渡할 수 없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官廳의 許可는 開墾許可를 받은 者가 開墾할 能力을 喪失하였거나 기타 不可避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事由가 있을 경우에 限하여야 한다.

③ 開墾許可를 받은 者의 權利는 이를 相續할 수 있다.

第 18 條 (開墾竣工認可) ① 第 13 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墾許可를 받은 者가 工事を 竣工한 때에는 竣工日로부터 30 日이내에 許可官廳에 竣工認可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申請書를 受理한 許可官廳은 지체없이 竣工檢査를 實施하고, 所定の 開墾이 完了

된 때에는 竣工認可를 하여야 한다.

第 19 條 (許可의 取消) ① 許可官廳은 開墾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開墾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開墾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3. 詐僞 기타 不正한 手段으로 許可를 받은 때
4. 開墾許可를 받은 者가 竣工期日을 1次 延期받고도 그 期間內에 竣工하지 못한 때 다만, 天災地變으로 인하여 그 期間內에 竣工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開墾許可를 받은 者는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때에는 당해 地上에 設置한 土石과 施設物을 除去하고, 原狀으로 回復하거나 原狀回復을 하지 않으므로 인한 被害額을 補償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官廳이 原狀으로 回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前項但書의 경우에 許可官廳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土石과 施設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償으로 國有로 編入할 수 있다.

第 4 章 國有地의 賣渡

第 20 條 (國有土地의 賣渡) 農林部長官은 第 18 條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認可를 한 國有土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竣工認可를 받은 者에게 賣渡하고, 買收者에게 賣渡證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第 21 條 (國有土地의 代價)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賣渡한 國有土地의 代價는 告示日現在의 時價에 의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許可官廳이 決定한다.

第 22 條 (國有土地代價의 償還) ① 國有土地代價는 賣渡한 翌年에서 5年이 경과된 때로부터 5年間 均分償還하여야 한다. 다만, 買收者의 希望에 의하여 期間을 短縮하여 償還하거나 許可官廳의 承認을 받아 償還期間 中에 年賦額을 增減하여 償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農林部長官은 賣渡한 國有土地의 소속 會計가 다른 경우에는 그 償還金을 收納하여 國有財産法 第 14 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代價로서 그 償還金을 移管전 소속 會計에 納入하여야 한다.

第 23 條 (償還不履行에 대한 措置) ① 第 20 條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를 買收한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償還金을 納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國稅徵收法중 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徵收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할 때에는 그 土地를 買收한 者의 所有로 看做하여 處分할 수 있다.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償還期間內에 賣渡한 土地를 公賣하여도 賣却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土地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한 賣渡를 取消할 수 있다.

第 5 章 雜 則

第 24 條 (所有權移轉登記) ① 他人所有未墾地를 開墾하여 竣工認可를 받은 者가 第 16 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耕地를 分配받았거나 그 代價를 支給한 때에는 당해 農耕地에 관하여 單獨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에 있어서는 農耕地를 分配하였거나 그 代價를 支給하였다는 許可官廳의 確認書로서 登記申請에 필요한 登記原因證書와 登記畢證에 갈음할 수 있다.

第 25 條 (開墾에 관한 監督) 許可官廳은 이 法에 의하여 開墾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開墾竣工을 위한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第 26 條 (開墾事業의 造成 및 管理) ① 政府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開墾事業에 필요한 工事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 農林部長官은 農耕地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機關과 協議하여 人力·裝備등의 支援을 할 수 있다.

③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農耕地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중에는 許可官廳의 許可없이 他目的에 사용할 수 없다.

第 27 條 (補助金交付의 停止·返還) 前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を 받은 者가 補助金交付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補助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交付를 停止하거나 交付한 補助金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

第 28 條 (再許可申請의 금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開墾許可의 取消를 받은 者는 당해 土地에 대하여 開墾許可를 다시 申請하지 못한다.

第 29 條 (國有未墾地의 管理)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開墾이 許可되었거나 開墾豫定地로 決定告示된 國有未墾地는 農林部長官이 이를 管理한다.

第 30 條 (公簿의 無償閱覽) 開墾業務處理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公務員 또는 土地改良組合聯合會 職員은 所管 登記所·區·市·郡 기타 機關에 備置된 公簿를 無償으로 閱覽 또는 複寫할 수 있다.

第 31 條 (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11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開墾許可를 받고 開墾事業을 施行할 경우에 정당한 理由없이 이를 妨害한 者
3. 開墾許可를 받고 정당한 理由없이 開墾豫定工程을 達成하지 못하거나 未墾地를 放置 또는 他目的에 사용한 者

②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19條第2項本文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開墾事業의 施行에 關하여 設置된 標識를 移轉·汚損 또는 除去한 者

③ 第1項第3號 또는 前項第2號에 해당하는 者가 不當하게 取得한 利得이 있는 때에는 그 取得額의 倍額에 해당하는 罰金을 科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32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經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律) 開墾促進法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措置) 開墾促進法에 의하여 行하여진 處分은 이 法에 의한 處分으로 본다. 다만, 開墾促進法 第14條 내지 第19條, 第21條 내지 第26條 및 第28條의 3의 規定에 의한 事項에 關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못한다.

第7條(類似名稱使用禁止)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公社가 아닌 者는 農漁村開發公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8條(任員) ①公社에 社長·副社長 각 1人和 理事 5 이내 및 監査 1 人을 둔다.

②社長은 農林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副社長 및 理事는 農林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社長이 任命하며, 監事는 農林部長官과 協議하여 財務部長官이 任命한다.

第9條(任員의 任期) ①社長·副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3 年, 監事의 任期는 2 年으로 한다.

②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0條(任員의 職務) ①社長은 公社를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副社長은 社長을 補佐하며 社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를 分掌하며, 社長·副社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④監事는 公社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11條(任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產者·限定治產者와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以上の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 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法令에 의하여 懲戒免職의 處分을 받은 후 2 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12條(任員의 身分) 公社의 任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3條(任員의 兼職制限) 公社의 任員은 農林部長官의 承認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第14條(任職員의 競業禁止) 公社의 任職員은 公社의 事業과 競業 關係에 있는 事業을 經營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第15條(理事會) ①公社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決議하게 하기 위하여 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社長·副社長 및 理事로써 構成한다.

③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會의 議事は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員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⑤議長은 決議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⑥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⑦農業協同組合 中央會會長과 水産業協同組合 中央會會長은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 16 條 (事業) ①公社는 第 1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1. 農水産物의 貯藏·처리 및 加工施設에 대한 投資·建設 및 運營.
2. 農水産物의 貯藏·처리 및 加工施設에 대한 內資 및 外資의 調達과 貸與 및 그 알선.
3. 農水産物의 貯藏·처리 및 加工에 대한 技術 및 經營指導와 外國技術의 導入 및 그 알선.
4. 農水産物의 貯藏·처리 및 加工製品에 대한 市場開拓·輸出 및 그 알선과 原資材購入 및 輸入 供給.
5. 農水産物의 貯藏·처리 및 加工製品에 대한 品質管理.
6. 前各號의 附帶業務 및 政府委囑事業.

②前項의 農水産物의 貯藏·처리 및 加工施設의 種類와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7 條 (業務의 監督등) ①農林部長官은 公社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前項의 檢査의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實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公社의 社長에게 그 是正을 命하거나 任命權者에게 任員의 解任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社長에 대하여는 大統領에게 解任을 建議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된 行爲를 한 때.
2.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公社 運營에 顯著한 損失을 超來하게 한 때.

③財務部長官은 公社의 會計 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고 또는 是正을 農林部長官을 거쳐 公社의 社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第 18 條 (承認事項) 公社는 다음 各號의 事項에 대하여 農林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 2 號에 대한 承認은 財務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1. 事業計劃과 收支豫算의 編成 및 決算.
2. 貸與金利率의 決定.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의 取得 및 處分.
4. 任職員의 定員 및 報酬.

第 19 條 (社債) ①公社는 第 16 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에 소요되는 資金을 充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이 前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政府는 社債의 元利金の 償還에 대하여는 이를 保證할 수 있다.

④社債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0 條(補助金) 政府는 公社의 事業에 대하여 補助金を 交付할 수 있다.

第 21 條(損益金の處理) ①公社는 每事業年度마다 利益金이 생겼을 경우에는 前期損失金에 充당하고 殘餘利益金은 이를 全額積立한다.

②公社의 損失金은 事業年度 마다 前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써 이를 補填한다.

第 22 條(貸下) 公社는 財政資金運用法 第 10 條, 農業協同組合法 第 153 條第 2 項 및 水産業協同組合法 第 132 條第 2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로부터 資金을 貸下받을 수 있다.

第 23 條(解散) 公社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 24 條(罰則) 第 7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하여는 5 萬元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 25 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設立準備) ①農林部長官은 7 人이내의 設立委員會를 委囑하여 公社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한다.

②設立委員會는 定款을 作成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認可는 公證人의 定款認證의 效力을 가진다.

④設立委員會는 第 1 回の 資本金 納入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公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會는 公社의 社長이 任命된 때에는 지체없이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⑥設立委員會는 前項의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34) 林野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特別措置法(法律第 2,111 號, 1969. 5. 21)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印

1969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 일 권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조 시 형

第 1 條(目的) 이 法은 不動產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林野로서 이 法 施行當時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않은 林野를 簡略한 節次에

의하여登記하지 못한 取得者에게 登記하게 함으로써 山林行政의 效率的인 運營을 기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林野의 定義) 이 法에서 “林野”라 함은 山林法 第 2 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을 말한다.

第 3 條(排除規定) 林野로서 1960 年 1 月 1 日 前에 賣買·贈與·交換 등 기타 法律行爲로 인하여 事實上 讓渡된 것중 第 7 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것은 民法 第 10 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할 수 있다.

第 4 條(登記申請人)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林野의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로부터 다시 그 權利를 이어 받은 者 및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單獨으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 5 條(登記原因書類 등) 이 法에 의한 登記의 申請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登記原因證書와 登記畢證은 다음 各號의 書類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林野所在地의 里·洞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以上 居住하고 있는 者로서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 委囑하는 3 人의 保證書.
2.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당해 林野에 관하여 發행한 確認書.

第 6 條(公告 및 確認書發給)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前條 第 2 號의 確認書發給申請을 接受한 때에는 50 日間 그 事實을 公告한 후 確認書を 發給한다.

第 7 條(異議와 調査 등) ①第 5 條第 2 號의 確認書發給에 異議가 있는 者는 前條의 公告期間中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서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區廳長·市長 또는 郡守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接受된 때에는 接受된 날로부터 30 日내에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의 眞僞를 調査 확인한 후 確認書を 發給하거나 申請을 棄却한다.

③異議申請이 棄却된 者는 民事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第 8 條(地籍異動申告) ①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 林野의 分割·合併등을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는 林野臺帳에 의한 名義人에 갈음하여 이를 申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告를 할 때에는 第 5 條第 2 號의 文書を 添附하여야 한다.

第 9 條(所有權以外的 權利申告 등) ①이 法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林野에 대하여 所有權이외의 權利를 登記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50 日내에 管轄登記所에 文書로서 그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簿에 存續하던 所有權 이외의 權利는 消滅하며 登記公務員은 이를 職權抹消하여야 한다.

第 10 條(林野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를 하지 아니한 林野로서 林野臺帳名義人으

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 5 條 내지 第 7 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添附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林野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林野臺帳의 名義人이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林野臺帳謄本을 添附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 11 條(登記期間) 이 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林野의 登記를 하지 못한 取得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 年내에 登記하여야 한다.

第 12 條(手數料免除) ①이 法에 의한 林野의 登記에 隨伴하는 臺帳謄本請求·公簿閱覽 등 에 관한 手數料는 다른 法令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

②이 法에 의한 登記에 所要되는 司法書上의 報酬는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第 13 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는 3 萬원 이상의 罰金 또는 1 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1. 詐僞의 方法으로 第 5 條의 文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 5 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前 各號에 揭記한 文書를 行使한 者.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과 懲役刑은 併科할 수 있다.

第 14 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30 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所有權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中인 林野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同前) 不動產投機抑制에 관한 特別措置稅法에 의한 課稅對象地域內의 林野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政府의 計劃에 의한 高速道路建設을 위한 制限地域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國立種畜場管理特別會計法(法律第 2,178 號, 1970. 1. 1)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7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일 권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조 시 형

第1條(目的) 이 법은 國立種畜場을 效果的으로 運營·管理하기 爲하여 國立種畜場管理特別會計(이하 “會計”라 한다)를 設置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管理機關) 이 會計는 農林部長官이 管理한다.

第3條(財産) 이 會計의 財産은 國立種畜場의 土地·建物·種畜 및 그 產物과 기타 財産 등으로 한다.

第4條(歲入) 이 會計는 種畜의 賣却代金·他會計로부터 轉入金·借入金·기타 收入을 歲入으로 한다.

第5條(歲出) 이 會計는 第3條에 規定된 財産을 運營·管理하기 爲하여 필요한 經費와 借入金의 元利金の 償還金を 歲出로 한다.

第6條(借入) ①이 會計는 種畜 또는 裝備를 導入하거나 施設設備을 爲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會議의 議決을 얻은 金額의 범위안에서 이 會計의 負擔으로 長期借入을 할 수 있다.

②이 會計의 運營에 있어서 支給할 資金이 不足할 때에는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금은 當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7條(剩餘金の處理) 이 會計의 決算上의 剩餘金은 그 翌年度의 歲入에 移入한다.

第8條(豫備費) 이 會計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相當하기 위하여 豫備費를 計上할 수 있다.

第9條(施行令) 이 법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법은 1970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施行當時 農村振興廳이 管掌하던 一般會計의 種畜場所管 財産·債權 및 債務는 이 會計가 이를 承繼한다.

36) 山林開發法 (法律第 2,432 號, 1972. 12. 30)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개발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정 희 閣

197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 종 필
국무위원 농 림 부 장 관 김 보 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을 증강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산림”이라 함은 산림법상의 산림을 말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농업지역·공업지역과 개간촉진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②이 법에서 “산림개발”이라 함은 산림지역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조림 및 그 사후관리, 임도 개설과 임산물 생산.
2. 농경지·사방지 및 초지조성대상지의 지정.
3.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개발대상지의 지정.

제3조(산림개발심의회) ①산림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에 있어서 산림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승계인에 대한 효력)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죽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산림개발지역의 지정

제6조(산림개발권) 산림청장은 산림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다음과 같이 3종의 산림개발권(이하 “개발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산림개발 장기계획을 작성·공고한다.

1. 용재림 개발권 주로 오지대로서 용재림을 집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대.
2. 풍치림 개발권 주로 고속도로연변·공원·명승지·도시주변녹지등으로서 풍치조성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대.
3. 농용림 개발권 주로 연료림·유실림등의 농용림으로서 단기수확이 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에 이용할 수 있는 지대.

제7조(개발지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산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개발지역(이하 “개발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개발지역은 일반개발지역과 특수개발지역으로 구분한다.

③일반개발지역은 개발권안의 일정한 산림을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효율적으

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④특수개발지역은 개발권안의 일정한 산림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영림공사 또는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⑤산림청장은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미 조림이 된 산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서 제외하거나 그 산림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상을 하게 할 수 있다.

⑥산림청장은 개발권안의 일정한 산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특수개발지역 지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지정을 할 수 있다.

제 8 조 (개발지역의 용도의 지정) 산림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지이용구분조사 또는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림지·농경지·사방지·초지 등 용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개발지역의 용도의 제한) 개발지역은 산림청장의 허가없이 지정된 용도외로 이용할 수 없다.

제 10 조 (개발지역의 용도의 변경) 산림청장은 국가시책상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개발지역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개발지역의 지정의 해제) 산림청장은 개발지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개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2 조 (고시와 통지) ①산림청장이 이 법에 의하여 개발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산림소재지의 지목·지번·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2. 개발지역의 용도.
3. 개발지역의 종류.
4. 개발사업시행 신고기간(일반개발지역에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개발사업 착수시기(일반개발지역에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개발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고시와 통지는 개발사업 착수시기로부터 늦어도 1년전에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용도지정의 통보)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조성 이외의 용도로 지정된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그 용도에 따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지정된 용도에 따른 개발의 실적이 없을 때에는 산림청장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4 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산림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지역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기타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위에 있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일반개발지역에서의 사업시행

제 15 조 (산림소유자의 임무) ①일반개발지역안의 산림의 소유자는 제 12조제 1항제 4호의 기간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림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 12조제 1항제 5호의 착수시기로부터 1년내에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기간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법에 의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

제 16 조 (대집행자에 대한 비용변상) ①산림소유자는 전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자에게 조림이 완료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산림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림소유자는 당해 사업을 대집행한 자와 산림을 분할취득(이하 “분수”라 한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조림을 한 산림을 제 19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으로 관리한 때 또한 같다.

③제 15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가 개발사업을 대행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분수율) ①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의 비율(이하 “분수율”이라 한다)은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산물 전량의 1 할(유실수와 관상수의 경우는 2 할), 당해 사업을 대집행한 자에 대하여는 산물 전량의 9 할(유실수와 관상수의 경우는 8 할)로 한다. 다만, 전조 제 2 항 후단의 경우의 분수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8 조 (법정지상권) 제 16 조제 2 항에 규정하는 산림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가 당해 사업을 대집행한 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 19 조 (개발지역의 사후관리) ①일반개발지역에 조림을 한 자는 그 산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조림을 한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할 때에는 제 15 조제 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20 조 (대집행자의 교체) ①산림청장은 제 15 조제 2 항 또는 전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는 자(이하 “대집행자”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발사업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집행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자를 교체한 때에는 새로 대집행자가 된 자는 그 전의 대집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체전의 사업시행에 대한 분수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산림개발대집행확인증서)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대집행이 종료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확인하게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소유자와 대집행자에게 산림개발대집행확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경영의 환원) ①산림소유자는 대집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대집행한 사업을 환원시켜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

②산림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게 된 때에는 대집행자는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전조의 산림개발대집행확인증서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③제 19 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산림소유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특수개발지역에서의 사업시행

제 23 조 (산림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원칙) ①특수개발지역에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이하 “경영권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영림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적 및 경제적 능력을 갖춘자로서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특수개발지역에 있어서는 산림소유자와 경영권자는 제 17 조에 규정하는 분수율에 의하여 그 산물을 분수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산림에 관하여 산림소유자가 경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산림청장은 영림공사 이외의 경영권자가 당해 개발사업을 불성실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을 영림공사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영림공사는 승계전의 경영권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계전의 사업시행에 대한 분수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산림경영증서) 특수개발지역의 경영권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지, 사업량, 수확기의 산물배당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산림경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지원

제 25 조 (자금지원) ①정부는 개발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상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당해 임야와 임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임목의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제 26 조 (조세 및 수수료의 감면)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개발하는 산림에 대하여 조세 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②이 법 시행에 필요한 공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공부의 열람등에 관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 6 장 영림공사

제 27 조 (설립목적) 이 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시범적으로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영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 28 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 29 조 (사무소) 공사는 주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는 곳에 두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30 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 31 조 (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200 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한다.

②전항의 자본금의 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제 32 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본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 33 조 (등 기)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34 조 (임 원) ①공사에 사장·부사장 각 1인, 이사 3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산림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제청으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감사는 산림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35 조 (임 원 의 임 기) 사장·부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6 조 (임 원 의 직 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

제 37 조 (임 원 의 자 격 과 결 격 사 유) ①임원의 과반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학 전공하였거나 산림행정 또는 임업경영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 38 조 (임 원 등 의 책 임) 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39 조 (임 원 의 겸 직 제 한) 공사의 임원은 산림청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40 조 (이 사 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부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 의 의사는 제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41 조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과 기타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산림경영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조립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5. 사채와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42 조 (사업) 공사는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특수개발지역에 대한 산림경영.
2. 산림의 매수와 그 경영.
3. 양여 또는 대부를 받은 국유림의 경영.
4. 묘목 및 임산물의 생산과 그 가공 및 처분.
5. 임업자재 및 가공시설재의 수입과 임산물 및 가공산물의 수출.
6.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7. 전 각호의 사업의 부대사업.
8. 기타 산림경영상 필요로 하는 사업.

제 43 조 (업무의 감독) ①산림청장은 공사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전항의 감사의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점을 명하거나 임명권자에게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때.

제 44 조 (승인사항)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임원 및 직원의 정원과 보수.

제 45 조 (조립증서) ①공사가 경영하는 산림에 조립을 위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조립할 지구를 지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한 자가 있을 때에는 투자된 금액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조립하고, 조립증서를 투자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조립증서에는 투자된 금액에 공사가 보조한 금액을 가산한 액면금액 조립지, 조

림량, 수확기의 산물배당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46 조 (사채) ①공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47 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금이 생기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의 사업확장 준비금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제 48 조 (예산과 회계) 공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제 49 조 (외자도입) ①공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제기관 또는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기자재 종묘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외자도입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그 이자율 원금과 이자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0 조 (차입금) ①공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산림개발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1 조 (상환계획) ①공사는 차입금의 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2 조 (위탁림의 경영) ①공사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로부터 그 산림의 경영을 위탁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와 공사는 제 17조에 규정하는 분수율에 의하여 그 산물을 분수한다.

제 7 장 산림개발기금

제 53 조 (산림개발기금)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융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전항의 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성한다.

제 54 조 (기금관장기관) 기금은 산림청장이 관리 운용한다.

제 55 조 (기금운용계획) 산림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56 조 (기금의 용도·이율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기에 충당하기 위하여 용자를 할 수 있다.

1. 조립에 필요한 자금.
2. 육림에 필요한 자금.
3. 종묘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
4. 임도의 시설과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
5. 산림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6. 목재의 생산과 수집에 필요한 자금.
7. 산림부산물의 수집에 필요한 자금.
8. 기타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②전항의 용자에 대한 이자율·거치기간·상환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7 조 (기금관리·운용규정)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58 조 (조립명령) ①산림청장은 산림개발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외국에서 수입하는 원목을 포함한다)을 대량으로 벌채·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스스로 조립을 하거나, 공사로부터 조립증서를 인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립의 방법 및 기준과 조립증서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9 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및 보상) ①개발지역안에서 임도를 개설하거나, 전주를 개설하거나, 저수지 또는 수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과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 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60 조 (보험의 가입) 개발사업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자 또는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산림과 조립증서에 의하여 타인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산림을 산림재해보험에 붙여야 한다.

제 61 조 (개발사업을 위한 산림수용) ①산림의 위치·면적 또는 개발능력에 비추어 산림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대집행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국가·영림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적 및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위치 또는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 62 조 (사업시행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 63 조 (개발지역 출입의 제한등) 이 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개발하는 산림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묘주와 산림소유자는 산림개발 및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

제 6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산림개발 기타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산림법 제 9 조 및 제 10 조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개발사업은 산림법에 의하여 인가된 영림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영림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된 산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5 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장 벌 칙

제 66 조 (벌칙) ①제 62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 9 조 또는 제 14 조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산림청장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 1 회의 자본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3 조 (분수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개발지역안의 산림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산림소유자와 산림계 또는 산림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분수계약에 의한 산림계 또는 산림조합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공사 또는 당해 경영권자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공사 또는 당해 경영권자는 당해 산림계 또는 산림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계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분수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발지역 고시등의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정부회계년도 및 그 다음 연도의 개발사업에 관한 고시와 통지에 있어서는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조 (대집행의 특례) 전조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산림소유자가 제 12 조제 1 항제 4 호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제 5 호의 시기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청장은 제 15 조제 2 항의 기간에 불구하고 대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37) 農水産物都賣市場法 (法律 2,483 號 · 1973. 2. 6)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정 회 ㉠

1973 년 2 월 6 일

국 무 총 리 김 종 필

국 무 위 원 김 보 현
농림부장관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도시주민에게 식료품으로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수산물”이라 함은 채소류, 과일류, 어류, 패개류, 해조류 조수육류, 난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항의 농수산물을 도매거래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부류”라 함은 청과부류, 축산부류와 수산부류를 말한다.

제 3 조 (개설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지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매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5 조 (개설허가) ① 시가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은 부류별로 1시 1시장을 원칙으로 하되,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분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전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개설장소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을 때에는 그 시장인지에 관하여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허가기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매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1. 그 개설지역안에 있어서 농수산물 도매의 중심으로 적절한 장소이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업무규정의 내용이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3.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그 실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제 7 조 (업무규정과 사업계획서) ①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의 위치·면적 및 거래물품.
2. 개장의 기일 및 시간
3. 도매시장을 개설한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수할 사용료·보관료 및 수수료
4.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매매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 5 조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종류·규모·배치 및 구조.
2. 개설에 요하는 비용과 그 재원 및 상환계획
3. 거래품목별 공급대상인구 및 거래수량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개설자가 업무규정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도매시장업무의 대행) ①개설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법인(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겸업의 제한) ①대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지역안에서 도매시장업무와 관련되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②대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지역밖에서 도매시장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유사도매행위의 금지) ①개설자 또는 대행자가 아니고는 도매시장의 개설지역안에서 그 거래물품에 대한 도매시장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당해 도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행하는 판매사업에 관하여는 예외로 하되, 동일지역에서 그 업무가 현저하게 경합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도매시장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도매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의 폐쇄 또는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③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지역안에서 그 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자의 상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매시장기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11 조 (손실보상) 개설자는 전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 또는 폐업을 당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매시장의 개설지역안에서 전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도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대행자의 보증금 납부) 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자가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3 조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 ①대행자가 개설자에게 납부할 사용료에 관하여는 개설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한 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대행자에게 판매 또는 판매위탁을 한 자는 그 판매 또는 판매위탁으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는 전조의 보증금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자의 다음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수수료징수의 제한) 개설자 또는 대행자는 도매시장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이를 수수하지 못한다.

제 15 조 (시설기금) ①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개설자가 도매시장에서 수수하는 사용료의 전부와 수수료의 일부는 반드시 시설개선을 위하여 재 투자하여야 한다.

③시설기금의 적립 및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 조 (재정지원) 정부는 도매시장에서의 유통개선과 그 육성을 위하여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매매의 방법) 도매시장에서 행하는 매매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중매업무의 허가) ①도매시장에서는 거래품목의 부류마다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고는 중매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9 조 (매매참가인의 승인) ①전조의 허가를 받은 중매업자 이외에 도매시장에서의 도매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 20 조 (경매사의 등록) ①도매시장에서 행하는 도매의 경매사는 개설자의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경매사의 자격·복무·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그 자격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 21 조 (질서유지)** ①누구든지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지 못한다.
 ②개설자 또는 대행자는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 22 조 (규격 및 가격조정)** ①개설자는 유통체계의 확립과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물품의 규격이 통일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개설자는 도매시장이 설치되어 있는 개설지역 안에서는 1물 1가의 원칙에 의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 23 조 (입하수량등의 공표)** 개설자 또는 대행자는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품목의 입하 수량 및 가격 등을 매일 도매시장안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 24 조 (보고의 의무)** ①개설자 또는 대행자는 연 4회 분기별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자산액·거래량·거래액·매매가격 기타 그 업무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행자는 개설자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설자 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시로 전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 25 조 (감독명령)** 농림부장관은 도매시장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설자 또는 대행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구조 및 설비 또는 업무 규정의 변경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 26 조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①개설자는 대행자가 업무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개설자 또는 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27 조 (검사)** ①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설자 또는 대행자의 업무와 이에 관한 장부·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 28 조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문위원회)** ①도매시장 업무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수산물도매시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9 조 (도매시장 협회)** ①대행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10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전 각조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0 조 (폐시의 허가 및 신고) ①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행자가 도매업무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그 30일전에 개설자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2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 10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도매행위를 한 자
3.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 33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9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자
2. 제 14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를 수수한 자.
3. 제 24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 34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방해한 자.
2.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 30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을 폐쇄하거나 업무를 폐업한 자

제 35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3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 36 조 (과태료) 제 23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37 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되어 있는 중앙도매시장은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대행자로 본다.
- ④(경과조치) 제 2 항의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업무규정·사업계획서와 시설·재산 및 업무대행상황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경과조치)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대행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 6 조제 1 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기간내에 이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⑥(법령의 폐지) 중앙도매시장법은 이를 폐지한다.

나. 1988년 이후 폐지된 법률

1) 농지개혁법

[1949·6·21, 법률 제3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 기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황에 의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당해 물리농지에 부속한다.

제3조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옥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제4조 본법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비를 관장한다. 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군도, 읍, 면, 동, 리에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을 설치한다.

제 2 장 취득과 보상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흡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를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유를 인허한다.

(다) 본 제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숙근성 작물 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 재배이외의 농지

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 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 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 등 특수지역에는 예외로 한다.
2.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묘 기타 숙근성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 이내의 농지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 단, 문교재단의 소유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6. 학술, 연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 인허 범위내의 농지
7.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일 위에 2판도이내의 농지
8. 미완성된 개간급 간척농지 단, 기완성 부분은 특별보상으로 매수 할 수 있다.
9. 본법실시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 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단서에 준한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제7호급 제9호의 비매수 토지를 경유할 경우에는 기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단, 본법 실시 후 신규로 기경작 농지를 제2호의 숙근성 작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제7조 매수농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 각 소재지 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좌와 여히 정한다.

1. 각 시읍면별로 각 지목별 표준중급 농지를 선정하여 비의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당해 토지임대차가격과 비교하여 당해 시읍면의 공통배율을 정하고 비에 의하여 동지구내 각 지번 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2. 농지의 상황변천 기타로 인하여 종래의 생산량 또는 임대차가격에 의거하기 곤란한 농지는 인근유사농지에 준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정한다.
3. 과수원, 종묘포, 상묘 기타 숙근성 작물지는 시가에 의하여 별도로 사정한다.
4. 개간, 간척 기타 특수지에 대하여는 기실정을 심사하여 특별보상액을 첨가 작성한다.
5. 농지의 분배를 받은 빈 농가와 농지를 정부에 매수 당한 소지주에게 정부는 그 정상에 의하여 가격 3할 이내의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전 각 호에서 정한 보상액은 경히 동일피상자의 총면적급가금고에 의한 체감율을 적용한다. 단,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급 후생재단에 대한 보상에는 본 항을 적용치 않고 또한 본 항 체감액에 해당한 자본세액을 면제한다.

제8조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 유통시 증권으로 소유명의

자 또는 기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1. 증권액면은 전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환산한 당해 연도 당해 농지 주산물수량으로 표시한다.
2. 증권의 보상은 5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액면농산물의 결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단, 보상액의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재단에 대한 보상은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매수농지에 설정한 담보권부급기타채무는 매수와 동시에 정부가 비를 인수하되 보상액한도내에서 제8조 방법에 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제10조 본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 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기타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유조한 사업에 우선 참여케 알선 할 수 있다.

제 3 장 분배와 상환

제11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1.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급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家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 말 항은 전항면적에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에 관하여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급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당해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5분을 5년간 납입케 한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여 매년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제 14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소유권이전등기세, 부동산취득세 및 이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 4 장 보존과 관리

제 15조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제 16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좌의 행위를 제한한다.

1. 매매, 증여기타소유권의 처분
2.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제 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조 농지의 분배를 받은 농가가 상환금, 조세, 수세 기타 정부 또는 공인단체가 대부 또는 인수한 채무를 지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반환시키기 위하여 당해 농지소관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재판소는 2번 상급재판소까지 매수하고 미변제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8조에 준하여 농가에게 반환한다.

1. 상환미완료한 때에는 기상환액의 75%로 한다.
2. 입모작물이 있는 대급 농가가 자력으로 실시한 개량,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별도 심사 보상한다.

제 19조 상환미완료한 농가가 절가, 전업, 이주 등으로 인하여 이농케 되거나 또는 경작능력의 변동 등으로 아린 하여 경작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려 할 때에는 소재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는 좌의 가격급 제8조 방법에 의하여 비를 매수한다.

1. 기상환액전액으로 한다.
2. 입모급개량, 시설 등을 심사실비금액을 첨가 보상한다.
3.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급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제20조 전 2조 또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21조 정부는 농업경영의 능률화, 합리화를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 분합, 정리, 용도변경 등 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민은 전항의 조치를 소재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 5 장 조 정 기 타

제22조 본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소재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재사결정에 대하여서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까지에 항고할 수 있다. 전2항의 이의 또는 신청기간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익일로부터 20일 이내라야 한다.

제23조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받은 위원회는 부군도 이하 위원회에 있어서는 1주일 이내에 시도위원회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를 소삼케하여 심사를 개시하고 심사가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재사에 관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각급 위원회는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관하여 전항의 시일을 초과할 때에는 이의 또는 항고자의 주장을 승인한 것이 된다.

제24조 이해관계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재판소는 제18조제2항과 같다.

1.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2. 사건관여 위원 중 불공평한 사실이 있을 때
3. 기타 공정한 결정을 저해한 사정이 있을 때

제25조 본법 시행 후 비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6 장 부 칙

제26조 본법 제2조제2항의 부속지급 기타 각 조항에 관하여 본법 시행 상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7조 본법 통과일 이후의 좌기 행위를 금지한다. 단, 본법 시행 상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1.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와 증여. 단, 교육, 자선 기타 공공단체에 대한 증여는 예외로 한다.
2. 소작권이 이동 및 박탈

제28조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173호는 본법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동 령에 의하여도 기허 처분된 농지에 대하여는 본 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29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

[1950·3·10, 법률 제108호]

농지개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에 농지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 중 "취학 등"을 "취학 기타 부득이한"으로, "도지사"를 "시장, 군수"로 개 정한다.

제6조제1항 제2호 중 "숙근성 작물"을 "다년성 식물"로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써 제2호의 3정보미만의 농 지와 제7호 내지 제9호의 농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면적은 전항 제1호 또는 제20조제1항 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묘, 종묘지 또는 기 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포와 제2조제2항의 부속시설은 시가에 의하여 별도로 사정한 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는 피상자 또는 그 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다. 이 지가증권을 기업자금이 사용할 때에는 정 부는 용자의 보증을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농지는 점수제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고 매년정부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 등을 면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제5조 제1항제2호(나)의 경우 정부가 본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인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1호, 제2호를 삭제한다. 전항에 의하여 농지를 반환케 할 때에는 정부는 농지반환자에 대하여 기상환액은 100분의 75이상,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1호, 제2호를 삭제한다.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이 농가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상환액의 전액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지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본법의 공포일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본법의 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통과"를 "공포"로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남조선과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본법 제6조 제1항제1호의 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

[1960·10·13, 법률 제561호]

농지개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당해 몽리농지

에 부속한다.

(가) 농막, 추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장

(나) 지소, 농도, 수로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또는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제2항(가)호 시설에 대하여서는 시가에 의하여 별도로 사정한다.

제2조제2항(나)호 시설 중 보상미완료 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준하여 보상액을 사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 조 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1, 2, 3년차 분 상환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되 최종 상환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농지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2. 내지 5. 생략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 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되어야 한다.

제4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2) 농업창고업법

[1961·12·30, 법률 제906호]

제1조 (목적) 본법은 농업창고를 널리 농민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며 농업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권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본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농업창고업자의 정의) 본법에서 농업창고업자라 함은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물건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지정물건을 본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창고에 보관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농업창고업자의 자격) 군 농업협동조합(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농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아니면 농업창고업자가 되지 못한다.

제5조 (인가) ① 농업창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업무규정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농업창고업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업무규정에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창고의 구조, 규격과 보관료의 요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5조).

제6조 (임치물의 보관과 혼합보관) 농업창고업자는 업무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치물을 보관하며 종류와 품위의 동일한 임치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7조 (임치물의 보관기간) ①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한 날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② 농업창고업자는 임치물의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임치자는 갱신당시에 농업을 영위하는 자나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물건을 소유한 자라야 한다.

③ 임치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있을 때에도 농업창고업자는 임치물의 보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사업) 농업창고업자는 업무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산물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외에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임치물의 조제개장포장
2. 임치물의 운송

- 제9조 (창고증권) ①** 농업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물에 대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상법 제627조제2항과 제628조의 규정은 전항의 창고증권에 이를 준용한다(상법 제627조, 상법 제628조)
- 제10조 (동전) ①** 농업창고업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에는 농업창고증권의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농업창고업자가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에는 농업창고증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지 못한다.
- 제11조 (혼합보관의 창고증권)** 혼합보관의 경우에는 농업창고업자는 창고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 (준용규정)** 상법 제543조 내지 제589조, 제606조 내지 제619조와 제624조 내지 제626조의 규정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창고업자에 준용한다(상법 제543조 내지 589조, 상법 제606조 내지 619조, 상법 제624조, 상법 제625조, 상법 제626조)
- 제13조 (손해배상의 책임)** 농업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임치물의 조제, 개장 또는 포장에 있어서 상당한 감독과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4조 (행정명령)** 농림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지정하는 농산물 또는 기타 물건의 임치를 받게 하고 임치물의 검사 기타의 행위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5조).
- 제15조 (보고와 검사 등)** 농림부장관은 농업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며 서류, 장부 또는 업무집행이나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기타 감독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5조).
- 제16조 (사업의 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 농림부장관은 농업창고업자의 업무집행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농업창고업자의 행위가 법령이나 업무규정에 위반할 때 또는 그 행위가 공익을 해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5조).
- 제17조 (연합농업창고업자의 정의)** 본법에서 연합농업창고업자라 함은 농업창고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농업창고에 보관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18조 (연합농업창고업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지부가 아니면 연합농업창고업자가 되지 못한다.

제19조 (임치물의 보관과 기간) ① 연합농업창고업자는 다른 농업창고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을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연합농업창고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농업창고업자가 보관할 물건으로서 농업창고업자에게 임치하지 아니한 것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연합농업창고업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연합농업창고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제20조 (농업창고업자의 권리의무의 이전 등) 농업창고업자가 임치인 또는 농업창고증권의 소지인의 승낙을 얻어 그 임치물을 연합농업창고업자에게 임치 할 경우에는 그 임치에 대하여 발생한 농업창고업자의 권리의무는 당초의 임치인 또는 농업창고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한다.

제21조 (농업창고증권의 배서의 금지 등) ① 농업창고업자가 그 임치물을 연합농업창고업자에게 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임치물에 대한 농업창고증권이 있을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권의 배서를 금지한다.

② 농업창고업자는 전항의 증권의 배서를 금지하지 아니하고는 임치물을 연합농업창고업자에게 임치하지 못한다.

제22조 (연합농업창고증권의 교부요건) 연합농업창고업자는 그 임치물에 대한 농업창고증권이 없다는 농업창고업자의 증명서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서를 금지 당한 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치물에 대한 연합농업창고증권을 교부하지 못한다. 단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연합농업창고업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 ① 연합농업창고업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에는 연합농업창고증권의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연합농업창고업자가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에는 연합농업창고증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지 못한다.

제24조 (준용규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연합농업창고업자가 그 임치물을 다른 농업창고업자에게 임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연합농업창고업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벌칙) 농업창고업자 또는 연합농업창고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명칭 중에 농업창고 또는 연합농업창고의 문자를 사용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동전) 제10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28조 (동전 농업창고업자 또는 연합농업창고업자인 법인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동전) 제26조와 제27조의 규정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행위를 한 이사, 취체역 기타 업무를 집행한 자에게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있어서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부 칙<1961.12.30 법906>

-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서기 1931년 제령 제14호 조선농업창고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창고업을 행하는 농업창고업자가 그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본법 시행의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

[1996·8·14, 법률 제5160호]

농업창고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및 농업창고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를 삭제한다.

3) 주요농작물종자법

[1962·1·15, 법률 제97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요농작물의 우량종자생산 및 그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산물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법에서 주요농작물이라 함은 수도, 대맥, 과맥, 소맥, 대두, 면화 및 각 령으로 정하는 기타 농작물을 말한다.

② 본법에서 우량종자라 함은 각종고유의 특성을 구비하고 계통적인 각급 채종단계를 거쳐 소정의 포장검사 및 실내검사에 합격된 종자를 말한다.

제3조 (우량종자의 생산) ① 본법에서 종자의 생산이라 함은 원원종,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을 말한다.

② 전항의 종자의 생산에 관한 계획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③ 원원종은 농사원장이, 원종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도지사가 생산하며 보급종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 및 도지사가 위탁생산 한다. 단 농사원장, 서울특별시시장 및 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원종 및 원종을 위탁 생산할 수 있다.

제4조 (포장지정) ① 농사원장, 서울특별시시장 및 도지사가 전조 제3항에 의하여 원원종, 원종 및 보급종을 위탁 생산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한 종자생산 계획면적 내에서 종자생산 포장을 지정(이하 지정포장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포장지정은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검사증표) ① 지정포장의 경영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경영하는 포장에 대하여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는 다시 실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검사에 합격된 종자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표식을 부쳐야 한다.

④ 검사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에 정한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종자심의회) ①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종자심의회를 둔다.

② 종자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급) 제5조의 합격종자가 아니면 종자갱신계획에 의한 종자로 보급시킬 수 없다.

제8조 (장려) 서울특별시 및 도지사는 생산자에 대하여 우량한 종자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조언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 정부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단기4255년 조선총감부령 제99호 수도채종담보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주요농작물종자법개정법률

[1975·4·4, 법률 제2751호]

주요농작물종자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의 생산·정선처리·판매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농작물"이라 함은 수도·육도·대맥·과맥·소맥·콩·감자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2. "우량종자"라 함은 원원종·원종 및 보급종을 말하며, "종자생산포장"이라 함은 원원종포장·원종포장 및 채종포장을 말한다.
3. "원원종"이라 함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하며, "원원종포장"이라 함은 원원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
4. "원종"이라 함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하며, "원종포장"이라 함은 원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
5. "보급종"이라 함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채종단계를 거쳐 농가에 보급되는 종자를 말하며, "채종포장"이라 함은 보급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

제3조 (우량종자의 생산) ① 우량종자의 생산은 농수산부장관이 행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량 종자의 생산을 대행시킬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
2.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농업단체 및 농가

제4조 (종자생산포장의 지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농업단체 및 농가는 그 경영하는 종자생산포장에 대하여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포장검사) ① 종자생산포장은 농수산장관이 행하는 종자생산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검사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종자검사)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검사에 합격한 종자생산포장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는 농수산부장관이 행하는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산물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종자용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에 대하여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판매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에 합격된 우량종자가 아니면 정부가 보증하는 우량종자로서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없다.

제8조 (판매허가) ① 종자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단체와 종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종묘상의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종자의 수출입) ① 주요농작물의 우량종자육성 및 시험연구, 판매, 보급, 증식 등의 목적으로 국내산종자를 수출하거나 외국산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주요농작물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시험연구

를 거쳐 판매보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종자기금의 설치) 정부는 우량종자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와 우량종자의 판매대금 및 기타 유동자산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증여받은 종자 또는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잉여금
5. 기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자금의 차입) ① 농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그 다음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 (구분경리) 농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정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우량종자의 수매, 차입금·원리금의 상환 기타 기금사업의 시행으로 생기는 지출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재배금지명령 등) 농수산부장관은 우량종자의 교잡과 병충해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을 정하여 일정한 식물의 재배를 금지하거나 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판매허가의 취소) 농수산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폐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제19조 (보조금) 국가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종자의 생산을 대행하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3호의 농업단체 또는 농가에게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표식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자판매업을 영위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수입종자를 소정의 시험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보급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제2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촌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의하여 생산 보급된 우량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보급된 것으로 본다.
- ③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자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종자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자의 수출입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주요농작물종자법중개정법률

[1994 · 12 · 31, 법률 제4845호]

주요농작물종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2.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4조 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준방법"을 "기준·방법"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수산부장관이 행하는 종자검사"를 "종자검사"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종자검사의 기준방법"을 "종자검사의 기관·기준·방법"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종자판매업의 신고) ① 주요농작물종자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단체와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종묘상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종자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종자의 수출입) ① 주요농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양이하의 주요농작물의 종자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수입되는 주요농작물종자의 성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에 미달되는 주요농작물종자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

④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주요농작물종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농림수산부장관은 국내 생태계보호 및 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농작물종자의 수출입 및 수입된 주요농작물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종자의 수입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 세율로 주요농작물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입추천업무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판매대전"을 "판매대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판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절차 및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폐쇄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때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판매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0조 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자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종자검사를 받지 아니한 종자에 우량종자의 표식을 부착하거나 종자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의 표식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종자판매업을 영위한 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주요농작물종자를 수입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9조의2 및 제21

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종자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자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 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종자수출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입추천을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1996·8·8, 법률 제5153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 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 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주요농작물종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9조의2,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 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본문·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4조 생략

○ 종자산업법

[1995·12·6, 법률 제5024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주요농작물종자법 및 종묘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이 법 시행당시에 알려진 품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의 종묘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이 되어 있는 품종
2.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품종의 품종
3. 산림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품종
4.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품종
5. 육성자 및 최초유통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품종이 다음 각 호 중 2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종자위원회의 심의결정일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
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최초유통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일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출원일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 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품종명칭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의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으로 본다.

제6조 (종묘등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생산한 우량품종과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 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의 등재대상작물에 해당하는 품종인 경우에는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에 등재되어 공고된 품종으로 보며,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 외의 품종인 경우에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품종으로 본다.

제7조 (종자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생산한 우량품종 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종자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상의 신고를 한 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종자상의 신고를 한 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9조 (종자의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자의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적응성시험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종자는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종자로 본다.

제11조 생략

제12조 (종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

여 설치된 종자기금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종자기금으로 본다.

제1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농업협동조합임원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1962·2·12. 법률 제1025호]

제1조 (목적) 본법은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임원의 임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장의 임명)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2항, 제107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단 이동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조합장의 임기) 본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조합장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제117조 및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 ①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본법시행당시에 재임중인 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농업협동조합임원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개정법률

[1972·12·30. 법률 제12430호]

농업협동조합임원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임원의 임면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장의 임명) ①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2항, 제107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다만, 이동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임명권은 군농

업협동조합장에게, 농림부장관의 승인권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로부터 탈퇴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임명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조합장의 임기)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17조 및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조합장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조합장의 해임) ①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117조 및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조합장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임명권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때
3. 농업협동조합법 기타 조합에 적용되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실을 끼친 때
4. 주무부장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감사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감사한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농업협동조합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 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임명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3월 이내에 새로이 조합장을 임명한다.

○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

[1980·12·31, 법률 제3301호]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조합장의 임명)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중 "제117조 및"을 반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17조 및"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신장애 기타의 사유로 6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

[1988·12·31, 법률 제4079호]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1965 · 12 · 16, 법률 제17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림서 소관 국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 경영하기 위하여 영림서 소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이 회계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소속재산) 이 회계의 소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영림서가 관장하는 국유임야와 그 산물
2. 전호 이외에 영림서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제4조 (세입) 이 회계는 영림서 소관 국유임야에서 생산되는 산물의 매각대금 및 임야임대료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5조 (세출) 이 회계는 제3항에 규정한 재산을 관리,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6조 (일시차입금) 이 회계는 필요에 따라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7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그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1966 · 12 · 27, 법률 제1861호]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영림서 소관 국유임야"를 "국유임야"로, "영림서 소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림서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는 산림청소관 국유임야와 그 산물

제4조 중 "영림서 소관"을 "전조에 규정한 소속"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차입금) ① 이 회계는 조립, 수종변경 기타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계는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던 산림부소관 국유임야와 이 회계 설치 이전에 영림서가 분장하던 농림부 소관 국유임야에 관한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 채권 및 채무는 이를 승계한다.

○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1970·1·1, 법률 제2198호]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소속재산) 이 회계의 소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영림서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와 그 산물

2. 전 호 이외의 영림서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제3조 (관리와 처분) ① 이 회계는 산림청장이 관리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재산을 국유임야의 관리,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양여, 교환 및 대부(사용을 포함한다)등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합의한 임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를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면적에 상당하는 임야를 매수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세입) 이 회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재산의 매각대금, 임야임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5조 (세출) 이 회계는 제2조에 규정한 재산을 매매, 양여 및 교환 기타 관리,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1993·12·31, 법률 제4676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사법시설등조성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1993회계 년도 세입, 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1993회계 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1994회계 년도 국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재산 등의 승계)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 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국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6) 지력증진법

[1966·3·15, 법률 제176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작물의 생산근원이 되는 농경지의 지력을 배양 증진함으로써 저위에 침체되어 있는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력증진사업"이라 함은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한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토양조사
2. 객토
3. 심경
4. 자급비료의 증산
5. 토양개량제의 사용
6. 화학비료의 합리적 사용
7. 배수
8. 누수담의 개량
9. 기타 지력증진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부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이 법에서 "토양개량제"라 함은 석탄석·함철물·규산·망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토지개량조합 기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상지역조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력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부상시장·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한다.

② 지방장관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력증진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조사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시한다.

③ 전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지역지정) 지방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2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의 불량정

도·사업실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승인을 얻어 지방증진사업지역을 지정한다.

제5조 (사업계획)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력증진사업지역으로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을 2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당해 지역내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사업시행자)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지력증진사업의 종목 중 제1호의 사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은 농업단체가,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은 개인이 이를 시행한다.

제7조 (구성) ① 정부는 지력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력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재료대
3. 토양개량제 생산시설에 필요한 경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자급비료증산이 자원확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타인의 산림에서 자급비료의 재료를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업단체는 지방증진사업에 필요한 장비 또는 물자를 대여하거나 공동작업의 조장 기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은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급비료증산을 위하여 비료조절계정의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지방장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지력증진사업시행에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및 지방장관은 제2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농업단체에 대하여 농업수행 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과 지방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력증진사업 지역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토양 또는 농작물을 시료로 채취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 (대집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력증진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농지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4. 생략
5. 지력증진법

제3조 내지 제16조 생략

7) 미강착유장려법

[1966·7·15. 법률 제179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지자원으로서 필요한 미강을 수집 착유하여 식용유 및 공업용유에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농가수익의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미강"이라 함은 미곡도정에서 생기는 쌀겨를, "탈지강"이라 함은 미강을 원료로 사용하여 착유한 강박을, "착유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강유 업자를 말한다.

제3조 (대상자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정업자와 착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미강유 및 탈지강의 품위규격 및 생산책임) 착유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위·규격에 의한 수량의 미강유 및 탈지강을 책임 생산하여야 한다.

제5조 (미강의 매도 및 가격) ① 착유업자는 매 미곡년도 초에 도정업자에게 그 년도에 생길 미강의 수량 및 가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은 그 전량이 착유원료로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미강착유업자가 그 기간 내에 미강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착유 이외의 용도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미강의 매도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정부관리이외의 양곡도정에서 생기는 미강의 매도가격은 착유업자와 미강소유자 또는 도정업자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미강소유자 또는 도정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일 내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기일 내에 협의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는 농림부장관에게 가격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대체지급)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에 응한 도정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강 매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탈지강으로써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탈지강의 처분) 착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 지급량 이외의 탈지강 생산량은 그 전부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미강의 착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를 하거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및 조사) ①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업자, 미강소유자 또는 착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케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장부 또는 점포 및 창고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농가자가용 또는 특수용도에 공하는 미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미강착유장려법중개정법률

[1979·4·17, 법률 제3164호]

미강착유장려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전량이 착유 원료로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미강 착유업자가 그 기간 내에 미강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착유 이외의 용도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제5조제3항·제6항 및 제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을 각각 “농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6조 및 제7조 중 “농림부령” 을 각각 “농수산부령”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전항” 을 “제2항” 으로, 동조 제5항 중 “전항” 을 “제4항” 으로, 동조 제6항 중 “전항” 을 “제5항” 으로 하고, 제7조 중 “전조” 를 “제6조” 로 하며, 제9조제2항 중 “전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미강착유장려법중개정법률

[1996·8·8. 법률 제5153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미강착유장려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제3항·제6항 및 제9조제1항 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및 제7조 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4조 생략

○ 미강착유장려법폐지법률

[1997·3·7. 법률 제5298호]

미강착유장려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농지담보법

[1966·8·3, 법률 제181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농가"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위를, "적격농가"라 함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가당 총경영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농지소유자 및 농지개혁법 제6조제1항제2호의 농지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 (농지저당기관)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농지저당기관"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민법에 의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경락자 없는 농지의 처분) ① 농지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2회 실시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농지저당권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저당권자는 경매개시당시의 법원의 조정가액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저당권자가 인수한 농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가에 공매하여야 하되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적격농가 또는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농지저당권자가 인수한 농지는 농가 또는 농가가 될 수 있는 자에 임대 또는 위탁 경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매개시당시의 담보농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제5조 (공매대금)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한 농지의 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선이자 및 복리금지) 농지저당기관은 이 법에 의한 대부금에 대하여 선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할 수 없다.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미 농지저당기관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농지담보법중개정법률

[1975·12·31, 법률 제2839호]

농지담보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고자로부터 환매 요청이 있거나 2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농지법

[1990·4·7, 법률 제4228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농지담보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농지저당기관)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및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농지저당기관"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민법에 의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및 ⑥ 생략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93·6·11, 법률 제4552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담보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7조 생략

9)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1968·3·13. 법률 제199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득농지의 등기) ① 농지개혁법(이하 "농개법"이라 한다)제5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는 그 경작자에게 분배하고 농지대가상환은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법 시행 일로부터 1년 내에 수납한다.

1.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2. 농지대가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신청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조 (농지부속시설의 관리) ① 전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부속시설은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고, 필요한 때에는 토지개량조합(수리계 포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에 귀속된 농지부속시설인 방조제에 대하여는 그 지적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방조제는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조 (미불보상금의 지급) 정부는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농개법 제2조제2항(나)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동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 미완료분은 1960년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기산 하여 5년간 구분 연부로 지급하되 매년 액면 농산물을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미상환액의 수납) 농개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 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당해 농지 분배연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한다.

제6조 (과오납 상환액의 반환) ① 정부는 분배농지의 분할·등록·분배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액이 과납되었거나 착오로 오납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오납액을 당해 법정수납 연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납입자에게 반환한다.

② 정부는 법정상환연도를 경과한 분배농지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분배농지로서 수배자가 수배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기상환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개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미상환액) 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정부·공공단체·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지 또는 공용용지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기관은 미상환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의 미상환액수납은 당해 사용기관과 수배자간에 편입에 따르는 정당한 배상을 하였을 때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한 때에는 사용기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8조 (상환 미완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액의 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지로서 수배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는 수배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미상환전량을 그 연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채권으로 하여 국가명의로 저당권을 설정 등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와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한 채무는 이 법 시행 일로부터 3년 내에 변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배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저당권을 실행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2회 실시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정부가 그 농지를 인수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농가에 공매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전매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①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

면으로 한다.

제 10조 (등기신청과 등기미필농지의 처리) 농개법 및 이 법에 의한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제 11조 (청구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이의 사건은 그 사유가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한다.

1. 농개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2. 농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과오납반환금
3. 기타 정부에 대한 농개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

제 12조 (제소) 농개법 및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처에따른행정촉레등에관한법률

[1994 · 12 · 22, 법률 제4796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4)생략 (15)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시장"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으로 한다.

(16)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 농지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내지 5. 생략

제3조(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 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내지 제16조 생략

10) 농촌근대화촉진법

[1970·1·12, 법률 제219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개량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하 "농지개량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변경 또는 폐합

나. 구획정리

다. 개답 또는 개전

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마.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바.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사.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를 생산 또는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시키거나 그 용역을 농민에게 제공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농기구"라 함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를 말한다.

4. "농가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에 적합하도록 농가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농지개량사업의 원칙) 농지개량사업은 농지자원의 종합적 개발과 보전에 기여하고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경제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 (농지개량사업에의 참여자격) ① 농지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나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농지개량사업에의 참여자격자로 인정한 자

②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로서 그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2.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그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3. 국유재산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유지의 대부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5.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조성한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제6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 법에서의 이해 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어업권자와 수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농지개량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제8조 (명칭사용과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① 농지개량조합은 그 명칭 중에 농지개량조합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아니면 그 명칭 중에 농지개량조합·농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2 장 농지개량조합

제 1 절 설 립

제9조 (목적) 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그 조합구역 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의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농지개량시설이 있어야 한다.

③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및 정관과 당해 구역의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와 고시) ① 농림부장관은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과 정관을 심사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고 그 취지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이 적당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결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정관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① 이해 관계인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계되는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13조 (설립의 인가) ① 농림부장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14조 (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합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5조 (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3주일 안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전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기된 사항
2. 설립인가의 연월일
3. 조합장과 감사의 주소·성명
4. 자산이 있는 경우는 그 총액

② 전항에 계기한 사항 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6조 (시설의 인수관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내의 농지 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

이 포괄승계 한다. 다만, 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조 (설립비용 부담) 조합의 설립에 관한 비용은 당해 조합이 부담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18조 (구역 변경) ① 조합이 조합구역 외의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관과 편입예정지역 및 농지개발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그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될 지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한 농지개발시설이 있거나, 조합의 농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③ 전항 후단의 경우에 편입예정지가 조합구역과 동일한 이익을 받고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농림부장관은 이를 조합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④ 조합구역 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 2 절 조 합 원

제 19조 (조합원) 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그 조합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제5조에 규정 한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제 20조 (조합원의 신고의무) 조합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그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제 3 절 의결기관

제 22조 (총회) ① 조합에 조합원 총회를 둔다. 다만, 조합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은 25세 이상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호선한다.
- ④ 대의원의 총수는 조합원의 수가 천인미만일 때에는 30인, 천인이상 5천인미만인 때에는 50인, 5천인이상 만인미만인 때에는 80인, 만인이상 2만인미만일 때에는 100인, 2만인 이상인 때에는 150인으로 한다.
- 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변경
2. 조합채 차입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5. 농지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폐지
6. 예산의 편성
7.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의 승인
8.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9. 부동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
10. 적립금의 설정·관리 및 처분
11. 합병·분할 또는 해산
12.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에 1회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제25조 (총회의 소집청구와 감사의 총회소집)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을 후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가 전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소집의 통지)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총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목적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하면 된다.

제27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3조제1호·제5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민법규정의 준용) 조합의 불법행위 책임 및 조합장의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 4 절 임원 및 직원

제3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 조합장과 감사는 30세 이상의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는 조합장은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5.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③ 조합과 조합장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33조 (겸직 및 겸업의 금지) ① 조합장은 총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4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35조 (직원의 임명)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조합장에게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 등)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과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

제 5 절 사 업

제37조 (사업) 조합은 조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사업
2. 구획정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3. 개답 및 개전
4. 농사개량사업
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기타 조합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8조 (사업의 위탁)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사업의 일부를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 절 경비 부과

제39조 (경비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비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받는 이익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노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경비부과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적립금과 상환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감가상각 적립금과 기타 필요한 적립금

2. 부채원리금의 상환금

⑥ 전항의 적립금과 상환금의 계상 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⑦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특별부담금의 부과) 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비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 (탈퇴조합원의 책임)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그 상실전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분담액의 이행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감면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2조 (가입금의 징수) 조합은 그 조합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편입되는 지역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부과요건과 그 부과한도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이의신청) ① 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 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부과금의 징수위임) 조합은 조합의 경비 기타 조합원에 대하여 부과한 금전의 징수를 구·시·군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은 구·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천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구·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부과금의 징수방법)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경비 기타 조합 부과금의 독촉·체납처분·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7 절 회 계

제47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경상부와 사업부로 구분하여 지구별로 경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별 자금은 상호 유용하지 못한다.

제49조 (예산)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도개시 1월 전까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0조 (계속비) ① 조합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계속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51조 (예비비) ① 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차입금) ①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현금의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53조 (시효) 금전채무이행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권리 또는 조합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의 기간·중단·정지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결산)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해 4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산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회계규정과 보수 등) 조합의 회계·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과 보수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

제 8 절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

제56조 (시설의 관리) ① 조합장은 그 조합구역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항시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저수지·유지 등의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개 또는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획 기타 시설물 설치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폭발물, 유해물 또는 어망의 사용금지

③ 조합장은 전항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표시한 게시판을 당해 농지개량시설에 세워야 한다.

제57조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지개량시설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외 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내용·사용료 기타 중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9 절 해산·합병·분할

제58조 (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3. 농림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조합이 전항 제1호의 사유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9조 (해산·합병·분할의 사전인가) 조합이 해산(전조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해산의 고시) 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 (청산) ① 조합이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잔여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 해산한 조합의 잔여 재산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62조 (흡수합병) ① 합병하는 조합이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은 관계 각 조합의 합병 결의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는 취지와 정관이 변경된 취지를 고시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 (신설합병) ① 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각 조합의 총회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각 15인 이상의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정관·조합원명부·토지원부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합병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설립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2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관계 각 조합의 합병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취지를 고시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4조 (분할) ①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15인 이상의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전조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분할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립위원의 선임방법은 전조 제1항 후단의 경우와 같다.

③ 전항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당해 조합의 분할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인가한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5조 (합병·분할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①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 제59조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전항의 공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익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익을 제출하라는 취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이익제출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합병·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익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채권자가 이익을 제출한 때에는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합병·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6조 (합병·분할의 등기)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은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제15조제2항의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이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의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67조 (합병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

제68조 (민법준용)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제85조·제86조 내지 제92

조·제94조·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농업진흥공사

제 1 절 설 립

제69조 (설립과 목적) ①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시범농촌의 육성과 조합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합병하여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

제70조 (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와 농기구운영관리소 또는 그 지소를 둘 수 있다.

제71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72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그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③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승계될 재산은 1969년 12월31일 현재의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되, 그 승계재산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출자로 보고 이를 설립당시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④ 공사설립 당시의 재산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73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본금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농업진흥채권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2 절 임원과 직원

제75조 (임원) ① 공사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부총재 2인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1인

② 총재는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와 이사는 총재의 제청으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6조 (임원의 임기) ① 총재·부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7조 (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총재·부총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직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78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총재·부총재를 이사로써 구성하며 총재가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 의사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9조 (임원의 신분) 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과 겸업 금지) ① 공사의 임원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공사의 사업과 겸업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1조 (직원의 임용과 복무규율) ① 공사의 직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②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과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재가 정한다.

제83조 (준용규정)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와 책임은 제31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제 3 절 사 업

제83조 (사업) 공사는 제6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개·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개간·하천정리·매립 또는 간척사업
3. 구획정리사업
4. 농업용 도로의 개설에 관한 사업
5.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
6. 초지 조성에 관한 사업
7. 농지개량사업(초지 조성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
8. 농지개량사업시행지구의 지적측량
9. 농지개량사업용 중기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기구의 제작·공급·구입 및 그 알선

또는 운영관리와 사용기술의 교육

10. 농지개량사업용 증기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기구의 제작·정비시설의 설치운영과 투자
11. 농가주택의 건설·개량 및 그 자재알선과 기술지도
12. 시범농촌조성에 관한 사항
13. 조합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14. 조합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15.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의 알선
16.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위탁한 농지개량사업
17.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기술·용역의 수출
18. 전 각 호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업이나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사업
19. 기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4조 (외자도입) ① 공사는 전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의 인가를 얻어 국제기관,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의 이자의 율, 그 지급시기 및 방법과 원금의 상환시기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부가 인가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85조 (농업진흥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83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한 채권발행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업진흥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다.

④ 농업진흥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15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⑤ 농업진흥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절 회 계

제86조 (예산 및 회계)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제87조 (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제88조 (차입금) 제52조의 규정은 공사의 차입금에 이를 준용한다.

제89조 (재정보증 및 보수)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과 보수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재가 정한다.

제 5 절 해 산

제90조 (해산)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2 장 사업시행

제 1 절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제 1 관 국가의 사업시행

제91조 (신청에 의한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20인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국가에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할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조 (심사와 고시) ① 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고,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이해 관계

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93조 (이의신청) ① 이해 관계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한 때에는 당해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4조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시행) ① 농림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농지개량사업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92조제2항 및 제9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 (구획정리사업시행의 특례) ① 농림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계획의 개요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사업내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 (계획의 변경) ① 농림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의 계획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개량사업계획의 변경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지역의 확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계획의 변경이 그 변경전의 농지개량사업을 지역만을 확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되는 지역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는 제92조 제2항 및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 (구획정리사업의 병행)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개간·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구획정리사업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당해 농지개량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그 토지에 관한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8조 (응급공사의 시행) 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제2조제1호 마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급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9조 (부담금) 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 개량사업의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제5조의 자격자로부터 그가 받는 이익의 한도 안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자가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대신하여 당해 조합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0조 (매립지의 분배계획) ① 농림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하는 제2조제1호 라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매립지 또는 간척지(이하 "매립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매립지의 분배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에 대하여 분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신청을 받고 분배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분배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통지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당해 분배통지서에 기재된 매립지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으로 사용시킬 수 있다.

제 101조 (농지개량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①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재산 및 권리(이하 "농지개량재산"이라 한다)는 농림부장관이 관리 처분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공작물 기타의 물건 또는 용수에 관한 권리로서 조합에 이관하지 아니한 것
2. 국가가 시행한 제2조제1호 라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3.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목·공작물 기타의 물건 또는 권리
4. 국유의 토지·임목·공작물 기타 물건 또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사용하도록 결정된 것

② 국가는 그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을 당해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설을 인수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 다만, 조합이 국가로부터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지개량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2조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 제2조제1호 라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제 2 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제 103조 (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지개량사업계획과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농지개량사업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4조 (심사와 고시) ① 농림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심사하고 그 적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이 적당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고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결정에 관한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 105조 (이의신청) ① 이해 관계인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계되는 농림부장

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 106조 (시행의 인가) ① 농림부장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한 때에는 그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7조 (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농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농지개량사업의 계획변경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8조 (부담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중 타인에 비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9조 (준용규정) 제44조·제97조·제98조·제100조·제101조(동조 제3항은 제외) 및 제102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및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 3 관 조합의 사업시행

제 110조 (인가신청) ① 조합이 그 조합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제37조제1호·제4호 및 제6호 이외의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서와 총회의 결의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발생하여 제37조제5호의 재해복구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이 전항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과 제10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1조 (계획의 변경)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조합이 농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는 제92조 제2항·제93조 및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2조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방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 등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미리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3조 (준공보고) ① 조합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고 당해 사업의 시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 114조 (준용규정) 제98조와 제101조(동조 제3항은 제외)의 규정은 조합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4 관 공사의 사업시행

제 115조 (인가신청) ① 공사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과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인가신청과 그 인가에 있어서는 제103조제2항과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6조 (시설의 인계) ①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시행한 농지개량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내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인수 관리하게 한다.

2. 당해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내에 조합이 없고, 그 인접지역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인수 관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인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지하수개발시설에 대하여는 전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으로 하여금 인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인수받은 조합 또는 시·군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

③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그가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관리 운용할 수 있다.

제 117조 (조사설계사업시행) ① 공사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측량·설계·사업시행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공사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하게 하여 수원과 입지적 조건 등 농지개량사업의 적부를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설계확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8조 (준용규정) 제45조·제46조·제97조·제98조·제100조·제101조(동조 제3항은 제외)·제102조·제107조·제108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공사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이나 그 시설의 관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5 관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제 119조 (인가신청) ① 토지소유자 1인 또는 수인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과 규약(수인공동의 경우에 한한다)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 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전항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0조 (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그 농지개

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에 있어서 지역의 확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될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개요를 공고하고 그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이 그 변경전의 농지개량사업을 지역만을 확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되는 지역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③ 권리의무의 귀속에 관한 규약변경, 농지개량사업의 폐지 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축소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개량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제 121조 (공동시행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으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동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원금과 그 이자 기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 공동시행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 122조 (준용규정) 제101조·제104조 내지 제106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6 관 환 지

제 123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일시 이용지의 지정에 있어서는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고 종전의 토지의 지목·지적·토성·수리·경사 및 온도 기타 자연조건이나 이용조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4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의 효과) ① 전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 이용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전조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로부터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 또는 계약으로 정한 당해 권원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전조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나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

③ 전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 이용지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전조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일로부터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인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

제 125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에 의한 손실보상 등)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 126조 (환지계획) ① 환지계획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설계
2. 각 필별 환지명세
3. 청산금명세
4.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명세
5.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계획에 있어서의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지적·등급·토성·수리·경사·온도 기타의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 등을 참작하여 그 환지가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종전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거나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전답으로서 실지 경작하고 있는 토지라야 한다.

③ 경작자의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④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매매·양도·교환·분합 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

⑤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 상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와 환지계획구역 안에 100평 이하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 또는 1구획의 환지를 받고 잔여토지가 100평 이하의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되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⑥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이와 교환될 환지에 있어서는 그 권리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환지는 1지번의 구역이 2이상의 구·시·읍·면에 걸쳐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7조 (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환지계획은 경작자의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8조 (권리변동의 신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전에 이미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9조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제16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익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제 130조 (환지처분청산금의 징수) 제46조의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에 의한 청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31조 (토지가격의 평정) 종전의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제 132조 (몽리자 총회의 의결) ①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등급결정은 각 지구의 몽리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각 지구의 몽리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총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몽리자 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 133조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지계획에 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지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 7 관 교환 및 분합

제 134조 (시·군의 교환·분합) ①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군은 농지소유자 2인 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제2조 제1호 바의 사업(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가신청서에는 교환·분합계획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은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35조 (신청에 의한 시·군의 교환·분합) ① 농지소유자 2인 이상의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포함한 일정한 구역을 정리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것을 관할시·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군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되 그 사업구역이 다른 시·군에 걸칠 때에는 관계 시·군과 협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군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농림부장관에게 관계 시·군에 대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그 교환·분합사업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 시·군에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 136조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시·군의 교환·분합) 시·군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분합계획의 개요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당해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사업이 다른 시·군에 거칠 때에는 관계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7조 (교환·분합계획의 원칙) 시·군이 제135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유자가 새로이 취득할 농지의 지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지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8조 (조합의 교환·분합) ① 조합이 조합구역 안의 일정한 농지에 관하여 교환·분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03조제2항과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 139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①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당해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②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대신하는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을 설정하여야 할 농지, 그 설정시기와 존속기간, 지가 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교환·분합에 의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및 설정시기와 지역권의 목적 기타의 조건을 정하고, 현재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리 및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40조 (교환·분합의 효과) ① 제134조제3항 또는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은 설정되며, 지역권은 설정 또는 소멸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된 때에는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된다.

제 141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에 있어서는 제139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2조 (청산금) ① 제134조제3항 또는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시·군 또는 조합은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의 규정은 시·군 또는 조합이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43조 (농지 이외의 토지 등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제13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농지의 집단화에 수반하여 행하는 농지의 사용상 필요한 농지 이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에 관한 권리와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에 이를 준용한다.

제 2 절 농업기계화사업의 시행

제 144조 (사업시행인가) 공사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마다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45조 (투자승인) ① 공사는 농기구의 제작·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구를 제작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투자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46조 (농기구의 운전면허) ① 농기구의 운전정비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147조 (농기구운영관리소의 사업) ① 공사의 농기구운영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지개량사업용 중기의 운영 및 정비
2. 농기구의 대여
3. 농기구에 의한 용역지원

4. 농기구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도

② 공사가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의 한도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48조 (국가의 자금지원)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기구의 제작·구입 또는 운영·관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 3 절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

제 149조 (사업시행의 인가) ① 공사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150조 (집단화개량사업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농촌의 환경정리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농업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농가주택의 집단화 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화개량사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공사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한다.

제 151조 (집단화개량사업의 시행인가) ① 공사가 농가주택집단화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계획의 개요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의 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농가주택집단화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 152조 (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알선한 자재대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53조 (자재생산공장설치 및 투자) 공사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표준화된 자재의 대량생산 및 엮가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용 자재생산공장을 설치하거나 그 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투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사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절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제 154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①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55조 (급박한 경우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공사 중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풍설·출수·해일 또는 토지의 훼손 등에 의한 급박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토석·죽목 기타 현물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6조 (이해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이해 관계인이 제154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7조 (보상금의 결정) ① 제157조제2항·제3항, 제155조제2항, 전조 또는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보상자가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가 결정한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58조 (청산금 또는 보상금의 공탁) ①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환지계획이나 교환·분합계획에서 정한 청산금 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지구의 용지매수대금이나, 제154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에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 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 5 장 권리의 조정

제 159조 (지료 등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이나, 선불한 지료·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0조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해지) ①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설정이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당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때에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 161조 (지료 등의 증액청구) ①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 162조 (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중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써 지역권에 관한 지역의 대가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63조 (지료 등의 청구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의 인가에 관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59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료 등의 감액 또는 반환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지료 등의 증액청구, 지역권의 효력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잡 칙

제 164조 (고시의 효과)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고시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에 관계되는 지역내의 토지의 소유권자 기타 권리자는 당해 사업에 지장이 미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 165조 (국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유지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하천부지를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 등으로서 전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할 수 있다.

③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내의 국유임야 또는 잡종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은 소모성경비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 166조 (보조금)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내에서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보조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교부할 수 있다.

제 167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국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또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는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68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에 계기하는 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조합 및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3. 제91조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

② 전항 제3호에 계기한 자가 동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자로서 동항 제1호와 제2호에 계기한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동항 제3호에 계기하는 자는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계기한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구·시·군·읍·면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부책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등본의 교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69조 (지적이동 등 정리의 특례) ① 환지처분에 수반하는 지적이동 등 정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6조 및 지적법 제10조 내지 제19조·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 및 지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갈음하여 행할 수 있다.

제 170조 (타동기의 정지) 농림부장관이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동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동기를 하지 못한다. 다만, 동기의 신청인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의 인가고시 전에 동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71조 (서류송부의 방법)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서류의 송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그 서류의 송부에 대신하여 공시한 때에는 그 공시가 있는 날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시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172조 (처분행위 등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기타 행위는 그 행위에 관한 토지·물건 또는 권익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173조 (권리의무의 승계)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제 174조 (기간계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간계산은 그 서류의 우송에 요하는 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75조 (공사의 착수와 준공의 신고 등) ①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 집단화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업시행자는 그 공사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수반되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준공 후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76조 (지적측량)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토목기술계공무원과 공사의 토목기술계 직원으로서 지적측량사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한 자나 측량법에 의한 측량사 또는 측량사보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적측량사규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제 7 장 감 독

제 177조 (감독) ① 조합과 공사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78조 (보고와 검사)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나 그 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공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 179조 (조합원의 검사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업무집행(회계처리를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정관 또는 사업계획·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에 위반하는 때에는 이를 이유로 농림부장관에게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조합의 사업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 180조 (임원의 해임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178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총재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감사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에게 그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하며, 부총재 및 이사에 대하여는 그가 해임할 수 있다.

제 181조 (결의 선거 등의 취소) ① 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 또는 임원선거방법이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그 의결·선거 또는 당선취소를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그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의·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82조 (조합의 해산명령) 농림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조합이 제37조에 규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2.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그 사업을 정지한 때
3. 조합구역의 도시계획구역 공업단지 등으로 결정되어 그 설립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제 183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장 벌 칙

제 184조 (벌칙)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85조 (동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 186조 (동전)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게시물을 이전·오손·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87조 (동전)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고용된 임원 또는 직원이 당해 사업에 관한 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88조 (양벌규정) 법인이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 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 189조 (과태료) 조합의 청산인이 제6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폐지법률) 토지개량사업법과 지하수개발공사법은 부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폐지된다.

제 3조 (토지개량조합에 대한 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은 이 법 시행 후 20일 이내에 정관을 정하여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토지개량조합의 종전의 규약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지개량조합의 규약이 제정될 때까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제 4조 (토지개량조합의 장기채에 대한 조치)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이 법 시행이전에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에 융자된 장기채를 1972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 5조 (토지개량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토지개량조합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 6조 (토지개량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개량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설립요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설립인가신청으로 본다.

제 7조 (사업에 관한 인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인가·승인 기타 처분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인가·승인 기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토지개량사업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인가·승인 기타 처분을 신청 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인가·승인 기타 처분의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절차 기타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의 이관) 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조합이 시행중인 제2조제1호 가의 농지개량사업은 공사가 설립되면 그 사업을 공사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합은 사전에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고 공정의 진척도 기타 사항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 하여금 계속 그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공사가 인수한 농지개량사업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농지개량사업으로 보고 조합이 그 농지개량사업을 이관하기까지의 당해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조합의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 한다.

제9조 (총회에 관한 잠정조치) ① 농지개량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를 구성한다.

② 농지개량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잠정조치) 농지개량조합의 임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공사설립준비) ①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의 합병 및 농업진흥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과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농림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의 합병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합병절차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합병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농업진흥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의 해산등기와 농업진흥공사의 성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농업진흥공사의 총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의 업무활동은 설립위원회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⑧ 설립위원은 제6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 12조 (직원의 승계)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1971·1·22, 법률 제2298호]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본계획"이라 함은 수원과 입지적·기술적·경제적 조건 등 농지개량사업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조합구역에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개·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은 양곡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대금을 전도 받을 수 있다.

④ 양곡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대금을 전도 받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는 현물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과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사업용 기계기구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10일 이상 20일"을 "5일 이상 10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40일"을 "30일"로 하고 제2항 중 "90일"을 "50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부담금) ① 국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나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제5조의 자격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써 제5조의 자격자로부터 그가 받는 이익의 한도 안에서 그 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제5조의 자격자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자가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대신하여 당해 조합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 (기본계획의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승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전항의 승인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당해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이를 승인할 때에는 연차별·지구별·사업시행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와 제103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 (측량설계) ①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한 후 관할 서울특별시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설계를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 (사업시행 예정지 등의 결정) 농림부장관이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예정지구와 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예정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와 그 농지개량사업시행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 (고시)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105조 (이의신청) ① 이해 관계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농지개량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0일 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 (사업계획의 확정)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때에는 그 농지개량사업계획은 확정된다.

②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농지개량사업계획을 고시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 (사업시행의 통지) 농림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확정된 당해 연도의 예산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지구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액을 확정하여 당해 사업시행 연도의 1월 31일까지 그 사업시행지의 관할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변경·차관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월 31일 이후에도 확정통지를 할 수 있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 (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거나 농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농지개량사업계획 변경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96조제2항·제103조제3항 전단·제104조 내지 제106조의2(통지기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나 농지개량사업계획 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① 조합이 그 조합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제37조 제2호·제5호 및 제7호 이외의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전항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당해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이를 승인할 때에는 연차별·지구별 사업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03조의2 내지 제106조의 2의 규정은 조합이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 (계획의 변경) ① 조합이 제106조 및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거나 농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96조제2항 및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2(통지기간은 이를 제외한다)·제10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나 농지개량사업계획 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2조 중 "제37조제1호"를 "제37조제2호"로 한다.

제11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하고 "농림부장관"을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기본계획의 승인) ① 공사가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역에 대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경우나 공사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농림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이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심사하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이를 승인할 때에는 연차별·지구별 사업시행순위를 정하여 이를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기본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 (측량설계) 공사가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한 후 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 (공사와 조합과의 관계) ① 공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준공 후 그 시설이 조합에 인계될 사업에 있어서는 공사는 사업 및 시공계획 등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용지매수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공사의 사업계획 또는 시공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공사의 총

제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 내지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 (사업시행 예정지 결정) 농림부장관이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예정지구와 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예정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사와 그 농지개량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8조 (준용규정) 제45조·제46조·제97조·제98조·제100조·제101조(제3항을 제외한다)·제102조·제104조 내지 제108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공사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이나 그 시설의 관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5조 및 제46조는 공사가 시행하는 농업기계화사업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에도 준용한다.

제119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① 토지소유자 1인 또는 수인이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규약(수인 공동의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이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제11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 (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에 있어서 지역의 확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될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개요를 공고하고 그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이 그 변경전의 농지개량사업의 지역만을 확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되는 지역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④ 권리의무의 귀속에 관한 규약변경·농지개량사업의 폐지 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축소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개량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⑤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 중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삭제한다.

제126조제5항 중 "100평"을 "500평"으로 하고 제7항을 삭제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환지 용역업자의 등록) ① 이 법에 의한 환지 처분의 용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 (몽리자 총회의 의결) ①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등급결정은 각 지구의 몽리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항의 몽리자 총회는 각 지구의 몽리자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성되는 대의위원회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몽리자 총회 또는 대위원회의 의결은 몽리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몽리자 총회 또는 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내지 제29조의 조합의결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부칙 제9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 (농지개량사업용 기계기구의 양여 등) 농림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촉진 또는 농업토목기술의 향상과 시공법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사업(조사·시험사업 포함)용 기계기구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3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농업진흥공사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공사총재에게 위임할 사항은 공사 이외의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8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진흥공사에 이관하지 아니한 제2조제1호 가의 농지개량사업은 당해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1973·2·6, 법률 제2486호]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임원) ① 공사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사장 1인
2. 부사장 1인
3. 이사 7인 이내
4. 감사 1인

② 사장은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6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7조 중 "총재"를 "사장"으로, "총재는"을 "사장은"으로, "부총재는"을 "부사장은"으로, "총재를"을 "사장을"로, "총재가"를 "사장이"로, "총재·부총재가"를 "사장·부사장이"로 한다.

제78조 중 "총재·부총재와"를 "사장·부사장과"로, "총재가"를 "사장이"로 한다.

제81조 중 "총재가"를 "사장이"로 한다.

제89조 중 "총재가"를 "사장이"로 한다.

제116조의2중 "총재"를 "사장"으로 한다.

제180조 중 "총재"를 "사장"으로, "부총재"를 "부사장"으로 한다.

제183조 중 "총재"를 "사장"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총재·부총재·이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부사장·이사·감사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 한다.
- ④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1973·3·12, 법률 제2600호]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3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1975·4·4, 법률 제2753호]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농경지조성법"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전항 후단의 경우에는"을 "제2항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5조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부과금의 강제징수) ① 구·시·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구·시·군이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체납방지 및 조기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2장제8절을 삭제한다.

제2장제10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농지개량계

제68조의2 (농지개량계의 설치) ① 농수산부장관은 조합구역 외에 있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지개량시설의 몽리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 (경비부과) ① 농지개량계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징수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7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부사장 "1인"을 "2인"으로, 동조 동항 제3호 중 이사 "7인 이내"를 "6인 이내"로 한다.

제1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원칙으로 정한다.

제4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 2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

제158조의2 (농지개량시설의 등록) 조합·공사·농지개량계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지개량시설이 개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8조의3 (농지개량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개 또는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획 기타의 목적으로 폭발물 및 유해물 또는 어망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③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표시한 게시판을 당해 농지개량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58조의4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관리자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징수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합·공사 및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16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부책도면 등의 열람·등사 또는 등본이 교부에 관한 사업의 범위는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수 및 준공의 신고에 관계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제기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한다.

제1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 (지적측량)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토목기술계 공무원과 공사의 토목

기술계직원 및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개발기술사(지적)·지적기사1급·지적기사2급과 국토개발기술사(측지) 측지기사1급·측지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이 법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농림부령"을 "농수산부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1977·12·31, 법률 제3062호]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근거로 사업부 예산을 추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경정예산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융자금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받을 수 있다.

제2장에 제11절 (제68조의4 내지 제68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제68조의4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설립) ① 이 법에 의한 조합의 공동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동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이 법에 의한 조합은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제68조의5 (임원) ① 연합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④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8조의6 (사업)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사업
2.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3.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사업
4. 경지정리에 수반하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5. 정부 또는 회원이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8조의7 (감독) 농수산부장관은 연합회를 감독한다.

제68조의8 (위임규정)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9 (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개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85조의2 (경상비의 보조) 농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제1절제1관 내지 제5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장 사업시행

제 1 절 통지개량사업의 시행

제 1 관 국가·지방자치단체·농지개량조합 및 공사의 사업시행

제91조 (예정지의 조사) 농수산부장관은 직권 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

여 농지개량사업시행 예정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2조 (기본계획의 수립) 농수산부장관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농지개량사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93조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수산부장관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지구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조 (고시 등) 사업시행자는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95조 (이의신청) ①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지개량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되, 도지사는 그 재정의 내용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 (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수

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공정계획서,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고시문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농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상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7조 (계획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변경의 범위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 (구획정리사업의 병행)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개간·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구획정리사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당해 농지개량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그 토지에 관한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9조 (응급공사의 시행) 농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제2조제1호 마 목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1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급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0조 (부담금) ① 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39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1조 (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가 농지개량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2조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①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 농지개량사업에供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 및 개간지 등 토지와 공작물·임목 기타 물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상환
2.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용도
4.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용도

제103조 (국가 등이 시행한 시설의 이관) ① 농수산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사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농지개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내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한다.
2.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내에 조합이 없고 그 인접지역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인접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한다. 다만, 지하수개발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인수받은 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 다만,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또는 공사가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공사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조정한다.

⑤ 국가 또는 공사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농지개량시설을 인수할 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설인수예정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인수예정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인수예정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용지는 시설인수예정자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경우에 농지개량시설의 인수예정자가 사업시행계획 또는 시공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이의조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4조(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 제2조제1호 라 목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제 2 관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제105조 (사업계획승인) ① 토지소유자 1인 또는 수인이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서에 설계도서·규약(수인공동인 경우에 한한다) 및 풍리자 5분의 4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 (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 ①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범위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이 지역의 확장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변경될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개요를 공고하고 그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이 그 변경전의 농지개량사업의 지역만을 확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되는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권리·의무의 귀속에 관한 규약변경, 농지개량사업의 폐지 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축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개량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 (공동시행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으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동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원금과 그 이자 기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 공동시행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108조 (준용규정) 제101조 및 제104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3 관 다른 법과의 관계 등

제109조 (다른 법과의 관계) ①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과 당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써 이를 갈음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3.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유허가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 등의 허가
4. 산림법 제10조·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5. 산림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6.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기타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
8.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내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9. 공원법 제16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 구역 내에서의 시설물설치허가
10.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및 공작물 건축·시설 등의 허가
11.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 안에서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산림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제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농지개량사업을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한 당해 허가·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임의 개답의 제한) ① 제91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임야 또는 잡종지를 답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기존 답의 수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11조 내지 제122조를 삭제한다.

제4항제1절제6관을 제4장제1절제4관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지적·등급·토성·수리·경사·온도 기타의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종전의 토지를 위주로 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에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환지로 지정되는 종전의 토지는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무상 양여지를 제외한 토지이어야 한다.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소유권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소유권자가 확인 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명의로 가등기할 수 있다.

⑧ 국유지 이외의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도로·하천·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7관을 제5관으로 한다.

제134조제3항 중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제94조 내지 제96조"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제103조제2항과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제93조제3항과 제94조 내지 제96조"로 한다.

제158조의5 내지 제158조의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5 (농업용수 오염방지) ① 농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공해방지법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8조의6 (방조제 등의 사용) 농지개량시설(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조제를 포함한다)을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 당해 시설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8조의7 (폐지시설의 관리)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지개량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때
2.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시설의 매각대금은 제102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8조제1항제3호 중 "제119조"를 "제105조"로 한다.

제169조제1항 중 "지적법 제10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1조"를 "지적법 제16조 내지 제20조"로, "지적법 제17조"를 "지적법 제19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2항, 제127조제2항, 제129조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2항, 제138조제2항, 제140조제2항, 제145조제2항, 제146조제2항, 제147조제2항, 제149조제2항, 제150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2조제2항, 제154조제2항, 제155조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0조제2항, 제161조제2항, 제167조제2항, 제168조제2항, 제175조제2항, 제179조제2항, 제180조제2항 및 제181조제2항 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126조제3항, 제139조제3항, 및 제160조제3항 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166조제3항 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52조제4항 및 제151조제4항 중 "전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135조제5항 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6항 중 "전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68조제7항 중 "전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조"를 "제11조"로 제13조제1항 중 "전조"를 "제12조"로,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전조"를 "제14조"로, 제16조 중 "전조"를 "제15조"로, 제38조 중 "전조"를 "제37조"로, 제60조 중 "전조"를 "제59조"로, 제64조제2항 중 "전조"를 "제63조"로, 제84조제1항 중 "전조"를 "제83조"로, 제124조 중 "전조"를 "제123조"로, 제128조 중 "전조"를 "제127조"로, 제130조 중 "전조"를 "제129조"로, 제136조 중 "전조"를 "제135조"로, 제137조 중 "전조"를 "제136조"로, 제141조 중 "전조"를 "제140조"로, 제143조 중 "전조"를 "제142조"로, 제157조제1항 중 "전조"를 "제156조"로, 제163조 중 "전조"를 "제162조"로, 제180조제1항 중 "전조"를 "제179조"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사의 임원 중 보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동전) 제158조의5제1항 중 "공해방지법 제6조 내지 제9조"는 환경보전법 시행일로부터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1978·12·5, 법률 제3120호]

[본문 생략]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46조를 삭제한다.
-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1989·4·1,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원의 주소·성명

제1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제5조에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제5조에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동일 가구 내에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 1인에 한한다)"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19조의3 (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선거권을 제외한다)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총회"를 "총회 및 대의원회"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과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⑥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총회의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적립금의 설정 및 처분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다음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적립금의 관리
2.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4.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5. 기타 조합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임원의 징수 및 선출)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 감사로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임원의 임기)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을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또는 투표)과 출석(또는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의 규모별 조직과 정원은 조합의 구역면적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익사업

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5 (임원의 선출·임기 및 직무) ① 연합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회장, 이사 중 2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상임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비상임 이사는 총회가 회원조합장 중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⑦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정리한다.

⑧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제68조의10 내지 제68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10 (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후 10일 이내에 회장이 회의소집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총회의 개최일 7일전에 서면으로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의11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변경

2.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의 수립

3. 결산 및 사업보고

4. 임원의 선출·해임 및 임명동의

5. 기타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의12(총회의 의사) 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의13 (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8조의14 (준용규정) 제19조의2·제31조·제31조의2·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6조·제47조·제49조·제52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각각 본다.

제9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9호 중 "공원법 제16조 및 제19조의2"를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산림법 제22조"를 "산림법 제59조"로 한다.

3.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허가

4.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제134조제1항 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149조제3항·제4항 및 제15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67조제1항 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조합원은 조합원총수의"를 "조합원 또는 회원은 그 총수의"로, "임원선거의 방법이"를 "임원선거(총회의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이"로,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3조 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부산시장·도지사"를 "

시·도지사”로 한다.

제8장에 제183조의2 및 제1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3조의2 (벌칙) ① 제31조의2제1항(제6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제56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3조의13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제목 “동전”을 각각 “벌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내지 제4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1항제3호, 제59조, 제60조, 제61조제3항,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제2항·제4항, 제68조의2제1항, 제68조의3제1항, 제68조의7, 제70조의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5조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2항, 제83조, 제85조제1항·제2항, 제85조의2,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제2항, 제9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6조제1항·제2항, 제97조, 제99조, 제100조제1항,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03조제1항·제3항·제4항·제8항, 제105조제2항, 제106조제2항·제5항, 제126조의2제1항, 제127조제1항·제4항, 제134조제1항·제3항, 제135조제4항·제5항, 제138조, 제144조, 제145조제2항, 제147조제2항, 제1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0조, 제1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3조, 제154조제2항, 제157조, 제158조의2, 제158조의4제1항, 제158조의5제1항, 제158조의6, 제158조의7제1항, 제164조제2항, 제165조제1항, 제165조의2, 제170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및 제182조 중 “농수산부장관” 또는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제3항, 제63조제1항,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3항제4호, 제106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9조제1항, 제144조, 제151조제1항, 제168조제3항, 제175조 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199호 부칙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최초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되,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그 정수는 조합원의 수가 1천인 미만인 때에는 30인, 1천인 이상 5천인 미만인 때에는 50인,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인 때에는 80인, 1만인 이상 2만인 미만인 때에는 100인, 2만인 이상인 때에는 150인으로 한다.

제3조 (조합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시행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의 임원은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일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정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합이 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제4조 (연합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임원을 선출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의 임원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선출 또는 임명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연합회는 늦어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990·4·7, 법률 제4229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는"을 "농지개량조합은"으로 한다.

제7조 중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를 "농지개량조합이"로, "농지개량조합·농업진흥공사"를 "농지개량조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8조 중 "농업진흥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69조 내지 제9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4조 및 제145조와 제147조 및 제14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 수산업법개정법률

[1990·8·1, 법률 제4252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를 말한다"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말한다"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 양곡관리법개정법률

[1994·1·5, 법률 제4707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 농어촌정비법

[1994·12·22, 법률 제4823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농촌근대화촉진법(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1조 내지 제110조·제123조 내지 제143조·제149조 내지 제176조·제178조·제184조·제185조제1호 내지 제3호·제186조 및 제187조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 농지개량조합법

[1995·12·29, 법률 제5077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 생략

제5조 (기반정비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기반정비사업 및 기반시설로 본다.

제6조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11) 양곡관리기금법

[1970·8·12, 법률 제223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양곡"이라 함은 미곡(벼·쌀을 말한다)·맥류(보리·밀·호밀·귀리·보리쌀·밀가루·밀쌀을 말한다)·옥수수·수수·콩과 농지세 징수특별조치법 및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조 및 메밀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기금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곡관리특별회계로부터 이관되는 자산
2. 차관에 의하여 수입한 외국산 양곡 또는 그 판매대전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증여되는 양곡 또는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제5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영·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 농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개시 전에 양곡관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차관양곡 등의 관리) 기금은 정부가 주채무자가 되어 외국정부·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와의 차관이나 기타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양곡과 그 판매대전을 직접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8조 (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및 그 포장용품의 매입과 조작

2. 기금이 관리하는 양곡의 보관시설의 설치
3. 차관에 의하여 수입하는 양곡 중 기금이 관리하는 양곡의 전대
4. 차관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양곡 중 기금이 관리하는 양곡의 원리금 상환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양곡관리특별회계에의 전출

제 10조 (기금의 수입) 기금은 양곡과 그 부산물의 판매대전·전입금·이자수입·출연금·차입금 기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제 11조 (기금의 지출) 기금은 양곡 및 그 포장용품의 매입비·조작비·수입양곡대금의 원리금상환금·양곡보관시설비·과오납환부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기타 기금사업의 시행으로 생기는 지출을 그 지출로 한다.

제 12조 (특별회계전출금 등) ① 기금은 기금의 운영관리비 기타 양곡행정상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없이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 13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14조 (결산보고) ① 농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회계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결산보고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 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기금이 승계한다.

제 3조 (차입금 부채의 승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양곡관리특별회계로부터 승계한

부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가 승계 한다.

제4조 (예산의 승계집행) 이 법 시행당시의 양곡관리특별회계예산 중 기금에 해당되는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이 승계하여 집행한다.

제5조 (승인의 통지) 경제기획원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전입금 과목 신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기금전입금 과목을 신설한다.

제7조 (예산집행의 의제) 이 법 시행 전에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집행한 예산 중 기금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기금이 집행한 것으로 보며, 기금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금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본다.

○ 양곡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

[1981·3·20, 법률 제3391호]

양곡관리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양곡"이라 함은 양곡관리법 제2조의 양곡을 말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중 세입세출결산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 제6조 · 제8조 ·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기금관리기본법

[1991·12·31, 법률 제4461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양곡관리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3월 20일"을 "2월말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 양곡관리법개정법률

[1991·1·5, 법률 제4707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① 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12)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1·1·22. 법률 제229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장기채와 불합리하게 부담되고 있는 조 합비를 합리적으로 정리·조정함으로써 농민부담의 적정을 기하고 농지개량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채"라 함은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대중자금특별회계·재정자금운용특별 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 음으로써 생긴 채무를 말한다.
2. "장기채정리대상자(이하 "정리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기타 농지개량사업 시행 자를 말한다.

제3조 (정리범위와 단위) ① 장기채정리범위는 정리대상자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지구 중 1970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었거나 9할 이상의 공정에 달한 지구로서 1970년 12월 31 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채로서 상환되지 아니한 원리금으로 한다. 이 경우 1970년 12월 31 일 이전에 준공된 지구로서 1970년 12월 31일 이후에 그 남은 사업비로 차입한 장기채는 이를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것으로 본다.

② 장기채정리단위는 당해 조합의 사업시행지구단위로 한다.

제4조 (정부보조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기채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정부에서 보조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거나 조합구역에서 구역을 제외한 경 우에 그 조합 또는 구역이 부담하여야 할 장기채
2. 농지개량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면적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익을 받지 못하는 구역이 부담하여야 할 장기채
 - 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받지 못할 때
 - 나. 卍전환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유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부담이 되는 장기채
 - 가. 천재지변·자연조건변동·설계 또는 공사의 소홀로 인하여 주요농지개량시설을 재시 공 또는 추가공사를 함으로써 당초 사업계획이외의 부담이 되는 장기채

나. 1962년 4월 12일부터 동년 9월 5일까지의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하게 시공된 것으로 인정된 농지개량사업공사로 인하여 조합이 부담하게 된 손실로서 회수할 수 있다고 인정된 금액중 시공업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장기채

다.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이 제외된 지구의 장기채 중 1961년 12월 31일 이후 차입됨으로 인하여 미정리된 장기채

라. 1970년 12월 31일 현재 공사중단지구로서 농림부장관이 공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한 지구가 부담하여야 할 장기채

4. 당해 지구장기채 연부상환금액이 1970년도 전국 반당 평균 장기채부과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관한 금융기관의 정부에 대한 상환의무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기로 결정한 장기채의 재원이 양곡관리특별회계·대중자금특별회계 또는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정리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당해 특별회계에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해산)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지비의 확보가 곤란하고 영속적으로 세입결합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저수지의 입지조건 또는 설치계획의 결함으로 인하여 저수가 불능할 때
2. 몽리자가 사질토로서 관개의 실효를 얻지 못한 때
3. 양수 또는 배수시설의 입지적 조건이 불량하여 양수 또는 배수가 불가능하거나 그 유지비가 과다히 소요될 때
4. 도시계획·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조합구역 면적의 50%이상이 지목이 변경되어 조합을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
5. 기타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경제적인 가치로 보아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명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0조·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해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구역제외)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사업의 이익을 계속하여 받지 못하는 구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을 조합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개·배수 또는 방수 등의 시설 불비 또는 성능부족으로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지

못할 때

2. 사업계획의 차질, 시공불실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이익을 받지 못할 때
3. 조합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일부에 조합사업이외의 다른 농지개량시설을 함으로 인하여 조합사업의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제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조합이 제5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해산 또는 구역제외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정리의 신청과 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의 정리는 정리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사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전항의 신청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상환의 유예)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신청을 한 장기채는 그 정리금액이 결정될 때까지 정리대상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상환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부에 대한 상환은 유예한다.

제10조 (이중정리의 금지)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미 정리된 사유와 요인은 이 법에 의한 같은 사유와 요인으로 이중정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조합경비의 보조)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세입에 결함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조합비를 감면할 경우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적정조합비를 초과하여 부과하여야 할 경우
3. 기타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항의 보조금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다.

제12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정당한 신청을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동전) ① 장기채 정리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받은 뇌물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률)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82·12·31, 법률 제3649호]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불합리하게 부담되고 있는 조합비"를 "사업시행 상 불합리하게 부담되고 있는 조합비"로 하고, "농지개량조합"을 "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채"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정부일반회계, 자금관리특별회계의 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영계정(이하 "자금관리특별회계"라 한다) 및 양곡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2. "장기채정리대상자(이하 "정리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자중 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조합 및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장기채정리 및 조정의 단위) 이 법에 의한 장기채의 정리 및 조정은 조합의 농지개량사업시행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나목 중 "田 전환"을 "田 전환 기타 용도변경"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천재지변 기타 자연조건의 변동이나 설계 또는 공사의 소홀로 농지개량시설의 주요부분은 재공사 하거나 추가공사 함으로써 당초 사업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비의 발생

으로 생긴 장기채

4. 다음 각목의 장기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농지개량사업시행지구의 1천 제곱미터 당 연간부담금이 2등급 벼 20킬로그램의 1981년도 정부수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가. 198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었거나 9할 이상의 공정에 달한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장기채 중 1981년 12월 31일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장기채

나. 198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9할 이상의 공정에 달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차입한 장기채

다. 198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었거나 9할 이상의 공정에 달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장기채(1982년 1월 1일 이후에 차입한 장기채를 포함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정부일반회계·자금관리특별회계 및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채무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는 장기채의 재원이 자금관리특별회계 또는 양곡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이거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인 경우에는 정리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원리금을 매년 정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자금관리특별회계·양곡관리기금 및 국제금융기구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조"를 "제6조"로,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전항"을 "제1항"으로,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을 "농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상환의 유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대상이 되는 장기채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채무의 상환을 유예한다.

1. 정리대상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금융기관의 정부일반회계·자금관리특별회계 및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채무

2. 정리대상자의 국제금융기구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

제9조의2 (상환기간의 순연) 농지개량사업시행지구의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장기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당해 지구의 1천 제곱미터 당 연간 부담금이 2등급 벼 20킬로그램의 당

해 연도 정부수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연차적으로 상환을 순연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채를 정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이중정리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장기채를 정리한 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리사유 또는 요인과 같은 사유 또는 요인을 이유로 다시 정리하지 못한다.

제12조 중 "10만원이하"를 "100만원이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동전)"을 "(벌칙)"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10만원이하"를 "100만원이하"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촉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조"를 "제5조"로,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과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채정리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제의 범위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85·12·31, 법률 제3805호]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본문 중 "2등급 벼 20킬로그램의 1981년도 정부수매가격"을 "2등급 벼 15킬로그램의 1985년도 정부수매가격"으로 하고, 동항동호 가묘·나묘 및 다묘 중 "1981년 12월 31일"을 각각 "1985년 12월 31일"로, 동항동호 나묘 및 다묘 중 "1982년 1월 1일"을 각각 "1986년 1월 1일"로 한다.

제9조의2중 "2등급 벼 20킬로그램"을 "2등급 벼 15킬로그램"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채상환기간을 순연하는 경우 정부는 순연된 장기채의 자금 관리특별회계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수산부장관"을 "농수산부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

[1987·12·4, 법률 제3982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금관리특별회계의 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영계정(이하 "자금관리특별회계"라 한다)"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이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동조 제3항 및 제9조제1호 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89·4·1, 법률 제4114호]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기채와 사업시행상 불합리하게 부담되고 있는 조합비를 합리적으로 정리·조정함으로써"를 "장기채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고 농지개량시설의 기능유지와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장기채정리대상자”를 “장기채보조대상자”로, “정리대상자”를 “보조대상자”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합비”라 함은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장기채 상환을 위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 ①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에 용자 또는 차입된 장기채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금융기관에 상환(농업진흥공사에의 상환을 포함한다)하고 남은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은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1989년 이후 조합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발생하는 장기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1. 농업용수개발·지하댐 및 관정사업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는 농지개량사업시행지구를 단위로 행한다.

제4조(조합비의 부과한도 및 국고보조) ① 조합비는 농지면적 1천제곱미터에 대하여 벼 2등급 품 5킬로그램의 당해 연도 정부수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조합비로 조합이 필요한 경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고에서 이를 보조한다.

③ 조합비의 국고보조는 조합(농업진흥공사를 포함한다)을 단위로 행한다.

④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사업비(장기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1항·제2항 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과 결정)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는 보조대상자의 신청

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비의 보조금은 조합장의 신청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대단위 종합개발사업 시행지구 중 농업진흥공사가 잠정관리하는 미준공 개발시설의 이용에 따른 조합비의 보조금은 농업진흥공사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하되, 이를 국고에서 당해 지구개발비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9조의2·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장기채정리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장기채 및 조합비의 보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조합비부과한도 및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은 1989년도분 조합비부터 적용한다.

○ 농지개량조합법

[1995·12·29, 법률 제5077호]

[본문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

제3조(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 생략

제5조 (기반정비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기반정비사업 및 기반시설로 본다.

제6조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 한다.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1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72·12·18, 법률 제237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지"라 함은 그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이나 목초의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하기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이나 목초의 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경에 장애가 되는 시설·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농지개량시설"이라 함은 유지·수로·농로·제방·양수장 등 농지의 보전·이용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토지를 말한다.

제 2 장 농지의 보전

제3조 (농지전용의 제한) ① 도시계획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3조 및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지역(이하 "도시계획구역 등"이라 한다)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정보미만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농지개량시설용지
2. 국토보존시설용지
3.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
4. 농막·퇴비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용지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② 도시사 또는 군수가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면적을 감축하거나 농지 또는 농수산업의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공용·공공용 목적의 전용)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등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경우는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방·군사용 시설용지
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철도·항만과 공항시설용지
3. 농지개량시설용지
4. 국토보존시설용지
5.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 댐의 시설용지 및 그 수몰 대상지
6.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기존교육시설 확장용지

② 전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전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전용을 위한 권리의 변동) ① 도시계획구역 등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가 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서에는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전용허가지의 경계표시등)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기관은 그 허가·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 안에 당해 농지를 전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표시를 하고, 허가·동의 또는 승인연월일 및 기관명·전용목적 및 면적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제7조 (전용허가의 취소·변경 등) ① 농림부장관·도시사 또는 군수는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계공사의 중단 또는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때
2. 소요되는 면적에 비하여 과대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후 사업규모의 축소로 허가 받은 면적이 과대하게 된 때
3.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한 때
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당해 사업을 실현하지 아니한 때. 다만, 허가 받은 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공공투자비용의 부담) ①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농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에 의하여 시행된 농지개량사업의 몽리지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투자비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부담기준 금액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부담기준금액은 허가 당시의 당해 사업기준 사업비의 3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사유농지의 지목변환) 도시계획구역 등 밖에 있는 사유농지의 지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환하지 못한다.

1.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전용한 때
2.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원상회복의 가망이 없을 때

제 3 장 농지의 이용

제 10조 (경작의무) ① 농지소유자는 농지의 지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그 용도에 쫓아 성실하게 이를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또는 목초의 재배를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지를 놀리거나 이의 경작 기타 이용을 게을리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농지

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수는 농지소유자에게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유휴예상농지의 신고) 농지소유자가 질병·이사·전업 등의 사유로 농지를 놀리게 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최저기준수확량의 결정) ① 군수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마다 최저기준수확량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당해 구·시·군 농촌지도소, 시·군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의 관계직원을 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전항의 최저기준수확량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최저기준수확량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동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조 (경작자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 갈음하여 경작할 자를 이를 희망하는 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분명한 유휴농지
2.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
3.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그 연간수확량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수확량에 미달된 농지

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그 농지를 경작할 자와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전항 제2호의 농지의 경우에는 그 뜻을 이·동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농지소유자에 갈음하여 경작을 하는 자는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의 기준수확량에서 농지세 상당량을 공제한 양의 2할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경작자의 농업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미리 정하는 수량의 곡물을 당해 연도의 정부관리 양곡 매입가격으로 환가 하여 농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지수확량이 그 기준수확량에 미달된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실지수확량을 기준수확량으로 나눈 수치를 그 환가액에 곱한 것을 토지 사용료로 한다.

④ 군수는 전항의 농지가 황폐되어 다른 농지에 비하여 과다하게 노력을 들이거나 비용을 쓰지 아니하고는 효율적인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농지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 (재배작물 변경의 신고) 경작지를 다년생 식물 또는 목초의 재배지로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도시계획구역 등 안에 있는 농지의 이용)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도시계획구역 등 안에 있는 농지로서 전용목적이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16조 (농지의 교환·분합) ① 군수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을 조성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이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기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교환되는 농지의 가격차액에 대하여 금융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 17조 (농지 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지별 농지 카드와 농가별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읍·면장은 전항의 농지 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정리와 기타 농지이용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농지 카드 및 농지원부의 서식과 이의 작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 18조 (수수료)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벌 칙

제2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등록세법의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의 시가 표준액의 2할 이상 3할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의 목적에 위배하여 농지를 전용한 자

② 전항의 죄는 농림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이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조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1975·12·31, 법률 제2837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다년성 식물 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지소·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를 말한다.
2. "농경지"라 함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년성 식물재배지"라 함은 과수원·상전·종묘포·인삼포·약초포 기타 농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목초재배지"라 함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목초를 생산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개량목

초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절대농지"라 함은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농지를 말한다.
6. "상대농지"라 함은 절대농지 이외의 농지를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또는 목초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절대농지의 고시) 농수산부장관은 농지의 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그 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대농지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농지전용의 제한)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예정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지역,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와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역 및 관광휴양지구(이하 "도시계획구역 등"이라 한다)안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3.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리대상이 되는 농지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산림법, 산림개발법 및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4.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일정면적 이하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도시계획구역 등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에 당해 지역 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녹지지역·개발제한지역 및 도시개발예정지역 안에 농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의 절대농지의 전용을 허가·동의 또는 승인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농지의 전용을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당해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농지에 상당하는 농지를 조성하게 하거나 그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할 경우
3. 기타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농수산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공용·공공용 목적의 전용) ① 주무부장관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장관의 동의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상대농지를 국방·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절대농지를 사용하는 국방·군사시설용지
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철도·항만 및 항공시설용지
3. 농지개량시설용지
4. 국토보존시설용지
5.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 댐의 시설용지 및 그 수물 대상지
6.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기존교육시설의 확장용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전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전용허가의 취소·변경 등) ① 농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계공사의 중단 또는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후 사업규모의 축소로 허가 받은 면적이 과다하게 된 경우
 3.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한 경우
 4.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도지사 및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농지의 지목변경 금지) ①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의 지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동의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하여 전용한 경우
 2.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 ②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였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다 농지를 전용하는 시장·동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동장 또는 읍·면장은 이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성실경작의 의무) ①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농지의 지방증진을 도모하고 그 용도에 쫓아 성실하게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또는 목초를 재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지를 놀리거나 이의 경작 또는 재배를 게을리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수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유휴예상농지의 신고) ①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질병·이도·전업 기타사유로 농지를 놀리게 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동장 또는 읍·면장은 즉시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 갈음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분명한 유휴농지

2.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

3.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연간 수확량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수확량 또는 재배기준에 미달한 농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의 농지의 경우에는 그 뜻을 리·동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③ 대리경작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 수확량의 1할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농지가 황폐되어 다른 농지에 비하여 과다하게 세력을 들이거나 비료를 쓰지 아니하고는 제1항제3호의 기준수확량 또는 재배기준이상의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농지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대리경작의 기간) ①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② 대리경작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경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대리경작기간 만료 3월 전에 대리경작자 지정의 해지를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 1월 전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것을 대리경작자와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전이라도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농지를 놀리거나 이의 경작 또는 재배를 게을리 하여 군수가 당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

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확 후 3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지를 신청한 경우

④ 대리경작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대리경작기간만료 3월 전에 해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경작자의 지정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3호의 사유로 작물생육기간 중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물 수확 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년생 식물 등의 재배금지) 답 및 경사 15퍼센트 이하의 전에는 다년생 식물·목초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였거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와 신규개간지를 조성하여 다년생 식물·목초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도시계획구역 등의 안에 있는 농지의 이용)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허가·동의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농지와 도시계획구역 등의 안에 있는 농지로서 전용목적이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4조 (농지 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조치) ①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지별 농지 카드와 농가별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농지 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정리와 기타 농지의 이용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농지 카드 및 농지원부의 서식과 이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원상회복 등) ① 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년생 식물·목초 또는 관상수

를 재배하거나 식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 회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집행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6조 (개발농지의 전용 및 이용 등)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관상수원 등의 전용 및 이용) 지목이 전 또는 답인 관상수원 또는 입목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8조 (수수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벌칙) ① 절대농지를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전용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5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대농지를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전용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3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는 징역과 벌금을 병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제22조 (벌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요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답 또는 경사 15퍼센트 이하의 전에 다년생 식물·목초 또

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 있는 자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험 및 자급하기 위하여 식재한 관상수원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재당시 답 또는 경사 15퍼센트 이하의 전이었던 관상수원은 현재의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경지로 환원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대집행에 의하여 농경지로 환원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대집행에 의하여 즉시 이를 농경지로 환원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에 관한 벌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관상수원을 농경지로 환원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업단지관리법중개정법률

[1977·12·31, 법률 제3065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3조"는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78·12·5, 법률 제3117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한다.

부칙 중 제2조 단서와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초지법개정법률

[1980·1·4, 법률 제3238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경지, 다년성 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 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7호 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 중 "다년성 식물 또는 목초"를 "다년성 식물"로 하며, 제12조 중 "다년성 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 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81·3·7, 법률 제3381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관광단지"를 "관광지"로 하고 "및 관광휴양지구 (이하 "도시계획구역 등"이라 한다)"를 "및 관광휴양지구와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이하 "도시계획구역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 동항제2호 중 "상대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면적이하의 상대농지"로 하며, 동조 동항제3호 중, "산림법, 산림개발법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을 "및 산림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4항(각 호 제외) 및 제

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으며, 상대농지의 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해 연도 농지별·단위당 금액은 농수산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농지기금의 설치) 농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의3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6조의4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업진흥공사가 운영·관리한다.

- ② 기금관리자는 기금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자체회계와 구분·계리 하여야 한다.
- ③ 기금관리자는 회계연도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 전에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5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대체농지의 조성사업
2. 농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
3. 기금의 관리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과 기금의 관리비는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과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농지를 전용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상대농지를 전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지전용자의 농지조성과 농지조성비용의 납입 및 납입금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1982·12·31, 법률 제3642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목이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한다.

⑦ 내지 (11)생략

제7조 생략

○ 관광사업법개정법률

[1986·12·31, 법률 제3910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1. 내지 8. 생략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0·1·13. 법률 제4212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예정지"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지역"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제8조 생략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0·1·13. 법률 제4216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제5조 생략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990·4·7, 법률 제4229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④항 중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93·6·11, 법률 제4552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상대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 밖의 농지"로 하고, 제21조 제1항 중 "절대농지"를 "진흥지역 안의 농지"로, 동조 제2항 중 "상대농지"를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다.

○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1993·8·5, 법률 제4572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 도시지역"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1994·12·22, 법률 제4796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3)생략

(1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1항 중 "시장·동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동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
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으로 한다.

(15)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 농촌정비법

[1994·12·22, 법률 제4823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
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보
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④ 내지 ⑥ 생략

④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예정지"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지역"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제8조 생략

○ 농지법

[1994 · 12 · 22, 법률 제4817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 및 5.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
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농지전용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
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농
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거나 동의·승인을 얻은 농지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 35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지조성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납입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을 이 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이 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제13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14) 종묘관리법

[1973·2·26, 법률 제255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묘의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종묘"라 함은 농산물(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제1항의 농작물을 제외한다)의 번식용에 제공되는 종자·과실·경·근·모본·묘·묘목·수목 및 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종묘업"이라 함은 종묘의 생산과 수출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종묘상"이라 함은 종묘의 판매만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종묘업의 허가 등) ① 종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묘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묘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종묘의 생산과 수출입 또는 판매를 하지 못한다. 다만, 종묘의 수출입에 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종묘업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종묘를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이 종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종묘업의 시설 및 기술기준) 종묘업자 또는 종묘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자격있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5조 (종묘생산포장의 지정) ① 종묘업자의 시판용 종묘의 생산 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항의 종묘생산포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잡위험거리 안에 있는 지역에서 당해 종묘업자 이외의 자가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채종재배에 있어 교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재배를 금지하거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종에 대하여

전항의 교잡위험거리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교잡의 우려가 있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품종등록) ① 종묘업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종묘의 종류와 품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종묘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종묘심의회) ①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종묘의 등록 기타 종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종묘심의회를 둔다.

② 종묘심의회회의 규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품질의 표시) 종묘업자는 종묘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묘의 종류 및 품종명과 수량
2. 종묘의 생산지와 생산연월일
3. 종자의 발아율(묘·묘목 등의 경우는 활착율)
4.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병충해의 유무
5. 종묘의 특성과 재배력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
6. 종묘업허가번호와 품종등록번호(종묘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 (개포장 등의 제한) 종묘업자 또는 종묘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묘를 제외하고는 개포장 또는 분포장 하여 판매하지 못한다.

제10조 (검사·보고) ①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묘의 포장검사와 성능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수량의 종묘를 종묘업자 또는 종묘상으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하게 하며,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종묘의 비축) ① 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묘를 비축하거나 종묘업자에게 종묘의 비축을 명할 수 있다.

② 종묘의 비축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조 (사정가격) ① 농림부장관은 종묘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묘의 생산비·이윤 등을 참작하여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정가격에 관하여는 종묘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3조 (과대선전의 금지) 종묘업자 또는 종묘상은 종묘의 생산자 또는 품질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게 할 과대선전을 하지 못한다.

제 14조 (판매의 제한) 농림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종묘의 형질이 조악하여 보급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묘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5조 (허가 등의 취소)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종묘업자 또는 종묘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종묘업의 허가 또는 종묘상의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종묘업의 허가 또는 종묘상의 등록을 받은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자격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 16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7조 (조성) 정부는 종묘의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 1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가 금지된 종묘를 생산 또는 판매한 자

제 1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4항·제9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1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포장 이외의 장소에서 시판용 종묘를 생산한 자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금지 또는 제거명령에 위반한 자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한 종묘를 판매한 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묘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묘업 또는 종묘상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월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이를 갖추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③ (법령의 폐지) 농산종묘법은 이를 폐지한다.

1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1975·4·11, 법률 제276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를 확대 개발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을 기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간지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간지"라 함은 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하천, 공유 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방조제가 수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사유미간지"라 함은 국유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이외의 모든 미간지를 말한다.
3.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목초재배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관개·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개간"이라 함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개발대상지역"이라 함은 미간지 중 농지로 개발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6. "개발촉진지역"이라 함은 개발대상 지역 중 농지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농지로 개발하기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7. "농지개발기본계획"이라 함은 개발대상 지역 안의 미간지를 개발촉진지역으로 정하고 그 지역 안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적성에 알맞은 작부체계와 개발 후 용도 및 부대시설 등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8. "농지개발실행계획"이라 함은 농지개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개발 우선 순위와 예산규모에 따라 당해 연도에 실제개발을 실행할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9. "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

업진흥공사, 토지소유자(수입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개발제외지역)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개발촉진지역에서 제외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요존국유림 및 시험림
3.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및 문중산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고적사찰의 보존상 필요한 토지
5. 경사 30도 이상의 임야, 경사 15도 이상 30도미만의 임야로서 입목 본수도 30도 이상의 임야, 연료림 또는 유실수림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와 산림개발법에 의한 조림지, 산림법 상의 보안림과 보안예정림 및 소방사업법상 이 소방지 안에도 개발적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개발촉진지역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4조 (농지개발심의위원회) ① 농지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농지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에 농지개발심의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개발촉진지역의 조사결정고시

제5조 (개발대상지역의 선정 및 조사) ① 농수산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의 개발을 위하여 관할 도지사의 부고와 관계부처자료 및 토지소유자 또는 개간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발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상지역을 선정한 때에는 현지를 답사하여 토지의 경사, 토양(토심, 토성, 역함량, 투수도, 산도, 침식을 포함한다), 입목도 등 개간지로서의 적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농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수산부장관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

는 당해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조사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농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진흥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작성) ① 농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지화 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설치계획을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개발적지의 선정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결정 및 고시) ① 농수산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개발촉진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사실상 토지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변동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시장·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개발촉진지역 안의 행위제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 (국가직접개발지역) ① 농수산부장관은 개발촉진지역 중 입지조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직접 종합개발 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국가직접개발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국가 직접개발지역 안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그 개발계획의 개요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직접개발지역을 결정 고시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본 계획과 농지개발실행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이하 "국가대행자"로 한다)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통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을 국가 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개발 후 영농계획
2. 개발비용의 부담방법
3. 분묘 등 지상물의 내용

⑥ 제5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발 후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15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하는 경우의 개발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개간의무와 개간유형

제 10조 (농지개발실시계획) ① 농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직접개발지역 이외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지개발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공고하고 실행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실행계획의 내용과 제11조에 규정한 개간의무 불이행 시에는 제12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집행개발 또는 매수 개발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소유자의 개간의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역으로 결정된 토지 중 실행 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제10조의 실행계획에 따라 사유 미간지를 개간할 의무를 진다.

제 12조 (대집행개발) ① 농수산부장관은 토지소유자가 실행계획을 통지 받고 개발 후 영농의 사는 있으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력으로 개간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직접 개발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에 대신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개발비용은 금전으로 분할 징수하거나 개발농지로 징수할 수 있다.

제 13조 (특수대집행) ① 농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이 공고된 지역 중 토지 소유자가 개간 및 영농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소유자에 대신하여 개간한 후 영농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유자에 대신하여 개간하는 자는 개발비용을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제55조제5항의 예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 임차료로 상계
2. 개발농지의 취득
3. 제1호와 제2호의 병행

③ 토지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소유자에 대신하여 개간하는 자로 하여금 영농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기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제 14조 (대집행절차 등)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5조 (사유 미간지 매수개발) ① 농수산부장관은 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거나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매수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매수 개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의 통지 일로부터 60일 내에 개간허가신

청을 하지 아니하는 토지

2.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된 토지
3.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하거나 자영능력이 없는 경우의 토지
4. 매수개발의 지정을 받은 자가 매매계약 성립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개간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경우 토지대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 국가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기관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감정한 감정일 현재의 미간지 상태의 시가에 의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매수하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다만, 국가가 매수개발자를 지정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일 현재의 미간지 상태의 시가에 의한다.
- ③ 제2항제2호 단서의 경우 감정요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매수인의 부담하에 농수산부장관이 대행한다.
- ④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매수하는 경우의 매매계약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매도증서로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가가 결정되는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도지사의 확인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는 자는 당해 토지 상에 죽목 또는 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물의 소유자가 임의로 지상물을 수거하는 때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매수인의 자격) 국가가 매수개발을 지정할 수 있는 자와 그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의 공동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개발 촉진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타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개간하고자 하는 자
3. 개간촉진지역에서 영농을 희망하는 자로서 개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예치한 자

제 17조 (매수결정 및 고시) 농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매수대가의 지급방법)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가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면적이하의 토지대가는 일시지급 한다.
2. 제1호 이외의 토지로서 국가가 매수하는 경우의 토지대가는 국가에 대신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발급하는 지가증권을 교부하되 토지대가의 상환은 매수 일로부터 7년 균분 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3. 제1호 이외의 토지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자가 매수 개발하는 토지대가는 일시지급 또는 7년 균분상환할 수 있다.

② 사유 미간지를 매수하여 개간하는 자가 제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대가를 공탁함으로써 토지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 토지 상에 설정된 담보권등 기타의 채무는 국가 또는 매수개발지정을 받은 자가 인수하여 매수대가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한다.

제19조 (지가증권) ①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가증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지가증권의 상환을 위한 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급한다.

③ 지가증권발급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취급수수료 및 기타의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제20조 (매수토지의 소유권이전)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 개발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지가증권 발급 시에 국가에 이전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자가 매수하여 개발하는 경우의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대가를 일시지급하는 때에는 대가 지급 시에 분할 상환하는 때에는 완납한 때에 이전하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대금지급중인 사실에 관한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의 사실확인증을 첨부하여 매수인 단독으로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외지역을 포함한다) 및 지상물을 사용·변경·제거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제거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토지수용법 준용) 사유미간지의 사용 또는 수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 4 장 개간신청과 허가

제23조 (개간허가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 통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개발지정을 받은 자는 계약성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서, 영농계획서 및 규약(수인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개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대행자는 경신계획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보 받은 실행계획에 따라 세부설계비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인공동사업자의 대표자 선출, 권리의무, 연대책임 및 사업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24조 (개간허가) ① 농수산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신청서 또는 사업시행인가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개간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개간예정면적 및 준공기일
2. 개발농지의 용도(농경지·목초재배지·다년생식물재배지로 구분한다)
3. 공사비예정액 및 보조율
4. 개발 후 성실하게 이용관리할 의무부여
5. 국공유지인 경우 매도예정가격

② 제23조제2항의 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제1항의 개간허가로 본다.

③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허가의 양도·상속 등) ①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타인에

게 그 권리를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개간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불가피하다고 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 하여야 한다.

③ 개간허가를 받은 권리는 이를 상속할 수 있다.

제26조 (허가의 고시) 농수산부장관은 국가직접개발지역의 사업시행인가와 대집행에 의한 개간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허가의 취소) ① 농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간허가를 받고 착공예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지상에 설치한 토석과 시설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토석과 시설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상으로 매수하거나 이해 관계인에게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 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측량·설계에 의하여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준공인가)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일로부터 30일 내에 준공인가 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수산부장관은 준공 검사 후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공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 (타법과의 관계) ① 이 법에 의한 개간허가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신고 또는 명령 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매립면허

2.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3.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허가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 등의 허가
 4. 산림법 제10조·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6. 산림개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7. 소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지 안에서의 개간 등의 허가
 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명령
 9. 도시계획법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개발 예정구역 안에 형질변경 등의 허가
 10.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개간 등의 허가
 11. 초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허가
 12.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 안에서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② 이 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이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에 개장명령이 발효한다.

제 5 장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

제31조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 안의 국공유지(지상물은 제외한다)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일로부터 농수산부 장관이 관리 처분한다. 다만, 공무원연금기금계정 소유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상으로 취득하여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였거나 토지에 대하여 투자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지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국공유 미간지의 실도 등) ① 농수산부 장관은 국공유의 미간지를 개간능력 있는 영

농희망자에게 임대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준공인가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영농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개발한자에게 매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매도대가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개간허가통지일 현재의 미간지 상태의 시가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가는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하며, 농수산부장관은 토지대가 완납 후에 매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공유 개발농지의 매도) ① 농수산부장관은 국가 직접개발지역 안 국공유지와 사유 미간지 중 매수토지 및 개발비 부담으로 귀속한 토지는 개발 후 영농희망자에게 매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방법은 매도예정토지를 일정기간 공고 또는 게시한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도한다.

1.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개발농지에서 영농을 희망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명경쟁으로 매도한다.

④ 매도대가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 당시의 시가로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하며, 매도증서는 대금 완납 후에 발급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자에게 매도한 때에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 (국공유 개발농지의 매도 전 영농관리) ① 농수산부장관은 국공유의 개발농지를 매도 전이라 할지라도 영업상 필요한 때에는 영농희망자를 선정하여 영농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상환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32조제3항과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대가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거나 매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 (국공유지의 매도취소와 환수전매) ① 농수산부장관은 연부상환을 조건으로 국공유지를 매수한 자가 상환완료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이를 환수하여 타인에게 전매할 수 있다.

1. 성실하게 영농을 하지 아니한 때

2. 토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토지의 기납부 토지 대금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반환할 수 있다.

제37조 (공공용지의 무상귀속)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구거·도로·제방·유지·하천부지 등 공공용의 시설 및 토지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없이 자력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환지처분

제38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용 관계인에게 그 내용과 사용개시일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환지계획) ①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각 필별 환지명세
2. 청산금명세
3.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명세
4.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환지는 종전토지의 상태와 같은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금지 등을 참작하여 그 환지가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단지정 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개발 후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종전 토지소유자로 본다.

④ 환지를 정함에 있어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0평 미만의 토지와 1구획의 환지를 받고 잔여토지가 300평 미만인 때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⑤ 종전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동기가 있는 경우 이와 교환될 환지에는 그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0조 (환지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 후 지체없이 확정측량과 분할 절차를 거쳐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농수산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수산장관이 환지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된 환지는 그 인가 고시한 의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조 (환지청산금) ①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교부하여야 하며, 1년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환지청산금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과한 경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3조 (대의원회) ①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등위와 평정가격의 사정 및 환지계획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자문을 위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당해 지역내 토지소유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구성 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가 선임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수는 당해 지구 토지소유자가 30인 이내인 때에는 전원으로 하고, 30인을 초과한 때에는 30인마다 1인을 추가한다.

④ 대의원회는 대의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의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 ①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환지계획에 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환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때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또는 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한 이전과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환지에 관한 등기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등 기등기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부동산등기법 및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청에 갈음하여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 (소유권이전등기) ① 타인소유 미간지를 개간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이 법에 의하여 개발농지를 분배받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장관의 준공인가서와 확인서로써 등기원인 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 (청산금 또는 보상금의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청산금 또는 이 법에 의한 금전을 보상할 경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지급할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47조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준용) 환지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준용한다.

제 7 장 사업조성

제4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정부는 농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9조 (자금지원)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의 필요한 개발비 및 영농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발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당해 개발농지를 시가의 범위 내에서 담보로 할 수 있다.

제50조 (보조금 등의 정지 반환 등) ① 농수산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보조조건을 위배하였거나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의 대출 받은 자가 융자조건에 위배하였거나 융자목적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의 대출을 중지하거나 이미 대출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기간전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

제51조 (조세 및 수수료의 감면)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개발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감

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공부의 등본 또는 사본의 청구와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 8 장 개발농지의 사후관리

제52조 (지방증진의무) ①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에 대하여는 지방증진을 위하여 농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부 장관은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53조 (농지의 농업 외 전용금지) ① 이 법에 의하여 개발한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 장관을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용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관할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에 전용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을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4조 (용도변경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개발한 농지를 개간 허가시에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개발농지의 사후관리) ① 이 법에 의한 개발농지는 관할시장·군수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농지대장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영농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개발농지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배기준에 미달된 농지에 대하여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타인(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경작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대리경작자는 당해 연도 수확량의 1할을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료로 지불

하여야 한다.

제56조 (대리경작농지의 매수) ① 시장·군수는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대리경작을 시킨 때에는 대리경작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대리경작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대가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매도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③ 제15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대리경작농지의 매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 9 장 잡 칙

제57조 (재허가의 신청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다시 개간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58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의 열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토지관할등기소·세무관서·구·시·군·읍·면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장책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도면의 등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 또는 측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농업진흥공사의 임직원
3. 기타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59조 (지적이동 등 정리의 특례) ①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하는 지적이동 등 정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6조, 지적법 제10조 내지 제19조 및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지적·오류·정정 및 토지의 변동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 및 지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행할 수 있다.

제60조 (서류송부의 방법) ① 주소 또는 거수가 불명함으로 서류의 송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류송부에 대신하여 이를 관할 읍·면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서류는 공고가 있는 날에 발송된 것으로 보며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그중 1인에게 송부하거나 통지한 때에는 전원에 통지 또는 송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유자가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시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 (권한의 위임)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 칙

제63조 (벌칙)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개발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료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추징한다.

제64조 (동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간허가를 받고 개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한 자
2. 제13조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5조 (동전)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 (동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를 방해한 자
2.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자
3. 개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치된 표식을 이전·오손 또는 제거 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률)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동전)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농경지조성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개정법률

[1975·12·31, 법률 제2838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소규모개발) 농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상지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단지화 개발이 부적당한 10헥타 미만의 미간지 중 개발적지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하여금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소유자가 제10조에 의한 실행계획의 통지일로부터 60일 내에 개간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영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토지
3.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토지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매도권의 보유)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매수개발하는 경우에 있어 준공예정일 60일전까지 매도인이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도인은 국가로부터 영수한 지가증권과 그 상환금 및 이에 대한 지가증권표기이율에 의한 이자와 국가가 부담한 개발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개발지정을 받은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가 환매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로 하여금 환매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가 환매 개발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의 경우와 같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자연공원법

[1980·1·4, 법률 제3243호]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내지 ④ 생략
- ⑤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1. 생략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1항제10호 중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2"를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로 한다.
 3. 생략
- ⑥ 생략

○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

[1981·3·20, 법률 제3393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개발대상지역"이라 함은 농지로 개발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미간지와 이에 위요 또는 인접된 기경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종림·요존국유림·시험림 및 천연보호림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5. 경사도 36도 이상의 임야, 경사도 21도 이상 36도미만의 임야로서 임목 본수도 51퍼센트 이상의 임야와 연료림·유실수림·조림지 보안림 예정지 및 소방지 제3조제2항 중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와 산림개발법에 의한 조림지, 산림법 상의 보안림과 보안 예정림 및 소방사업법상의 소방지 안에도"를 "제1항제5호에 규정된 지역 안에도"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개발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가진 자의 개발비부담 등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면적이하의 토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제4호·제7호·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중 "산림법 제22조"를 "산림법 제59조"로 한다.

3.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 허가
4. 산림법 제57조·제58조 및 제61조에 의한 보안림 예정지와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해제고시,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7. 소방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소방지 안에서의 개간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의한 소방지의 지정해제
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개장명령 및 개장허가
11. 초지법 제10조에 의한 초지조성 허가

제31조제1항 중 "고시일로부터"를 "제9조제1항에 의한 국가직접개발지역의 기본계획통지일 또는 제10조제1항에 의한 실행계획 통지일로부터"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 이외의 경우에도 특별한 행정목적의 달성 기타 사유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공유지의 종전의 소유주체 또는 관리 기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가 국가의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소유주체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개발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 제목 "(공공용지의 무상귀속)"을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및 양여)"로 하고, 동조 중 "국가에"를 "그 관리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유의 도로(도로법상의 도로는 제외한다)·구거·제방(하천법 상의 하천부속물로서의 제방은 제외한다) 및 구거 등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폐지된 것은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된 공공시설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국유재산법·산림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징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개발농지계) ① 이 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그 개발농지의 지방증진과 구거·제방·도로·유지 등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기타 영농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그들을 계원으로 하는 개발농지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농지계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농지의 전용 및 이용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전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의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개발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용농지의 면적에 상당하는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2에 의한 농지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전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은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에 전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할 경우

④ 제29조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개발농지의 전용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5조제4항 중 "재배기준에 미달된 농지에 대하여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를 "재배기준에 미달된 농지에 대하여 농경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내, 목초재배지 및 다년생 식물재배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내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지적법 제10조 내지 제19조 및 제28조 내지 제31조"를 "지적법 제15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환지청산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의하여 분할 징수하고 있는 환지청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초지법중개정법률

[1981·12·31, 법률 제3539호]

[본문 생략]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 ③ 생략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990·4·7, 법률 제4229호]

[본문 생략]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3항 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2에 의한 농지기금에"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로 한다.
- ④ 생략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제11호 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 농어촌정비법

[1994 · 12 · 24. 법률 제4823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 · 제33조 · 제35조 · 제36조 · 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16) 한국농촌경제연구육성법

[1999·1·29, 법률 제573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경제 및 농·어촌사회개발에 관한 정책수단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농림·수산정책의 수립과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95. 12. 5)

제3조 (출연금) ① 정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정부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연구원에 지급한 보조금은 제3조의 규칙에 의한 출연금으로 본다.

17)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1980·11·5, 법률 제326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농어촌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부재산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재산"이라 함은 특정인이 임의로 국가에 기부 또는 증여한 재산 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민후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농어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어민후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부재산
2. 정부의 출손금
3. 정부투자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출손금
4. 기금운용수익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농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차입) 농수산부장관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재원으로부터 자금의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수익금의 사용) ① 기금의 운용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농어민후계자육성을 위한

영농·영어정착사업 수행을 위하여 용자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자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용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용자금의 회수) 농수산부장관은 용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용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농수산부장관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기금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 1 항의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년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3.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업무와 선정원칙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차입금, 전입금, 회수금, 매각대금, 이자, 출손금 기타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익으로 한다.

② 기금은 대출금, 차입금원리금의 상환금·매각비용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출납역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역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③ "회계관계직무등의책임에관한 법률"중 세입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 또는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역에게 준용한다.

제 13조 (결산의 보고) 농수산부장관은 회계 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 년도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감독 및 명령)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과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15조 (사업에 대한 협조) 각 기관의 장은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0년 6월 17일부터 이 법 시행일 까지 국가에 기부 또는 증여된 재산 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재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금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중개정법률

[1982·12·31, 법률 제3597호]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손금

부 칙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중개정법률

[1983·12·29, 법률 제3671호]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기금수익금의 사용)"을 "(기금 및 수익금의 사용)"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 및 수익금은 농어민후계장의 영농·영어정착사업을 위한 용자금과 농어민후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대출금" 다음에 "교육훈련비"를 삽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4·7, 법률 제4228108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3. 생략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농업기계화촉진기금·수산진흥기금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이 승계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승계 하는 농지구입자금융자의 채권과 동 기금의 채무의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내지 ④ 생략

⑤ 1990년도 정부세출예산에 계상된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손금 중 농지구입자금을 제외한 출손금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 및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업기계화자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은 기금에 계상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어민후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하여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18)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1990·12·15, 법률 제327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업협동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임원의 임면에 관한 임시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장의 임명) 축산업협동조합장은 축산업협동조합법 제41조제2항 및 제10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조합장의 임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및 제103조의 규정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조합장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조합장의 해임) ①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 및 제103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조합장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 또는 처분한 때
3. 축산업협동조합법 기타 조합에 적용되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실을 끼친 때
4. 주무부장관·감사원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6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축산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일(1981·1·1)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특수농업협동조합(축산부문조합을 말한다)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 전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축산업협도오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

[1988·12·31, 법률 제4081호]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1983·12·31, 법률 제368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군의 지역 중 농업·임업 또는 수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역의 경우에도 인근행정구역과의 관계 기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어촌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농어촌소득원개발계획의 수립

제3조 (농어촌소득원개발 기본방침) ① 농어촌소득원개발과 관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농어촌소득원개발 방침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별 농어촌소득원개발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소득원개발의 기본목표
2.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의 선정기준 및 지원방법
3. 농어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역(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농공지구여건에 조성
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지역의 노동력수급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어촌소득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농어촌소득원개발 기본 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본방침

에 따라 농어촌소득원개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한다.

② 제 1 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농어촌소득원개발의 기본사항
2.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의 선정방법
3. 농공지구의 지정 및 입주업종의 선정방법
4.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유치를 위한 공장용지와 농지의 이용조정에 관한 방침
5. 공장입지·도로 및 공업용수공급시설 등 농공지구의 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지역의 직업훈련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공업유치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어촌소득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함에 앞서 경제기획원장관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당해 기본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형·용수·수송조건 등 자연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도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어촌소득원개발 시행계획)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본 계획에 따라 농어촌소득원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제 1 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농어촌소득증대의 기본목표
2.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의 선정 및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 농공지구의 지정 및 입주공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한 사항
4. 공업유치를 위한 공장용지와 농지의 이용조정에 관한 사항
5. 공장입지·도로 및 공업용수공급시설 등 농공지구의 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6. 표준임대공장의 건설 및 그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
7. 원료조달 및 제품의 생산과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8. 취업인력조정 및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9. 공업유치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어촌소득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가 제 1 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함에 앞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지형·용수·수송조건 등 자연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촌소득원개발 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학술단체 기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농어촌소득원개발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 및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3 장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시행

제8조 (농공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제24조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 1 항의 지정에 의하여 농공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지형·용수·수송조건 등 자연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농공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농공지구 안의 재산처분) 농공지구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8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자가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인정·신고·허가·인가·면허·동의 또는 해제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2.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도 지정의 해제
4.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의 인가
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7.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유 등의 허가
8.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 등의 허가 및 신고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0.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11.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허가·확인의 동의

제 11 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상수도·전기·전화 등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12 조 (표준임대공장의 건설)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 안에 표준임대공장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표준임대공장을 건설하는 때에는 제10조제4항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인정·신고·허가·인가·면허·동의 또는 해제 등이 있는 것으로 본

다.

제 13조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지구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확장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수출지원 및 계열화 촉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4조 (기술 및 경영지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장·군수 및 농공지구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 15조 (농어촌직업훈련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농어촌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하여야 하며, 농공지구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종업원훈련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6조 (농어촌환경의 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유치로 인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등의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7조 (부업단지의 지정)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 안의 부존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부업단지(이하 "부업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8조 (농수산물가공공장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의 농수산물의 산지가공시설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가공공장(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0조제4항제2호 내지 제11호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공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10조제4항제2호 내지 제11호 중 해당 사항의 신고·허가·인가·면허·동의 또는 해제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표준임대가공공장의 건설)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 안에 가공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표준임대가공공장을 건설한 때에는 제10조제4항제2호 내지 제11호 중 해당 사항의 신고·허가·인가·면허·동의 또는 해제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기술 및 경영지도) 농어촌개발공사는 시장·군수 또는 가공공장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어촌휴양지의 지정)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 안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휴양지를 지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그 지역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조세의 감면조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공지구 또는 부업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
2. 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자

제23조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도에 도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시·군에 시·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도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와 시·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촌소득원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공업배치법 및 중소기업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보고) 도지사는 매년 농어촌소득원개발 계획의 추진실적을 결함·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새마을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새마을공장은 제13조 내지 제16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농공지구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본다.
- ③ (농어촌부업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촌부업단지 및 농수산물가공공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4·7. 법률 제4228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2. 및 3.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농공지구관련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부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부업단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산단지로 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20) 농지임대차관리법

[1986·12·31, 법률 제388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임대차 등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임대차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농가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농가"라 함은 세대주 또는 그 동거가족이 농경에 종사하여 생활하는 가구단위를 말한다.
3.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말한다.
4.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임대차계약의 방법) ① 임대차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제4조 (임대차계약이 신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당해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의 내용의 변경이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임대차의 기간) ① 임대차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성 농작물·연작 기피성 농작물 기타 특수성 있는 농작물의 경우나 징집·질병 기타 계약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그 임대차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차의 기간은 그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임대차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단기이거나 그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최단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차료) ① 임차료의 상한은 농지의 생산성 및 농작물의 수익성과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별·농작물별·농지등급별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한다. 시·군은 조례를 정할 경우 미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다.

③ 임차료의 지급방법 기타 임차료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과금 등의 부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과 농지개발비 기타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임차료의 감면청구) ① 임차인은 임차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기타 자연재해 등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거나 그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차료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감면의 사유 및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조정) ① 임대차의 당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지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그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때에는 당해 임대차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임대차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임대차의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이를 당해 임대차의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제10조 (계약해지의 제한) ① 임대차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임대차를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제 11조 (임대인의 지위승계) 임차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영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3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제 13조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농지를 전대하지 못한다.

제 14조 (위탁경영 등)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영농할 수 없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 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경우
2. 통작거리·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5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 및 면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관할구역 안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부장관은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제 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할시·구·읍 또는 면의 장
2. 관할시장(서울특별시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구·읍 또는 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영농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
3. 관할시·구·읍 또는 면에 소재 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촌지도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1인

③ 위원장은 관할시·구·읍 또는 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만, 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농지 면적이 많은 시·구·읍 또는 면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의 선임·해임과 위원회의 조직·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에 관한 조정
3.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18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 19조 (농지경매의 확인)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경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 또는 면의 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임대차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 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2조 (적용의 특례) 농가가 농경하는 농지 중 당해 농가와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농지는 제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농가의 동거가족의 농지로 본다.

제 23조 (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경영 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영농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을 기준으로 한 당해 농지면적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4조 (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5조 (과태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또는 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구·읍 또는 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구·읍 또는 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공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6조 (벌칙 적용의 의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차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농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계약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또는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3조·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서면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1994·12·22, 법률 제4796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2)생략 (13)농지임대차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을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를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4)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 농지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3. 생략
4. 농지임대차관리법
5.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임차료상한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상한 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농지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

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2조 생략

제13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21)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1986·12·31, 법률 제388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지역회사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의 공업육성, 농어촌의 편익시설 및 복지기반의 확충과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지구입의 지원
2. 농공지구(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
3.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지원
4. 농어촌의 복지·문화시설의 설치의 지원
5. 농어촌의 보건 및 의료기반의 확충
6. 어선대체 및 수산 증·양식사업
7. 농어촌의 관광지개발
8.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부과금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5조 (수입부과금) ①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농·축·수산·임산업 또는 그 혼합 조제품(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그 수입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금(이하 "수입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② 정부는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기타 국민경제의 운용상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입부과금의 부과대상품목, 부과정수율, 징수 및 납입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수입부과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의 차입)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관리특별회계·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조 (채권의 발행) ① 정부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8조 (국채법의 적용) 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의 투자
2.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대상사업 및 투·융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자금관리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2. 국·공채의 매입
3. 금융기관에의 예치

제 11조 (심의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농어촌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수입부과금의 부과대상품목·부과정수율 및 면제기준
3.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조 (기금운용계획)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 회계년도 투·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제 13조 (기금의 회계기간)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회의 이사 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 1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손금, 수입부과금, 채무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차입금, 회수금, 이자 회수와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투·융자금, 차입금원리금의 상환금, 예탁금, 채권발행비용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 15조 (융자금의 회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 16조 (결산보고) 농림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 (감독)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중앙회에 대하여 감독 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8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부과금을 면세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자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

[1987·12·4, 법률 제3982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4·7, 법률 제4228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② 생략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업기계화촉진기금, 수산진흥기금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이 승계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이 승계 하는 농지구입자금융자의 채권과 동 기금의 채무의 일부는 그러하지 못하다.

② 내지 ④ 생략

⑤ 1990년도 정부세출예산에 계상된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손금 중 농지구입자금을 제외한 출손금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 및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업기계화자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은 기금에 계상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22)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1999·1·29, 법률 제573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물의 저장·가공 등 식품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기술기반을 향상시켜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95. 12. 6)

제3조 (출연금) ① 정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이 다른 기관·단체 등과의 수탁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연구원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정부의 출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 및 정부의의 자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본다.
- ③ (다른 연구기관등의 재산의 양여 등)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은 재단법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식품연구에 관한 장비·기자재 기타 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3. 미군정하 농업관련 법령

件 名	公布番號	公布日字	페이지
財産移轉禁止	軍政法律 2 號	45. 9. 25	650
日本陸海軍財産에 관한件	" 4 "	45. 9. 28	651
最高小作料決定件	軍政法令 9 "	45. 10. 5	652
國家的非常時機의 宣告等	" 19 "	45. 10. 30	654
法律諸命令의 存續	" 21 "	45. 11. 2	656
漁業權의 無效	" 27 "	45. 11. 9	657
朝鮮內所在日本人財産權取得의件	" 33 "	45. 12. 6	658
米穀收集令	" 45 "	46. 1. 25	659
農商局을農務局으로	" 48 "	46. 2. 13	660
新韓公司의 創立	" 52 "	46. 2. 21	661
朝鮮政府各部處의名稱	" 64 "	46. 3. 29	662
道財産管理機關의 設置	" 73 "	46. 4. 23	664
서울特別市에 關한特別米穀令	" 77 "	46. 4. 24	665
新韓株式會社의 創立	" 80 "	46. 5. 7	666
財産訴請委員會의 設置	" 103 "	46. 8. 31	668
米穀收集令의 廢止, 米穀搬入許可證의 失效	" 105 "	46. 8. 31	669
穀物及의 檢査	" 111 "	46. 9. 18	670
穀物搗精設備의 許可	" 113 "	46. 10. 8	671
道機構의 改革	" 114 "	46. 10. 8	673
朝鮮過渡立法議院의 創設	" 118 "	46. 8. 24	680
罰金의 增額과 特別審判員의 管轄權及 物價 糧穀統制法規違反에 對한 刑罰	" 120 "	46. 10. 24	682
米穀密輸出等의 處罰	" 127 "	46. 11. 15	683
繭絲檢査法	" 133 "	47. 3. 8	686
朝鮮競馬令의 改正	" 138 "	47. 4. 1	687
畜牛屠殺制限에 관한件	" 140 "	47. 6. 9	687
夏穀收集	過政法律 2 號	47. 5. 8	689
米穀收集法	" 6 "	47. 9. 27	689
植 木 日	" 10 "	48. 3. 31	691
農業統計報告令	軍政法令 143 "	47. 6. 21	692

件 名	公布番號	公布日字	페이지
金融組合監督權의 移管	軍政法令 144號	47. 6. 21	694
水産製品檢査規則改正	“ 147 “	47. 7. 30	695
農業技術教育令	“ 160 “	47. 12. 15	696
日本敵産管理人名義登記抹消에 關한件	“ 162 “	48. 1. 15	699
水産食料品及其施設衛生規格	“ 163 “	48. 1. 23	700
朝鮮農會의 機構改革	“ 165 “	48. 1. 31	702
法令第 114 號(道機構의 改革)의 改正	“ 167 “	48. 2. 12	702
食糧及物資配給制度違反行爲의 處罰	“ 168 “	48. 2. 21	703
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	“ 173 “	48. 3. 22	705
新韓株式會社	“ 174 “	48. 3. 22	710
朝鮮馬事會令의 改正	“ 178 “	48. 4. 10	711
法令第 33 號의 (朝鮮內所在日本人財産權取得의件) 釋明	“ 191 “	48. 5. 12	712
食糧收集計劃違反에 關한罰則	“ 198 “	48. 5. 26	713
地稅令等의 改正	“ 202 “	48. 6. 21	714
法令 173 號(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 第 12 條의 改正	“ 209 “	48. 7. 3	715
秋穀收集令	“ 212 “	48. 7. 29	717
法令 173 號(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 第 12 條의 改正	“ 215 “	48. 8. 10	724
米穀收集及運搬	行政命令 8 “	47. 10. 20	728
米穀運搬許可	“ 11 “	47. 12. 31	729
朝鮮農會費	農務部命令 1 “	46. 6. 15	729
新韓公社에 依한米穀小作料收集	“ 2 “	46. 6. 15	730
朝鮮農會費	農務部令 5 “	47. 9. 18	731
穀物檢査規則	“ 3 “	46. 9. 20	731
叭檢査規則	“ 4 “	46. 10. 5	737
糧穀物價統制法規違反事件에 關한件	檢査部令 7 “	46. 10. 23	738
法令第 33 號에 依한歸屬財産의 管理事業에 關한 取調, 拘束及起訴	司法部訓令 8 “	47. 10. 6	739
法令第 2 號의 解釋, 期間의 延長, 移轉登記, 一般禁止에 關하여	管理令 1 “	45. 11. 14	739
朝鮮軍政廳取得日本人財産의 報告及財産의 經營占有及使用에 關한件	財産管理令 2 “	45. 12. 14	740

件 名	公 布 番 號	公 布 日 字	페이지
在朝鮮美軍의 土地管理	保管指令 3 號	45. 12. 19	742
在朝鮮美軍의 土地管理責任	財産管理令 4 "	46. 3. 8	742
既得된 諸會社에 依한 報告	" 5 "	46. 7. 21	744
漁船及其他船舶	管財令 6 "	46. 7. 25	746
管財書式及報告書에 관한件	" 7 "	46. 12. 26	748
各種歸屬事業體運營에 관한件	" 8 "	46. 12. 31	749
管財令第 8 號의 改正	" 9 "	47. 3. 31	754
軍政廳財産管理官이 株式其他利權을 所有한 朝鮮內에서 創立된 各種法人運營에 관한件	過政管財令 10 "	47. 12. 6	759
管財令第 4 號改正의件	" 11 "	48. 5. 4	762
夏穀收集	中央食糧規則 1 "	46. 5. 29	762
米穀收集令	" 2 "	46. 8. 12	766
中央食糧規則第 2 號改正의件, 米穀及其他食糧 收集, 小作料支拂手續	" 3 "	46. 9. 23	771
中央食糧規則第 3 號改正, 小作料支拂手續	" 4 "	47. 3. 26	773
夏穀收集令	" 5 "	47. 5. 8	775
米穀收集案	" 6 "	47. 8. 18	781
夏穀收集令	" 7 "	48. 5. 4	786
朝鮮裁判所의 歸屬法人에 관한 訴訟에 對한 管轄權		48. 7. 16	794
法令第 33 號에 依하여 日本人財産을 取得함으로 因한 法人債務의 支拂에 관한件		46. 4. 27	796
財産管理인과 物資營團과의 關係		46. 5. 27	797

○ 財産移轉禁止 (法律第 2 號, 1945. 9. 25)

第 1 條 1945 年 8 月 9 日以後 日本, 獨逸, 伊太利, 벨게리아, 羅馬尼亞, 匈牙利, 泰國等 諸國의 政府나 또는 其代理機關이나 또 其國民, 會社, 團體, 組合, 其他 機關과 또는 該政府等 이 組織又は 調整하는 機關이 直接間接 또는 全部或一部를 所有하거나 管遇하는 金, 銀, 自金 通貨, 證券, 預金, 債券, 有價證券, 其他 財産을 賈買, 取得, 移動, 支拂, 引出, 處分, 輸入 輸出 其他 取扱과 權利, 權力, 特權의 行使는 此法令에 規定한 以外에는 茲에 此를 禁止함.

第 2 條 第 1 條에 言及한 諸政府에 所屬된 財産을 所有, 管理, 또는 支配하는 保管者, 管理者 官吏, 銀行, 信託會社, 個人 또는 關係있는 局, 課 또는 其代理機關 또는 前記政府의 管理, 指導, 監督을 받는 會社, 團體, 組合 其他 機關中에 上述한 諸政府或은 朝鮮政府 또는 其 代理機關, 會社, 組合及補助機關으로 直接的, 間接的, 既定的, 臨時的으로 財政上 利害關係를 有한 機關이나 大日本政治會, 大政翼贊會及其加入團體, 代理機關 또는 繼承機關과 大日本婦人會聯盟, 其他 日本의 極端國粹主義的, 暴力的, 秘密結社及其加入團體에 하여 左記 各項의 遵行을 要함.

1. (가) 軍政廳의 指示에 應하여 前記財産을 保持하고 其指示가 有效한 期間에는 該財産을 移轉거나 他方法으로 處置하지 못함.

(나) 前記財産을 保存, 維持, 守護하고 其價値와 效用을 破損시키는 行爲를 防止할 事

(다) 正確한 記錄文書及會計帳簿를 維持할 事

2. 軍政廳의 指示가 있을때에는 其指示대로

(가) 1945 年 8 月 9 日以後 前記財産에 關하여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는 報告書類와 前記財産에 關한 모든 領受證, 支出證書等を 整備할 事

(나) 前記財産의 保管及管理와 모든 帳簿, 記錄, 會計書類를 引渡할 事

(다) 財産과 모든 收入及收益金を 證明할 事

第 3 條 財産에 關한 取引으로서 第 2 條 所定の 範圍에 包含되지 아니한 것은 左記諸項의 條件下에 許可함.

1. 朝鮮國民, 聯合國諸國民 또는 其政府의 代理機關, 會社團體, 組合 또는 其政府의 機關과 또는 其政府가 組織又は 調整하는 機關의 利益이 되거나 또는 利益을 爲하여 取引할 事

2. 朝鮮政府의 正式設立한 代行機關이 後에 決定할 만큼 適當한 報酬를 支拂할 事

3. 如斯한 取引이 成立되기 前에 賣主는 반드시 其取引의 內容과 該財産의 所在地及性質과 及其財産을 所有한 會社, 團體, 組合 其他 組織體의 內容을 明記하여 朝鮮政府에 書類로 報告할 事

4. 第 3 項의 報告를 提出한 後 60 日以內에 朝鮮政府나 其代行 機關에서 禁止命令이 없는

때는 其取引은 成立될 수 있음.

5. 如斯한 賣買는 그 取引成立과 同時에 그 收入金을 既時朝鮮銀行及 其最近代理機關에게 如斯한 保管資金의 引出은 該財를 關係人の 適當한 生活費에 限하여 此를 許可한 保管함. 朝鮮銀行에서 引受한 同財産은 前所有者에게 適當히 會計하기 爲하여 朝鮮政府가 此를 保管함.
6. 如斯한 保管資金의 引出은 該財産關係人の 適當한 生活費에 限하여 此를 許可함.

第4條 本法令에 說明한 種類의 取引으로서 1945年 8月 9日以後에 成立된 것은 本日で 全部 無效로함. 但 朝鮮政府에 對하여 有效申請과 取引에 關한 明細書, 支拂한 報酬金及 人物, 財産, 其他 關係事實을 提出하면 當該取引은 有效케 될 수 있음.

第5條 本法令은 發表同時 施行함.

第6條 本法令을 違反한 者로 軍政裁判에서 有罪判決을 受한者는 該裁判의 所定刑罰에 處함.

1945年 9月 25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비·아·놀드

○ 日本陸海軍財産에 關한件 (法律第4號, 1945. 9. 28)

第1條 日本陸海軍의 各種財産은 其賣買, 取得 또는 讓渡를 茲에 禁止 함.

第2條 朝鮮內의 如斯한 財産은 美國의 所有가 되었스니 美國이나 聯合國의 許可없이 此를 占有하는 것은 不法임 如斯한 財産을 占有한 者는 左의 各項을 履行할 事

(가) 朝鮮政府 其所屬官廳에서 命令으로 指定하는 時日과 場所에 財産明細書와 該財産取得에 關係된 사람들과 其他 關係事項을 明記한 報告를 提出할 事

(나) 同財産을 保存, 維持, 守護하고 其價値와 效用을 損傷할 如何한 行爲든지 此를 防止할 事

(다) 同財産은 朝鮮政府나 其所屬官廳에서 命令으로 指定하는 時日과 場所에 此를 引渡할 事

第3條 本法令은 1945年 9月 28日 夜半부터 有效함.

第4條 本法令의 規定을 犯하는 者는 軍律裁判의 有罪判決을 受하는 同時 其所定刑罰에 處함.

1945年 9月 28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비·아-놀드

○ 最高小作料決定件 (法令第 9 號, 1945. 10. 5)

第 1 條 國家非常事態布告

第 2 條 最高小作料決定

第 3 條 最高額以下の 小作料契約은 無妨

第 4 條 小作地契約의 一方의 解除는 無效

第 5 條 最高額以上の 小作料契約

第 6 條 現存小作契約의 提出

第 7 條 小作料의 現物支拂에 關하여

第 8 條 本令의 施行時日

第 9 條 罰 則

第 1 條 (國家非常事態布告) 現行契約에 依하여 小作人이 其田地에 對하여 支拂하는 苛酷한 小作料及利率과 其結果로 小作人의 半奴隸化와 其生活水準이 軍政廳의 目的인 水準下에 在한 理由로 朝鮮國에 國家非常事態의 存在를 茲를에 布告함.

第 2 條 (最高小作料決定) 田地에 對한 小作人과 地主間의 現存한 契約, 協約又は 約束은 아무리 成立, 證明又は 記錄되었드래도 其性質如何를 不問하고 本令의 效力發生에 따라 改正함. 그리하여 田地와 資産의 占有又は 使用及該資産에 包含된 現存建物, 作業場, 附屬物, 資材, 設備及器具의 占有及使用하는 小作料는 小作人이 天然人이나 法人에게 現物, 金錢又は 如何한 形式으로 納入하든지 該田地에 該小作人이 耕作培養한 天然作物, 産物及收穫物로서 其後에 如何한 人이 投入하였든지 其總額의 3 分 1 (1/3)을 超過치 못함.

第 3 條 (最高額以下の 小作料契約은 無妨) 現存小作料協約又は 約束으로서 本令에 決定한 最高 3 分 1 (1/3) 보다 低한 小作料納入을 定한 것은 其現存規定及約束을 從하여 其正式終結할 때까지 全效力을 繼續할 事

第 4 條 (小作地契約의 一方의 解除는 無效) 現存小作權의 有效期間에는 地主가 該小作權을 解除하라고 取捨權이나 強制力을 合法的으로 行使치 못함, 但 正當한 理由가 有하여 田

地나 小作權協約에 關한 爭議에 對하여 管理權이 有한 正式地方裁判所나 其他法廷에서 公
判決定한 것은 此限에 不在함.

第 5 條 (最高額以上の 小作料新契約) 養蠶과 其他 某種의 動植物의 栽培, 飼育 또는 養成을
包含한 農業의 目的으로 田地의 占有 또는 使用하기 爲한 協約이나 約束으로서 새로 締結한
것이나 延長한 것이나 更新한 것을 勿論하고 如何한 形式으로든지 本 最高 3分 1以上の 小
作料를 定한 것은 엇더한 裁判所나 法廷에서도 不法이오 又は 實行할 수업슴, 本令을 欺弄
하려는 企圖는 此를 違反으로 看做함. 本令을 違反하는 協約이나 約束은 小作人의 利
益을 爲하여 資產所有者에게 對한 罰로 所定最高小作料에서 其 1割을 減하고 納入하기로 定하
야 此를 繼續함.

第 6 條 (現存小作契約의 提出) 田地에 對하여 利害關係가 有한 理由로 協約이나 約束에 依
하여 該資產에 對한 他人의 使用을 爲하여 小作料 또는 收益金을 徵收할 正當한 權利를 有
하거나 主張하는 者는 成文協約이 有할時는 該資產의 占有 또는 使用에 關한 該協約의 謄本
으로서 該資產所有者誓言下 正確하다. 證明한 것을 本令의 效力發生後 60 日以內에 該土
地를 登記한 土地登記署에 提出할 事, 如斯한 協約이나 約束이 其全部나 一部가 書面으로
作成되지 아니하였거나 關係者가 署名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資產所有者는 該協約의 內容
을 陳述하여 自己가 署名하고 其正確함을 誓言下證明한 書面을 所定期限以內에 所定官署
에 提出할 事, 朝鮮內에서 何人이든지 所定한 期限以內에 所定の 提出을 怠慢하는 者는 本
令에 依하여 該提出을 正當히 行할때까지 그 罰로 本令의 效力發生日에 現存한 口頭契約
이나 成文契約에 依한 該資產의 現在占有者나 使用者는 該資產所有者에게 小作料나 收益金
을 納할 義務업시 該契約年限의 殘存期間에 該占有及使用을 繼續할 事, 그러하나 如斯한
境遇에는 現存協約 또는 約束에 依하여 支拂期에 當한 小作料나 收益金은 朝鮮政府에 對하
야 其正式設立한 最近의 代行機關에 納하여 該土地에 對한 稅金을 收入케 하고 斯와 如히
納入할 때마다 該代行機關의 正式署名한 領受證을 受할 事

第 7 條 (小作料의 現物支拂에 關하여) 小作料나 收益金을 本令에 依하여 修正된 現存協約
이나 約束에 依하여 小作人에게 要할 때에는 該小作料 또는 收益金을 該協約 또는 約束에 規
定된 期限과 方法대로 資產所有者나 又は 本令第 6 條에 依하여 朝鮮政府에 納入할 事, 만
일 現存協約 또는 約束에 小作料의 現物支拂을 金錢으로 換算하여 支拂하기를 要하거나 認
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該支拂은 流通正貨로 換算하되 其額數는 朝鮮政府의 現行換算最低
價格을 超過치 말것이오 그러한 換算價格이 無할 때에는 小作料現物支拂하는 곳에서 該產
物의 現行正當한 市價를 超過하지말 事, 小作料, 現金支拂額數에 對하여 小作人과 資產所
有者間에 爭論이 生할 時에는 該現物小作料를 最近한 朝鮮政府倉庫에 土地所有者의 會計로

仔置하여서 其義務를 畢하되 其額數는 協約이나 約束의 規定 또는 本令所定最高 3 分 1 을 超過치말 事

第 8 條 (本令의 施行時日) 本令은 1945 年 10 月 5 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第 9 條 (罰則) 本令의 意圖를 忌避하거나 虛僞한 陳述 또는 報告을 하는 등 本令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軍律裁判所所定刑罰에 處함.

1945 年 10 月 5 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 · 비 · 아 · 놀드

○ 國家的非常時機의 宣告等 (法令第 19 號, 1945. 10. 30)

1. 國家的 非常時의 宣言
2. 勞働者의 保護
3. 暴利에 對한 保護
4. 民衆의 福利에 反한 行爲에 對한 公衆의 保護
5. 新聞 其他 出版物의 登記
6. 罰 則
7. 本令의 施行期日

第 1 條 (國家的 非常時의 宣言) 4 年間의 長期戰爭에서 勝利를 得한 後美國軍隊는 朝鮮民衆의 親友及保護者로서 此地에 上陸하였다. 彼等은 朝鮮으로부터 完全且永久히 모든 日本軍을 放逐하고 모든 日本의 軍國主義的, 國家主義物觀念을 一掃하기로 公言한 目的을 爲하여 온 것이다. 此目的外에 軍政廳은 朝鮮을 日本의 社會, 經濟, 金融圈으로 붙어 政治, 行政上의 完全한 分離를 實行하고, 朝鮮의 健全한 經濟的 發達을 促進하고, 自由獨立且責任있는 朝鮮의 再建을 爲하여 努力을 하라는 指令을 받았다. 軍政廳의 計劃에는 朝鮮民衆의 福祉를 爲하여 可及的 速히 모든 日本人財產을 接收하는 것, 勞働者를 過去 40 年間의 絶對的 奴隸狀態로 부터 救出할 것, 日本人의 狡計背信行爲에 依하여 掠奪되었던 土地를 農民에게 返還하는 것, 農民의 汗과 勤勞의 結晶을 公平正當한 割當으로 分配할 것. 自由市場의 原則을 回復할 것, 國內男女老幼에게 이 美麗한 國土에 天賦된 大富源의 公平正當한

割當을 享有하는 機會를 주는 것 등이 包含되어 있다.

美國軍隊는 其進駐時에 日本은 戰爭을 維持하기 爲하야 朝鮮이 飢餓로 들어 衰弱할 때까지 其食糧과 其他 生活必需品를 涸竭시킨 것을 發見하였다. 消費品의 生産은 大概停頓되었다. 大規模의 公金은 私消되었고 通貨는 故意로 膨脹시켰다. 法律과 序를 即時制定하였다. 朝鮮民衆의 福利에 資할모든 押收財産은 彼等の 使用에 供하기 爲하야 保管하였다. 穀物은 飢餓狀態에 빠진 地域에 搬送하였다. 朝鮮富源의 多年間利己의 開發及民衆에 對한 壓迫으로 말미아마 且日本의 壓制下에서 富裕且進取的民族이 普通하는 生活의 拒絶로 말미아마 民衆은 오는 冬期에 廣汎한 範圍의 營養不良, 疾病, 苦難을 防止함에 充分한 生産을 할 수 없었다. 此에 加하야 一部の 사람은 朝鮮民衆의 富를 獨占할 目的으로 勞働者의 復業, 學生의 復校, 農民의 產物質却을 妨害하였다. 如斯한 狀態로 말미아마 朝鮮에 非常時가 發生하였다. 此事態는 民衆保護를 爲하야 其福利를 生케하는 非常措置만으로써 處理할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美國은 強大한 國家다. 그렇나 其國民은 彼等の 辛運에 對한 自覺과 他民族을 逆境에서 保護코자하는 意圖로 들어 生한 眞實한 溫和性을 有한 溫和한 國民이다. 此時에 當하야 美國國民의 在朝鮮代表者는 親友인 朝鮮民衆이 오는 冬期中飢寒脅威를 受하게 되는 것을 念感하고 있다. 適當히 利用하면 苦難을 防止할 수 있는 設備, 原料及勞力은 國內에 存在하고 있다. 故로 民衆을 害하는 事態를 防止하기 爲하야 茲에 嚴格한 非常措置를 別定한다. 如斯한 臨時措置는 非常措置가 解消됨과 同時에 廢棄한다.

第2條(勞働者의 保護) 個人 또는 個人集團이 職業을 求하고 妨害없이 勤務하는 權利는 此를 尊重하며 保護함. 此權利를 妨害하는 것은 不法이다. 朝鮮軍政廳은 工場의 生産, 民衆生活上必要한 것을 宣言하고 其停止又は 低減을 防止하기 爲하야 勞働條件에 關한 紛爭은 朝鮮軍政廳이 設置한 調整委員會에서 解決함. 該委員會의 決定은 確定的 拘束力을 有함. 問題가 勞働調整委員會에 提出되어 其決定이 있을 때까지 生産를 續繼할 것.

第3條(暴利에 對한 保護) 民衆生活의 必需品를 民衆財力의 限度內의 價格으로 公平한 分配를 保證하기 爲하야 民衆을 犧牲하고 暴利를 取하는 結果로 되는 必需品의 蓄積及過度한 價格의 販賣는 茲에 不法으로 宣言함.

第4條(民衆의 福利에 反한 行爲에 對한 公衆의 保護) 左의 行爲는 茲에 不法으로 宣言함.

(가) 公務에 關하야 朝鮮駐屯美國陸軍又は 朝鮮軍政廳의 職員又は 其權威下에 服務하는 者에게 口頭나 書面으로 故意로 하는 虛偽陳述又は 方法如何를 不問하고 朝鮮軍政廳을 欺滿하라 하는 企圖

(나) 朝鮮軍政廳의 計劃은 民衆福利를 爲함이니, 朝鮮軍政廳의 命令又は 公布된 計劃을 行爲, 共謀, 恐喝, 買收又は 贈賄로써 하는 妨碍하라하는 企圖又は 違反

(다) 朝鮮駐屯美國陸軍又は 朝鮮軍政廳에 其形式如何을 不問하고 直接又は 間接으로 協力하는 者에 對하여 懲戒, 脅迫, 強制又は 他形式의 恐喝又は 迫害(同盟排斥을 包含함) 行爲를 指導或은 此에 參加하여 民衆의 福利를 妨害하는 것.

第 5 條(新聞其他出版物의 登記) 言論의 自由及出版의 自由를 不法又は 破壞의 目的에 惡用하지 않고 維持保護하기 爲하여 朝鮮北緯 38 度以南에서 自然人又は 法人이 後援, 所有, 指導, 管理又は 支配하는 書籍, 小冊子, 書類其他讀物의 印刷에 從事하는 모든 機關의 登記를 茲에 命함. 如斯한 登記는 本令施行後 10 日以內에 完了하고 新出版物에 關하여는 其發行前 10 日以內에 完了할 것, 登記에는 左記事項을 記述한 書類 2 通을 書留郵便으로 在京城 朝鮮軍政廳에 提出할 것

發行者의 名稱, 印刷及發行의 場所, 發行에 從事하는 者의 氏名, 發行者를 後援, 所有, 指導, 管理, 支配하며, 又は 該機關, 其事業, 複經營又は 出版物의 內容에 關하여 發言權을 有한者의 氏名, 使用又は 使用하라는 모든 印刷及發行權樣式의 正確한 說明, 現物의 寫, 各印刷物의 內容及大小, 發行者의 事業, 經營, 能力을 表示하기 爲하여 其財政의 後援, 資本資金, 財産, 資産 現在所持한 急迫必要品, 其將來의 求入先, 機關又は 事業에 財政的關係가 있는 各人의 氏名及住所

第 6 條(罰則) 本令에 違反하는 者는 軍政裁判所의 決定에 依하여 處罰함.

第 7 條(金令의 施行期日) 本令은 發布既時效力을 生함.

1945 年 10 月 30 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비·아-놀드

○ 法律諸命令의 存續(法令第 21 號, 1945. 11. 2)

1. 法律의 存續
2. 布告, 法令, 指令의 施行
3. 本令의 實施期日

第 1 條(法律의 存續) 모든 法律 또한 朝鮮舊政府가 發布하고 法律의 效力을 有한 規則, 命令 告示 其他 文書로서 1945 年 8 月 9 日 實行中인 것은 其間의 廢止된 것을 除하고 朝鮮

軍政府의 特殊命令으로 廢止할 때까지 全效力으로 此를 存續함. 地方의 諸般法規와 慣例는 當該官廳에서 廢止할 때까지 其效力을 繼續함, 法律의 規定으로서 朝鮮總督府, 道廳, 府, 面, 村의 組織의 局長, 課長, 府尹, 郡守, 警察署長, 稅務署長, 面長, 村長 其他 下級職員에 關한 것은 軍政長官의 命令으로 改正 또는 廢止된 것을 除하고 當該官廳에서 廢止할 때까지 此를 存續함. 上司의 指示에 從하여 從來朝鮮總督이 行使하든 諸般職權는 軍政長官이 行使함을 得함.

第 2 條 (布告, 法令, 指令의 施行) 北緯 38 度以南 朝鮮의 모든 裁判所는 朝鮮의 法令, 美國 太平洋陸軍總司令官의 布告의 諸規定及 朝鮮軍政長官의 모든 命令及法令을 法意施行함事, 此 目的을 爲하야 如斯한 모든 裁判所로 茲에 陸軍占領 裁判所를 構成함, 本令의 條文에 依하야 如斯한 裁判所에 美國 또는 聯合國의 軍人 또는 官吏에 對하야 裁判管轄權을 附與하든가 또는 在朝鮮 美國陸軍이 設立한 軍事委員會, 憲兵裁判所 其他 陸軍裁判所에 附與한 裁判管轄權을 剝奪치 못함.

第 3 條 (本令의 實施期日) 本令은 1945 年 11 月 2 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1945 年 11 月 2 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 · 비 · 아 · 놀드

○ 漁業權의 無效 (法令第 27 號, 1945. 11. 9)

第 1 條 朝鮮水域內의 一切 漁獲權으로서 1945 年 8 月 9 日以前에 日本帝國政府, 朝鮮總督府 其 局課 또는 代行機關이 天然人이나 法人에게 許與한 것은 茲에 其 無效함을 布告함.

第 2 條 本令의 施行以後에는 朝鮮水域以內의 漁獲權은 朝鮮政府農商局의 發布하는 規則에 依하야 行使함을 得함.

第 3 條 本令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에서 定罪하는 同時에 其 所定刑罰에 處함.

第 4 條 本令은 官報에 頒布即時 施行함.

1945 年 11 月 9 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 · 비 · 아 · 놀드

○ 朝鮮內所在日本人財産權取得에 관한件 (法令第 33 號, 1945. 12. 6)

第 1 條 法令第 31 號는 官報에 公布치 않음. 茲에 全然發令하지 않은 거와 如히 無效로 함.

第 2 條 1945 年 8 月 9 日以後 日本政府, 其의 機關 또는 其 國民, 會社, 團體, 組合, 其 政府의 其他 機關或은 其 政府가 組織 또는 取締한 團體가 直接間接으로 或은 全部 또는 一部를 所有 또는 管理하는 金, 銀, 白金, 通貨, 證券, 銀行勘定, 債券, 有價證券 또는 本軍政廳의 管轄內에 存在하는 其他 全 種類의 財産及 其 收入에 對한 所有權은 1945 年 9 月 25 日 附로 朝鮮軍政廳이 取得하고 朝鮮軍政廳이 其 財産全部를 所有함. 누구를 不問하고 軍政廳 許可없이 其 財産에 侵入 또는 占有하고 其 財産의 移轉 또는 其 財産의 價値, 效用을 毀損함으로 함.

第 3 條 本令第 2 條에 依하여 朝鮮軍政廳이 取得한 財産을 所有, 管理 또는 支配하는 保管者 管理者, 官吏, 銀行, 信託會社 其他 個人, 團體 또는 組合은 左記 各項을 遵守할 事

(가) (1) 軍政長官의 指令下에 其 財産을 保持하고 其 指令이 有할 때까지 其 財産의 移動 또는 他 方法으로 處分치 못함.

(2) 其 財産을 保存, 維持, 守護하고 其 財産의 價値와 效用을 毀損하는 行爲를 防步할 事

(3) 正確한 記錄과 會計帳簿를 維持할 事

(나) 軍政長官의 指示가 有한 때는 其 指示에 따라

(1) 前記財産에 關하여 要求된 資料와 1945 年 8 月 9 日 以後 其 財産에 關聯한 全收入 또는 支出을 記述한 報告書를 提出할 事

(2) 其 財産의 保管, 管理權과 모든 帳簿, 記錄, 會計書類를 引渡할 事

(3) 財産과 모든 收入 또는 收益金을 決算할 事

第 4 條 本令의 條規, 此 令에 依하여 發令한 許可 또는 規定에 違反한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 5 條 本令은 官報에 公布와 同時에 有效함.

1945 年 12 月 6 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 · 씨 · 아 · 놀드

○ 米穀收集令 (法令 第 45 號, 1946. 1. 25)

第 1 條 (目的) 廣範한 飢餓, 營養不良, 疾病, 民心不安을 除去하기 爲하야, 朝鮮軍政廳은 北緯 38 度 以南의 朝鮮에 있는 米穀을 收集하되, 適當한 價格을 支拂함. 但 每戶에서는 1 石의 100 分의 45 (67.5 冠)를 常住하는 家族人員數로 乘한 數量의 白米 或 玄米을 保持함을 得함. 白米 或은 玄米에 代하야, 正租로 全部 或은 一部의 對等量을 所持함을 得함

第 2 條 (米穀의 讓渡) 地方軍政長官의 管轄下에 있는 機關으로서 免除를 받는 政府, 宗教 教育, 醫療, 社會厚生機關의 主管者 以外에 前條에 規定한 數量以上을 所持한 者는 米穀 所在地 府尹, 邑, 面長의 要求가 있는 時로 그 超過量을 府尹, 邑, 面長 또는 其 代理人 에게 讓渡하고, 公示로 決定된 最高公定價格으로 法貨 또는 府尹, 邑, 面長 或은 其委任 機關이 署名捺印한 支拂命令書로 其代價 支拂을 受領함.

第 3 條 (郡守, 府尹, 邑, 面, 町會長의 職責)

(가) 府尹, 邑, 面長은 所屬地方軍政長官 (또는 郡守)의 命令에 따라 左記 事項을 調査 하야 所屬地方軍政長官에게 書面으로 報告함.

(1) 府, 邑, 面 各 農家에서 前秋收時에 收穫한 米穀, 其他穀類 (別히 記入한)의 數量

(2) 府, 邑, 面に 單身居住者數, 世帶數 及 各 世帶의 常住하는 人員數

(3) 府, 邑, 面に 居住하는 各個人 또는 各家族이 所有한 別히 記入한 正租, 玄米, 白米 及 其他穀物의 數量及 其位置

(4) 府, 邑, 面에서 次期 穀物耕作에 必要한 種子의 數量

(나) 所管地方長官 (또는 所管郡守)의 命令이 有한 時는 府尹, 邑, 面長은 第 1 條의 超過數量을 收集하야 最寄 米穀收集所에 運送할 것. 但 其府, 邑, 面內에서 次期 米穀耕作에 使用할 種子의 必要量 限度內에서 保留, 貯藏, 保存함을 得함. 米穀을 收集, 運送할 時에는 府尹, 邑, 面長은 種子로 使用함에 適合한 米穀임을 明白히 表示한 別히 配入할 것. 各 郡守는 邑, 面長이 米穀을 搬入할 收集所를 所管郡內에 決定할 것. 郡守는 所管道知事의 命令을 執行하며 邑, 面長에게 必要한 命令을 傳達하고 邑, 面長에게 其遂行을 命令함. 各 府尹은 米穀收集所를 設置함.

(다) 府, 邑의 各町 會長은 左記 職務를 行함.

(1) 府尹, 邑長이 本計劃에 關하야 要求하는 所管町內에 對한 情報의 收集報告

(2) 府尹, 邑長의 命令에 따라 所管町內의 超過量 米穀의 收集及 引渡

(3) 府尹, 邑長의 命令에 따라 其他 職責의 遂行

第 4 條 (其他 官吏及 機關의 職責) 本計劃에 關하야, 朝鮮軍政廳의 各 官吏, 職員, 其補助 機關, 代行機關及 地方軍政廳, 府, 邑, 面의 補助機關, 代行機關은 朝鮮軍政長官의 命令 及 其官吏 또는 雇員이 勤務하는 道知事의 命令을 執行함.

第 5 條 (違反行爲) 法律의 一般的 違反에 附加하여 左記 行爲는 本令의 違反行爲로 함.

- (1) 本計劃에 關하여 要求된 報告作成의 怠慢
- (2) 府尹, 郡守, 邑, 面, 町會長이 本計劃에 依하여 其職務 遂行上 要求한 事項의 報告의 怠慢 또는 拒絕及 虛偽의 報告書 作成
- (3) 命令이 有한時 命令에 따라 超過量 米穀讓渡의 怠慢,
違反行爲에 關聯한 米穀은 沒收하고 그 違反者는 處罰함. 米價支拂 價格의 適否에 關한 爭議로써 米穀讓渡 怠慢의 理由로 삼음을 不得함.
- (4) 米穀의 隱匿, 毀損 또는 其企劃 또는 命令에 依치 않은 府, 邑, 面外에의 米穀搬出 違反行爲에 關聯한 米穀은 沒收하고 그 違反者는 處罰함.
- (5) 本計劃에 關聯하여 官吏가 發令한 命令執行의 怠慢 또는 拒絕
- (6) 本令의 不服從을 煽動하는 모든 行爲 또는 脅迫

第 6 條 (任命及 罷免) 道知事는 本計劃에 關聯하여 發令한 命令을 充分히 履行치 아니하는 府尹, 郡守, 邑, 面, 町會長 또는 政府機關의 官吏, 雇傭의 罷免, 後任者任命及 移動의 權限이 有함. 道知事 또는 本計劃을 遂行하기 爲하여 道知事가 委任한 機關은 如何한 個人에게 먼저 命令으로 職務履行을 要求함을 得함.

第 7 條 (罰則) 本令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軍政裁判의 決定에 따라 處罰함.

第 8 條 (施行期日) 本令은 1946 年 2 月 1 日 午前 零時에 效力을 生함.

1946 年 1 月 25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 - 취 · 엘 · 러 - 취

○ 農商局을 農務局으로 (法令 第 48 號, 1946. 2. 13)

第 1 條 朝鮮政府鑛工局의 名稱은 茲에 此을 朝鮮政府商務局으로 變更함.

第 2 條 朝鮮政府農商局의 名稱은 茲에 此를 朝鮮政府農務局으로 變更함.

第 3 條 農務局 國內商業課, 外國貿易課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茲에 此를 商務局에 移管함.

第 4 條 農務局 農業經濟課 經理係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茲에 此를 財務局에 移管함.

第 5 條 商務局 食林係의 木材 及 海產物製造에 屬한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茲에 此를 農務局에 移管함.

第 6 條 本令은 1946 年 2 月 11 日 夜半에 效力이 生함.

1946 年 2 月 13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 - 취 · 엘 · 러 - 취

○ 新韓公司의 創立 (法令 第 52 號, 1946. 2. 21)

第 1 條 新韓公司를 朝鮮政府에서 獨立한 機關으로써 茲에 創立함. 公司는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가 後任者를 任命할 때까지 10 名의 職務를 執行하는 取締役이 此를 管理함. 取締役會는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의 同意를 得하여, 取締役會에서 規定한 內規 及 規則에 依하여 同公司를 運營함. 公司社長으로써의 美國軍將校는 軍政長官의 同意에 따라 美國의 利益에 關係있는 政策問題를 決定하는 全權을 有함. 新韓公司의 本店은 朝鮮漢城에 設置하고 支店은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의 同意를 得하여, 取締役會에서 決定함에 따라 設置함.

第 2 條 取締役은 公社取締役會會長 及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가 選任한 各道에서의 1 名以上の 選出者로써 構成되는 顧問會를 設置함. 取締役會會長을 顧問會會長으로 함. 顧問會는 會長의 召集으로 會合함. 顧問會는 取締役會에 推薦事項을 提出함. 取締役會는 主要한 政策問題에 關하여 顧問會에 相談함.

第 3 條 新韓公司는 億圓의 資本金을 有함. 株券은 每株 50 圓으로 分配함. 公司株式 全部는 軍政廳이 單獨히 應募하고, 東洋拓殖株式會社의 財産移轉에 依하여 朝鮮軍政廳이 全額을 完全히 支拂함. 公司의 責任은 資本金額에 限함. 公司는 朝鮮軍政廳만이 解散함을 得함. 取締役의 資格賦與, 各株의 證明은 各 取締役의 名義로, 會社帳簿에 依하여 移轉함.

第 4 條 1945 年 8 月 9 日以後 東洋拓殖株式會社가 所有한 全財産 及 1945 年 8 月 9 日以後 東洋拓殖株式會司가 所有하고 있던 朝鮮內 法人의 日本人 財産은 全部 新韓公司에 歸屬됨.

第 5 條 新韓公司는 左記 權限을 有함.

- (가) 自己公司의 株券을 額面價格이 超過치 않은 價格으로써 取得所有
- (나) 軍政長官이 署名捺印한 一般告示의 發令으로 取締役會에 付한 資本이 增加 또는 減少
- (다) 朝鮮現行商法 또는 爾後 施行될 商法에 依한 法人의 全權能
- (라) 軍政長官 또는 其 受任人이 社債의 發行 또는 條件을 認可 時는 支拂된 資本金額의 10 倍를 超過치 않은 社債를 發行함을 得할 時를 除하고 商法規定에 依하여 社債의 發行
- (마) 取締役會가 決定한 幹事 又は 役員의 任命 及 補充

- (바) 商法規定에 依하여 配當金의 支拂 又は 準備金의 設定
- (사) 金屬, 非金屬의 天然資源의 開發, 原料化學用品의 製法, 製作, 商工業 目的으로 物品의 製造, 構成, 動力, 運搬裝置, 船舶, 航空機部分品 及 裝置, 電氣裝置, 器具, 織物, 食料品製造를 包含한 各種 產業事業의 取扱
- (아) 分配, 都賣, 貯藏의 各種 商業取引의 經營
- (자) 借地, 農事試驗所 又は 研究所의 所有, 運用을 包含한 各種 農業 又は 養林園의 繁殖에 使用된 土地 又は 再植林中の 土地를 包含한 各種 林業의 經營
- (차) 賃借契約, 籍船契約에 依하여 漁船 全船渠 又は 魚類 其他 海産物의 運搬, 貯藏保管을 하는 漁具의 所有 又は 運用을 包含한 漁業 又は 其他 海産物 獲得에의 從事
- (카) 軍政長官 又は 其 受任人의 指令에 依하여 新韓公司의 權限內의 事業에 關한 取引의 取締, 監督. 但 前項 事業에 技術的 援助의 提供을 包含함.
- (따) 財産所有 또는 處分
- (히) 其他 本公司, 目的達成에 附隨 또는 必要한 權限

第 6 條 本公司 其 取締役, 幹事, 役員은 公司의 適切 必要한 業務範圍에서 商法規定에 依하여 職務에 服從하며 職權을 行使함.

第 7 條 公司職員과의 業務의 取引의 公司를 誘因할 目的으로 故意로 口頭나 書面으로 不正한 或은 直接, 推測으로 公司의 財政狀態 또는 存立을 毀損하는 陳述 又は 流言의 作成 流布하는 者 또 他人을 如斯한 行動에 誘因한 者는 軍事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 8 條 公司는 一般購讀하는 新聞에 發布함.

第 9 條 本令은 公布期日後 10 日부터 有效함.

1946 年 2 月 21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 - 취 · 엘 · 러 - 취

○ 朝鮮政府 各部處의 名稱 (法令 第 64 號, 1946. 3. 29)

第 1 條 (範圍) 朝鮮政府의 重要部署는 爾後 茲에 部 又は 處로 함.

本令은 部署의 既存權限, 機能 또는 任務를 變更치 않음.

此 法令에 規定한 區別 及 名稱은 法令에 依치 안이하고는 變更치 못함.

第 2 條 (局을 部로의 改稱) 朝鮮政府 左記 部署는 爾後 部로 함.

(가) 前農務局은 農務部

- (나) 前商務局은 商 務 部
- (다) 前遞信局은 遞 信 部
- (라) 前學務局은 文 教 部
- (마) 前財務局은 財 務 部
- (바) 前法務局은 司 法 部
- (사) 前國防司令部은 國 防 部
- (아) 前醫務局은 醫 務 部
- (자) 前保健厚生局은 保 健 厚 生 部
- (차) 前公報局은 公 報 部
- (카) 前交通局은 運 輸 部

第 3 條 (課를 處로서의 改稱) 左記 朝鮮政府 各部署를 爾後處로 함.

- (가) 前會計課를 會 計 處
- (나) 前外務課를 外 務 處
- (다) 前總務課를 總 務 處
- (라) 前人事課를 人 事 行 政 處
- (마) 前地方課를 地 方 行 政 處
- (바) 前企劃課를 企 劃 處
- (사) 前財產管理課를 管 財 處

第 4 條 (部) 部는 如次 細別함.

- (가) 部는 局
- (나) 局은 課로
- (다) 課는 係로
- (라) 係는 班으로

第 5 條 (處) 處는 如次 細別함.

- (가) 處는 署로
- (나) 署는 課로
- (다) 課는 係로
- (라) 係는 班으로

第 6 條 (監督官의 職名) 第 4 條 及 第 5 條에 表示한 細別部署의 監督官 職名은 爾後 如次함.

- (가) 部에 對해서는 部長으로, 處에 對해서는 處長
- (나) 局, 署, 課, 係 及 班에 對해서는 各局長, 署長, 課長, 係長, 班長

第 7 條 (補佐役의 職名) 監督官의 補佐役이 就任하여야을 때에 其 職名은 如次함.

(가) 部處는 次長

(나) 局, 署, 課, 係, 班은 副局, 署, 課, 係, 班長

第 8 條 (規定된 職名의 使用) 規定된 職名만이 朝鮮政府內에 配置된 事務員 及 公務員에 適用함.

第 9 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에 效力을 生함.

1946 年 3 月 29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 - 취 · 엘 · 러 - 취

○ 道財產管理機關의 設置 (法令 第 73 號, 1946. 4. 23)

第 1 條 (道財產管理所의 設置) 道財產管理所를 茲에 北緯 38 度 以南 朝鮮政府 各道廳內에 設置함.

第 2 條 (職能과 職務) 各道財產管理所의 職能과 職務는 其 道內에서 如左함.

(가) 法令 第 33 號에 依하여 朝鮮軍政廳에 歸屬된 全財產所有權의 探求 及 取得

(나) 如斯한 歸屬된 財產의 運用, 經營, 利用 又は 保存. 但 政府의 處部 又は 代行機關의 直接管理 管轄下에 있는 財產을 除함.

(다) 上記 歸屬된 財產의 管理, 經營을 道の 局 又は 管財處가 權限을 附與한 各種 私設 代行機關에 移管

(라) 歸屬된 全財產의 書類會計의 維持

(마) 別途로 處分치 안으면 그 價値를 保存 維持할 수 없는 滅失하기 쉬운 모든 歸屬된 財產의 賣渡 又は 其 準備

(바) 管財處의 指示에 依하여 歸屬된 財產의 賃貸, 占有 及 使用을 爲한 臨時的 短期間의 處置에 關한 權限

第 3 條 (職務의 移管 其他) 其他 道廳局, 課 及 道財產管理所 運用의 一部分을 構成하거나 又は 其 代行機關에 所屬된 모든 職能, 職務, 書類 財產及職員을 茲에 道財產管理所에 移管함.

第 4 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時 10 日後에 效力이 生함.

1946 年 4 月 23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 - 취 · 엘 · 러 - 취

○ 서울特別市에關한特別米穀令 (法令 第 77 號, 1946. 4. 24)

第 1 條 (目的과 範圍) 本令의 目的은 現下 非常時中 서울市에 米穀을 正式으로 搬入하는 方法을 規定함으로써 서울市內의 現下 緊急한 米穀不足을 緩和함에 있음.

第 2 條 (서울市 米穀搬入에 關한 許可申請手續)

가. 서울市內에 一定한 住所를 有한 者는 所定 數量의 米穀을 서울市에 搬入할 許可를 得 하기 爲하여 町會長으로부터 申請書를 受할 事, 此 申請書에 記入할 數量은 申請期日 現在로 서울市內에서 申請人이 所持한 米穀數量을 合하여 申請日부터 1946 年 10 月 15 日 까지 每日 2 合式을 申請人의 家族으로써 同人과 一定하게 實際로 同居하는 人員數로 乘한 數量을 超過치 못함. 町會長은 申請書에 證明事項을 記入함으로써 上記 申請書의 記載事項이 正確함을 證明함.

나. 申請人은 承認을 받기 爲하여 其 所屬班長에게 上記 證明된 申請書를 提出할 事

다. 申請人은 町會의 承認과 登錄을 받기 爲하여 上記와 같이 承認을 받은 申請書를 其 所屬町會事務所에 提出할 事, 町會事務所가 申請書를 承認한 時는 上記 申請人과 其 同居家族人員의 氏名은 前述한 바와 같이 每日 1 人當 2 合式 計算한 前示 承認申請書에 記入한 米穀數量에 該當한 期間中 米穀配給機構에서 除外됨.

라. 申請人은 町會事務所에서 承認한 申請書를 所屬區事務所에 提出할 事, 그리하면 同所 에서는 町會에서 承認登錄한 申請書 條項에 依하여 申請人이 서울로 米穀을 搬入함을 許可하는 認可書를 發給함.

마. 町會事務所는 서울市 米穀搬入 認可證을 本人에게 又は 代理人을 通하여 交付한 總 搬入者의 姓名及 住所를 서울中央配給所에 通告할 事 그리면 서울中央配給所는 上記 認可證에 記入된 期間中 搬入者에게 米穀을 販賣치 않음.

바. 町會長, 町會事務所 及 區事務所는 茲에 許給한 모든 米穀搬入認可書의 正確한 記錄을 保管하여 認可書에 記入된 數量及 各 申請人이 搬入한 數量을 次回 申請時에 申請 人과 (上記한 바와 如히 其 家族人員)에게 必要한 總配給量으로부터 控除케 할 事

사. 米穀을 領受하는 即時로 認可書 所持人은 領受한 數量을 正確하게 認可書에 記入할 事, 認可書에 如斯한 記入을 얹인 때는 上記 認可書의 其所持人의 保有米를 沒收하 고 如斯한 者가 將次 中央配給所에서 米穀에 關하여 認可를 受하거나 米穀을 購入할 諸般權利를 取消함.

아. 米穀搬入 認可書의 所持者가 2 人以上인 境遇에는 共同으로 米穀을 搬入할 수 있음. 雇傭主會社, 協會 及 組合은 認可書를 所持한 其 使用人 及 其他의 米穀을 搬入할 수 있음.

第 3 條 (認可書의 有效期限과 提出) 서울市에 米穀을 搬入하기 爲하여 發行된 認可書는 其

發行期日後 14 日을 超過하는 期間附로 發行치 못하며 有效치 못함. 但 區事務所에서 最初 認可時에 發生된 相當한 理由로써 區事務所가 認可된 申請書에 別途 記入한 時을 除外함. 如何한 認可書도 如斯히 14 日後에 使用 又は 交付치 못함. 但 前述한 바와 如히 區事務所에서 長期間을 指定한 時을 除外함. 認可書 所持者는 指定된 期間滿了前에 上述한 바와 如히 共認可書와 같이 實際로 獲得한 米穀數量에 關한 證明書를 町會長에 提出할事, 如斯한 所持者가 上記 正式 證明書와 함께 上述한 바와 如히 認可書 提出을 遲滯한 時는 何時든지 認可書 所持者가 共認可書面에 記入된 米穀數量을 完全히 實際로 獲得함과 同認함.

第 4 條 (檢査, 沒收, 罰則) 米穀을 運搬하는 者는 主要 其他道路에 設置된 檢査所, 各驛의 檢査所 又は 警察官의 要求에 應하여 何處에서든지 認可書 及 米穀의 檢査를 받아들여야 함. 運搬된 米穀量이 認可數量을 超過할 時 又は 認可書를 虛僞로 또는 不正하게 記載 及 變更하였을 때에는 警察官은 如斯히 超過量을 搬入한 者 又は 虛僞 또는 變造한 認可書를 所持한 者의 總所有米를 沒收하고 領受證을 交付하면서 即時로 此 米穀을 全部 配給制度에 依하여 配給賣渡시키기 爲하여 最近 市廳 또는 政府倉庫에 引渡함. 米穀을 領受한 倉庫는 警察官으로부터 領受한 米穀에 關한 文書를 保管할事, 警察官과 其 倉庫는 即時 押收에 關한 諸般事實을 其 所屬町會長 及 市中央配給所에 報告할事, 如此히 超過米穀을 輸送하는 者, 僞造 及 變造한 認可書는 所持權限없이 認可書를 所持한 者는 軍政裁判所에서 治罪하여 所定 刑罰에 處함.

第 5 條 1946 年 1 月 25 日附 法令 第 45 號와의 關係 本令에 依한 合法行爲는 1946 年 1 月 25 日附 法令 第 45 號에 抵觸되지 않음.

第 6 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時日에 效力이 生함.

1946 年 4 月 24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 - 취 · 엘 · 러 - 취

○ 新韓株式會社의 創立 (法令 第 80 號, 1946.5.7)

第 1 條 新韓株式會社를 朝鮮軍政廳의 한 法人機關으로서 茲에 創立함. 新韓株式會社는 朝鮮國民의 經濟振興을 唯一의 目的으로 함. 新韓株式會社는 軍政長官이 後任者를 任命할 때 까지 職務를 執行할 10 名의 理事가 此를 管理함. 理事會는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여 理事會에서 制定한 定款 及 內規에 依하여 同公社를 運營함. 新韓株式公社의 本店은 朝鮮漢城에 設置하고 支店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여 理事會에서 決定함에 따라 設置함

軍政이 終了되는 時는 新韓株式公社는 朝鮮政府의 責任에 歸함.

第2條 理事는 公社理事會會長 及 軍政長官이 選任한 各道에서 1名 또는 1名以上の 選出者로서 構成되는 顧問會를 設置하되 理事長이 顧問會會長을 兼함. 顧問會는 會長이 召集함. 顧問會는 理事會에 建議하고 理事會는 主要한 運營方針에 關하여 顧問會에 諮問함.

第3條 新韓株式公社의 資本金은 1億圓으로 함. 株券은 每株 50圓으로 함. 公社株券은 全部 軍政廳이 單獨히 引受하고 東洋拓殖株式會社 財産의 實際的 移轉에 依하여 軍政廳이 全額을 拂入함. 公社의 責任은 資本株券金額에 限함. 本公社는 軍政廳 또는 將次 樹立될 朝鮮政府만이 此를 解散식힘을 得함. 理事에 資格을 주기 爲하여 1株券을 各理事 名義로 公社台帳에 移管함.

第4條 1945年8月9日以後 東洋拓殖株式會社가 所有한 全財産은 茲에 新韓株式公社에 歸屬됨.

第5條 新韓株式公社는 左記 權限을 有함.

- (1) 本公社의 株券을 額面價格보다 低下치 않은 價格으로써 取得 及 所有
- (2) 軍政長官이 署名捺印한 一般告示의 發令으로 理事會의 決議에 依한 資本의 增加 또는 減少
- (3) 朝鮮現行商法 또는 爾後 施行될 商法에 依한 株式會社의 全權能
- (4) 商法 規定에 依하여 社債를 發行할 時에는 社債總額은 拂入資本 金額의 10倍를 超過치 않은 限度에서 發行할 수가 있으며 其 社債發行 及 附隨 諸條件은 軍政長官의 認可를 要함.
- (5) 理事會에서 決定된 役員 及 職員의 任命 及 報酬
- (6) 金屬 及 非金屬의 天然資源의 開發 及 製鍊, 諸般原料 及 化學用品의 採取 及 精製, 商工業을 目的으로 하는 物品의 製造, 機械動力用 及 運輸用의 諸機具, 船舶 及 航空機部分品 及 備品, 電氣器具 及 裝置, 織物, 食料品製造를 包含한 各種 生産事業의 經營
- (7) 都散賣 及 倉庫業, 貯藏業等 各種 商業의 經營
- (8) 借地, 農事試驗所 又は 研究所의 所有 及 運用을 包含한 各種 農業 又は 苗圃用地 又は 造林地를 包含한 各種 林業의 經營
- (9) 賃貸借契約, 傭船契約에 依하여 漁船, 船渠 又は 魚類 其他 海產物의 運搬, 貯藏保管을 하는 漁具 及 設備의 所有 又は 運用을 包含한 漁業 又は 其他 海產物 獲得을 目的하는 事業
- (10) 軍政長官 指令에 依하여 新韓株式公社의 權限內 事業에 關한 商行爲의 取締, 監督. 但 前項 事業에 技術的援助의 提供을 包含함.
- (11) 財産의 所有 또는 處分
- (12) 其他 本公社의 目的達成에 附隨 及 必要한 權限

第 6 條 本 公 社 理 事 役 員 及 職 員 은 公 社 의 適 切 必 要 한 業 務 의 範 圍 에 서 商 法 規 定 에 依 하
야 服 務 하 며 職 權 을 行 使 함 .

第 7 條 公 社 의 公 示 事 項 은 一 般 新 聞 에 揭 載 發 表 함 .

第 8 條 本 令 은 公 布 日 부 터 有 效 함 .

1946 年 5 月 7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 - 쿼 · 엘 · 러 - 쿼

○ 財 產 訴 請 委 員 會 의 設 置 (法 令 第 103 號 , 1946. 8. 31)

第 1 條 (委 員 會 의 設 置) 朝 鮮 軍 政 廳 內 에 財 產 訴 請 委 員 會 를 設 置 함 .

第 2 條 (委 員 會 의 管 轄 及 權 限)

(가) 1945 年 9 月 25 日 附 法 令 第 2 號 , 1945 年 12 月 6 日 附 法 令 第 33 號 의 規 定 에 依 하 야
그 財 產 에 對 한 所 有 權 의 歸 屬 을 確 定 함 .

(나) 右 財 產 에 關 하 야 調 查 , 審 問 하 며 或 은 中 間 的 終 局 的 裁 決 을 함 .

(다) 朝 鮮 軍 政 長 官 의 名 義 로 右 財 產 에 對 하 야 最 終 裁 判 所 의 判 決 과 같 은 既 判 力 이 있 고 法
的 效 力 이 有 한 裁 決 , 命 令 을 宣 言 , 發 布 함 .

(라) 今 後 朝 鮮 裁 判 所 에 繫 屬 할 右 財 產 에 關 한 訴 訟 手 續 은 此 를 中 止 하 고 本 委 員 會 로 移
送 함 이 可 함 . 管 財 處 其 他 政 府 의 各 機 關 , 代 理 機 關 , 補 助 機 關 及 個 人 에 依 하 야 委 員
會 에 廻 附 또 는 提 起 되 는 事 件 에 關 하 야 裁 決 又 는 其 他 處 分 을 함 . 委 員 會 의 裁 決 , 命
令 에 背 反 치 않 도 록 如 斯 한 事 項 을 取 扱 하 는 朝 鮮 內 의 各 裁 判 所 , 登 記 所 , 管 財 處 , 其
他 行 政 末 端 機 關 , 代 理 機 關 及 個 人 을 監 督 함 .

(마) 委 員 會 의 裁 決 을 要 求 하 는 申 請 을 受 理 하 며 如 斯 한 財 產 에 關 한 事 件 의 仲 裁 或 은
調 停 을 함 .

(바) 令 狀 을 發 하 야 當 事 者 及 證 人 의 出 頭 와 證 據 의 提 出 을 命 하 며 令 狀 及 決 定 , 命 令 을
施 行 하 며 그 不 服 從 에 對 하 야 는 制 裁 를 課 할 수 有 此 .

(사) 各 種 의 證 據 調 查 及 此 에 關 한 審 問 또 는 命 令 을 發 할 수 有 此 . 委 員 會 의 審 理 手 續 에
關 한 記 錄 을 作 成 함 .

(아) 法 律 과 同 一 한 效 力 이 有 한 運 營 手 續 에 關 한 規 則 을 制 定 公 布 함 .

(자) 必 要 한 時 는 委 員 會 의 規 則 에 따 라 그 管 轄 下 에 分 科 委 員 會 를 組 織 하 고 그 委 員 을
任 命 할 수 有 此 .

(차) 職 務 上 必 要 한 職 員 을 採 用 하 고 給 料 을 支 拂 함 .

第3條(委員會의 裁決) 委員會는 證據及 審理手續에 關한 現行手續法의 制限을 받지 않음. 但 委員會는 事務運營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限度內에서 此를 運用할 수 있음.

委員會는 公共의 秩序에 違反되지 않는限, 現行 朝鮮實體法을 適用함. 但 委員會는 現行法의 如何함을 不拘하고 그 審理와 裁決함에 當하여 一般的으로 正義와 公平의 原則을 適用할 權限이 有함.

第4條(委員會의 組織) 委員會는 7名의 委員으로써 組織됨. 其中 4名은 司法部 法律調查局, 法律起草局, 法律審議局及 訴請局에 勤務하는 有資格한 法律家中에서 司法部長이 隨時 任命하고 其餘 3名은 司法部長이 推薦하는 朝鮮辯護士中에서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軍政長官은 그 任意로 本委員을 罷免할 수 있음. 委員會에 關與하는 政府의 有給職員에게는 手當金을 支拂치 않음.

第5條(費用의 支出) 朝鮮政府財務部는 貧窮한 當事者를 爲하여 委員會에서 選任한 輔佐人에 對한 報酬(此에 限定치 않음)는 勿論 委員會의 決定에 依한 處分에 關하여 本令의 實施上 要求되는 金額을 支出할 수 있음. 政府의 各機關代理機關, 補助機關及 政府職員은 委員會가 要求하는(但 輸送에 限치 않음) 援助와 便宜를 提供함이 可함.

第6條(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發生함.

1946年 8月 31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취·엘·러-취

○ 米穀收集令의 廢止, 米穀搬入許可證의 失效(法令 第105號, 1946. 8. 31)

1. 目的

本令은 1946年 5月 28日附 法令 第90號(經濟統制) 第5號(나)項의 規定에 依하여 1946年 8月 12日附 中央食糧規則 第2號(米穀收集令)의 發布에 따라 此에 關聯한 從前 法令의 廢止와 許可證의 效力을 喪失케 함으로써 目的함.

2. 廢止될 法令

左記 法令은 此을 廢止함.

(가) 1949年 1月 25日附 法令 第45號(米穀收集令)

(나) 同年 4月 24日附 法令 第77號(서울市에 關한特別米穀令)

(다) 同年 5月 20日附 法令 第87號(釜山市에 關한特別米穀令)

3. 法令의 廢止, 米穀搬入許可證의 無效

前項에 列舉한 法令에 關聯하여 從前에 發布한 法令, 訓令, 通牒, 其他는 爾後 一切 廢

止하며 此에 依하여 發付한 許可證等은 本令 施行과 同時에 全部 失效됨을 宣言함.

4. 許可證의 返還

法令 第 77 號 同第 87 號에 依하여 發付된 許可證은 本令 施行後 10 日以內에 實際搬入의 米穀數量을 記載하여 그 發付한 官廳에 返還하여야 함. 此에 違反한 境遇에는 許可證에 記載된 米穀數量의 全部를 搬入한 것으로 看做함.

5. 米穀의 配給

許可證 發付官廳에서는 許可證에 記載된 米穀數量의 全部가 實際上 搬入되지 않은 事實을 認定할 時는 許可證 所持者에게 定例의 米穀配給을 받을 수 있도록 措處함이 可함.

6. 違返에 對한 訴追의 效果

本令은 그 施行前 第 2 條 記載의 法令 及 그에 關聯하여 發布된 各法令의 違反行爲에 對하여 現在는 勿論 將來의 訴追에 何等 影響이 無함.

7.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1946 年 8 月 31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취·엘·러－취

○ 穀物及収檢査 (法令 第 111 號, 1946. 9. 18)

第 1 條 (規則에 依한 法律의 改正) 穀物 及 収檢査에 關한 모든 法律, 法令, 規則, 指令 及 訓令은 農務部長이 茲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發表한 規則에 依하여 變改, 改正 又は 廢止될 때까지 繼續하여 有效함.

第 2 條 (規則의 作성과 公布) 朝鮮政府農務部長은 穀物 及 収의 檢査, 等級 及 包裝에 關한 規則을 作成함. 如此한 規則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한 後 官報에 公布하는 同時에 法律의 效力을 發生함.

第 3 條 (穀物 及 収檢査) 農務部長은 現存한 穀物檢査所 設備 及 職員을 使用하며 此 法令에 依하여 公布한 規則을 遂行함에 있어서 必要한 人員을 增加할 수 있음.

第 4 條 (罰則) 此令에 依하여 公布한 規則에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에서 判決하여 其所定刑罰에 處함.

第 5 條 (施行期日) 此法令은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1946 年 9 月 18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취·엘·러－취

○ 穀物搗精設備의 許可(法令 第 113 號, 1946. 10. 8)

第 1 條(目的) 本令은 中央食糧規則의 實效를 助成함으로써 目的함.

第 2 條(舊法令의 廢止) 1939 年 2 月 11 日附 府令 第 207 號 朝鮮米穀搗精 制限規則은 此를 廢止함.

第 3 條(製粉所, 精米所의 許可) 道知事는 即時 製粉所, 精米所의 許可에 關한 規定을 制定 公布을 要함. 但 右規則은 그 施行前 軍政長官에게 提出함이 可함. 前項 規則에는 許可申請이 不許可된 境遇의 不服方法, 製粉所, 精米所의 設備 及 作業에 關한 帳簿의 定期 檢査, 所管官廳에 對한 報告書 提出等에 關한 條項을 規定함을 要함. 第 1 項 規則의 施行으로부터 15 日이 經過한 後는 何人을 勿論하고 許可申請中에 있지 않은 者는 直接間接으로 製粉 又は 精米業을 經營하지 못함. 不許可處分을 받은 者 亦同함.

第 4 條(記錄) 前條에 依한 規則의 施行日로부터 15 日이 經過한때 穀物搗精業者는 搗精의 依賴로 受納한 穀物에 關하여 帳簿를 調製함이 可함. 그 帳簿에는 年月日, 穀物所有者의 住所, 姓名, 受納數量(包裝이 込인때, 正租, 라이麥은 正味 54 kg, 大麥은 正味 42 kg, 稈麥 及 小麥은 正味 60 kg을 一箇로 함) 穀物收集所 又は 搗精依賴者에게 引渡한 精製穀物의 引渡年月日, 引渡數量 及 受領한 賃搗料等을 明確히 記載함을 要함. 前記帳簿는 軍政廳 及 그 所屬官署, 代行機關의 檢査를 받도록 恒常 備置함이 可함.

第 5 條 搗精한 穀物의 代價 及 賃搗料에 關하여는 1946 年 5 月 28 日附 法令 第 90 號에 依하여 中央物價行政處에서 그 規則을 制定함.

第 6 條(搗精) 道知事 又は 그 所屬官公署는 穀物搗精에 關하여 그 數量을 記載한 許可證을 穀主에게 交付함. 但 搗精한 穀物의 數量은 申請者의 法律上 保有可能量을 超過치 못함. 搗精業者는 許可數量을 超過한 穀物 又は 許可證없는 者의 穀物을 搗精하지 못함. 搗精業者가 前項 規則에 違反되는 穀物을 受納한 時는 受取證을 그 所有者에게 交付하고 그 穀物은 道知事 又は 所屬官公署에 引渡함을 要함. 道知事는 此를 沒收할 수 있으며 此에 關한 許可證이 있을때는 帳簿와 같이 保管케 함을 要함.

穀物의 搗精은 左와 如함.

가. 白米搗精率은 玄米의 重量에 對하여 百分之 96 以上으로 함.

나. 小麥製粉率은 粗小麥의 重量에 對하여 百分之 80 以上으로 함.

다. 라이麥의 製粉率은 粗라이麥의 重量에 對하여 百分之 65 以上으로 함.

라. 大麥의 搗精率은 粗大麥의 重量에 對하여 百分之 70 以上으로 함.

마. 稈麥의 搗精率은 粗稈麥의 重量에 對하여 百分之 87 以上으로 함.

道知事, 所屬官署 又は 그 代行機關의 承認이 있는 醫療用, 酒面用, 販賣用, 製빵 又は 製菓用으로 中央食糧行政處에서 配給을 받은 穀物은 前項 各號의 制限에 依치 않음.

第3項各號에 違反하여 搗精, 製粉된 穀物은 道知事, 所屬官署 又は 그 代行機關이 沒收
하여 穀物收集所에 引渡함을 得함.

第7條(賃搗料로 받은 米穀의 引渡) 搗精業者는 每週 1回式 賃搗料로 受領한 穀物을 指
定한 穀物收集所에 引渡하고 定例의 代金を 受領함이 可함.

第8條(許可의 取消) 本令 又は 道知事의 公布한 規則違反者에 對하여는 道知事는 그 附
與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음. 搗精業者가 取消當時에 所持하고 있는 穀物은 道知事, 所
屬官署 又は 그 代行機關의 指示에 依하여 處分함.

第9條(保險) 搗精業者는 必要에 依하여 火災, 盜難, 洪水 其他 自然力으로 因한 損害
의 賠償을 爲하여 適當한 保險에 加入할 수 있음.

第10條(穀物의 定義) 本令에 穀物이라 함은 米穀, 라이麥, 小麥, 大麥 及 稗麥을 稱함.

第11條(刑罰) 本令의 規定 又は 本令에 依하여 發布된 道規則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
地域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處罰함.

第12條(施行期日) 本令은 發布日로부터 10日後에 效力이 生함.

1946年 10月 8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 - 취 · 엘 · 러 - 취

○ 道 機 構 的 改 革 (法 令 114 號, 1946. 10. 8)

第 1 條 (目 的) 本 令 的 目 的 是 北 緯 38 度 以 南 朝 鮮 各 道 的 機 構, 任 務 及 職 能 을 確 定 하
야 中 央 政 府 와 的 關 係 를 明 確 하 게 함 에 在 함.

第 2 條 (機 構 的 名 稱) 道 的 主 要 機 關 은 局 이 라 稱 함. 局 에 是 課 를 課 에 是 係 를 置 함. 道
에 是 右 外 에 法 令 으 로 써 中 央 廳 的 所 屬 機 關, 代 行 機 關 及 各 種 委 員 會 的 支 部 를 設 置
할 수 있음.

(註) 1946 年 4 月 23 日 附 道 財 產 管 理 機 關 設 置 에 關 한 法 令 第 73 號,

1946 年 5 月 15 日 附 道 人 事 處 設 置 에 關 한 人 事 行 政 通 報 第 1 號 (1).

1945 年 12 月 8 日 附 勞 働 調 停 委 員 會 設 立 에 關 한 件 法 令 第 34 號 及

1946 年 4 月 1 日 附 消 防 部 及 消 防 委 員 會 的 創 設 에 關 한 件 法 令 第 66 號 參 照.

第 3 條 (職 員 的 名 稱) 局, 課, 係 及 其 他 主 管 職 員 的 職 名 是 「 長 」 이 라 稱 함, 「 長 」 的
補 佐 로 그 次 位 에 任 命 되 는 者 的 職 名 是 副 局 長, 副 課 長, 副 係 長 이 라 稱 함. 道 職 員 是
文 官, 武 官 을 不 問 하 고 公 式 職 名 만 使 用 함 을 要 함.

第 4 條 (知 事 官 房 的 廢 止) 道 的 知 事 官 房 是 此 를 廢 止 함. 道 知 事 是 本 令 에 依 하 야 知 事 官
房 的 文 書, 財 產 及 文 官 職 員 을 即 時 本 令 에 依 하 야 設 置 된 局 又 是 道 管 財 處 及 道 人
事 處 에 配 屬 케 함 이 可 함. 知 事 官 房 的 任 務 及 職 能 中 所 屬 될 局, 處 가 分 明 치 못 한 事
項 是 內 務 局 에 移 管 함.

第 5 條 (道 警 察 部 的 廢 止) 道 警 察 部 是 此 를 廢 止 함. 道 警 察 部 的 任 務, 職 能, 文 書,
財 產 及 職 員 是 道 警 察 部 와 同 等 的 權 限 이 有 한 警 務 部 所 屬 各 管 區 警 察 廳 에 移 管 함.
警 察 廳 長 是 法 令 을 執 行 하 야 道 內 的 秩 序 를 維 持 하 며 道 知 事 와 相 互 協 力 하 야 道 內 人 民
의 安 寧 과 秩 序 를 確 保 할 責 任 이 有 함.

第 6 條 (道 的 機 關 及 財 產, 文 書 及 職 員 的 移 管) 道 是 道 知 事 以 下 的 職 員 과 法 令 에 依 하
야 設 置 된 各 委 員 會 及 左 的 局 으 로 構 成 함.

가. 內 務 局

나. 農 務 局

다. 財 產 局

라. 商 工 局

마. 文 教 局

바. 勞 働 局

사. 保 健 厚 生 局

아. 土 木 局

道 知 事 是 現 在 道 的 部, 課, 係 其 他 機 關 이 主 管 하 는 文 書, 財 產 及 朝 鮮 人 職 員 을 本 令

에 依하여 設置된 各局 또는 道管財處 及 道人事處에 即時 利管함을 要함.

第 7 條 (道知事) 道知事は 道の 最高行政事務 主管者로서 中央政府의 方針 및 指令을 道
內에 實施할 責任이 有함. 道知事は 道內에서 左의 任務 及 職能을 擔任함.

가. 管內 行政事務에 關하여 그 運營을 指揮監督함.

나. 局長·處長, 府尹, 郡守 及 島司 其他 法令에 規定된 職員 及 傭人의 任命, 轉勤,
解職에 關하여 軍政長官에게 意見을 具申함.

다. 所管職員 及 傭人中 職制表에서 除外된 別定職位에 依함. 職員의 任命 또는 解職을
함. 但, 前記 (나) 項에 規定된 職位를 除外함.

라. 道 經費를 支出케 하며 會計의 責任을 負擔함.

마. 法令의 規定에 依한 諮問委員會 及 其他 道內 公共團體의 評議會 召集 及 停會를 命
함.

바. 道 行政方針 及 運營에 關하여 道內 所在地의 中央廳 所屬 警察廳, 裁判所 及 其他
機關 또는 代行機關과 協調하며 法令에 規定된 方法 及 範圍內에서 行政機關 及 代行
機關의 活動을 監督함.

사. 他道에 影響이 없고 中央政府의 發布한 現行法令, 規定, 命令, 指令 또는 其他
法規와 矛盾되지 않는 限 所管道 行政事項에 關한 道令, 規程, 命令 及 指令을 發布함
但, 非常時 以外에 道令, 規程 及 指令을 發布할때는 그 發布前에 原案 3 通을 中央政府
(司法部) 에 提出하여 반다시 軍政長官의 指示에 依한 承認을 받으며 軍政長官의 命
令 또는 그 指示에 依한 命令이 있을때는 道令, 規程 及 指令은 即時 廢止함을 要함.

아. 前記 (가) 項의 規定에 對하여는 中央廳과 協調를 保持하며 그 方針의 統一을 期함
이 可함.

자.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 選舉 及 投票手續을 監督함.

第 8 條 (內務局)

가. 機構, 內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1. 會 計 課
2. 庶 務 課
3. 法 制 課
4. 地 方 課
5. 公 報 課
6. 運 輸 課

나. 任務와 職能, 內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1. 道管下에 있는 諸經費의 支出 及 會計
2. 道有財産 및 用度品の 管理, 修繕 及 保管 또는 그 監督及 此에 關한 文書의 作成

保管

3. 府, 郡, 島, 邑 及 面會計의 監督
4. 別定職位 職員의 任免에 關하여 道知事에게 意見을 具申하며 道 人事處와 協調聯絡함.
5. 公用文 書類의 出版, 發行, 記錄, 保管 及 郵送과 此等取扱의 監督 및 統制
6. 報告, 統計書類 및 其他書類의 接受, 發送과 表의 作成
7. 文書翻譯의 監督 및 統制
8. 法律, 命令, 指令, 報告書類, 統計書類 及 其他 必要한 記錄을 保管할 書庫의 監理
9. 道 法律顧問의 委囑과 諸般請求에 關한 調査 及 處理
10. 道令, 規程, 指令 及 訓令等の 起草
11. 府, 郡, 島, 邑 及 面의 行政監督
12. 道, 府, 郡, 島, 邑 及 面의 財政과 豫算의 監督 及 調整
13. 團體, 個人의 出版物과 그 活動狀況에 關한 情報의 蒐集 及 內容의 審査
14. 新聞, 雜誌, 라디오, 비라, 포스타 及 其他 適當한 方法에 依하여 公衆에게 對한 情報의 供給
15. 道, 府, 郡, 島, 邑 及 面의 所有, 運營 또는 統制하는 運輸機關의 監督
16. 本令에 依하여 特히 他局 및 中央廳의 直屬機構 또는 代行機關等に 所屬되지 않은 事項을 主管하고 此에 關聯된 必要한 職能을 遂行함.

(註) 1946年 4月 18日附 法令 第71號 參照)

第9條(農務局)

가. 機構, 農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1. 農業經濟課
2. 農 產 課
3. 水產課(忠淸北道를 除外함)
4. 食 糧 課
5. 山 林 課
6. 土地改良課

나. 任務 及 職能, 農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1. 農業經濟計劃의 樹立, 農業統計作成事務의 指令, 地主對 小作人關係에 關한 研究와 그 意見의 具申
2. 農產物의 審査 및 等級決定의 監督
3. 農作物, 家畜 及 養蠶의 生産에 關한 參考意見의 具申과 이에 對한 援助의 供與

4. 水産物の生産, 加工, 検査及販賣에 관한 参考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5. 漁業組合 其他 漁業關係 同業組合의 指導 監督 및 統制
6. 酒類 及 其他 알콜飲料 釀造用 原料의 配給
7. 中央食糧行政處의 方針 及 施策에 依한 糧穀의 收集, 分配 及 配給事務의 監督과 統制
8. 造林, 森林保護 及 製材, 薪炭製造에 관한 方法의 實施 및 指導 監督
9. 土壤의 侵蝕防止策의 實施 及 指導 監督
10. 山林關係團體의 指導 及 監督
11. 灌溉事業의 實施 及 運營의 責任이 有하며, 또는 此를 實施하는 組合 及 其他團體의 指導 及 監督, 面積 3百町步未滿 灌溉事業의 計劃, 監督 及 그 工事의 擴張改善과 堤防工事의 實施

第 10 條 (財務局)

가. 機構, 財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1. 直 稅 課
2. 理 財 課
3. 間 稅 課

나. 任務와 職能, 財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1. 國稅 及 地方稅에 관한 賦課徵收事務의 監督
2. 課稅物件의 調査, 分類 及 査定
3. 稅務, 財務關係의 必要한 文書의 保管
4. 國稅, 地方稅 及 其他 賦課金 徵收手續의 指導 監督
5. 管轄地域의 管理 及 監督
6. 酒類 釀造場의 帳簿 及 文書의 檢閱, 稅金의 正當한 納付와 徵收의 確保
7. 金融組合 及 其他 地方金融機關에 對한 參考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8. 道, 府, 郡, 島, 邑 及 面의 經費 及 그 支出의 檢査
9. 地方保險機關에 對한 參考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第 11 條 (商工部)

가. 機構, 商工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1. 商 務 課
2. 鑛 工 課

나. 任務와 職能, 商工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1. 消費財의 供給分配에 關하여 指導와 援助의 供與, 國內商業과 對外貿易의 增進 及 監督, 度量衡의 統制

2. 經濟 及 商業關係組合의 指導와 監督
3. 工業品, 商品, 鑛產物을 取扱하는 地方市場의 開發에 對한 參考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4. 鑛工業生産의 獎勵
5. 鑛工業經營者에게 正確한 統計의 提供
6. 地方鑛工業發展策의 指示 及 指導 及 監督
7. 鑛工業生産品의 規格實施와 그의 指導
8. 鑛工業團體 指導 監督
9. 酒精飲料의 釀造 及 分配의 監督과 그의 統制

第 12 條 (學務局)

가. 機構, 學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1. 庶務課
2. 調査企劃課
3. 學務課
4. 社會教育課

나. 任務 및 職能, 學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1. 專門學校程度 以上을 除外한 公立中等學校 及 師範學校의 管理
2. 小學校教員 及 資格免許
3. 小學校教員 및 小學校校長의 任免에 關하여 道知事에게 意見 具申
4. 中等學校校長의 任免에 關하여 中央廳 文敎部長에게 意見 具申
5. 公私立 初等學校 及 私立中等學校의 監督
6. 中等學校財務의 管理와 小學校財務의 監督
7. 專門學校程度 以上을 除外한 學校의 新設
8. 成人教育, 體育, 社會教育, 職業教育, 技術教育和 農業學校의 管理
9. 道內의 各 圖書館(道 附屬圖書館을 除外함) 博物館, 記念物 及 藝術的 實物의 保管, 中央文敎部長이 指定한 政府의 圖書館, 博物館 及 藝術的 實物의 保管
10. 中央廳 文敎部의 管理下에 있는 專門學校程度의 師範學校, 其他 學校中 特히 道管 下에 所屬된 學校의 監督

第 13 條 (勞働局)

가. 機構, 勞働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1. 總務課
2. 職業課
3. 組合課

나. 任務 及 職能, 勞働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1. 中央廳 勞働部의 方針과 訓令에 依하여 賃金, 勞働時間, 雇傭條件, 勞務關係, 勞働組合과 人事事務에 直接 關係없는 勞働問題에 關한 情報의 蒐集, 發表의 指導, 監督等 勞務에 關한 管理 及 監督
2. 勞働組合對政府關係의 調整 及 監督
3. 勞働에 關한 政策, 計劃과 그 運營 其他 勞働者의 厚生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意見의 具申, 雇傭條件 及 勞働者의 對雇傭主와 政府와의 關係에 對한 全體的 監督
4. 道 勞働調停委員會 活動의 監督 及 그의 管理

第 14 條 (保健厚生局)

가. 機構, 保健厚生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1. 醫 務 課
2. 藥 務 課
3. 豫防醫學 及 生政課
4. 衛生施設課
5. 獸 醫 課
6. 厚 生 課

나. 任務 及 職能, 保健厚生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1. 市營病院, 私立病院, 診療所, 藥局 及 遊園地의 監察 及 監督
2. 醫師, 專門醫, 漢方醫 及 齒科醫登錄의 監督
3. 學務局과 連絡하여 學校保健事業의 推進과 保健教育計劃의 樹立
4. 中央保健厚生部 指示에 依하여 病院 其他 厚生施設에 對한 看護婦의 活動, 看護婦와 產婆의 登錄에 關한 事務의 管理 及 監督
5. 道保健厚生局主管下에 있는 實驗所의 運營에 關한 指導와 監督
6. 母性 및 兒童保護에 關한 指導와 援助의 供與
7. 道立病院運營의 監督과 그 管理, 但 道立醫科大學附屬病院을 除外함.

(註) 1945年 11月 7日附法令第 25號는 本令에 依하여 無效로 됨.

8. 藥材, 醫藥, 賣藥 及 其他 醫療 또는 厚生事業에 使用되는 商品 (派生劑, 複合劑 及 上記藥材를 含有한 것을 包含함)의 生産, 取得, 貯藏, 分配, 配給의 監督, 檢査 及 統制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上記 物品의 生産者, 製造業者, 販賣者 及 調劑者의 認可 及 中央廳保健厚生部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

9. 傳染病에 關한 事業의 監督 及 統制
10. 出生, 死亡, 死産과 婚姻, 離婚에 關한 届出, 登錄의 監督 及 中央廳庶務處

國勢調查署에 대하여 結果表 寫本의 提出

11. 人口統計의 蒐集, 作成, 分析 及 解釋
12. 獸肉, 鳥肉, 魚類, 乳製品, 脂肪, 膠糊, 皮革, 毛皮 及 化製等 全 動物性 產品의 衛生的 檢査, 肉類, 魚產物의 販賣店 及 市場, 屠獸場, 牧場, 乳類消毒場, 皮革工場 及 製糖工場等 上記 物品을 生産, 加工하는 施設의 衛生的 檢査
13. 下水道 及 汚穢物清掃, 水道蟲類 及 鼠類驅除와 「마라리아」豫防에 關한 指導 監督, 理髮所 及 理髮師의 檢査, 工場의 衛生施設監督, 魚介養殖 及 販賣에 對한 衛生的 監督, 食料品 及 飲料의 製造加工, 分配 及 販賣施設의 檢査, 監督 但, 食料品 또는 無酒精飲料提供에 附屬된 業務에 從事하는 境遇에는 該附屬業務에 對하여 法令 第 83 節第 3 條에 依하여 附加許可를 要함.

(註: 1946 年 5 月 13 日附法令第 83 號參照)

14. 家畜傳染病의 豫防과 一般家畜病院의 治療 及 家畜의 保護方策의 樹立
15. 獸醫師 及 裝蹄免許登錄에 對한 指導 監督
16. 公共厚生事業의 立案 及 管理에 必要한 書類의 作성과 그에 關한 調査
17. 戰災者 及 失職者에 對한 復職, 復業의 指導 及 監督
18. 失職者, 廢疾者, 罹災者 及 孤兒의 援護와 그 救濟事業의 指導 及 監督
19. 一般救濟事業에 從事하는 地方厚生施設의 監督
20. 公共厚生施設運營의 指導 及 監督
21. 民間厚生機關의 監督
22. 公共厚生事業用品의 請求, 配布의 指導 及 監督

第 15 條(土木局)

가. 機構, 土木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1. 庶務課
2. 都市計劃課
3. 道路課
4. 治水課

나. 任務와 職能, 土木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1. 一般街路의 改善, 區劃의 決定, 水道, 汚穢物의 清掃, 道消防委員會와 連絡하여 防火施設等の 都市計劃
2. 測量의 實施
3. 公路, 道路, 橋梁, 運河, 水門, 公用物 及 其他 公有施設의 建設, 修繕 及 改善
4. 河川의 管理, 利用, 淨化 及 水害防止의 對策等 天然資源의 保護開發
5. 中央廳土木部의 指示에 依한 前號의 事業 及 其他 土木事業의 實施

(註) 1946年 4月10日附法令第66號第3條參照

第16條(經費의 支出) 中央廳財務部長은 用途가 特定되지 않은 經費에서 本令의 規定에 依하여 機構의 改革에 必要한 經費를 即時 各道에 支給함을 要함.

第17條(道와 中央廳과의 關係)

1. 中央廳과의 協調

道知事는 中央 各部處와 其他 中央機關의 政策, 企劃 及 其他運營에 對하여 統一을 維持하여 統一을 維持하며 그와 協調할 責任이 有함.

2. 中央廳의 命令權

軍政長官은 道에 對하여 民政長官, 中央部處長 名義의 法令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써 指示 監督하며 統率할 權限이 有함.

第18條(本令에 規定된 機構, 名稱, 職名 及 職能의 變更) 本令에 規定된 機構, 名稱, 職名 及 職能의 變更은 本令과 同一한 效力이 有한 法令에 依함을 要함. 但 局의 職能에 變更이 없는限 民政長官의 事前承認을 得하여 局內 各課를 任意廢置 分合할 數 있음. 此에 關한 經費는 當該 局에 配定될 豫算에서 支出함.

第19條(本令에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本令에 抵觸되는 法律, 法令, 指令 及 規程, 指示는 此를 廢止함.

第20條(施行期日) 本令은 公布後 10日부터 效力이 生함.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軍政長官陸軍小將 아-취·엘·리-취

○ 朝鮮過渡立法議院의 創設(法令 第118號, 1946. 8. 24)

第1條(目的) 本令은 모스크바協約에 規定된대로 朝鮮 全體의 臨時 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며 過渡立法機關을 建設함으로 政府에 民主的 要素의 參加를 增加하여 民主主義原則下에 國家의 發展을 助成함을 目的으로 함.

第2條(立法機關의 目的) 戰時 朝鮮民主政府의 樹立을 期하며 政治的, 經濟的 及 社會的 改革의 基礎로 使用될 法令草案을 作成하여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職務가 있는 立法機關을 廣汎한 選舉方途에 依하여 建設함이 軍政廳의 目的임을 宣言함. 最初에 同議院은 選定된 一部分의 議員과 選舉된 一部分의 議員으로써 構成됨. 漸次로는 議員全部가 選舉됨.

第3條(設置) 朝鮮過渡立法議員으로써 알려질 朝鮮立法機關은 茲에 政府의 한 機關으로써 設置됨. 同議院은 90名 議員으로써 構成되며 其中 45名議員은 選舉됨. 選舉되는 議員은 各道와 서울特別市에서 左記의 規定에 依하여 各 55萬名當 1名 또는 主要 端數當

1 名의 單位로 選舉됨. 但, 各道는 選舉되는 議員 적어도 1 名으로 代表하게 됨. 其外에 또한 各道와 서울特別市는 全體的 代議士 各 1 名으로 選出함. 其餘의 議員은 朝鮮의 經濟的, 政治的 及 知的生活的 主要한 民主的要素를 公平正大하게 代表하도록 選定됨.

第 4 條 (俸給) 同議院議員은 大法院大法官과 同額의 報償을 받음. 必要한 雇傭人의 報償 支拂은 人事行政 規程에 準함.

第 5 條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職務 及 權限) 一般 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 長官이 依託한 事項에 關하여 法令을 制定함이 同議院의 職務임. 同議院은 또한 過去의 軍政廳에 任命한 人事行政身分 4 等級以上의 모든 官職任命을 再調査할 權限이 있으며 또 그러한 未來의 모든 任命을 追認하고 茲에 同意하는 權限이 있음. 同議院에서 制定한 法令은 軍政長官이 同意하여 合法的으로 署名 捺印하고 官報에 公布하는 때에 法律의 效力이 있음. 軍政長官은 法令에 同意치 않는 境遇에는 同意치 않는 理由의 說明書를 添加하여 同立法議院에 還付함.

第 6 條 (定員數, 議員發言의 免責特權)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行動은 定員數의 過半數로써 決定되며 同議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限 全議員의 4 分之 3이 定員數를 構成함. 同議會席上이나 또는 建設될 수 있는 委員會席上이나 를 莫論하고 同議院에서의 討論은 自由이며 議員은 아모 다른곳에서도 그러한 討論進行中の 發言에 關하여 質問을 받지 않음. 然이나 同議院은 行爲規程을 採用하며 議員의 無秩序한 行爲를 處罰할 手段을 講究할 權限이 있음.

第 7 條 (議員의 資格) 朝鮮過渡立法議員의 議員은 職務에 就任하는날 滿 25 歲以上이 된 朝鮮人이 아니면 또한 選舉直前 1 年以上, 代表하는 道나 地域의 合法的 居住者가 아니면 選舉되지 아니함. 本條의 目的에 關한 就任日이란, 그러한 選舉가 있는 後 同議院의 集會가 召集되는 第 1 日이라고 看做함. 左記 各項에 該當한者는 同議院의 議員이 될 資格이 없음.

(1) 日帝下에 中樞院參議, 道會議員, 또는 府會議員의 地位에 있는者, 또는 刺在官級 及 其以上の 地位에 있는 者

(2) 自己의 利益을 위하여 朝鮮人民에게 損害를 끼치며, 日人과 協力한 者

第 8 條 (同議院議員의 選舉方法)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被選議員은 38 度以南 朝鮮 各道와 서울特別市의 人民을 爲하여 人民들이 選舉하며 同議院이 制定하고 軍政長官이 裁可한 法令에 依하여 樹立되는 規定에 따라 男女의 區別이 없이 普通選舉를 實施함. 如斯한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被選議員은 軍政長官이 樹立한 選舉手續에 依하여 選舉함. 茲選舉手續은 內容에 있어서 各里, 町은 代表 2 名式을 選舉하고 茲里, 町代表들은 各 所屬面, 邑 또는 區代表 2 名式은 選舉하며 茲面, 邑, 區代表들은 各所屬, 郡 또는 府의 代表 2 名式을 選舉하고 茲郡 또는 府의 代表들은 各所屬道 人口割當에 依하여 議院道代表들을 選舉

함을 規定하며 또한 모든 投票는 秘密無記名 投票임을 規定함.

官定人口統計가 完成될 때까지 人口數는 中央經濟委員會에서 時々로 決定하는 人口數로 함.

本令의 目的에 關하여 38度以南에 所在한 黃海道의 一部는 京畿道의 一部로 看做함.

第 8 條 (任期)

○ 罰金の 増額과 特別審判員의 管轄權 及 物價, 糧穀統制法規 違反에 對한 刑罰 (法令 第 120 號, 1946. 10. 24)

第 1 條 (法令第 51 號의 廢止) 1946 年 2 月 20 日附 法令第 51 號 (罰金の 增加)는 茲에 廢止함. 但, 本令의 施行期日전에 犯한 罪에 對하여는 法令第 51 號를 適用함.

第 2 條 (罰金の 増額) 現行 各 法令에 規定된 罰金の 額을 50 倍로 増額함.

第 3 條 (特別審判員의 管轄權 擴大) 1946 年 1 月 10 日附 法令第 41 號第 2 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特別審判員은 30 日以下의 拘留, 萬圓以下의 罰金 또는 30 日以下의 拘留와 萬圓以下의 罰金을 併科할 事件에 對하여 原始管轄權이 有함. 但, 物價, 糧穀統制法規違反事件에 對하여는 初犯으로 3 個月以下의 懲役, 禁錮와 2 萬圓以下의 罰金, 3 個月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와 1 萬圓以下의 罰金을 併科할 境遇에 限하여 管轄權이 有함.

第 4 條 (罰金이 納入되지 않은 時의 留置期間) 1946 年 1 月 10 日附 法令第 41 號第 12 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罰金 또는 科料의 言渡를 바든 者는 即時 그 金額을 納入함을 要함. 그 金額을 完納치 못한 境遇에는 1 日을 金 125 圓으로 換算한 期間留置를 함. 但, 金 125 圓未滿의 端數는 此를 1 日로 換算함.

第 5 條 (罰金이 納入되지 않은 時의 留置의 效力) 1946 年 1 月 10 日附 法令第 41 號 14 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第 11 項에 規定된 拘留日數는 服役日數로 看做함. 第 12 項의 規定에 依하여 留置된 境遇에는 留置日數 1 日을 金 125 圓으로 換算하여 그 金額을 納入한 것으로 看做함.

第 6 條 (物價, 糧穀統制法規違反事件의 最高 及 最低의 刑) 物價, 糧穀統制法規에 違反한 者는 懲役, 禁錮 또는 罰金에 處하며 犯情에 依하여는 懲役, 禁錮 及 罰金을 併科함. 但, 科刑의 量定은 左에 依함을 要함.

가. 初 犯

取引金額	罰金の最低額~最高額	體刑의 長期
500 圓以下	1,000 圓~ 5,000 圓	懲役 또는 禁錮 1 月
501 圓以上~1,000 圓까지	2,000 圓~ 10,000 圓	懲役 또는 禁錮 1 月
1,001 圓以上~5,000 圓까지	4,000 圓~ 20,000 圓	懲役 또는 禁錮 1 月

取引金額	罰金の最低額—最高額	體刑의長期
5,001 圓以上~ 10,000 圓까지	20,000 圓~ 40,000 萬圓	懲役 또는 禁錮 1 月
10,001 圓以上	40,000 圓以上	懲役 또는 禁錮 1 月

取引關係가 金錢으로 評價할 수 없는 境遇에 初犯에 對하여는 罰刑의 最低額は 金 千圓 最高額は 金 5 千圓, 懲役 또는 禁錮의 長期는 1 月로 함.

나. 再犯

再犯에 對하여는 (가)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及 罰金額의 最高及 最低를 各 3 倍로 함. 但 初犯에 對한 罰金額의 3 倍와 前記 (가)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初犯時 懲役 또는 禁錮에 處斷된 與否를 不問함)을 併科한 刑以上에 處함을 要함.

다. 3 犯以上の 累犯

3 犯以上の 累犯에 對하여는 前記 (가)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及 罰金額의 最高及 最低額의 各 10 倍로 함. 但 初犯에 對한 罰金額에 5 倍와 (가)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의 3 倍(初犯及 再犯時 懲役 또는 禁錮에 處斷된 與否를 不問함)를 併科한 刑以上에 處함을 要함.

第 7 條(本令은 施行前에 犯한 罪에는 適用하지 않음)

第 8 條(施行期日) 本令은 公布後 10 日부터 效力이 生함.

1946 年 10 月 24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취·엘·러-취

○ 米穀密輸出等の 處罰(法令第 127 號, 1946. 11. 15)

第 1 條(目的) 本令은 朝鮮人民의 需要를 充足키 爲하여 國內食糧을 確保할 緊急 必要에 依하여 米穀의 密輸出 其他 此에 關한 犯罪를 處罰함을 目的으로 함.

第 2 條(刑罰) 米穀을 朝鮮으로부터 密輸出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罰함.

(가) 初犯인 境遇에는 10 年以上의 懲役과 金 10 萬圓以上の 罰金, 再犯인 境遇에는 20 年以上의 懲役과 金 20 萬圓以上の 罰金, 3 犯以上の 累犯인 境遇에는 無期懲役과 金 50 萬圓以上の 罰金を 各併科함.

(나) 그 密輸出 數量이 70 石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前項의 體罰과 罰金の 最低標準(無期 懲役을 除外함)을 2 倍함.

(다) 從犯 其他 共犯은 主犯과 同一한 刑에 處함.

(라) 米穀密輸出에 關하여 財産上으로 關與한 者는 主犯과 同一한 刑에 處함.

(가) 米穀密輸出에 使用됨을 知悉함에 不拘하고 船舶 其他 運搬器具를 入手, 準備, 賣渡, 賃貸 또는 그 使用을 容認한 者, 密輸出됨을 知悉함에 不拘하고 密輸出에 供한 米穀을 入手, 賣買, 隱匿한 者는 3年以上의 懲役과 金 5萬圓以上の 罰金에 併科함.

(나) 密輸出에 供한 米穀과 此에 使用한 私有的 船舶, 車輛, 動物, 航空機 及 其他 一切 運搬器具는 現行法에 依하여 沒收함을 要함.

(1946年 1月3日附 法令第29號 外國貿易規則, 同年 8月12日附 中央食糧規則第2號 米穀收集令, 同年 7月12日附 外國貿易規則 第1號 免許 및 輸入輸出許可 參照)

第3條 (通報者에게 對한 賞金)

(가) 未遂, 既遂, 豫備를 不問하고 米穀密輸出에 關하여 官廳에 最先通報한 者에 對하여는 最高額을 制限치 않고 罰金, 沒收等으로 取得한 金額의 2割5分을 賞金으로 授與함. 그 通報에 依하여 米穀密輸出한 者 有罪로 決定된 境遇에는 罰金 또는 沒收로 取得된 金額의 1割을 追加함.

(나) 本件에 依한 賞金에 關하여 中央政府 財務部長이 決定한 事項에 對하여는 不服함을 不得함. 中央政府財務部는 沒收한 罰金 또는 沒收品의 賣却代金中에서 賞金을 支拂함.

(다) 通報者는 發表치 않고 極秘에 附함.

(라) 1946年 10月8日附 法令 第116號 (稅關法の 改正) 第4項은 本令에 依하여 米穀密輸出에 關한 賞金의 部分이 修正된 以外에 全部 米穀密輸出에 適用함. 但 同一人의 同一行爲에 對하여는 本令과 法令第116號에 依하여 2重의 賞金을 授與치 않이함.

第4條 (米穀密輸出에 關한 行爲를 看過한 公務員의 處罰) 公務員이 米穀密輸出의 犯罪 (未遂, 既遂를 不問함)을 知悉하며 또는 可信할 理由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告發치 않으며 또는 權限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故意로 그 犯行의 阻止, 犯人의 逮捕 또는 그 刑의 執行을 하지 않은 境遇에는 5年以上의 懲役과 金 5萬圓以上の 罰金을 併科함.

第5條 (本令 施行上 重過失이 있는 公務員의 處罰) 公務員으로서 重過失로 因하여 米穀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또는 起訴를 懈怠히한 者는 1年以上의 懲役과 金 5千圓以上の 罰金을 併科함.

第6條 (米穀密輸出을 看過케 하기 爲한 公務員에게 贈賄) 公務員에게 對하여 米穀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起訴 및 裁判에 關한 職務를 不正히 處理케 하기 爲하여 直接, 間接으로 賄賂를 供與 또는 約束한 者는 5年以上의 懲役과 金 5萬圓以上の 罰金을 併科하고 그 供與한 賄賂는 現行法에 依하여 沒收함.

第7條 (米穀密輸出을 看過하기 爲한 公務員의 收賄) 公務員으로서 米穀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起訴 및 裁判에 關한 職務를 懈怠 또는 回避할 明示, 默示의 合意 또는 諒解下에 直接, 間接으로 賄賂를 收受 또는 約束한 者는 10年以上 懲役과 金 5萬圓 以上の 罰金을 併科함.

公務員으로서 米穀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起訴 及 裁判에 關한 職務를 懈怠 또는 回避할 明示, 默示의 約束下에 直接, 間接으로 賄賂를 要求 또는 要求에 依하여 收受 또는 收受를 約束한 者는 15年以上의 懲役과 金 7萬5千圓以上の 罰金を 併科함. 그 供與된 賄賂는 現行法에 依하여 沒收함을 要함.

第 8 條 (本令에 依하여 公務員이 執行하는 職務의 妨害行爲) 本令에 依하여 米穀密輸出의 取締, 犯人의 逮捕, 調查, 起訴, 裁判 及 그 形의 執行에 從事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故意로 그 職務 執行을 妨害 또는 妨害코자한 者는 2年以上의 懲役과 金 1萬圓以上の 罰金を 併科함.

그 妨害行爲가 暴行, 脅迫에 依한 境遇에는 5年以上의 懲役과 金 5萬圓以上の 罰金を 併科함.

第 9 條 (減輕例의 排除) 本令에 依한 刑罰은 如何한 裁判所에서도 減輕 또는 執行을 猶豫함을 不得함.

第 10 條 (本令에는 刑罰의 最低量으로 規定하였으므로 그 量刑上의 長期 及 多額은 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決定함.

第 11 條 (未遂, 共謀) 本令의 犯罪를 圖謀한 者, 幫助, 準備한 者, 그 犯行을 實行케 한 者, 犯人을 藏匿 또는 隱避, 逃走 其他에 協力한 者는 主犯과 同一한 刑에 處함.

第 12 條 (法人行爲의 責任) 法人의 役員,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資格으로서 單獨 또는 共同으로 本令의 違反行爲를 構成할 作爲, 不作爲의 原因을 附與, 指示, 助言, 慫慂, 承認, 贊成投票 及 關與한 時는 法人을 處罰하는 境遇라도 그 役員, 使用人 及 其他 從業員은 個人의 資格으로 그 責任을 負擔함.

第 13 條 (抗辯) 本令에 依한 犯罪에 對하여는 脅迫, 威壓, 恐怖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서 抗辯하지 못함.

第 14 條 (抵觸하는 法令의 廢止) 從前의 法令, 規則, 訓令 其他로서 本令과 抵觸, 矛盾되는 것은 그 範圍內에서 廢止함.

第 15 條 (定義) 本令에

(가) 朝鮮이라함은 北緯 38度以南 朝鮮의 地域을 指稱함.

(나) 「密輸出」이라 함은 法令에 依하여 正當한 權限없이 朝鮮으로부터 米穀을 搬出함을 指稱함. 「密輸出」이라 함에는 그 未遂를 包含함.

(다) 「密輸出者」라 함은 法令에 依하여 正當한 權限이 없이 朝鮮으로부터 米穀을 搬出하는 者를 指稱함. 「密輸出者」라 함에는 그 未遂를 包含함.

(라) 「公務員」이라함은 官公署職員, 그 代理로서 米穀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調查, 起訴 及 裁判할 權限과 義務를 有한者를 指稱함.

「公務員」에는 警察의 職員, 海岸警備隊員, 稅關官吏, 海港監督官廳, 稅務機關, 國防警

備隊員, 檢事 及 判事를 包含함. 그러나 이에 制限치는 不함.

마 「重過失」이라 함은 故意로 不注意를 惹起케 한 境遇 又は 義務怠慢이 不注意를 惹起케 한 境遇를 稱함.

바 「賄賂」라 함은 金錢, 財産, 其他 一切의 利益, 그에 對한 一切의 約束, 權利不行使 등을 包含함.

사 「米穀」이라 함은 白米, 玄米, 糯米, 正租, 陸稻를 包含함.

아 「妨害行爲」라 함은 事務執行의 阻止, 妨害行爲와 그의 未遂를 包含함.

가 「收受」라 함은 明示, 默示의 合意, 諒解下에 第3者를 通하여 또는 第3者에 依하여 收受함을 包含함.

다 「提供」이라 함은 第3者를 通하여 또는 第3者에 依하여 提供함을 包含함.

第 16 條 本令은 公布後 30 日부터 效力이 生함.

1946 年 11 月 15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취·엘·러-취

○ 繭絲檢査法 (法令 第 133 號, 1947. 3. 8)

繭絲檢査에 關하여는 朝鮮過度立法議院에서 法令으로 審議制定할 때까지 本令에 依함.

第 1 條 本令은 免許된 製絲工場에서 生産하는 繭絲의 檢査와 그 等級을 規定하여 優良品의 生産을 確保함을 目的으로 함.

第 2 條 (法律의 廢止) 1942 年 3 月 25 日附 制令第 24 號 (朝鮮蠶絲業統制令)와 第 34 條及 第 13 條第 1 項을 廢止함.

第 3 條 (繭絲檢査의 必要) 免許된 製絲工場에서 生産하는 모든 繭絲는 農務部長의 監督下에 그 正量과 品位에 關하여 檢査받음을 要함.

檢査받지 않이한 繭絲는 輸出使用함을 禁함.

第 4 條 (規則의 制定公布) 農務部長은 免許된 製絲工場에서 生産하는 繭絲의 檢査規則을 制定함을 要함. 그 規則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여 官報에 公布하면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生함.

第 5 條 (無檢査繭絲의 輸送禁止) 檢査를 要하는 繭絲는 檢査實施前에는 如何한 方法으로 던지 輸送하지 못함. 但 檢査받기 爲하여 繭絲檢査場, 免許된 繭絲生産工場의 所有 또는 賃貸契約에 依하여 借受한 貯藏倉庫에 輸送하는 境遇에는 此限에 있지 아니함.

第 6 條 (記錄) 免許된 製絲工場은 農務部長이 要求하는 記錄을 保存함을 要함. 그 記錄은 免許된 製絲工場에 備置하여 從業時間中 農務部職員 又は 그 代表者에게 自由閱覽케 함을 要함.

第7條(罰則) 本令에 違反하여 生繭 또는 輸送한 繭絲와 그 輸送에 供用한 船舶, 自動車 荷車, 動物 及 其他 輸送器具는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此를 沒收함. 本會議는 本會에 依하여 制定된 規則에 違反한 者는 軍占領地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8條(定義) 本令에

가. 「繭絲」라 함은 製絲工場에서 蠶繭으로부터 뽑은 絲로서 加工치 않은 것을 意味함.
나. 「免許製絲工場」이라 함은 法令에 依하여 免許된 繭絲生産工場을 意味함.

第9條(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부터 10 後에 效力이 發生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취·엘·러-취

○ 朝鮮競馬令의 改正 (法令 第138號, 1947. 4. 1)

朝鮮過度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1條(目的) 本令의 目的은 競馬에 關한 現行法規를 改正하며 畜馬種改良에 使用할 收人方法을 規定함에 있음.

第2條(改正) 1932年 10 制令 第3號(朝鮮競馬令)는 左와 如히 改正함.

가. 第4條中 「2圓以上 20圓以下」를 「20圓以上 100圓以下」로 改正함.

나. 第6條第1項中 「但 其額은 勝馬投票券의 券面全額 10倍를 超過치 못함」은 削外함.

第3條(施行期日) 本令은 發布日로부터 效力이 生함.

1947年 4月 1日

右建議함 民政長官 安 在 鴻

右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취·엘·러-취

○ 畜牛屠殺制限에 關한件 (法令 第140號, 1947. 6. 9)

朝鮮過度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1條(目的) 本令의 目的은 朝鮮內의 畜牛를 確保하여 正常한 數에 回復케 함에 있음.
畜牛의 數는 相當히 減少하였음.

畜牛의 減少는 米穀 其他 穀物을 生産하는 耕作에 使用할 畜力에 響影이 有함. 畜牛의 無制限 屠殺은 牛種存續에 脅威가 됨으로 現存 畜牛의 屠殺을 制限할 適切한 方法이 必

要함.

第2條(現行法令의 廢止) 1912年 3月 11日附 朝鮮總督府勅第9號(畜牛改良増殖의 獎勵에 관한 件)을 此를 廢止함.

第3條(畜牛屠殺禁止) 10歲未滿의 畜牛는 屠殺함을 禁止함. 但 搾乳種의 牝牛는 此限에 不在함.

妊娠牛는 年齡을 不問하고 屠殺함을 禁止함.

第4條(衛生監督은 變更함이 無함.) 畜牛屠殺에 對한 衛生檢査監督 及 屠殺規則에 關한 現存規定은 本令에 依하여 何等影響이없음. 그 法令에 規定된 檢査에는 年齡에 關한 檢査를 追加함.

第5條(除外區域) 農務部長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여 本令 適用으로부터 道, 島 其他區域을 除外함을 得함.

第6條(年齡에 關한 推定) 屠場以外의 場所에서 또는 法令에 規定한 檢査를 受하지 않고 屠殺한 畜牛는 10歲未滿으로 推定함. 本條 違反으로 起訴된 時는 그 反證을 提出할 수 있음.

第7條(刑罰)

가. 故意로 또는 共謀하여 本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地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나. 畜牛屠殺檢査의 職責이 有한 公務員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本令에 違反한 境遇에는 陸軍占領地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斷하며 其 職을 罷免함.

다. 屠場所有者, 管理者 또는 雇傭人으로서 그 情을 알고 本令 違反行爲를 容認하며 又是 그 行爲 又は 그 行爲에 加擔한 境遇에는 陸軍占領地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라. 屠場所有者, 管理者 또는 그 雇傭人이 本令의 認定에 違反한 行爲로 因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境遇에는 許可官廳은 屠場經營許可를 取消함을 得함.

마. 本令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에 供用된 畜牛는 屠殺의 前後를 不問하고 此를 押收함. 그 違反行爲에 對하여 陸軍占領地 裁判所에서 有罪判決을 한 境遇에는 押收한 畜牛는 法律規定에 依하여 沒收함. 그 沒收處分에 關한 記錄과 그 賣却代金에 關한 記錄은 訴訟記錄의 一部로 保存함.

第8條(畜牛의 定義) 本令에 畜牛라 함은 家畜牛를 意味함.

第9條(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發生함.

1947年 6月 9日

右 建議함 民.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아-취·엘·러-취
美國陸軍少將

○ 夏穀集收 (法律 第2號, 1947. 5. 8)

第1條 (中央食糧行政處夏穀收集令 草案은 本令 第2條 要綱에 基한 修正을 加하여 施行케 함을 決議함. 同修正要綱은 同時에 發布하는 收集令의 一部가 됨.

第2條 (修正要綱)

(가) 夏穀은 朝鮮在來의 農村農穀인 實情을 考察하여 總生産畜의 5分之1以內 程度에서 收集하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여 無理한 供出割當이 없도록 할 것.

(나) 割當의 公平을 期하기 爲하여 邑面長은 洞里單位로 査定委員會를 設置하여 各農家生産豫想高에 對한 正確與否를 審査케 할 것.

(다) 收集方法은 強壓的 手段을 禁하고 地方行政吏員만을 總動員하여 積極的으로 農民의 良心的 供出意識을 鼓吹하여 農民이 祖國에 對한 義務感에서 供出하는 方法을 講究實施 할 것. 但 中央食糧規則 第5號 「夏穀收集令」에 規定한 罰則은 法에 依하여 權威所有者가 此를 施行함.

(라) 夏穀價格은 生産費, 最近物價格數等을 參酌하여 適當한 收集價格을 決定할 것.

(마) 供出한 農民에게는 生活必需品配給에 對한 優先權을 特許할 것.

(바) 運輸機關을 督勵하고 倉庫를 整備하며 運營體系를 鮮明히 하여 收集한 夏穀을 適當히 保全하며 死藏腐蝕狀態에 潛入치 말게 할 것.

第3條 本令은 發布와 同時에 有效함.

1947年 4月 19日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右와 如히 制定함.

朝鮮過渡立法議院

議 長 金 奎 植

1947年 5月 8日

右認准함

軍 政 長 官 아-취·엘·러-취
美國陸軍少將

○ 米穀收集法 (法律 第6號, 1947. 9. 27)

第1條 本法은 政府가 國民食糧을 確保하고 非農家에게 配給하기 爲하여 米穀을 收集함을 目的으로 함.

第2條 左의 1에 該當한 者는 米穀을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1. 地主, 但 小作農家は 地主를 代理하여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2. 米穀耕作面積 3 段步를 超過한 自作農家
3. 米穀耕作面積 5 段步를 超過한 小作農家 但 自作兼小作 農家에게는 前號 及 本號의 比率(5 分之 3)에 依하여 그 小作面積을 換算決定함.
4. 前第 2, 3 兩號에 規定한 標準以下の 面積을 耕作하는 者로서 自家用食糧, 種子를 除外하고 餘裕數量이 있는 農家

5. 新韓公社

自作兼小作農家 及 小作農家は 米穀耕作面積의 多寡에 不拘하고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하여야 함.

地主는 當該土地所在 邑, 面長(市長, 府尹)에게 當該 土地의 米穀收集量 及 小作料數量을 報告할 義務가 있음.

約定小作料數量이 米穀收集量의 3 分之 1에 未達할 때에는 그 差額을 小作人이 直接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新韓公社는 他地主와의 同一하게 取扱함.

新韓公社小作人의 出荷量은 該社 小作地에 隣接한 土地의 出荷量과 均衡하여야 함.

第 3 條 農家에 對한 米穀收集量의 割當은 邑, 面長(市長, 府尹)이 邑, 面(市, 府) 及 各里(町, 洞) 米穀收集對策委員會의 意見을 聽고 此를 行함.

第 4 條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地主, 自作農, 小作農 及 大農場의 代表者, 篤農家, 地方事情精通者로써 이를 組織하며 定員은 邑, 面(市, 府)에서는 15 人以內, 里(町, 洞)에서는 10 人以內로 함.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左의 事項에 關하여 邑, 面長(市長, 府尹) 또는 區長(町, 洞會長)을 補佐하며 또는 諮問에 應함.

1. 米穀收穫量의 調査
2. 各農家所要食糧 及 農糧의 査定
3. 米穀割當量의 査定
4. 其他 米穀收集上 必要한 事項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米穀收集에 關하여 邑, 面長(市長, 府尹) 또는 區長(町, 洞會長)이 決定한 事項 또는 處分에 不當한 點이 있다고 思惟할 때에는 各里(町, 洞)委員會는 邑, 面長(市長, 府尹)에게 各邑, 面委員會는 郡守, 島司에게 그 事項을 仔細히 表示하여 異議를 申請할 수 있음. 郡守, 島司 또는 邑, 面長(市長, 府尹)은 前項의 異議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10 以內에 可否를 決定 通知하여야 함.

第 5 條 米穀收集이 全部 完了하였을 때 또는 政府가 收集中止 宣言하였을 때에는 出荷義務를 完了한 農家は 米穀을 自由販賣 또는 自由輸送할 수 있음.

第 6 條 米穀收集價格은 一般物價水準과 米穀生産質等を 參酌하여 此를 定함.

出荷義務完了農家에 對하여서는 可能한 最大限度의 獎勵物資를 配給함.

第 7 條 米穀出荷를 回避할 目的으로 이를 隱匿한 者 或은 惡質的으로 出荷를 拒否 또는 回避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6 個月以下의 懲役 또는 5 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 8 條 米穀收集期間中 米穀을 竄買 또는 運搬하는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收集期間前後를 不問하고 暴利를 目的으로 米穀을 買占 또는 賣惜하는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1 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 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 9 條 米穀收集을 妨害할 目的으로 米穀收穫量 調査를 拒否 또는 妨害한 者 或은 虛僞宣傳 또는 脅迫으로 農民의 出荷意識을 米感케 한者는 3 個月以上의 懲役 또는 5 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 10 條 公務員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不當한 米穀收集量의 割當 其他 本法에 違反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6 個月以下의 懲役に 處함.

第 11 條 本法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細則은 行政令으로써 此를 定함.

第 12 條 本法令은 公布日로부터 이를 施行함.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右와 如히 制定함.

朝鮮過渡立法議員

議 長 金 奎 植

1947 年 9 月 27 日

左認准함.

朝鮮軍政長官代理 씨·지·헬 립
美國陸軍代將

○ 植木日 (法律 第 10 號, 1948. 3. 31)

4 月 5 日을 植木日로 定하고 公休日로 함.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右와 如히 制定함.

朝鮮過渡立法議院

議 長 申 翼 熙

1948 年 3 月 31 日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따블유·에프·뵐
美國陸軍少將

○ 農業統計報告令 (法令 第 143 號, 1947. 6. 21)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한 時까지 左에 依함.

第 1 條 (目的) 本令은 南朝鮮過渡政府의 農業統計報告機構確立과 其 方針을 指示함을 目的으로 함.

本令은 農産, 水産 及 林産物에 關한 統計를 官民에게 發表하는데 있어서 權威있는 唯一한 根據가 됨.

第 2 條 (農業統計報告委員會)

(가) 創設 及 其 機構

農業統計報告委員會는 此를 農務部內에 創設함. 委員長 1名, 執行委員 1名, 委員 7名으로 此를 構成함.

委員長은 農業經濟局長이 執行委員은 農業經濟局統計課長이 此任에 當하고 7名의 委員은 左記 基準에 依하여 農務部長이 農務部內에서 此를 任命함.

統計官 1名 (水 産 局)

統計官 1名 (山 林 局)

統計官 5名 (農業經濟局)

本 委員會에 從事하는 右記 有給職員은 本 委員會業務에 對하여 別途로 報酬를 受하지 못함.

(나) 道農業統計官

農務部內에 道農業統計官 (各道 及 서울市 1名式)를 置함.

道農業統計官은 其 任務를 遂行함으로써 本 委員會를 補佐하고 直接 委員長에 對하여 責任이 有함.

各道 農務局은 道農業統計官이 道農業統計係를 組織하기 爲하여 要請하는 統計關係書類와 相當한 人員을 移營함을 要함.

(다) 府郡農業統計士

1. 農務部內에 府農業統計士 及 郡農業統計士 (各府郡에 1名式)을 置함.

府郡農業統計士는 其 任務를 遂行함으로써 本 委員會를 補佐하고 直接 所屬 道統計官에 對하여 責任이 有함.

2. 各郡에 郡副農業統計士를 置함 (各郡 1名式)

但, 忠南 瑞川郡은 2名으로 함.

(라) 邑面農業統計官

農務部內에 邑面農業統計員 (各 邑面에 1名式)을 置함.

邑面農業統計員은 其 任務를 遂行함으로써 本 委員會를 補佐하고 所屬郡 農業統計士에

對하여 直接 責任이 有함.

第3條 (任務와 職能)

1. 本委員會는 農産, 水産 及 林産物에 關한 農業統計機構의 發展을 期함.
2. 本委員會는 農業經濟局, 水産局 及 山林局 協力下에 農産水産 及 林産物에 關한 過去 及 未來統計作成上 必要한 資料를 蒐集 또는 對照 함.
3. 本委員會는 決定된 統計의 月報 及 其他 報告書를 發行하고 又是 政府의 各部處, 代行機關 及 各機關의 責任者가 書面으로 要請할 時는 本委員長과 農業部長의 決裁를 得하여 報告書 及 統計를 作成 提出함.

第4條 (統計資料提供의 義務) 農産, 水産 及 林産物을 取扱하는 各 農民, 倉庫業者, 加工業者, 配給關係者 及 其他關係者는 本委員會 及 其 代行機關이 要請하는 生産物에 關한 統計資料를 要求機式에 依하여 本委員會 또는 其 代行機關에 提供함을 要함.

第5條 (他機關)

1. 中央食糧行政處, 食糧營團, 各道知事 各道食糧事務所, 朝鮮農會, 金融組合 及 政府의 各部處, 代行機關 其他 各機關은 本委員會 또는 其 代行機關이 要請하는 資料, 場所 其他 便宜를 提供함을 要함.
2. 政府의 如何한 各部處, 代行機關 其他 各機關도 農産, 水産 及 林産物에 關한 統計를 發表함을 不得함.
但 事전에 本委員會의 承認이 有할 時는 此限에 不在함.

第6條 (統計資料使用의 制限) 本令 第4條規程에 依하여 提供된 統計資料는 此를 統計的 目的以外에 使用함을 不得함.

個々人이 提供한 資料에 依據하여 本委員會에서 作成한 出版物 及 報告書에 對하여는 其 資料를 提供한 具體的 出處를 明示함을 不得함.

本委員會는 其 關係職員以外 如何 한사람에게도 其 統計資料의 檢討를 不得함.

第7條 (細則) 農務部長은 本令施行上 必要하고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細則을 制定함.

本 細則은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하여 官報에 發表될 時에는 法律로서의 效力이 生함.

第8條 (罰則) 本令 及 細則에 依하여 報告書 及 統計資料提供의 依賴를 받은者(自然人, 法人)로써 此를 拒絶하거나 또는 故意로 誤報 또는 虛偽報告할 時는 軍政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斷함.

第9條 (有效期日) 本令은 發布後 10日부터 效力을 生함.

1947年 6月 21日

右建議함 民政長官 安 在 鴻

右認准함 朝鮮軍政長官 아-취·엘·러-취
 美國陸軍少將

○ 金融組合監督權의 移管 (法令第 144 號, 1947. 6. 21)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事項을 審議하여 法令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 1 條 (目的) 本令의 目的은 金融組合에 對한 監督權을 道知事로부터 金融組合聯合會에 移管함에 있음.

第 2 條 (金融組合令及 그 附隨規則의 改正) 左記法令, 命令, 訓令及 그 改正法令中에 있는 「道知事」라 함을 「金融組合聯合會」라 改正 함

(가) 1914 年 5 月 22 日付 制令第 22 號 (金融組合令)

(나) 1929 年 4 月 30 日付 府令第 38 號 (金融組合 業務監督規程)

(다) 1925 年 12 月 5 日付 府訓令第 50 號 (金融組合 理事及 副理事服務及 懲戒規程)

(라) 1927 年 2 月 14 日付 府訓令第 2 號 (金融組合理事及 副理事 身元保證金規程)

(마) 1935 年 8 月 30 日付 制令第 12 號 (殖產契令)

(바) 1935 年 12 月 13 日付 府令第 145 號 (殖產契令施行規則)

第 3 條 (金融組合令의 再 改正) 1914 年 5 月 22 日付 制令第 22 號 金融組合令第 25 條 乃至 第 67 條中에 있는 「監督官廳」이라 함을 「監督機關」이라 改正함.

第 4 條 (制令第 7 號의 改正) 1933 年 8 月 17 日付 制令第 7 號 (朝鮮金融組合聯合會令)를 左와 如히 改正함.

(가) 第 1 條의 改正. 朝鮮金融組合聯合會 (以下 聯合會라 稱함)는 會員에 對하여 資金의 供給, 業務上의 指導, 共同利益增進의 圖謀及 그 業務를 監督제 함을 目的으로 하며 法人으로서 此를 設立함. (聯合會는 主事務所)를 서울市에 置함.

(나) 第 15 條第 1 項中 左와 如히 改正함.

(1) 「聯合會는 左의 業務를 行함」이라 함을 「聯合會는 左의 業務及職能과 任務를 擔當遂行함」이라 改正함.

(2) 7 의 次에 左記事項을 挿入함.

會員의 業務를 監督하며 此에 關하여 法律로써 規定한 措置를 取함.

第 5 條 (有效期日)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10 日後 效力이 生함.

1947 年 6 月 21 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 國陸軍少將
아-취 · 엘 · 러-취

○ 水産製品檢査規則改正 (法令第 147 號, 1947. 7. 30)

朝鮮過渡立法 議院이 本件事項을 審議하여 其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以下の 規程을 施行함

第 1 條 (目的) 本法令은 1943 年 2 月 25 日附 朝鮮總督府令 第 26 號 第 5 條 (水産製品檢査規則) 에 規定된 手數料를 改正함을 目的으로 함.

第 2 條 (改正檢査手數料의 設定) 1943 年 2 月 25 日附 朝鮮總督府令 第 26 號 第 5 條에 規定된 水産製品檢査手數料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一種 乾製水産製品

品 名	數 量	手數料
鱧鱠·전복·海産 (藤子를 包含함) 굴·貝柱	60 ~ 90 kg	5 圓
앵미리·대구·맛·죽합·대합·改良鱧節	60 ~ 90 kg	2 圓 50 錢
오징어·흡합·새조개·새우 (介殼除外)	60 ~ 90 kg	3 圓
멸치	3.75 kg	50 錢
海苔	100 枚	10 錢
介殼蝦 (附새우)	60 ~ 90 kg	2 圓
미역	60 ~ 90 kg	1 圓 50 錢
其他 乾製水産製品	60 ~ 90 kg	1 圓 50 錢

法令第 147 號

第二種 통조림水産製品

전복·계·소라고동	1 打	1 圓
고등어·貝柱·대합·뱀장어·정어리·삼치·새우	1 打	50 錢
其他 통조림水産製品	1 打	50 錢

第三種 鹽藏水産製品

정어리·明太魚·청어·삼치·갈치·공치(鹽魚)·鱧 其他 鹽藏魚	60 ~ 90 kg	1 圓 50 錢
----------------------------------	------------	----------

第四種 肥 料

鱧搾粕·청어搾粕·갈치搾粕·대구蒸粕·도루묵粕· 乾鱧·乾鱧·其他 魚粕 肥料	60 ~ 90 kg	1 圓
--	------------	-----

第五種 海藻

오무가사리·가사리·은행초	47 ~ 78 kg	2 圓 50
櫻草·뿔우무, 磯草·꼬시라기·底布·툇	42 ~ 78 kg	2 圓
寒天	60 kg	10 圓

法令第 148 號

第六種 魚油

鱈油 一六, 五貳 一圓

第七種 魚粉

鱈粕粉 五〇貳 一圓

鱈粉末 一八, 七五貳 五十錢

其他의 魚粉 三〇貳 一圓

第3條(施行期日) 本令은 公布後 10 부터 效力이 生함.

1947 年 7 月 30 日

右建議함.

民政長官 安 在 鴻

右認准함.

軍政長官代理 시·지·헬릭
美國陸軍少將

○ 農業技術教育令(法令第 160 號, 1947. 12. 15)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首題의 件에 關하여 法令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1條(目的) 此 法令의 目的은 農事改良院을 設置하여 農業研究와 農業教育에 關한 行政的 機能과 其 分野를 確定하는 데 있음.

第2條 農事改良院

가. 設立과 構成, 農事改良院을 茲에 設置하되 國立農事教導局, 國立農事試驗場及 本令 第 5 條의 規定에 記載된 農科大學으로써 構成함.

나. 行政職權, 農事改良院은 農事改良委員會의 推薦에 依하여 軍政長官이 任命한 農事改良院 總裁管下에 置함.

다. 任務와 職能, 農事改良院은 左의 職務를 執行함.

1. 國立農事試驗場 本場及 各 支場을 通하여 營農法과 農民生活의 向上及 農產物增産을 爲하여 研究의 運營發展을 爲한 行政

2. 水原 農科大學及 大邱農科大學을 通하여 又は 其他 農科大學及 農業中學校의 協助로써 農產物增産, 農業指導者 養成, 營農法의 改善及 農民生活의 向上을 爲하여 常規的 教育의 運營과 發展을 爲한 行政

3. 國立農事教導局을 통하여 農產物增産과 營農法의 改善及 農民生活의 向上을 爲하여 農村에 農事知識을 普及식힐 教導事業의 運營及 發展을 爲한 行政

第3條 農事改良委員會

가. 設立과 構成, 農事改良委員會를 茲에 設置함. 此 委員會는 左의 六人의 決議權 委員과 四人의 非決議權 委員으로써 構成함. 非決議權 委員은 文敎部長, 文敎部顧問官, 農務部長, 農務部 顧問官, 서울大學總長, 中央經濟委員會, 農業經濟委員會 非決議權 委員은 農事改良院總裁 國立農事試驗場長, 水原農科大學長, 中央農事教導局長, 決議委員은 委員長及 書記長을 選任함.

나. 任務와 職能, 委員會는 左의 職務를 執行함.

1. 農業及 營農法에 關한 研究, 農業教育의 正規化及 農事教導事業에 關한 施策의 樹立
2. 農事改良院及 其 構成機關의 豫算編成及 建議
3. 人事行政規定에 依據하여 農事改良院及 其 構成機關의 幹部級人事任命, 報酬, 停職, 移動及 解職에 關한 事項 但, 農事改良院總裁는 此 限에 不在함. 委員會는 必要에 依하여 以上의 任命, 報酬, 停職及 解職에 關한 權限을 成文으로써 農事改良院總裁에 一任할 수 있음.

第4條 國立農事試驗場及 支場

가. 試驗場의 移管, 下記한 諸試驗場에 關한 任務, 職權, 人件, 物的施設(土地, 建物, 實驗設備及 器具, 事務備品, 家畜產物, 種子, 飼料, 農機具及 材料를 包含함) 刊行未刊行의 科學研究資料, 記錄書類及 1947~48年度의 殘餘豫算等を 包含한 財産을 農務部로부터 農事改良院으로 移管함.

1. 國立農事試驗場 本場 (水原)
2. 花山牧場 (水原)
3. 成獸種畜場 (成獸)
4. 慶州種羊場 (慶州)
5. 開豐種羊場 (開豐)
6. 서울支場 (素砂)
7. 春川支場 (春川)
8. 江陵分場 (江陵)
9. 大邱支場 (大邱)
10. 大田支場 (大田)
11. 裡里支場 (裡里)
12. 淸州支場 (淸州)

- 13. 光州支場 (光州)
- 14. 晉州支場 (晉州)
- 15. 木浦支場 (木浦)

第 5 條 水原農科大學及 大邱農科大學

가. 大學의 移管

水原農科大學(獸醫學科를 除함)及 大邱農科大學에 關한 任務, 職權, 人件, 1947, 1948 會計, 年度殘餘豫算及 物的施設, (土地, 建物, 實驗室, 理化機械, 家畜, 農機具, 飼料와 種子, 農業資材, 事務用具及 家具를 包含) 刊行, 未刊行的 科學資料, 記錄, 出版物 其他 財產의 運營使用及 維持에 關한 管理權을 茲에 文教部及 國立 서울大學으로부터 農事改良院에 移管함.

나. 水原農科大學의 教授에 關한 人事는 國立서울大學事理會의 事前認准을 必要로 함.

다. 教授課程, 入學試驗科目, 卒業必須科目 其 內容에 關하여야는 國立서울大學標準에 依據함.

第 6 條 國立農事教導局

가. 設立과 機構, 國立農業教導局을 茲에 設置함, 國立農事教導局은 中央農事教導局長, 同 副局長, 九區地方農事教導局長, 郡農事教導師로써 構成함.

郡教導師는 該當地方農事教導局長管下에 地方農事教導局長은 中央農事教導局長管下에 中央農事教導局長은 農事改良院總裁管下에 置하여 職務責任의 系統을 形成함.

나. 任務와 職能

國立農事教導局은 農村에 農事に 關한 知識及 技術을 普及하며 農産物을 增産하여 營農及 農民生活의 向上을 圖謀함.

各地方 農事教導局長과 各 郡教導師는 該當道郡行政官廳과 緊密한 連絡을 取할 것이나 生産과 收集에 있어서 強制的 行政任務에 關與치 못하며 또한 政治性을 띤 活動에서는 完全히 離脫할 것임.

다. 農事指導事業의 移管

朝鮮農會, 農業經濟局, 農産局, 水原農科大學, 大邱農科大學, 國立農事試驗場 本場及 支場에서 實施하던 農業指導及 養成에 關한 任務, 職權, 職能, 該當한 人件, 物的施設(土地, 建物, 實驗設備及 器具, 事務備品, 畜産物, 種子, 飼料, 農機具及 材料를 包含함) 刊行未刊行的 科學研究資料, 記錄書類及 1947~48 年度의 殘餘豫算等を 包含한 財產은 茲에 國立農事教導局으로 移管함.

第 7 條(指導施策의 公布) 農事改良院總裁는 農事改良委員會에서 決定된 政策에 依準하여 農事改良院及 其 構成機關의 運營에 關한 施策을 公布할 權限이 賦與됨.

第 8 條 (其他 農科大學及 學校) 本令 第 5 條에 規定치 안은 國民學校, 中學校及 農科大學의 農業教育에 關한 施策은 農事改良院에서 決定한 後道學務局을 通하여 實行함.

第 9 條 本令의 各條項과 抵觸되는 現行諸法律, 法規, 制令, 指令及 規定은 本令과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廢止 又は 修正함.

第 10 條 (施行期日) 本法令은 發布日부터 有效함.

1947 年 11 月 15 日

右建議함. 民政長官 安 在 鴻

右認准함. 朝鮮軍政長官 월리암·에프·피슨
美軍陸軍少將

○ 日本敵產管理人名義登記抹消에 關한件 (法令第 162 號, 1948. 1. 15)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事項을 審議하여 法令을 制定할 時까지 左에 依함.

第 1 條 (目的) 本令은 前 日本敵產管理인이 管理하는 不動產에 對한 所有權의 所屬을 明白히 하며 如此한 所有權登記를 訂正하기 爲한 簡易手續을 設定함을 目的으로 함.

第 2 條 (日本敵產管理인의 管理財產) 1941 年 12 月 23 日附 日本 法律第 99 號 (敵產管理法) 에 依하여 美國人, 聯合國人及 朝鮮서 創立된 法人所有 不動產이 管理의 目的으로 日本敵產管理인의 名義로 現在登記되어 있는 것은 茲에 此를 全部抹消함.

第 3 條 (登記變更申請) 美國人, 聯合國人及 朝鮮서 創立된 法人은 當該所有不動產이 管理의 目的으로 日本敵產管理인의 名義로 登記되어 있는 것에 對하여 所管登記官吏에게 確實함을 宣誓하고 左記事項을 記入한 申請書를 提出하여 當該不動產 登記簿에서 當該登記를 抹消함을 得함.

1. 申請者姓名
2. 申請者 所有不動產이며 現在 日本敵產管理人 名義로 登記되어 있는 不動產의 表示及其 所在場所
3. 申請者가 本令의 條項에 依하여 日本敵產管理인의 名義로 되어 있는 登記의 抹消를 申請하는 說明

第 4 條 (施行日) 本令은 公布後 10 日後에 效力이 發生함.

1948 年 1 月 15 日

第 6 條 (가) 水産食料品營業施設이 規定된 要件에 該當치 않을 때는 道保健厚生局은 衛生免許의 發付를 拒否 又は 發付된 免許를 停止할 수 있음. 但 經營者에게 事전에 通告하여 陳述의 機會를 付與함을 要함. 免許의 拒否 又は 停止는 此를 書面으로써 出願人에게 通知함. 出願人은 道知事에게 異議를 申入할 수 있음. 本條의 停止處分 期間은 30 日을 超過치 못함.
(나) 既往中央政府農務部에서 附與한 水産食料品 營業施設의 衛生免許을 拒否 又は 停止할 때는 其 處分을 農務部에 通知함.

第 7 條 (가) 水産食料品 營業施設의 經營人은 그 建物, 設備及 商品을 業務時間中恒時 道保健厚生局 檢査官의 檢査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둠을 要함. 檢査官은 定期的으로 檢査를 施行하고, 保健厚生部에서 制定한 樣式에 依하여 法規의 遵守與否를 證明함. 그 樣式의 寫本一通은 道保健厚生局에 提出하고 1 通은 水産食料品 營業施設經營者가 그 施設內의 잘 보이는 곳에 恒常揭示하여둠을 要함.
(나) 水産食料品 營業施設經營人은 檢査官이 要求할 때는 見本の 領收證과 引換하여 水産食料品の 見本을 提供함을 要함.

第 8 條 道保健厚生局檢査官은 法規에 規定된 衛生規格에 不適合한 生鮮은 此를 非衛生品으로 宣告하고 此의 破壞를 命할 수 있음. 檢査官은 이 非衛生品宣告를 한 때는 直時道保健厚生局에 此를 報告함을 要함.

第 9 條 罰 則

(가) 本令條項 又は 本令에 依據하여 發布한 規則에 違反한 者는 裁所의 判決에 依하여 其所定刑에 處함.
(나) 本令 又は 本令에 依據하여 發布한 規則違反으로 裁判所의 有罪判決이 있는 때는 道保健厚生局은 本令에 依하여 發行된 衛生免許를 取消 又は 適當한 期間中 停止할 수 있음. 本令第 6 條의 通告及 異議申入에 關한 規定은 本項의 取消 又は 停止에 此를 適用함.
(다) 本令第 8 條에 規定한 處分以外에 道保健厚生局은 本令에 依據하여 發布된 規則에 規定한 衛生規格에 不適合한 모든 水産食料加工品을 押收할 수 있음. 裁判所의 審判官이 그와 같은 食料品을 所持한 理由로 有罪判決을 한 때는 法定의 手續에 依하여 此를 沒收함. 沒收及 그 處分에 關한 記錄은 裁判所記錄의 一部로서 保存함.

第 10 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부터 10 日後에 效力이 發生함.

1948 年 1 月 23 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美國陸軍少將 朝鮮軍政長官	월리암·에프·턴

○ 朝鮮農會의 機構改革 (法律第 165 號, 1948. 1. 31)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首題의 件에 關하여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 1 條 本令은 朝鮮農會(以下 農會라 稱함) 機構의 行政的 改革을 目的으로 함.

第 2 條 道知事, 道農務局長, 同次長, 郡守, 邑長, 面長 其他 道郡邑面의 官公吏로서 農會의 役員을 兼務하고 있는 者는 本令의 規定에 依하여 後任者가 任命이 되면 農會의 役員으로서의 職務는 免除됨. 當該官公吏는 그 通知를 受한 時는 指定된 後任者에 그 所屬의 記錄, 會計, 現金, 備品, 土地, 建物 其他 有體物을 引繼함을 要함.

第 3 條 朝鮮農會는 各 道農會長을 任命함. 道農會長은 朝鮮農會의 事前承認을 得하여 郡·邑及面 農會의 事務擔當者를 任免함. 朝鮮農會는 道及 그 下位農會의 役員及 職員을 解任할 權限을 有함.

第 4 條 農會事務의 系統은 朝鮮農會로부터 道農會, 道農會로부터 郡, 邑, 面 農會로 直接農會 系統만을 經由함.

第 5 條 道農務局及 其 職員은 道農務局과 農會間의 牴觸되는 施策과 行動을 避하기 爲하여 道及 그 下位農會의 役員及職員과 相互間 緊密한 連絡을 維持함.

第 6 條 現在 專屬으로 農會事務에 從事하고 있는 道, 郡, 邑及面의 職員은 俸給의 出處如何를 不問하고 그 職責의 遂行을 繼續하며 그 農會長에 對하여 그 職務를 迅速히 能率있게 遂行할 責任을 有함.

第 7 條 本令의 「道」라 함은 서울市를 包含함.

第 8 條 本令에 牴觸되는 法律, 法令, 命令, 指令及 規程, 指示는 本令과 牴觸되는 範圍內에서 效力를 失함.

第 9 條 本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1948 年 1 月 31 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월리암·에프·윌
美國陸軍少將

○ 法令第 114 號(道機構의 改革)의 改正(法令第 191 號, 1948. 5. 12)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首題의 件에 關하여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 1 條 (改正) 1946 年 10 月 23 日附 法令第 114 號 (道機構의 改革)를 茲에 左記와 如히 改正함.

가. 第 14 條, 가. 3.

3. 豫防醫學及保健統計

나. 第, 나. 10.

10. 出生, 死亡, 死産, 婚姻 及 離婚에 關한 登錄의 監督

다. 11. 人口動態統計 及 疾病統計의 蒐集, 作成, 分析 及 解釋

第 2 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後 10 日부터 效力이 生함.

1948 年 2 月 12 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美國陸軍少將 윌리엄 · 에프 · 띵
 朝鮮軍政長官

○ 食糧及物資配給制度違反行爲의 處罰 (法令第 168 號, 1948. 2. 21)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에 關하여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 1 條 本令은 食糧 及 物資의 配給制度, 違反行爲에 對하여 刑罰을 規定함으로써 目的함.

第 2 條 食糧 又は 物資의 配給은 道 及 市에서 樹立한 制度에 依하여 關係機關이 此를 施行함. 但 食糧의 配給에 關하여는 中央政府에서 指示한 統制食糧配給要領에 順應함을 要함.

第 3 條 食糧 又は 物資配給票의 發行은 1 人 又は 1 世帶 1 票에 限함.

第 4 條 食糧 又は 物資의 配給은 朝鮮寄留令에 依하여 配給을 受할 者의 寄留手續完了後가 안이면 此를 發行하지 못함. 配給票의 發付을 受한 地域에서 他地域으로 轉住한 時는 10 日以內에 配給票의 修正手續을 함을 票함. 但 配給票의 必要하지 않은 地域으로 轉任한 時 又は 配給票의 效力이 消失된 時는 遲滯없이 關係當局에 配給票를 還付함을 要함.

第 5 條 配給票의 發付를 受한 者 1 個月以上 旅行 其他 事由로 因하여 그 居住地域에 있지 않은 時는 其 期間中 配給의 中止를 配給票發付當局에 届出함을 要함.

第 6 條 食糧 又は 物資의 配給票 發付申請에는 必히 그 居住地域의 洞(里)會長, 統長(區長)及 班長의 居住認證을 要함.

配給票 發行申請에 關한 世帶內人口數에 不正한 記載가 有한 時는 그 居住를 認定한 者 此의 責任을 負擔함.

第7條 洞(里)會長 統長(區長) 及 班長은 關係地域內 住民의 動態에 注意하여 每年 1月 1日, 4月 1日, 7月 1日 及 10月 1日 現在의 關係地域內 住民의 世帶數 及 住民數를 調査하여 當月 15日까지 府, 區廳, 邑及 面의 長에게 報告함을 要함. 但, 關係地域內의 世帶數 及 世帶內 人口數에 不正한 事實이 있음을 發見한 時는 遲滯없이 報告함을 要함.

第8條 가. 府, 區廳, 邑 及 面長은 每年 4月 1日 及 10月 1日 現在의 食糧 또는 物資의 配給을 受하는 住民의 世帶數 及 世帶內의 人口數를 調査하여 道稅戶別 稅賦課戶數 及 戶口 調査規定에 依한 戶口調査簿와 比照하여 그 正確을 期함을 要함.

나. 本條에 規定된 義務를 怠慢히 한者, 又は 故意의 行動 又は 怠慢으로 因하여 本條의 範圍內의 事實을 虛偽傳達케 한 者는 1年以下의 禁錮 又は 5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9條 左記各號의 1에 該當한 者는 3個月以上 10年以下의 懲役 又は 5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但 犯情에 依하여는 此를 併科함을 得함.

1. 配給票를 不正한 手段으로 取得 又は 所持한 時
2. 配給票를 不正히 行使하며 又は 不正한 配給票를 行使한 時
3. 不正한 配給票를 發行하며 又は 此를 正當한 配給票로 取扱한 時
4. 食糧 又は 配給物資를 不正히 配給 又は 配當하며 不正히 此의 配給 又は 配當을 受한 時
5. 食糧 又は 配給物資의 配給 又は 配當에 關하여 賄賂를 受授請求, 提供 又は 約束한者
6. 前 各號의 罪의 未遂者

第10條 第6條의 規定한 居住認證者 故意 又は 過失(怠慢)로 因하여 同條 第2號에 規定한 事實을 發生케 한 時는 1年以下의 禁錮 又は 2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故意 又は 過失로 因하여 第7條의 依한 報告書의 不正事實이 有한 時亦同함.

第11條 第4條 又は 第5條에 違反한 者는 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12條 配給票, 配給, 配當에 關한 文書 及 配給, 配當에 關한 事實에 對하여 關係當局에 調査에 應치 않은 者는 1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13條 本令에 「配給票」라 함은 食糧 又は 物資配給當局이 住民에게 發付하는 食糧 又は 物資의 配給을 受케하는 書面, 切手 又は 其他 證憑物을 指稱함.

第14條 食糧 又は 物資受配給에 關한 違反은 그 行爲者와 行爲者에 所屬世帶主를 共히 處罰함. 但 行爲當時 그 世帶主 此를 關知하지 않은 時는 此 限에 있지 안이함.

第15條 從前에 法律, 命令 及 其他 法規로서 本令과 抵觸되는 部分은 그 範圍內에서 廢止됨.

附 則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發生함.

1948 年 2 月 21 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威廉·에프·뎀
美國陸軍少將

○ 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 (法令第 173 號, 1948. 3. 22)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事項을 審議하여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 1 條 (目的) 本令은 土地를 所有치 못한 小作農民에게 前 日本人所有의 農地를 放賣하여 小作農民으로 하여금 自立農地所有者가 되도록 協助하며 土地所有權을 廣範圍로 普及시켜 朝鮮의 農業을 發達시킴으로써 目的함.

第 2 條 (中央土地行政處의 創設) 茲에 中央土地行政處를 創設함 (以下 行政處라 略稱함) 行政處는 移管받은 土地에 對한 處分權이 有하며 本令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規程, 公布 其他 職務를 遂行함 所要經費는 軍政長官의 認准한 豫算內에서 賣買實施中에 收入되는 資金으로 支出함.

第 3 條 理事 及 處長의 任命

가. 本 行政處의 理事는 10 人으로 하되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理事會는 本令의 目的에 一致하도록 行政處에 對한 政策을 樹立하되 軍政長官이 認准한 規程에 依하여 處의 運營을 指導함.

나. 處長과 副處長은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處長副處長은 理事會에서 決定한 政策에 依하여 處의 行政을 指揮監督함.

第 4 條 行政處의 職務와 責任

가. 行政處로 歸屬된 農地를 處分하며 處分이 完了될 때까지, 此를 行政處에서 管理함.

行政處는 行政處에 歸屬된 其他 財産도 此를 處分할 權限이 有함.

나. 農地放賣에 關한 順序를 有效하게 實現하는데 關聯되는되는 諸問題를 充分히 檢討하며 또한 이를 軍政長官에게 建議함.

다. 軍政長官이 認准한 規程에 依하여 長期代金 支拂로서 放賣되는 土地에 對하여는 適當한 農業信用貸附制度設立될 때까지 農業生産, 農家必需品, 土地의 修理, 灌溉開拓, 改良

農產品의 賣買와 管理 또는 其他 目的을 爲하여 農民 及 農民團體에게 必要한 資金을 融通함.

라. 所屬行政機關의 設置監督, 及 其 職務의 委任

마. 本法令 實施에 依하여, 行政處로 歸屬된 權利와 義務에서 所産하는 收入의 聚集

바. 軍政長官이 公布한 法規에 依하여 放賣된 土地와 其他 財産放賣收入의 會計

사. 政府의 他機關과 協助하여 購買者의 農事經營을 指導監督하므로 農地代金支拂의 完了와 契約完成을 保障함.

아. 本法令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其他의 一切業務

第 5 條 行政處에 對한 權利移轉

가. 1945 年 12 月 6 日附 法令第 23 號(朝鮮內 所在日 本人財産權取得에 關한 件)에 依하여 所有權 又は 管理權이 軍政廳에 歸屬된 모든 農地의 權利는 登記記錄의 分類에 依하여 行政處에 移管함. 學理, 教育, 實驗等用으로 今後 政府에 歸屬되는 農地는 前項의 權利移管될 實地로부터 此를 除外함. 特定이 土地가 行政處에 歸屬된 與否에 關하여 問題가 發生될 때에는 此를 軍政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裁決을 請할 것.

나. 土地行政處에 移管된 土地와 關聯性이 있는 農事 及 土地管理業務를 掌理하는 모든 政府機關의 聯責과 資産 及 管理財産은 如斯한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行政處에 必要한 範圍內에서 軍政長官의 認可를 얻어 此를 行政處로 移管함.

다. 行政處 職員은 軍政長官이 指定한 時間부터 人事行政規程을 此에 適用함.

第 6 條 田畓의 分配

가. 本令에 依하여 行政處로부터 放賣되는 田畓은 可能한 退한 經濟單位로서 公平하게 分配한 것임.

1948 年 3 月 1 日 現在 또는 行政處로부터 土地買收當時에 所有한 田畓이나 小作하는 田畓의 合計가 2 町步를 超過하게 되는 農民에게는 土地를 더 放賣하지 아니함.

나. 左記와 如한 順位에 依하여 農地購買者에게 優先權을 供與함.

(1) 放賣할 土地를 小作하는 現小作人이 自己의 小作地를 充分히 耕作하며 또 小作條件을 遵守한 時는 其 農地를 買得하는 데 最優先權을 供與함.

(2) 前項以外의 農夫, 農業勞働者 38 線을 越境한 災民農夫, 海外로부터 歸國한 農民으로서 農地附近에 居住하며 過去에 農事經驗을 가진 者에게 次位의 優先權을 供與함.

本項에 指定된 農民으로서 10 年來 政府에서 認定한 灌溉와 開拓으로 因하여 土地所有權이 關失된 者는 此에 對하여 特別 考慮함.

다. 行政處에서 現小作人에게 對하여 土地放賣와 其 價格을 發表한 後 30 日以內에 承諾書

를 提出치 아니하면 他人에게 放賣하되 現小作人에게는, 그가 耕作한 當年秋收의 權利만을 認定함.

第 7 條 (土地賣買 一覽表) 行政處는 每 3 個月마다, 土地所在地의 一般公衆에서 賣買된 農地와 其 買得者 一覽表를 公示함.

第 8 條 次位優先賣買

가. 現 小作人에게 放賣되지 않는 土地에 關하여는, 行政處에서 放賣할 農地目錄과 基地記錄과 賣買條件等에 對하여 此을 公示發表함.

右記公示中에는 次位優先權者들이 願買申請을 할 수 있는 期間을 發表함.

나. 行政處는 次位優先權의 願買者中에서 購買權者를 擇定하기 爲하여 行政處를 援助함에 必要한 諮問委員會를 各 所屬官署內에 設立케 함, 各 諮問委員會의 職能과 構成에 關하여는 行政處에서 規定하는 規程에 依함.

面 又は 洞里에 있는 各 諮問委員會는 半數以上の 小作人이나 또는 小作地가 其 農耕地의 半以上을 占하는 農民으로 構成됨.

다. 土地買得權에 있어서 次位優先權을 가진者로서, 行政處에서 購買權을 얻은 다른 次位優先權者보다 優先하기를 主張하는 者는 直接行政處長에게 訴願할 權利를 有함.

第 9 條 (價格) 本令의 規定에 依하여 田畓을 買得하는 農夫는 其 買得하는 土地의 主產物의 1 年間生産量의 3 倍에 該當하는 量을 現物로서 支拂함, 1 年間の 生産量은 其 土地의 生産力 標準과 既往에 있어서의 生産實績에 依하여 此를 決定함.

第 10 條 (田畓代金支拂) 田畓을 買得하는 者는 買得者 及 行政處間의 賣買契約書에 約定된 대로 主產物의 1 年間 生産量의 百分之二十式을 15 年間 現物로 支拂함. 但, 購買者는 支拂完了期間前일지라도 支拂을 完了할 수 있으며 또, 不可抗力의 境遇라고 認定될 때에는 行政處에서 決定하는데 따라 年賦期間이 延長될 수 있음.

第 11 條 (其他 財産이 放賣) 行政處는 軍政長官의 認准을 得하여 田畓以外의 財産에 對하여 또 其 放賣에 關한 方針, 計劃, 手續 及 放賣條件等을 設定하는 規程을 發表함.

第 12 條 所有權歸屬에 關하여 紛爭이 있는 土地

가. 其 資産이나 株式의 所持分이 1945 年 12 月 6 日 附法令 第 33 號下에 軍政廳에 歸屬되지 아니한 非日本人法人이나 또는 行政處에 歸屬하는 土地에 對하여, 所有權을 主張하는 非日本人 自然人은 1948 年 7 月 1 日以前의 紛爭土地에 대하여 管理權을 가진 地方審理院이 行政處를 相對하여 訴訟을 提起할 수 있음. 그 土地所有權이 原告에게 있다고 判決하는 境遇에 行政處에서 아직 其 土地를 賣渡하지 아니하였으면 地方審理院은 其 土地所有權을 原告에게 搜與할 것이며 其 土地가 이미 賣渡되었다면 土地所有權代身에 金

錢으로써 此를 補償함.

그 土地가 行政處로부터 이미 放賣되었을 때에는 地方審理院의 判決은 如何한 境遇에 있어서라도 其 土地賣買의 無效를 宣言하지 못함.

左記土地所有權歸屬에 關하여 이미 財産訴訟委員會에 訴請中이라 할지라도 上記의 말한 바 地方審理院에 對하여 다시 訴訟을 提起함도 無妨함.

나. 行政處는 所有權에 關하여 紛爭이 있는 土地는 放賣하지 않도록 盡力할 것이나 一旦 行政處에서 放賣된 土地는 第3者의 그에 對한 所有權主張으로 因하여 其 放賣가 無效로 되지 아니함.

第13條 處分行爲의 禁止

가. 行政處에서 買得한 田畝에 對하여는 本法令이나 또는 他 法律에 의하여 認定된 境遇를 除하고는 土地代金의 全額을 支拂과 買得時부터 10年經過, 兩者中 長期間을 經過하기 前에는 左記와 같은 處分行爲를 禁止함.

- (1) 自由賣買, 寄贈이나 또는 其他의 處分行爲
- (2) 小作契約 또는 其他의 貸貸借契約 及 如斯한 契約을 目的하는 一切行爲
- (3) 抵當權設定, 地上權設定 또는 先取得權의 設定

나. 特殊不可避한 理由에 依하여 左記의 處分行爲를 要할 境遇에는 行政處의 承認을 要함.

- (1) 交換, 田畝의 耕地整理 及 合併 또는 地目變更
- (2) 病故, 學校入學 또는 公務就任等の 境遇에 所有田畝의 管理를 他人에게 委托하는 行爲

第14條 所有權移轉의 特別規定

가. 本令 第13條 가. 項의 制限의 適用을 받는 期限中에 本令에 依한 田畝買得人이 死亡하면 其 相續人이나 또는 遺贈者는 그 自身이 耕作한다는 條件下에서 其 土地를 引繼할 수 있음.

나. 本令에 依한 土地買受者 又は 그 契約을 繼承한 者가 農地耕作을 繼續할 수 없거나 또는 賣買契約의 存續을 不願하는 境遇에는 其 土地는 一旦 行政處로 回收하고 所有者는 本令 第16條의 規定에 依하여 補償하거나 또는 行政處의 承認을 得하여 其子 또는 女婿에게 權利를 移管할 수 있으되 其 權利取得人이 其 農地를 取得함으로 因하여 總耕地面積이 2町步를 超過하지 않을 것과 新得人이 抵當契約繼承者인 同時 其 土地를 耕作할 것을 條件으로 함.

第15條(借金으로 因한 差押의 制限) 本令 第13條에서 規定된「處分行爲의 禁止」期間中에는 行政處에서 買得한 農地는 左記 特定한 境遇以外에는 如何할 償還者도 此를 差押할 수

없음.

器具家畜肥料 農家必需品은 業務로 因하여 差押할 수 없음.

土地所有者가 取得할 收穫物을 種子, 種苗肥料器具家畜 또는 其他 農事用 必需品을 爲하여 認定받은 金融機關에서 債權을 認定하는 때에는 擔保物로 使用할 수 있음.

次期收穫期까지의 農耕에 必要한 農產物은 判決確定業務를 爲하여 奪去하거나 또는 差押할 수 없음.

第 16 條 (抵當權回受權 取消) 土地買得人이, 行政處에 對하여, 土地代價의 支拂 又は 其他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또는 稅金, 水利組合費를 滯納하는 境遇에는, 行政處는 抵當物回受權을 取消하거나 또는 當事者間에 認定된 其他의 措處를 取할 수 있음.

行政處는 滯納中인 稅金이나 水利組合費를 代拂하고 其 金額을 擔保된 土地元金에 加入할 수 있음. 買得人의 前 各項支拂不能이 不可抗力에 基因한 때에 所有者에게서 債務金을 聚集하기 爲한 모든 手段을 다 할때까지는 抵當物回受權取消을 申請치 못함. 行政處에서 抵當物回受權을 取消하는 境遇에는, 行政處는 土地所有者가 既往 現物로 支拂한 農產物代價의 100 分の 75 를 返還할 것이나 行政處에서 抵當物回受權을 取消하는데 要한 費用, 行政處에 對한 買得人의 債金, 稅金 及 重要한 水利組合費等을 控除함.

拙劣한 農耕이나 怠慢 又は 普通以上の 地方消耗에 基因한 收穫減損減損도 土地行政處로부터 返還될 金額中으로부터 控除함. 買得人이 行政處로부터 土地를 買得한 以後에는 改良을 爲한 費用을 消耗되지 않는 部分에 限하여 此를 評價하여 各 別支拂함.

第 17 條 (土地再賣) 行政處에서 一旦 放賣되었다가 自發的이나 또는 抵當物回收權의 取消로 因하여 다시 行政處로 返還된 土地는 本令의 條項에 依하여 行政處로부터 再賣함.

第 18 條 (費用의 清算) 土地所有權이 移轉된 後에 支拂期限이 到達한 水利組合費를 除外하고 行政處에서 本令에 依하여 放賣하는 全土地는 行政處에 對한 其 土地賣買代金抵當以外에 其他 債務나 費用을 附滯치 아니함.

所有權移轉 以前에 債務나 費用을 清算치 못한 境遇에는, 行政處는 可能한 限 即時 此를 清算하여야 함.

行政處以外에는 水利組合費의 滯納으로 因하여 抵當物回受權을 取消할 權限을 갖지못함.

第 19 條 (賣買登記)

가. 行政處에서 授與된 土地權利證書는 設或當該土地가 登記記錄上, 行政處名義로 登記되어 있지 않는 境遇라 할지라도 此를 登記所에 登記함.

나. 土地行政處로부터 買得한 土地의 登記는 如斯한 土地가, 本令第 13 條의 制限을 맞는 事實의 證明이 됨.

○ 食糧收集計劃違反에 關한 罰則 (法令 第 198 號, 1948. 5. 26)

本令에 關하여 法律을 制定할 때 까지 左에 依함.

第 1 條 (目的) 本令은 食糧收集計劃違反에 關한 罰則을 規定함을 目的함.

第 2 條 (定義)

가. 本令에 있어 食糧이라 함은 夏穀, 米穀 其他 食糧等을 指稱함.

나. 本令에 있어 食糧收集計劃이라 함은 食糧收集에 關하여 正式으로 公布된 中央政府 或은 그 機關의 計劃을 意味함.

第 3 條 食糧收集期間中 食糧을 不法貯藏, 隱匿 或은 惡質的으로 供出에 不應하는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6 個月以下の 懲役 又は 50,000 圓以下の 罰金, 境遇에 依하여는 그를 併科하며 그 食糧을 沒收함.

第 4 條 食糧收集期間中 政府의 承認 又は 許可없이 食糧收集計劃에 關한 食糧을 賣買 又は 그 申込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6 個月以下の 懲役 又は 100,000 圓以下の 罰金, 境遇에 依하여는 그를 併科하며 그 食糧은 沒收함.

第 5 條 食糧收集計劃에 包含된 食糧의 收納, 收集, 檢査, 割當量의 正確한 配定, 貯藏, 等別, 保管, 運搬, 加工, 出荷證發行, 正確한 記錄及 計算書의 保管, 代金支拂 又は 報告等의 不履行 又は 拒否 其他 此에 關한 公務上의 非行, 義務懈怠를 한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6 個月以下の 懲役に 處함.

第 6 條 食糧收集計劃에 關한 法規를 潛脫 或은 回避하는 行爲를 한 者及 그 未遂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6 個月以下の 懲役 又は 50,000 圓以下の 罰金, 境遇에 依하여는 그를 併科함.

第 7 條 食糧收集期間中 政府職員의 食糧生産高 調査를 妨害하는 者 그 未遂者 虛偽宣傳 又は 脅迫으로 農民의 食糧供出意識을 減殺케 하는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3 個月以下の 懲役 又は 50,000 圓以下の 罰金, 境遇에 依하여는 그를 併科함.

第 8 條 本令에 揭記된 以外의 方法으로 食糧收集計劃에 關한 法規에 違反한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3 個月以下の 懲役 又は 50,000 圓以下の 罰金, 境遇에 依하여는 그를 併科함.

第 9 條 刑法 其他의 法規에 規定된 刑罰이 本令에 規定된 刑罰보다 重한 境遇에는 그 法規에 依함.

第 10 條 1946 年 5 月 28 日 附法令 第 90 號 (經濟統制令) 第 8 條 規定은 本令의 規定에 依하여 制限이 됨.

第 11 條 本令은 公布後 10 日부터 施行함.

西紀 1948年5月26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 在 鴻

右 確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다블류·에프·틴

○ 地稅令等の改正 (法令 第202號, 1948. 6. 21)

首題의 件에 關하여 立法的 審議와 法律制定이 있을 때까지 左에 依함

第1條(目的) 本 令은 道·地方官廳 및 學校等の 歲入調整, 朝鮮農會에 納入되는 地稅割 規定의 廢止, 小地主에 對한 免稅及 朝鮮內 「인플레이션」의 抑壓策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第2條(法令 第128號의 改正) 1946年12月31日附 法令第128號第2條(地稅及 手數料의 改正)을 左와 같이 改正함.

第2條 地稅는 1940年12月4日附 制令第37號(朝鮮土地賃貸價格調査令)에 依據하여' 決定한 賃貸價格의 50倍에 該當한 價格의, 1943年3月31日附 制令第6號(朝鮮地稅令)로 서 設定된 100分之6의 率로써 賦課함.

第3條(制令 第6號의 改正) 1943年3月31日附 制令第6號(朝鮮地稅令)中 第60, 61及 87條를 茲에 廢止함.

第4條(府令 第3號의 改正) 「地稅에 對한 25%以內의 地稅割賦課를 認定한」 1926年1月25日附 府令第3號(朝鮮農會令 施行規則) 第24條를 茲에 廢止함.

第5條(免稅) 府, 邑, 又は 面의 地稅 年總額이 25圓未滿의 納稅者에 對하여는 府, 邑 又は 面의 地稅를 免除함.

第6條(地稅의 配付) 本 令에 依하여 徵收한 地稅는 左와 如히 配付함.

(가) 各府, 邑 又は 面에서 徵收한 國稅인 地稅의 9割은 學校의 認定된 用途를 爲하여 財務部長이 規定한 規程에 依據하여 年4半期로 茲를 支拂함.

(나) 地稅의 1割은 中央廳에서 此를 保留함.

第7條 土地 質權 又は 地上權을 賣渡 又は 移轉할 境遇의 負擔 土地, 土地臺帳에 登錄된 質權 又は 期間 20年을 超過하는 地上權으로서 讓渡時에 納期가 到來한 地稅及 過怠金을 完納치 아니한 채 讓受人에게 賣渡 又は 移轉되었을 境遇에는 未納의 稅, 罰金 及 過怠金의 納付를 爲하여 그 土地 又は 權利를 讓受人으로부터 差押하여 此를 公約할 수 있음. 1897年3月26日附 法律第21號 國稅徵收法에 揭記한手續은此를本條에適用함.

第8條(抵觸되는 法令等の 廢止) 本 令의 規定에 抵觸되는 一切의 法律, 法令, 命令, 規

程, 指令及 訓令 又は 此 一部는 그 牴觸되는 範圍에서 此를 茲에 廢止함.

第9條(有效日字) 本 令은 1948年1月1日부터 有效함.

1948年6月21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다블유·에프·윌

○ 法令 173 號(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 第 12 條의 改正(法令 第 209 號, 1948.7.3)

本件 事項을 審議하여 法律을 制定할 時까지 左에 依함.

第1條(目的) 本 令은 1948年3月22日附 法令 第 173 條(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 第 12 號를 改正함을 目的함.

第2條(改正) 法令 第 173 號第 12 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 12 條 所有權歸屬에 關하여 紛爭있는 土地訴訟磨劬 1948年8月31日

(가) 그 資産 또는 株式이 1945年12月6日附 法令 第 33 號에 依하여 軍政廳에 歸屬되지 아니한 日本人 아닌 法人 또 自然人은 行政處에 移管된 土地의 所有權을 主張하여 1948年8月31日까지 紛爭土地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또는 支院에게 行政處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할 수 있음. 그 法院은 그 土地와 同一한 取引에 因하여 生한 貸, 家屋 又は 農業用 建造物에 對한 權利로서 그 土地에 附屬하며 軍政廳에 歸屬된 不動產에 對하여도 管轄權을 有함.

그 附屬貸, 家屋 又は 農業用 建造物에 關하여 土地行政處는 管財處를 代理하며 管財處는 訴訟의 當事者가 되지 아니함.

그 不動產이 이미 賣渡된 境遇에는 法院은 不動產所有權代身金錢賠償을 命함.

그 不動產이 行政處 又は 管財處로부터 이미 處分된 境遇에도 法院은 그 不動產賣買를 無效로 하는 判決을 하지 못함.

(나) 1948年8月31日을 經過한 後는 前項에 記載한 者는 訴訟을 提起하지 못함. 本令에 依하여 訴訟金을 提起할 수 있는 事件에 對하여는 本令 施行以後 財産訴請委員會에 訴請을 하지 못함.

(다) 訴請委員會의 訴請한 事件에 對하여는 土地行政處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할 수 없음 財産訴請委員會는 本令 施行以前에 受理한 (가)項 記載에 不動產에 對한 訴請事件을 管轄法院에 送致하여야 하며 그 境遇에는 土地行政處가 被告가 됨.

그 送致는 訴請人이 訴訟을 提起한 效力을 有함.

그 境遇에는 訴狀에 印紙를 貼用함은 必要치 아니함.

送致는 可及的 速히함을 要하나 1948年8月31日以內에 항은 必要치 아니함.

法院이 送致를 受한 境遇에는 訴請書의 寫本을 當事者에게 送達함은 必要치 아니하나 訴訟이 繫屬되었다는 事實을 當事者及 土地行政處地方廳에 通知함. 그 以後는 法院은 法令에 規定한 以外는 普通事件의 例에 依하여 處理함.

(라) 萬若 同一事件에 對하여 既往訴請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原告는 訴狀에 左記事項을 記載함.

- (1) 財産訴請委員會에 訴請한 事實이 없다는 事實
- (2) 그 土地에 接近한 土地行政處地方廳의 所在地
- (3) 證據書類가 있는 境遇에는 그 謄本
- (4) 請求의 原因의 概要

法院은 訴狀을 서울中央土地行政處에 送達하며 訴狀과 證據書類가 있는 境遇에는 그 謄本을 左의 土地行政處地方廳에 送達함.

서울, 京畿道, 江原道에 있는 土地	서울地方廳
忠淸北道	忠淸南道同 大田同 //
全羅北道	同 裡里同 //
全羅南道	同 本浦同 //
慶尙南道	同 釜山同 //
慶尙北道	同 大邱同 //
濟州道	同 서울本處

(마) 本條 (다) 及 (라)項의 境遇에는 土地行政處地方廳에 訴狀, 附屬書類 又は 繫屬通知가 送達된 後 30日을 經過하지 아니하면 口頭辯論을 열지못함. 土地行政處는 그 期間內 又は 口頭辯論에서 下의 1의 答辯을 함.

1. 防禦할 意思가 없다는 表示
2. 防禦한 意思의 表示

答辯에 時日을 要하는 境遇에 土地行政處가 理由를 가지어 延期申請을 한 境遇에는 法院은 事實調查完了에 必要한 時日을 附與함.

(바) 本條 (가)項에 記載한 行政處를 相對로 하는 不動產所有權訴訟에 있어서 行政處가 出頭치 아니하는 境遇 又は 防禦의 意思가 없는 境遇라도 原告의 陳述과 그 證據를 審理함은 法院의 義務이며 法院은 行政處가 한 自白에 拘束받지 않고 事實을 調査한 結果 原告의 所有라고 認定한 境遇 以外에는 原告勝訴의 判決을 하지 못함.

(사) 1948年8月31日 以前에 行政處 敗訴의 闕席判決은 行政處의 申請에 依하여 再審함 但 그 申請은 1948年10月31日以內에 함을 要함.

(아) 財産訴請委員會에 訴請하기 爲하여 支出한 書類作成費用은 訴請費用에 包含되지 아니함.

(재) 그 事件이 既往財産訴請委員會에 訴請되었든 境遇에는 法院은 財産訴請委員會에게 訴請에 關한 書類를 法院에 送附하도록 要求할 수 있음.

그 書類에 따른 不動産이 包含된 境遇에는 法院은 그 書類를 使用後 財産訴請委員會에 返還함.

(재) 行政處는 所有權에 關하여 紛爭이 있는 土地는 放賣하지 않도록 相當한 努力을 할 것이나 一旦 行政處에서한 放賣는 그 土地의 所有權을 主張하는 第三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음.

第3條(有效日)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함.

1948年7月3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다블류·에프·웁

○ 秋穀收集令(法令 第212號, 1948. 7. 29)

首題의 件에 關하여 立法的 審議와 法律制定이 있을 때까지 左에 依함.

第1條(目的) 法令은 1948年부터 1949年에 亶한 秋穀期間中의 秋穀收集에 關하여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本令에 秋穀이라 함은 大豆, 小豆, 粟, 蜀黍, 玉蜀黍, 蕎麥等을 包含한 米穀 及其他 秋穀을 指稱함.

第2條(範圍) 政府統制機關을 通하여 北韓 38度 以南에 居住하는 朝鮮人民에게 配給할 目的으로 秋穀을 收集(政府가 農家로부터 買上)함을 目標로 함. 中央食糧行政處는 收集計劃의 綜合統轄 及 遂行의 責任이 有함.

道知事는 各所轄道內에서 本計劃을 完遂할 責任이 有함.

朝鮮農會, 中央土地行政處, 朝鮮生活品管理院, 各道食糧事務所 及 朝鮮政府所屬의 各行政機關代行機關事業機關等은 本 收集計劃遂行에 對하여 援助協力함을 要함.

第3條(一般職務 及 機能) 左記 一般職務 及 機能을 各指定機關에 付與함

가. 中央食糧行政處

中央食糧行政處는

1. 農務部와 協議하여 各道別 秋穀收集割當量을 配定함.
2. 米穀道外搬出割當量을 配定함.
3. 秋穀의 配給貯藏移動加工 及 搬出을 指揮統轄함.

나. 道知事

各道知事는

1. 各道秋穀收集割當量을 府面に 公正히 細別割當함.
2. 各道에 割當된 收集量 及 搬出量의 完遂와 管下 一般行政官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協力케할 責任이 有함
3. 收集場所에 있어 秋穀割當量收集 及 出前狀況을 監督함
可能한限 本 割當量收集에 行政官을 動員利用함
4. 收集된 秋穀의 重量 及 品質에 關한 檢査를 監督함
5. 中央食糧行政處가 樹立한 配給計劃에 依한 配給目的에 限하여 秋穀을 搬出함
6. 違反者에 對한 告發責任이 有함
7. 農家에 割當된 收集割當量이 過重 或은 不公平하지 않도록 保障함
8. 必要한 境遇에는 朝鮮農會 其他 機關의 倉庫를 秋穀의 收集 及 保管用으로 使用할 概限이 있음
9. 收集上 必要한 境遇에는 管内 政府機關所有로서 使用할 수 있는 全貨物自動車를 動員함
10. 中央食糧行政處의 承認을 얻어 道內에 收集된 秋穀의 加工에 關한 搗精率을 決定함

다. 朝鮮生活費管理院 及 道食糧事務所

朝鮮生活品管理院은 道食糧事務所를 通하여

1. 出產者가 出荷證을 提示하면 即時 其代金を 支拂함
2. 各 里洞 及 邑面 收集場所로부터 指定倉庫精米所 及 搬出場所로 米穀을 運搬함
3. 中央食糧行政處 指令에 依하여 配給할 秋穀을 加工貯藏移動 及 搬出함
4. 米穀賣却代金を 領收함
5. 指示에 依하여 報告書 及 計算을 提出함

라. 中央土地行政處

1. 中央土地行政處은 割當量을 配定하기 爲하여 地方廳官吏와 協力하여 所管小作人 土地購買者의 秋穀收穫豫想高를 作成함
各 農家個人別 割當量은 地方官吏가 此를 決定함
2. 法令 第 173 號 規定에 依하여 中央土地行政處로부터 土地를 購買한 者는 各自의 配定된 割當量을 政府收集場所에 直接 出荷함
配定된 割當量이 抵當權設定契約書에 依한 年賦納入量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함
萬一 年賦納量이 配定된 收集割當量보다 적을時는 該土地購買者는 收集割當量과 中央土地行政處에 年賦로 納入하는 量과의 差額 또는 그 一部를 抵當權設定契約에 依한 超過支拂로 納入하여 年賦期間을 短縮할 수 있음
3. 中央土地行政處所管 小作人은 配定된 配當量을 政府收集場所에 直接 出荷하여야함

配定된 割當量은 小作料契約書에 約定된 量보다 적지않아야 함

4. 中央土地行政處가 關係되어 있는 收集場所에는 土地行政機關職員을 專屬으로 勤務 시켜야 함

中央土地行政處土地購買者(前記三條, 다, 2) 또는 同小作人(前期三條 다, 3)에 各自의 割當量을 出荷할 時는 抵當權設定契約에 依한 年賦納入量 또는 小作料(希望에 依하여는 其 以上の 數量)에 該當하는 出荷證(四部로 된것)及 農民이 現金으로 領收할 수 있는 數量에 該當하는 出荷證을 發行함. 土地行政處關係職員은 農民에게 發行한 中央土地行政處分納入數量에 對한 出荷證을 保管하고 其 數量에 該當하는 中央土地行政處의 領收證을 發行함. 土地行政機關職員이 保管하고 있는 各 出荷證에 表示되어 있는 數量을 「收集日報」(中央土地行政處 樣式 9號 A)에 表示하며 每日 納入한 全數量은 土地行政機關 及 食糧事務所職員이 連署하여 證明함

其 原本(證明한)을 定期的으로 地方廳에 提出하며 地方廳은 中央에서 支拂決濟를 하기 爲한 資料로 提示하기 爲하여 定期的으로 本廳에 其 寫本을 提出하여야 함

5. 中央土地行政處土地購買者(前記 2 項) 同處所管小作人(前記 3 項)은 配當量을 配定함에 있어서 一般土地所有者 또는 小作人和 同一한 方法으로 取扱됨

中央土地行政處土地購買者 또는 同 小作人에 對한 個人別 割當量은 其 購買 또는 小作契約書에 約定된 所要納入量 以上이어야 한다는 制限이 있는 以外는 그 近處農地에서 耕作하는 一般農民의 割當量과 比等하여야 함

但, 前記三條, 라, 2 及 三條, 라, 3 의 所要量에는 相應되어야 함

6. 土地行政處職員은 小作料로서 또는 抵當權 設定契約에 依하여 受領한 米穀數量을 所管 邑面長(或은 府尹)에게 報告하여야 함

7. 中央食糧行政處는 中央土地行政處와 協議한 後 中央土地行政處所管倉庫를 秋穀收集 及 貯藏場所로 使用할 수 있음

다. 朝鮮農會

朝鮮農會는 各道知事의 指令이 有한 時는 米穀貯藏用으로 其 倉庫를 提供하여야 함

第 4 條(秋穀收集對策委員會) 地主, 自作農, 小作農, 篤農家 其他 地方事情精通者로서 構成된 秋穀收集對策委員會委員은(名譽職) 左의 規定에 依하여 늦어도 各道 米穀收穫期 1 個月 以前에 任命함을 要함

各府 邑面收集對策委員會는 府尹, 邑面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委員 約 14 名은 洞會長 또는 邑面長의 推薦에 依하여 府尹, 郡守가 此를 任命함

本 委員會는 各 府尹 及 邑面長을 補佐하여 區洞(府 또는 邑)의 割當量 決定을 援助하면 其 邑面 또는 洞,(府)內 各 農民의 個人別 割當量에 關한 異議를 審査하는 審議委員會의 機能에 有함

各區(面)洞(府邑) 收集對策委員會는 區(面)洞會(府)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그 委員 約9名은 區面洞會(府邑)長 推薦에 依하여 府尹, 邑面長이 此를 任命함
本 委員會는 區 또는 洞府 또는 邑會長을 補佐하여 農家의 糧穀生産豫算高, 食糧所要量, 個人別割當量等을 調査豫定하며 其他 秋穀收集計劃에 關한 重要事項을 遂行함
本 委員會는 區 또는 洞(府 또는 邑)會長을 補佐하여 班長會에서 內定된 個人別 農家 割當量의 承認 또는 '그 修正을 建議함.

第5條(秋穀收集割當量 配定에 關한 基準) 各 農家에 對한 秋穀收集割當量은 各 該當 府尹 邑面長이 秋穀收集對策委員會(4項參照)와 協議하여 決定함

農家에 對한 割當量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秋穀收穫豫想高, 種子所要量 及 正式으로 實際 同居하는 家族의 食糧所要量等에 對하여 充分히 考慮함을 요함. 割當量 決定에 關與하는 公務員 及 收集對策委員은 個人別 割當量이 公正衡平하게 決定함을 細心の 注意를 다하여 保障함을 要함. 特히 細農家を 保護하여야 하며 모든 事情을 充分히 考慮하여서 細農家는 所屬區割當量을 個別配定함에 있어서 大農家보다 적은 比率로 割當되어야 함. 細農家에 對한 所要 秋穀을 充分히 保有하여 後日 還元配給의 必要를 排除함이 絶對必要함

第6條(第1段階) 各道內에 收集計劃作成等 計劃의 第1段階는 늦어도 秋穀收穫着手 10 日前에 完了함을 要함

가. 實施細目の 說明

各道知事는 府尹 郡守 邑面洞會長 其他 下級官廳責任者 秋穀收集對策委員會, 警察官署, 朝鮮農會中央土地行政處, 道食糧事務所의 地方代表者에게 收集計劃에 對한 實施細目を 說明할 責任이 有함

나. 收集割當量에 關한 明細指示

1. 割當量配定基準

各 道知事는 中央食糧行政處로부터 秋穀收集의 割當通知를 接受한 時는 管內 各府郡에 此를 迅速히 割當함. 府尹郡守는 迅速히 各洞(府) 及 邑面의 割當量을 決定함

邑面長은 各區(面) 及 洞(邑所在地)의 割當量을 決定함

各區 及 洞會長(邑 또는 府)은 各班의 割當量을 內定함. 各 班長은 班內 各農家 個人別 割當量을 內定하되 其班內 農民會에서 其 割當量을 決定할수 있음.

2. 農家個人別 割當量 決定

各區(面) 及 洞會長(面 또는 邑)은 各府尹, 邑面長으로부터 秋穀收集量의 割當通知를 接受할 時는 管下班長會를 開催하여 農家個人割當量을 內定함

各區 또는 洞長(府 또는 邑長)은 各區 또는 洞 秋穀收集對策委員會와 協議하여 農

家個人別 割當에 關한 管下班長會의 內府書를 承認 或은 修正하여 署名한 後 府尹 또는 邑面長에게 提出함

各府尹 及 邑面長은 늦어도 그 道內 秋穀收穫期 10日前에 管下 區洞會長(邑府)의 提出한 內申書에 依하여 府 及 邑面 秋穀收集對策委員會에 諮問한 後 管內 各農에 對한 割當通知書를 各區 또는 洞(府 또는 邑)會長 及 各班長을 通하여 發送함

3. 割當量의 揭示

各府 及 邑面長은 管下 各區 또는 洞(府 또는 邑)의 割當量表를 各 其事務所 揭示板에 明瞭히 公示함을 要함

各區(面) 또는 洞(府 또는 邑)會長은 各農民의 姓名割當量 一覽表를 各 其事務所 또는 農民公會堂 揭示板에 明瞭히 公示함을 要함. 各 農民이 其 割當量을 出荷한 日字는 其 表에 出荷時 記入함을 要함. 前記 各 行政機關揭示板에 公示된 表는 收集 期間中 揭示하여 둠을 要함

4. 種子米에 對한 取扱方法

各道 食糧事務所에서 其 買上된 種子米는 買上當時 後日 一般米穀과 交換하기로 되어 있지 않는限 配給할 目的으로 收集된 秋穀(割當秋穀)에 算入되지 않이함

다. 農民에 異議申立

各 農民은 割當通知書接受後 5日以內에 書面으로 府尹 또는 邑面長에게 割當配定에 關한 再審査를 申請함을 得함

申請書에는 不服의 理由를 仔細히 記載함을 要함

府尹, 邑面長은 調査하여 各府, 邑面收集對策委員會와 協議한 後 7日以內에 各 關係區 或은 洞(府 또는 邑)會長에게 書面으로 그 決定을 通知함

그 決定에는 不服을 不許함

區洞會長은 即時 本人에게 此를 告知함. 決定이 不服을 是認하는 境遇에는 該區 또는 洞會長은 割當量을 改正함을 要함

라. 收集場所

1. 府尹 及 郡守는 一定한 倉庫를 秋穀收集場所로 指定함

如斯한 倉庫는 火災 及 盜難에 對하여 適當히 防護되어있고 交通이 便利하고 可能한限 各 生産地精米所에 接近함을 要함

2. 指定된 倉庫에 收集 또는 貯藏된 秋穀은 道食糧事務所가 管理하고 中央食糧行政處의 指示에 依하여 配給됨

마. 秋穀檢査

政府의 穀物檢査員은 收集所에 出荷된 秋穀의 重量 及 品質을 檢査하고 現行檢査規則에 依하여 等級別을 定함

穀物檢査員은 決定된 秋穀의 等級을 出荷證에 記載하고 第3 副本은 保管함

바. 出荷證 及 代金支拂

收集所에 不融通性出荷證 各 4 通式을 準備함

該出荷證의 樣式을 決定하여 印刷하고 收集場所에 配付함은 朝鮮生活品管理員의 責任임
如斯한 出荷證의 印刷 及 配布의 費用은 朝鮮生活品管理院이 此를 負擔함

本 規則에 規定된 收集의 1948 年 9 月 1 日 以前에 開始되도록 準備를 完了하여야 함
各 收集에서 勤務하는 府邑面의 公務員은 4 通의 出荷證을 作成하여야 함

1. 中央土地行政處分小作料 또는 抵當權設定契約에 依한 年賦納入量으로 決濟되어야
할 收集量에 對한 出荷證의 原本은 土地行政機關職員에게 交付함

2. 中央土地行政處分이 아닌(中央土地行政處분에 關係가 無한 農民이 出荷하는 及 中
央土地行政處 關係農民의 所要出荷量을 超過하는 量) 收集量에 對한 出荷量證의 原
本은 農民에게 交付함

3. 第1 副本은 道食糧事務員에게 交付하고 第2 副本은 府廳 及 邑面事務所에 保管하
고 第3 副本은 穀物檢査所가 此를 保管함

4. 道食糧事務所職員은 收集場所에 出張하며 農民이 所持하고 있는 出荷證에 對한 代
金を 即時 農民에게 支拂함

土地行政機關職員은 所持하고 있는 出荷證에 對한 代金を 領收치 못함. 但 其 出荷
證에는 「收集日報」(中央土地行政處樣式 第9 A號)에 代金支拂決濟를 爲한 證明
(第3條, 라4 參照)을 한 後에 支拂防止의 表示를 하여야 함

사. 價 格

農民에게 支拂한 秋穀價格은 各 收集所에 明瞭히 揭示함을 要함

本 價格은 政府가 此를 決定함

第7條(第2階段) 秋穀의 實際收集等 收集計劃의 第2階段은 秋穀의 收穫과 同時에 開
始됨

가. 割當된 秋穀의 出荷 及 出荷에 不應한 秋穀의 押收割當된 秋穀은 全部 1949 年 1 月
15 日 以前에 收集場所에 出荷함을 要함

1949 年 1 月 15 日까지 出荷하지 않은 모든 割當된 秋穀은 政府가 此를 押收하고 所定
價格의 半額을 支拂함

나. 個人自作農의 出荷

各 個人自作農은 그 割當量을 그 地域內의 指定 收集所에 出荷하고 不融通性出荷證을
受取함

農家は 1949 年 2 月 28 日까지는 政府 또는 政府가 認定한 機關以外的 者에 對하여 秋
穀을 賣買 또는 移動하지 못함

다. 小作農의 出荷

小作農은 農地의 小作料를 割當量에 該當하는 秋穀을 直接 收集場所에 出荷하고 不融通性出荷證을 受取함

個人地主 及 法人地主는 小作契約에 現物納의 約定이 있는 境遇라도 本 令 第3條 [다]에 說明한 바와 如히 中央土地行政處分에 納付할 小作料以外에는 該 秋穀所定價格에 依한 代金を 小作料로 領收함

個人地主 及 그 家族은 所定の 配給機關을 通하여 非農家와 同一한 方法으로 秋穀의 配給을 受함 (正式配給機關을 通하여)

라. 運 搬

1948年9月1日부터 1949年2月28日까지의 期間中은 秋穀收集所 以外에는 秋穀運搬權限이 有할 政府機關以外의 者는 此를 履行하지 못함. 無許可로 運搬한 秋穀은 無償으로 沒收하여 所管 道食糧事務所에서 引渡하고 正式配給機關을 通하여 配給함 本 運搬制限에 關하여서는 秋穀을 政府가 收集하지 않는 道에 秋雜穀에 對하여 適用되지 아니함

마. 不法賣却

1948年9月1日부터 1949年2月28日까지의 期間內에는 政府機關以外의 者는 秋穀을 賣却 또는 그 申込을 하지 못함. 本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賣却 또는 그 申込을 한 秋穀은 無償沒收하여 所管 道食糧事務所에 引渡하고 正式配給機關을 通하여 配給함. 本 賣却에 關한 制限은 秋雜穀을 政府가 收集하지 않는 道의 秋雜穀에 對하여는 適用되지 아니함

第8條 (第3階段 報告 及 計算) 報告 及 計算等 收集計劃의 第3階段은 秋穀의 收集과 同時에 開始하여 1949年2月28日 以內로 完了함을 要함

가. 收集報告

1. 朝鮮生活品管理院

收集期間中 每5日마다 朝鮮生活品管理院은 中央食糧行政處로 其間 各道食糧事務所가 買上한 秋穀種別數量을 精穀石 單位로 表示하여 報告함

每月 10日 20日 30日의 各 報告에는 各府別 買上數量도 明示함

1949年2月28日 最終報告를 提出함

2. 道知事

收集期間中 每10日마다 各 道知事는 收集된 秋穀의 種別數量을 精穀石 單位로 表示하여 中央食糧行政處에 報告함

나. 出荷未完了의 報告

各 邑面 及 洞(府)會長은 秋穀收集割當量을 出荷期間까지 出荷치 않은 各 農家에 關

한 左記 各項을 1949年1月25日 以內로 各府尹 郡守에게 到着하도록 報告함을 要함

1. 姓 名
2. 住 所
3. 夏穀割當量
4. 政府에 出荷한 秋穀數量

府尹 郡守는 1949年1月15日까지의 出荷未完了者에 關하여 適切한 措置를 置함을 要함

다. 附加報告 及 計算書

朝鮮生活品管理院, 中央土地行政處, 道食糧事務所, 朝鮮農會는 各自 事務遂行에 關한 文書를 保管하여 要求가 有할 時는 그 事務遂行에 關한 報告를 提出함

라. 政府 及 法人地主의 記錄 及 報告

秋穀을 生産하는 農地를 所有 또는 管理하는 中央土地行政處, 法人地主 及 政府各機關 代行機關 及 事業機關은 法令에 依하여 各自의 小作人이 出荷한 秋穀의 細密한 記錄을 保管함

權限이 有한 官憲은 隨時 該 記錄을 檢閱함을 得함

第9條(處罰) 本 令에 違反한 者는 裁判所가 各 處罰法條를 適用하여 處罰함
處罰判決에 依하여 其 法條가 없을 境遇에는 裁判所가 自由로 刑罰을 決定함
(違法과 法則에 關하여는 1948年5月26日 附法令 第198號 參照)

第10條(抵觸規則의 廢止) 本 令에 抵觸 또는 矛盾되는 모든 法律, 法令, 規則, 指令 또는 訓令의 全部 또는 一切은 그 抵觸 또는 矛盾되는 範圍內에서 此를 廢止함. 但, 本令 施行以前에 犯한 그 規則違反犯罪를 阻却시키는 趣旨는 아니며 그 犯罪에 對하여 現在 또는 將來의 訴追에는 何等 影響이 없음

第11條(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을 生함

1948年7月29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따블유·에프·뵐

○ 法令 173號〈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第12條의 改正(法令 第215號, 1948.8.10)
本件 事項을 審議하여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1條(目的) 本 令은 1948年3月22日附 法令 第173號(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를 改正하며 1948年7月3日附 法令 第209號(法令 第173號第12條의 改正)을 廢止함을 目的으로 함

第2條 改正法令 第173號第12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12條 所有權 歸屬에 關하여 紛爭있는 土地의 訴訟廢勵 1948年8月31日

(가) 그 資産 또는 株式이 1945年12月6日附 法令 第33號에 依하여 軍政廳에 歸屬되지 아니한 非日本人法人 또는 自然人은 行政廳에 移管된 土地의 所有權을 主張하여 1948年8月31日까지 紛爭土地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또는 支院에게 行政處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할 수 있음. 그 法院은 그 土地와 同一한 取引에 因하여 生한 垡, 家屋 또는 農業用 建造物에 對한 權利로서 그 土地에 附屬하며 軍政廳에 歸屬된 不動產에 對하여는 管轄權은 有함

그 附屬垡, 家屋 또는 農業用建造物에 關하여 土地行政處는 管財處를 代理하며 管財處는 訴訟의 當事者가 되지 아니함

그 不動產이 行政處 또는 管財處로부터 이미 處分되지 아니한 境遇에 原告의 請求가 理由있는 境遇에는 裁判所는 原告에게 그 不動產의 所有權을 認定함

그 不動產이 이미 賣渡된 境遇에는 法院은 不動產所有權代身 金錢賠償을 命함

그 不動產이 行政處 또는 管財處로부터 이미 處分된 境遇에도 法院은 그 不動產賣買를 無效로하는 判決을 하지 못함

(나) 1948年8月31日을 經過한 後는 前項에 記載한 者는 訴訟을 提起하지 못함

本 令에 依하여 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事件에 對하여는 本令 公布 以後 財産訴請委員會에 訴請을 하지 못함

(다) (1) 行政處에서 土地를 賣却한 後 裁判所가 原告를 爲하여 土地代身 金錢賠償請求權을 認定하는 境遇에는 裁判所는 行政處에 對하여 土地價格에 相當하는 損害額으로 買受人이 行政處로부터 土地買受當時 買受價格으로 支拂하기로 約定한 穀物의 數量을 判決當時 政府에서 決定한 價格으로 換算한 金額의 支拂을 命함. 同時에 行政處는 그 土地를 賣却할 때까지 賃貸料로 受領한 穀物을 判決當時 政府에서 決定한 價格으로 換算한 金額을 支拂함. 그러나 公文書에 記載된 管理費用은 控除하여야 함. 行政處에 文書는 公文書로 看做함

以上 算出된 金額은 土地處分에 對한 一切의 損害額으로 看做하며 行政處는 그 金額만 支拂하며 그 土地에 關한 一切의 責任이 免除됨

(2) 行政處에서 土地와 그 附屬家屋 또는 建造物을 賣却하지 아니한 境遇에 原告의 請求가 理由있는 境遇에는 裁判所는 原告의 所有權을 認定하여 行政處에 對하여 그 不動產을 原告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할 것을 命하는 同時 既往不動產의 賃貸料로 受領한 穀物을 判決當時 政府에서 決定한 價格으로 換算한 金額으로부터 公文書에 記載된 管理費를 控除한 差額의 支拂을 命함. 行政處의 文書는 公文書로 看做함

(3) 敗訴의 當事者는 金 2,500圓의 限度로 訴訟費用을 負擔함

(4) 本 令에 依한 訴訟에 있어서는 行政處는 1890年 8月 16日附 法律 第 65號 民事訴訟用 印紙法에 依한 印紙를 貼付함을 必要치 아니함

(라) 訴請委員會에 訴請한 事件에 對하여는 行政處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할 수 없음
財産訴請委員會는 本令 施行以前에 受理한 (가)項記載의 不動産에 對한 訴請事件을 管轄 法院에 送致하여야 하며 그 境遇에는 行政處가 被告가 됨

그 送致는 訴請人이 訴請을 提起할 效力을 有함

그 境遇에는 訴狀에 印紙를 貼用함은 必要치 아니함

送致는 可及的 速히함을 要하나 1948年 8月 31日 以內에 함은 必要치 아니함

法院이 送致를 受한 境遇에는 訴請書의 寫本을 當事者에 送達함은 必要치 아니하나 訴訟이 繫屬되었다는 事實을 當事者 及 行政處地方廳에 通知함

그 以後는 法院은 本令에 規定한 以外는 普通事件의 例에 依하여 處理함

(마) 萬若 同一事件에 對하여 既往 訴請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原告는 訴狀에 左記事項을 記載함

(1) 財産訴請委員會에 訴請한 事實이 없다는 事實

(2) 그 土地에 接近한 行政處地方廳의 所在地

(3) 證據書類가 있는 境遇에는 그 寫本

(4) 請求의 原因의 概要

法院은 訴狀을 서울中央土地行政處에 送達하며 訴狀과 證據書類가 있는 境遇에는 그 寫本을 左의 行政處地方廳에 送達함

서울, 京畿道, 江原道에 있는 土地 서울地方廳

忠淸北道, 忠淸南道 " 大田 "

全羅北道 " 裡里 "

全羅南道에 있는 土地 木浦地方廳

慶尙南道 " 釜山 "

慶尙北道 " 大邱 "

濟州島 " 서울本廳

(바) 本條(라) 及 (마)項의 境遇에는 行政處地方廳에 訴狀, 附屬書類 또는 繫屬通知가 送達된 後 30日을 經過하지 아니하며 口頭辯論을 열지 못함. 行政處는 그 期間內 또는 口頭辯論에서 左의 1의 答辯을 함

1. 防禦할 意思가 없다는 表示

2. 防禦할 意思의 表示

答辯에 時日을 要하는 行政處가 理由를 갖추어 延期申請할 境遇에는 法院은 事實調査 完了에 必要한 時日을 許與함

(사) 本條(가)項에 記載한 行政處를 相對로 하는 不動產所有權訴訟에 있어서 行政處가 出頭
치 아니하는 境遇 또는 防禦의 意思가 없는 境遇라도 原告의 陳述과 그 證據를 審理함
은 法院의 義務이며 法院은 行政處가 한 自由에 拘束받지않고 事實을 調査한 結果 原告
의 所有라고 認定한 境遇以外에는 原告勝訴의 判決을 하지못함

(아) 1948年8月31日 以前의 行政處敗訴의 闕席判決은 行政處의 故障申立에 依하여 再審
理함. 但 그申立은 1948年10月31日 以內에 함을 要함

(재) 財産訴請委員會에 訴請하기 爲하여 支出한 書類作成費用은 訴請費用에 包含되지 아니함

(차) 그 事件이 既往 財産訴請委員會에 訴請되었는 境遇에는 法院은 財産訴請委員會에게 訴
請에 關한 書類를 法院에 送付하도록 要求할 수 있음. 그 書類에 다른 不動產이 包含된
境遇에는 法院은 그 書類를 使用後 財産訴請委員會에 返還함

(개) 行政處는 所有權에 關하여 紛爭이 있는 土地는 放賣하지 않도록 相當한 努力을 할 것
이나 一旦 行政處에서 行한 放賣는 그 土地의 所有權을 主張하는 第3者에 對하여도 效
력이 있음

第3條 改正法令 第173號第16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16條賣却의 取消行政處로부터 土地를 買受한 者가 行政處에 對한 債務, 租稅 또는 灌
溉費用을 支拂치 아니하며 또는 本令의 規定을 遵守치 아니하는 境遇에는 行政處는 賣買
를 取消할 수 있음. 買受人이 그 移轉登記에 應치 아니하는 境遇에는 行政處는 管轄裁判
所に 出所하며 行政處의 請求가 理由있는 境遇에는 裁判所는 行政處名義로서 所有權 移轉
登記를 命함

行政處는 履行期가 到來한 租稅 及 灌溉費用을 支拂할 수 있으며 그 境遇에는 金額은 行
政處에 對한 債務額에 加算됨

債務不履行이 不可抗力에 因한 境遇 또는 行政處가 그 債務의 辨濟를 받기 爲하여 相當한
方法을 講究하기 前에는 取消할 수 없음

取消한 境遇에는 既往 受領한 農產物의 取消當時의 價格의 75%로부터 取消에 要한 費用
行政處에 對한 債務租稅 及 灌溉費를 控除한 差額을 買受人에 支拂함

過失 또는 管理不足에 因한 顯著한 荒廢普通以上の 消耗로 因한 減價는 行政處에서 支拂
할 金額에서 控除됨

買受人이 買受以後 改良工事의 費用은 그 工事が 現存하는 境遇에 限하며 相當히 評價하
여 買受人에게 支拂함

第4條(改正) 法令 第173號第17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17條 土地의 再賣却行政處에서 一旦 賣却後 任意로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依하여 行
政處에 復歸된 土地는 本令의 規定에 依하여 다시 賣却함

第5條(改正) 法令 第173號第18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 18 條 負擔의 免除行政處가 本令에 依하여 賣却한 土地는 所有權이 移轉된 後에 履行 期가 到來한 灌概費用 及 行政處에 對한 賣却代金債務以外에는 何等 擔保權의 目的이 되지 아니함

所有權移轉 以前에 負擔한 擔保權이 消滅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行政處는 可及的 速히 그 를 消滅시킴을 要함

行政處以外의 者는 灌概費用滯納으로 因하여 賣買를 取消할 權限이 無함

第 6 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따블유·에프·뎀

○ 米穀收集及運搬 (行政命令 第 8 號, 1947. 10. 20)

第 1 條 (目的) 本 令은 法律 第 6 號 及 中央食糧規則 第 6 號의 規定을 遂行하고 釋明하며 米穀의 無許可不法運搬 及 賣買를 防止함을 目的함

第 2 條 (中央食糧規則 第 6 號規定) 中央食糧規則 第 6 號第 6 條의 左記 規定을 茲에 特別히 強調하며 嚴格히 施行함

「一切의 米穀運搬은 政府가 管轄함. 本 規則에 規定된 米穀收集所와 配給所 以外에는 米 穀出荷는 權限을 有한 政府代行機關以外의 者는 運搬치 못함

無許可로 運搬한 米穀이나 配給所以外에서 販賣하는 米穀은 押收하여 道食糧事務所에 引渡 하고 配給米로 提供함」

第 3 條 (其他 米穀運搬 又は 賣買許可) 右記 中央食糧規則 第 6 號規定에 抵觸되는바, 干今 까지의 米穀運搬 又は 賣買許可는 其量 又は 條件如何를 莫論하고 此를 取消함

第 4 條 (有效期日) 本 令은 發布와 同時에 有效함

1947 年 10 月 20 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代將

씨·지·헬믹

○ 米穀運搬許可 (行政命令 第 11 號, 1947. 12. 31)

第 1 條 (目的) 本令은 1947 年度 米穀收集割當量을 供出한 道에 政府以外의 米穀運搬도 許可함을 目的으로 함.

第 2 條 (米穀運搬許可) (가) 서울시 及 京畿道, 忠清北道, 忠清南道, 全羅南道, 慶尙南道 及 江原道는 各其 1947 年度 米穀收集割當量을 充分히 供出하였으므로 以上 各道內 又是 各道間의 政府以外의 米穀運搬도 許可함. 以上 各道間의 米穀運搬은 1947 年度 米穀收集割當量 全部를 아직 供出치 못한 道를 通過함을 不得함.

(나) 前項에 列擧한 各道 以外의 道에서 1947 年度 米穀收集割當量 全部를 供出함을 中央食糧行政處에서 公告하면 如斯한 道內 及 該道와 1947 年度 米穀收集割當量 全部를 供出한 他道 사이에 政府以外의 米穀搬出을 茲에 許可함. 但, 如斯한 運搬은 1947 年度 米穀收集割當量 全部를 供出치 못한 道를 通過함을 不得함.

第 3 條 (抵觸되는 法令) 1947 年 10 月 20 日 附行政命令 第 8 號 (米穀收集 及 運搬) 1947 年 8 月 18 日 附 中央食糧規則 第 6 號 (米穀收集) 及 本令 規定에 抵觸되는 指令 及 指示의 各規定은 茲에 其抵觸되는 範圍까지 此를 修正함.

第 4 條 (公訴 及 犯罪에 及하는 效果) 本令은 그 施行期日前에 犯한 罪를 本令에 依하는 茲에 修正 又は 廢止한 規定下에 抹消하거나, 又は 如斯한 犯罪에 根據한 現在 又は 未來의 公訴를 中斷 又は 棄却하는 意圖가 아니며 如斯히 解釋되지 아니함.

第 5 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와 同時에 有效함.

1947 年 12 月 31 日

右 建議함.

民正長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일리암·에프·원
美國陸軍少將

○ 朝鮮農會費 (農務部命令 第 1 號, 1946. 6. 15)

1. 農會費 增加의 認可

但, 郡 及 道農會는 茲에 農會費를 增加함을 認可됨. 本令을 根據로 하여 決定된 新會費는 左記 金額을 超過치 못함.

會員當 5 圓

家畜當	$\left\{ \begin{array}{l} \text{牛 又は 馬} \\ \text{犏 牛} \end{array} \right.$	10 圓
		5 圓

2.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 時後 10 日에 效力이 生함.

1946 年 6 月 15 日
軍政長官 指示에 依하여

農務部長事務處理官

美國陸軍小佐 제임스·아이·마틴

○ 新韓公社에 依한 米穀小作料收集 (農務部命令 第 2 號, 1946. 6. 15)

1. 滯納小作人

1945 年度 米穀小作料를 完納하지 않는 新韓公社所屬 農士에 關한 小作人은 本令의 施行 期日後 30 日內로

(가) 此小作料를 現物로 新韓公社에 完納하든가 或은

(나) 現金으로 此小作料를 新韓公社에 完納하는 同時에 그는 軍政廳 又は 指定된 管轄官廳에 其 米穀을 引渡하였다는 證明書를 提出할 事 此時에는 現金納付는 此 米穀引渡時에 그가 受한 價額率을 基準으로 하여 計算하고 此率을 알 수 없는 時는 每 54 kg 入 以當 150 圓의 率로 計算함. 或은

(다) 天災(洪水, 火災, 風雲, 氣象, 霪害, 蟲害 又は 其他 不可避한 事變 又は 不可抗力한 穀物을 死滅시키는 病疫)로 因하여 1945 年度作 米穀이 不作 又は 損滅된 時는 新韓公社에서 承認할 만한 其 證據書類를 提出할 事, 此時에는 그 現物 又は 現金으로 하는 1945 年度 모든 米穀小作料 中은 損滅된 部分의 米穀에 該當하는 小作料 支拂은 免除될 수 있음.

2. 不履行에 對한 罰則

本令 第 1 條의 條項을 履行치 않는 小作人은 1946 年度 米穀小作料 支拂滿了日까지 現物로 1945 年度 米穀小作料 全量과 其 1 割에 該當하는 滯納料를 1946 年度 小作料와 함께 完納함을 要함. 1945 年度 未納小作料 及 滯納料는 優先으로 1946 年度 米穀收穫物로부터 控除됨.

3. 法令 第 9 號 及 第 45 號와의 關係

本令에 依한 合法的 納付는 最高小作料에 關한 1946 年 1 月 5 日附 法令에 第 9 號 又は 米穀收集에 關한 1946 年 1 月 25 日附 法令 第 40 號에 抵觸되지 않는 것으로 認定함.

1946 年 6 月 15 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農務部長

美國陸軍小佐 제임스·아이·마틴

○ 朝鮮農會費 (農務部令 第5號, 1947. 9. 18)

第1條 (農會費의 引上) 府郡 及 島農會는 本令에 依하여 農會費를 引上할 수 있음.

但, 下記 額을 超過치 못함.

會 員 費	15 圓
牛 또는 馬	50 圓
犢 牛	25 圓

第2條 1946年 6月 15日附 農務部令 第1號 (朝鮮農會費) 는 茲에 廢止함.

第3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後 10日부터 效力이 生함.

1947年 9月 18日

軍政長官의 指示에 依하여

農務部長 李 勳 求

○ 穀物檢査規則 (農務部令 第3號, 1946. 9. 20)

第1條 (目的) 本令의 目的은 1946年 9月 18日附의 法令 第111號의 規定을 補充하며 有效하게 함에 있음.

第2條 (穀物檢査) 下記 各種 穀物은 本令 第6條의 標準에 依한 包裝을 하여 穀物檢査所 又は 法令으로 規定된 其他 場所에서 檢査官의 檢査를 받고 該包裝에 本令 第8條에 規定된 等級의 證印을 받지 않으며 各道知事에 依하여 又は 그 權限下에 指定된 地域에서 他地方에 搬出치 못하며 또는 該指定地內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賣買 其他의 行爲를 할 수 없음
正租, 玄米, 白米, 大麥, 裸麥, 精麥, 押麥, 小麥, 라이麥, 玄粟, 精粟, 玄蜀黍, 精蜀黍, 玉蜀黍, 大豆, 小豆, 菜豆, 豌豆

第3條 (檢査의 免除) 下列 各項에 該當하는 穀物에 關하여 穀物檢査所에 證據를 提出하고 그 證明書의 發行을 받은 境遇에는 特別한 要求가 없는 限 檢査는 免除됨.

가. 商品見本으로 1噸以內의 것

나. 自家消費하는 것

다. 政府機關에서 徵發 또는 所有하는 것

라. 調查研究用, 種子用, 博覽會, 共進會 及 品評會 等의 出品用

마. 屑物, 碎米

바. 販賣 其他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것.

第4條 (檢査에 關한 手續) 穀物檢査에 手續方法은 下와 如함.

가. 地方穀物檢査所에 있는 檢査請求書에 檢査手續料로 收入印紙를 貼付하여 此를 管轄檢査所에 提出할 것.

나. 請求人 또는 其 代理人은 檢査에 立會할 것.

代理人은 檢査所에 있는 用紙에 穀物所有者의 記名捺印을 받아 此를 提出할 것.

다. 檢査를 受한 穀物の 包裝에는 그에 該當하는 檢査證印을 附할 것.

라. 檢査에 必要한 費用은 請求人의 負擔으로 함. 生活必需品管理局과 道食糧事務所는 檢査手續料가 免除됨.

마. 檢査는 收集所 其他 穀物檢査所에서 指定한 場所에서 指定한 場所에서 施行함.

바. 各地方穀物檢査所는 自己管轄區內에서 隨意로 再檢査를 할 수 있음. 再檢査에는 手續料를 徵收치 아니함.

사. 穀物檢査官의 決定에 對하여는 第1次로 道穀物檢査所에, 第2次로 道農務局長에게 異議를 提出할 수 있음.

아. 穀物の 內容과 包裝의 檢査를 完了後 穀物檢査官의 承認없이 其 包裝을 열은 境遇에는 再檢査를 맞이않는 限 그 內容 又は 包裝은 各 道知事に 依하여 又は 그 權限下에 指定된 地域外에 搬出치 못하며 또는 該指定地內에서 商賈買 其他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行爲에 使用할 수 없음.

第5條(手續料) 下記 檢査手續料는 下와 如함.

1. 穀物の 種類와 手續料

가. 玄米, 白米, 精麥, 押麥, 精粟, 精蜀黍 1 仄 30 錢

나. 白 米 1 布袋 15 錢

第6條(穀物の 包裝) 穀物の 種類와 그 重量과 包裝은 下의 標準에 依함.

가. 重 量

1. 正租, 精粟, 라이麥은 仄入 1 個에 正味 54 貳(減量으로 600 瓦 - 添加)

2. 玄米, 裸麥, 小麥, 精麥, 玄蜀黍, 精蜀黍, 小豆, 菜豆, 豌豆는 仄入 1 箇에 正味 60 貳(減量으로 600 瓦 - 添加)

3. 白米는 仄入 1 箇에 正味 60 貳(減量으로 600 瓦 - 添加) 布袋入 一箇에 正味 30 貳(減量으로 300 瓦 - 添加)

4. 大麥, 押麥은 仄入 一箇에 正味 42 貳(減量으로 600 瓦 - 添加)

5. 玄粟 仄入 1 箇 正味 45 貳(減量으로 600 貳 - 添加)

6. 大豆 仄入 1 個 正味 60 貳(減量으로 1, 5 貳 - 添加)

7. 玉蜀黍仄入 1 箇 正味 60 貳(減量으로 900 瓦 - 添加) 麻袋入 1 箇 正味 90 貳(減量으로 1.5 貳 添加)

나. 包 裝

1. 穀物入袋

㉔ 凡은 年 月 日附 農務部令 第 號 凡 檢査規則에 依한 檢査에 合格한 新袋으로 함. 但, 正租 及 大麥에는 此를 適用치 않음.

㉕ 掛繩은 直徑 4分 乃至 4分 5厘의 橫繩으로 함.

㉖ 縱繩은 正租, 大麥, 精麥, 押麥, 裸麥, 小麥, 라이麥, 玄粟, 精粟, 玄蜀黍, 玉黍蜀에는 3 箇所, 其他 穀物에는 4 箇所를 두겹으로 들임. 附表 1 參照.

2. 白米入布袋

㉗ 布袋는 構造가 完全하고 強靱한 新布袋로 함. 口縫絲는 強靱한 綿絲로 堅固히 할 事

㉘ 掛繩은 直徑 3分 5厘 乃至 4分의 擦繩으로 함.

㉙ 縱繩은 1 箇所를, 橫繩은 2 箇所를 두겹으로 들임. 附表 2 參照.

3. 玉蜀黍入 麻袋

㉚ 麻袋는 構造가 強靱한 新麻袋로 함. 口縫은 強靱한 麻絲로 堅固히 할 事

㉛ 掛繩은 直徑 4分 乃至 4分 5厘의 擦繩으로 함.

㉜ 掛繩方法은 前項 布袋와 같음. 附表 2 參照

4. 道知事 又は 生活必須品管理局의 要求에 依하여 臨時로 農務部長은 非輸出穀物에 限하여 其 包袋에 4 箇所 代身에 3 箇所 縱繩을 할 수 있도록 指令할 수 있음.

第 7 條 (豫備檢査) 豫備檢査를 한 結果 下側 各項에 該當하는 穀物 (但, 正租는 除外함) 은 等級을 附하지 않고 不合格으로 하고 合 道知事가 指定한 地域外의 搬出 또는 商賣買 其他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行爲에 使用함을 禁함.

가. 異年 雜穀物을 含有한 境遇

나. 蝦米가 混入한 境遇

다. 玄米, 白米, 押麥에 石의 混入이 一升에 3 粒 以上인 境遇

라. 精麥, 精蜀黍에 石의 混入이 1 升에 6 粒 以上인 境遇

마. 精麥에 石의 混入이 1 合에 10 粒 以上인 境遇

第 8 條 (等級) 豫備檢査를 한 結果 第 7 條 各項에 該當치 않는 穀物은 每年 農務部長의 設定하는 品質과 乾燥의 標準과 左列事項에 依하여 等級을 附함.

正 租

1 等

赤米의 混入 1 合에 20 粒 以內, 石, 土, 稗, 不熟米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3 以內

2 等

赤米의 混入 1 合에 50 粒 以內, 石, 土, 稗, 不熟米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6 以內

等外

以上 標準等級에 該當치 않는 것.

玄 米

1等

赤米의 混入이 1合에 20粒 以內, 土·稗·正租·死米·碎米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分之4 以內

2等

赤米의 混入 1合에 50粒 以內, 土·稗·正租·死米·碎米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分之6 以內

3等

赤米의 混入 1合에 80粒 以內, 土·稗·正租·死米·碎米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分之6 以內

白 米

1等

稗, 正租 其他 夾雜物의 除去 充分하고 碎米의 混入 100分之10 以內

2等

稗, 正租 其他 夾雜物의 除去 充分하고 碎米의 混入 100分之12 以內

大麥, 裸麥, 小麥, 라이麥

1等

石, 土, 稗, 不熟麥, 蟲喰麥, 病害麥 其他 夾雜物의 混入이 大麥을 100分之5 以內
裸麥은 100分之3 以內, 小麥, 라이麥은 100分之4 以內

2等

石, 土, 稗, 不熟麥, 蟲喰麥, 病害麥 其他 夾雜物의 混入이 大麥은 100分之8 以內
裸麥은 100分之5 以內, 小麥, 라이麥은 100分之 以內

精 麥

1等

租麥, 稗 其他 夾雜物의 除去 充分하고 碎麥의 混入 100分之4 以內

2等

租麥, 稗 其他 夾雜物의 除去 充分하고 碎麥의 混入 100分之7 以內

押 麥

合格

租麥, 稗 其他 夾雜物의 除去 充分하고 碎麥의 混入 100分之4 以內

玄 粟

1 等

石, 土, 稭, 不熟粟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2 以內

2 等

石, 土, 稭, 不熟粟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4 以內

精 粟

合格

粗粟, 稭, 碎粟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2 以內

玄蜀黍

1 等

石, 土, 稭, 不熟蜀黍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5 以內

2 等

石, 土, 稭, 不熟蜀黍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8 以內

精蜀黍

合格

稭, 碎蜀黍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6 以內

玉蜀黍

1 等

石, 土, 不熟玉蜀黍, 碎玉蜀黍, 蟲喰玉蜀黍, 腐蝕玉蜀黍,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1 以內

2 等

石, 土, 不熟玉蜀黍, 碎玉蜀黍, 蟲喰玉蜀黍, 腐蝕玉蜀黍 其他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4 以內

大 豆

1 等

種皮色이 다른 種類의 混入이 없고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5 以內

2 等

種皮色이 다른 種類의 混入이 없고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1 以內

3 等

種皮色이 다른 種類가 1 合에 2 粒 以內,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3 以內

4 等

種皮色이 다른 種類가 1 合에 5 粒 以內, 夾雜物의 混入 100 分之 4 以內

小豆, 菜豆, 豌豆

1 等

異品種의 混入 100分之3 以內, 夾雜物의 混入 100分之2 以內

2等

異品種의 混入 100分之5 以內, 夾雜物의 混入 100分之3 以內

第9條(不合格의 處置) 第8條에 規定한 標準에 合格치 않은 正租 以外의 穀物은 「不合格」의 證印을 찍고 各道知事에 依하여 又は 그 權限下에 指定된 地域外에 搬出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賣買 其他 取引에 使用함을 禁함. 天災·凶作의 境遇에 穀物이 第8條에 規定한 最低等級에 該當되지 못할 時는 農務部長의 決定에 依하여 等級을 變更할 수 있으며 그 等級에 該當한 穀物은 各道知事에 依하여 又は 그 權限下에 指定된 地域外에 搬出하거나 營利의 目的으로 賣買 其他 取引에 使用할 수 있음.

第10條(證印) 檢査를 맞인 後에는 其 穀物 包裝表面 잘 보이는 곳에 農務部에서 規定한 該當等級, 證印, 記載를 附함을 要함. 檢査를 맞인 穀物은 다른 ㄷ, 包袋, 箱子 其他 容器로 包裝하지 못함.

第11條(輸出) 北緯 38度 以南 朝鮮에서 外國에 輸出하려 하는 穀物은 輸出港에서 再檢査를 받음을 要함.

第12條(輸入) 輸入港에 到着된 穀物은 即時 管轄穀物檢査所에 届出함을 要함. 但, 下列 各號의 1에 該當한 穀物은 除外함.

가. 政府機關의 指示에 依하여 輸入하는 穀物

나. 標本 또는 見本으로써 10 甬 以內의 穀物

다. 旅客의 携帶하는 60 甬 以內의 穀物

第13條(商標) 包裝에 使用된 商標는 使用함에 앞서 農務部長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음을 要하며 그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後 5日以內에 所轄 穀物檢査所에 報告함을 要함. 그 商標는 包裝面上 證印 及 記號가 찍기지 않은 곳에 印寫함을 要함.

第14條(檢査官 證票) 農務部에서 任命한 檢査官史는 農務部에서 發行한 檢査官 證票를 携帶하고 必要에 應하여 提示할 것.

第15條(穀物檢査官에 對한 助力) 道農務局長의 要求가 있을 時는 朝鮮農會, 生活必需品 管理局 又は 道食糧事務所는 穀物檢査官에 對하여 必要한 助力을 함을 要함.

第16條(權限의 委任) 各道知事는 本令을 遂行함에 必要한 方法을 取할 수 있음.

第17條(抵觸되는 法律廢止) 1946年 9月 18日附 法令 第111條第1號에 依하여 本規則과 抵觸되는 諸 法律, 法令, 命令, 規則, 指令, 訓令을 廢止함.

第18條(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1946年 9月 26日

農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農務部長

美國陸軍中位 제임스·아이·마-틴

○ 吠檢査規則 (農務部令 第4號, 1946. 10. 5)

第1條(目的) 本令의 目的은 1946年 9月 18日附의 法令 第111條 規定을 補充施行함에 있음.

第2條(吠檢査) 吠와 吠梱包를 各道知事에 依하여 又は 各道知事 權限下에 指定된 指定地 以外로 搬出하거나 或은 該指定地內에서 營利의 目的으로 賣買 又は 使用할 時는 穀物檢査所 又は 其他 適當한 場所에서 檢査官의 檢査를 받으며 또 本令 第5條 及 第6條의 標準에 依하여 捺印을 받을 事

第3條(檢査의 免除) 穀物檢査所에서 左記 各項에 該當하는 吠에 關하여 證明書를 發行한 時 及 左記 各項의 1에 該當하는 吠입을 證明하는 證據를 穀物檢査所에 提出한 時는 特別한 要求가 없는 限 檢査는 免除할 수 있음.

가. 政府機關에서 徵發 또는 所有한 吠

나. 調查, 研究用 또는 博覽會, 共進會 等の 出品用 如斯한 境遇에는 其 等級은 標準等級과 相異할 수 있음.

다. 販賣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것.

라. 穀物, 鹽, 肥料容器로 使用되지 않는 것.

第4條(手數料) 1梱包에 對하여 1圓의 手數料를 檢査前에 納付할 事, 地方穀物檢査所에 있는 檢査請求書에 檢査手數料로 收入印紙를 貼付하여 其 檢査所에 提出할 事

第5條(生産吠의 等級) 附表 第1號의 條件에 符合되는 吠은 合格으로 하고 이에 符合되지 못한 吠은 不合格으로 함.

第6條(吠梱包의 標準) 檢査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左記 標準과 條件에 合格치 않은 吠梱包를 搬出 或은 商賣買 又は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行爲에 使用함을 禁止함.

가. 縮繩은 直徑 5分 以上の 強靱한 것으로 4個所 掛로 하되 兩端은 세돌림으로 하고 中央 2個所는 두들림으로 함.

나. 穀物用 吠은 1梱包 2折 30枚縮, 高는 3尺以內로 함.

다. 肥料用 吠은 1梱包 50枚縮, 高는 3尺3寸以內로 함.

라. 鹽用은 1梱包 2折 30枚縮, 高는 2尺7寸以內로 함.

第7條(不合格 吠 梱包의 處置) 第6條에 規定한 標準에 合格되지 못한 것이나 或은 未檢査吠, 異種類吠, 異等級吠 또는 損傷, 變色한 吠 梱包는 不合格으로 하고 搬出 或은 商賣買 又は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行爲에 使用함을 禁止함. 本令에 違反하여 搬出 또는 商賣買 又は 其他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行爲에 使用한 時는 押收하거나 或은 出荷地에 返送을 命할 수 있음.

第8條(手續) 吠 檢査 手續은 下記와 如함.

가. 穀物用 吠은 右側 下部에, 鹽用과 肥料用 吠은 上部에 檢査證印을 押捺함.

- 나. 檢査에 合格한 収梱包는 檢査證印을 適當히 押附함.
- 다. 官用檢印 及 封印과 類似 又は 模倣한 記號를 収이나 収梱包에 押附치 못함.
- 라. 各 地方穀物檢査所는 自己管轄區內에서 隨意로 再檢査를 할 수 있음.
- 마. 穀物檢査官의 決定에 對하여 道穀物檢査所나 或은 第2次的으로 道農務局長에게 異議를 提出할 수 있음.
- 바. 請求人 또는 其 代理人은 檢査에 立會할 것.

第9條(運搬 及 貯藏에 關한 注意)運搬 又は 貯藏에 隨伴하는 風雨 其他 危險에 對하여 保護할 適當한 設備가 없는 時는 収 又は 収梱包의 運搬을 禁함.

第10條(檢査官 證票) 農務部에서 任命한 檢査官史는 農務部에서 發行한 檢査官證票를 携帶하고 必要에 應하여 提示함을 要할 것.

第11條(權限의 委任) 各道知事는 此 部令을 施行하는데 適當한 方法을 取할 것.

第12條(牴觸되는 法律廢止) 1946年 9月 18日附 法令 第111號第1條에 依하여 本規則 規定과 不合되는 諸法律, 法令, 命令, 規則指令, 訓令 及 其 部分은 茲에 廢止함.

第13條(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1946年 10月 5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農務部長事務處理官

美國陸軍小佐 제임스·아이·마-틴

○ 糧穀·物價統制法規違反事件에 關한件 (檢査에 對한部令 第7號, 1946. 10. 23)

1. 糧穀, 物價統制法規 違反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이 勾束된 事件은 勾束後 48時間 以內에 起訴하여 判決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要함. 但,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裁判所에서 辯護의 準備에 必要한 時間이 附與된 境遇에는 此限에 있지 않이함.
2. 糧穀, 物價統制法規 違反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이 勾束되지 않은 事件은 着手後 5日 以內에 起訴하여 判決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要함. 但,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裁判所에서 辯護의 準備에 必要한 時間이 附與된 境遇에는 此限에 있지 않이함.
3. 糧穀, 物價統制法規 違反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이 그 罪를 自認하고 裁判所에 回附되기를 自願하는 境遇에는 被告人에게 即時 그 機會를 附與하며 管轄裁判所가 執務中인 限 勾束함을 不得함. 前項의 境遇에 判決이 言渡되야 執行될때 까지 (1)의 制限에 依하여 被告人을 保護監視함을 無妨함.
4. 糧穀, 物價統制法規 違反事件은 公判期日에 開廷되는 다른 事件에 優先하여 審理함을

要함.

5. 本 訓令은 特別審判員에게 도 適用함.

1946年 10月 23日

軍政長官의 命令에 依하여

司 法 部 長 金 炳 魯

司法部長顧問少佐 존·다블유·칸날이

○ 法令第 33 號에 依한 歸屬財産의 管理事業에 關한 取調, 拘束 及 起訴

(司法部訓令 第 8 號, 1947. 10. 6)

第 1, 1947年 8月 日 行政府令 第 6 號(法令 第 33 號에 依한 歸屬財産의 管理事業에 關한 取調, 拘束 及 起訴)에 對하여 特히 注意함을 要함.

同令은 南朝鮮 過度政府의 檢察官, 警察官 及 其他 法律執行機關에서 1945年 12月 6日附 法令 第 33 號(朝鮮內 所在 日本人 財産權 取得에 關한 件)에 依한 歸屬財産의 管理事業에 關한 帳簿 其他 事項을 取調하며 此에 從事하는 管理人 又は 補助者를 拘束 又は 起訴하는 境遇에는 그 事業運營을 直接 監督하는 機關에게 豫先通知하는 義務를 規定하였음.

第 2, 檢察官은 行政命令 第 6 號에 依하여 通知를 受한 機關의 異議 有無에 不拘하고 取調, 拘束 又は 그 起訴를 續行할 수 있음. 그러나 法律執行機關은 그 異議를 書面에 記載하여 司法部長에게 具申함을 要함.

第 3, 從前에 發한 部令 又は 訓令으로서 本令과 抵觸되는 部令은 此를 廢止함.

第 4, 本 訓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1947年 10月 6日

軍政長官의 指示에 依하여

司 法 部 長 金 炳 魯

○ 法令第 2 號의 解釋 · 期間의 延長, 移轉登記, 一般禁止에 關하여

(管理令 第 1 號, 1945. 11. 14)

1. 法令 第 2 號第 3 條(가)項에 規定한 期限 60 日의 說明, 期限의 延長

(나) 法令 第 2 號第 3 條(다)項에 依하여 締結한 取引을 報告하는 賣買者는 軍政廳財産管理人

이 要求함과 같이 書面報告書의 提出을 잘못하고 있다. 또는 不完全한 缺陷있는 報告書를 提出하고 있다. 또는 陳述한 販賣契約에 表示한 期日後, 相當한 期間의 過誤를 記入할 報告書를 提出하고 있다.

(나) 法令 第2號第3條(나)項에 報告日時 60日이라는 語句는 財産管理인이 要求하는 在京城 軍政廳 財産管理인이 最後의 完全 正確한 報告書를 受領한 後 60日을 意味함으로 解釋함.

(다) 本令 第1條(나)項에 規定한 60日의 期間은 財産管理인의 其 記錄에 關한 事實의 注意에 依하여 如何한 時에라도 延長할 수 있음. 其 延期한 財産管理인은 取引 當事者에 相議할 必要는 없다. 取引財産은 如何한 時든지 財産管理인으로부터 當事者는 調査할 수 있음.

(라) 法令 第2號第3條(라)項에 記한 60日의 期間은 茲히 其 完了日時로부터 60日間으로 延長함.

2. 移轉登記, 一般禁止

(가) 法令 第2號에 規定한 範圍內的 財産移轉은 財産管理所 第104號 株式이 財産管理인으로부터 該當登記所에 受領되든지, 又は 受領될때 까지 登記所, 地方法院 其他에 登記치 못함. 第104號 株式의 受領이 없이 爾前, 爾後, 如何한 時에된 該財産의 登記는 無效한 登記로 認定함.

(나) 本法現의 趣旨을 完遂함에 必要한 範圍를 爲하여 本條規定 法令 第2號第3條(라)項의 條項에 對하여 一般的 禁止로 解釋함.

3. 施行期日

本令은 1945年 11月 14日 午前 零時부터 有效함.

1945年 11月 14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財産管理인

美國陸軍中佐 존 · 비 · 락부스리

○ 朝鮮軍政廳取得日本人財産의 報告及財産의 經營 · 占有及使用에 關한件

(財産管理令 第2號, 1945. 12. 14)

第1條(財産의 報告) 1945年 8月 9日 以後 日本 政府, 其 機關 또는 其 國民, 會社, 團體, 組合, 該政府의 其他 機關 或은 其 政府가 組織 또는 取締하는 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

으로 全部 또는 一部를 所有 또는 管理하는 全部의 種類의 財産 及其 收入에 對한 所有權은 1945年 12月 6日 發令 法令 第33號에 依하여 1945年 9月 25日附로 朝鮮軍政廳이 取得했음. 其 財産을 所有 또는 管理하는 者는 其 財産에 關한 報告書를 提出할 것. 報告書는 3通을 作成할 것. 報告書를 提出하는 者는 3通이 모다 正確한 것을 證明하고 當人이 居住하는 地方長官 앞으로 財産管理官에게 1945年 12月 31日까지 提出할 것. 報告書는 該當財産管理官의 受領한 時 或은 正確히 姓名을 記入하여 郵送하되 提出期日인 午前 零時 以前의 郵便日附 消印이 附한 時에는 提出한 것으로 取扱함. 報告書에는 下記 事項을 記載할 것.

(가) 報告書 提出者의 氏名, 住所, 國籍

(나) 報告財産과 報告書 提出者와의 關係

(1) 日本人이 前所有者인 境遇에는 財産所有權의 取得日時을 記入할 것.

(2) 日本人이 前所有者가 아닌 境遇에는 如何한 權限으로 其 財産을 所有 또는 管理하는가와 其日時, 委任狀이 有하면 其 寫本을 添附할 것.

(다) 財産의 前所有者氏名, 住所

(라) 報告財産이 不動産인 時에는 左記事項을 記入할 것.

(1) 不動産 各個의 位置

(2) 不動産 各個의 面積

(3) 不動産 各個에 定着하는 建物 及 附屬物의 記述

(4) 不動産 各個의 用途

(5) 賃借者가 有할 時에는 不動産 各個에 賃借人의 氏名

(6) 1945年 8月 9日 現在의 不動産 各個의 價格

(7) 不動産 各個를 登記한 登記所의 位置, 登記日時, 登記人氏名

(마) 報告財産이 有體動産인 時에는 下記事項을 記入할 것.

(1) 財産을 種別로 分別한 表

(2) 各種別의 財産에 記述, 位置, 價格 及 評價의 基礎

(바) 報告財産이 無體動産 及 無體動産의 表示物인 時에는 下記事項을 記入한 것.

(1) 各 財産의 詳細한 記述

(2) 各 財産의 位置

(3) 各 財産의 價格

(사) 1945年 8月 9日 以後의 財産에 關聯한 收入金 及 支出金

第2條(財産의 經營, 占有 及 使用) 全部의 工業, 金融, 商業, 農業, 住宅上 及 其他의 財産 또는 企業은 朝鮮軍政廳 管理人이

1. 財産管理官 或은

2. 其他 朝鮮軍政廳의 局課 또는 機關의 官吏를 通하여 認可한 現行 또는 將來에 協定 또는 手續下에 經營, 占有 또는 使用할 것.

第3條 (本令은 官報에 公布함과 同時에 效力을 有함.)

1945年 12月 14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財產管理人

陸軍步兵中佐 존·비·락푸스리

○ 在朝鮮美軍의 土地管理 (保管指令 第3號, 1945. 12. 19)

1. 在朝鮮美國陸軍部隊 또는 朝鮮軍政廳의 代行機關이 接收한 農地 此를 繼續하여 該部隊 또는 代行機關의 統治管理下에 置함. 如斯한 部隊 또는 代行機關은 該財產의 正當한 會計 保存 及 利用에 關하여 財產保管長에게 責任을 負게 함.
2. 前日 日本國民(天然人 또는 法人) 또는 日本政府 或은 其 代行機關이 所有하고 陸軍部隊 또는 朝鮮軍政廳의 代行機關에게 接收되지 않고 1945年 12月 6日附 法令 第33號에 依하여 其 所有權 授與의 結果 1945年 9月 25日附로 朝鮮軍政廳의 所有가 된 모든 農地는 新韓公司를 該財產의 保存, 利用 及 會計에 關하여 財產保管長의 責任機關으로 指名하고 此를 管理케 함.
3. 本 令은 官報에 公布 即時 效力을 生함.

1945年 12月 19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財產保管長

美國陸軍中佐 산·씨·렘슬티

公布年月日 1946年 1月 14日

○ 在朝鮮美軍의 土地管理責任 (財產管理令 第4號, 1946. 3. 8)

1. 朝鮮駐屯地 美國陸軍部隊 또는 軍政廳機關이 現在 徵收한 林野는 各其 管理를 繼續하며 財產管理官에 對하여 林野의 會計, 保存, 利用에 關한 責任을 負擔함.

2. 農務局(山林課)은 日本國民(自然人, 法人), 日本 政府 또는 其의 機關이 以前所有 하였던 것으로 現在 如何한 美國陸軍部隊나 軍政廳 機關에 徵收되지 않은 1945年 12月 6日 發令 法令 第33號에 依하여 軍政廳에 1945年 9月 25日附로 歸屬된 林野를 管理함. 農務局 山林課를 林野의 保存, 利用, 會計에 關하여 財産管理官의 責任代理機關으로 指定 함.
3. 本 令은 公布日時 10日後부터 有效함.

1946年 3月 8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財産管理官

美國陸軍中佐 존·비·락부스리

○ 既得된諸會社에 依한報告(財産管理令 第5號, 1946. 7. 21)

1. 目的

本令의 目的은 在朝鮮 美國陸軍軍政廳에서 取扱한 財産及 資産을 保持하기 爲한 適當한 管理를 實行하기 爲하여 法人, 會社, 産業社, 組合等의 資金의 總收入及 總支出에 重點을 둔 財産報告書의 提出을 要求함에 있음. 報告書는 英語로써 提出할事

2. 報告書 提出

(가) 每3個月의 報告書

(1) 軍政廳管理下에 運用되고 있는 法人, 會社, 産業社, 及 其他 組合等은 每季에 貸借對照表及 損益計算書를 各自의 部 又は 處長에게 提出하고, 各長은 每季의 報告日에 繼續한 第2月30日內에 各報告書의 謄本을 財産管理處에 提出할事, 每季의 報告日을 茲에 下와 如히 定함.

3月10日, 6月30日, 9月30日, 12月31日

(2) 如何한 部 又は 處에 對해서도 責任없이 一部分 財産管理人을 代理하며 軍政廳의 管理下에 運用되는 法人, 會社, 産業社, 及 其他 組合等은 每季에 貸借對照表及 損益計算書를 每季의 報告日에 繼續하는 第2月30日內에 財産管理人에 提出할事, 每季의 報告日을 茲에 下와 如히 定함.

3月31日, 6月30日, 9月30日, 12月31日

(3) 1道를 超越하여 事務所를 有하고 軍政廳을 爲하여 朝鮮人에 依해서 運用되는 法人, 會社, 産業社 及 其他 組合等은 每季의 貸借對照表及 損益計算書를 每季의 報告日에 繼續한 第2月30日內에 其 主事務所가 所在한 道의 道財産管理人에게 提出할事

(4) 1道內에만 所在한 法人, 會社, 産業社 及 其他組合等은 每月 貸借對照表를 法人, 會社, 産業社, 組合等이 그에 對하여 責任이 有한 道財産管理人 又は 部 或은 處가 定한 期日에 提出할事. 但 如何한 事가 有할 時라도 每月의 報告日에 繼續하는 翌月 20日을 超過치 못함. 月末의 營業結末日을 每月의 報告期日으로써 看做함.

(5) 法人, 會社, 産業社 又は 其他 組合等은 本令에 列記한 外에 報告日이 有할 時는 右 法人, 會社, 産業社 又は 其他 組合等은 同法人, 會社, 産業社 又は 其他 組合等이 其에 對하여 責任이 有한 道財産管理人 又は 部 或은 處에 其事實을 報告할 事 法人, 産業社, 組合이 其에 對하여 責任이 有한 道財産管理人 又は 部 或은 處는 如此한 他報告日을 利用할 權限이 有하며 財産管理處에 如此한 行動을 報告할事

(나) 每月의 損益計算書

(1) 모든 法人, 會社, 産業社 及 其他組合等은 每月 損益計算書를 法人, 會社, 産業社 又は 組合等이 其에 對하여 責任이 有한 道財産管理人 又は 部 又は 處, 又は 獨立한

代理店에 損出할事, 計算書는 法人, 會社, 產業社 又は 組合等の 運用에 對하여 責任이 有한 道財産管理人, 部, 處 或은 獨立한 代理店이 定한 期日에 提出할事. 但 如何한 事가 有할 時라도 每月 報告日에 繼續하는 翌月 20日을 超過치 못함.

(2) 모든 每月 損益計算書의 謄本을 每月 報告日에 繼續하는 其月 20日에 財産管理處에 提出할事.

3.

(가) 貸借對照表 指定期日의 營業結末에 있어서 法人, 會社, 產業社 或은 其他 組合等の 모든 資産 及 債務를 表示하는 記錄을 貸借對照表라 함.

(1) 資産은 正常的으로 債務의 返濟에 適用할 수 있는 又は 返濟를 條件으로 한 法人, 會社, 產業社 或은 其他組合等の 全財産을 意味함. 貸借對照表上의 資産은 不動産, 現金, 在庫品, 在荷, 受取 勘定等の 財源의 帳簿上의 價格 又は 仕入原價를 表示함.

(2) 帳簿의 借方은 債務를 意味함. 貸借對照表의 借方의 全負債 投資 及 超過 又は 不足額을 包含함.

(3) 貸借對照表는 原價에 있어서의 在庫品을 表示함. 在庫品의 現在의 近似한 市場價格은 貸借對照表에 對한 脚註로써 表示됨. 未使用 當座貸越 及 又は 貸方은 貸借對照表上의 脚註로써 表示함.

(나) 損益計算書, 指定期間中의 (例하면 1個月, 3個月等) 法人, 會社, 產業社, 組合等の 總收入 及 總支出에 關한 報告書를 損益計算書라 함.

(1) 總收入은 指定期間中에 (例하면 1個月, 3個月等) 法人, 會社, 產業社, 組合 등이 受取한 모든 資産에 影響을 미치는 項目을 意味함.

(2) 總支出은 指定期間中의 (例하면 1個月, 3個月等) 法人, 會社, 產業社, 組合等の 金錢上 又は 財産上의 모든 支出을 意味함.

4. 損失로 又は 財政적으로 不完全한 基礎우에 運用되는 企業

(가) 道財産管理人, 部, 處 又は 獨立代理店은 繼續적으로 2個月間 損失로써 又は 境界線上에서 運用되고 있는 法人, 會社, 產業社 或은 其他組合等の 名簿 2通을 法人, 會社, 產業社 又は 其他組合等の 어느 것을 存續 運用시킬가에 關한 (意見에 對한 明細한 理由書를 每件에 包含하여) 事件錄 及 推薦狀과 함께 財産管理處에 提出할事.

(나) 財産管理處는 個個의 法人, 會社, 產業社 又は 其他組合等の 存續 又は 解散에 關한 將來의 方針을 決定하기 爲하여 名簿錄, 事件錄 及 推薦狀을 國民經濟委員會를 통해서 軍政長官에 提出할事

5. 報告書 提出에 對한 最初期日

(가) 最初의 每期 貸借對照表는 1946年 6月 30日에 終結하는 3個月에 對해서이고 最初의 每月 貸借對照表는 1946年 6月 30日에 終結하는 1個月에 對해서임.

(나) 最初の 每期 損益計算書는 1946年 6月 30日에 絡結하는 3個月에 對해서이고 最初の 每月 損益計算書는 1946年 6月 30日에 終結하는 1個月에 對해서임.

1946年 7月 21日

財政管理人

美國輜重兵中佐 씨·에이취·멩가-

○ 漁船及其他船舶(管財令 第6號, 1946. 7. 25)

1. 目的

本令의 目的은 1945年 12月 6日附 法令 第33號에 依하여 軍政廳에 屬한 船舶에 對한 利用, 保管 及 責務에 關하여 朝鮮政府의 各機關 及 代行機關의 責任을 明白히 함에 있음.

2. 船舶의 報告

本令의 目的을 完遂하기 爲하여 軍政廳에 屬하는 船舶의 所有 及 管理에 關한 現存 事實을 確實히 함이 于先 必要함. 如斯한 事實을 確實히 하기 爲하여 報告書가 必要함. 報告書는 本令 末尾의 施行期日後 15日內에 其를 作成할事.

가. 報告를 要하는 該當者等 1945年 12月 6日附 法令 第33號에 依하여 朝鮮軍政廳에 屬한 船舶을 所有 또는 管理하는 모든 自然人 또는 法人 及 모든 行政部署 代理機關 及 補助機關은 日字를 附하고 署名한 報告書 3通을 提出할事.

나. 報告內容 此 報告書는 下記 內容을 包含할事

- (1) 報告者의 姓名 及 住所 及 報告船舶과의 關係 及 所有 또는 管理를 하게된 權利와 事由의 說明 及 其日字
- (2) 報告船舶의 種類, 其船型, 船名, 船號, 信號文字 及 船身長, 船身長이 20米突을 超過하는時는 積荷能力, 登記港口, 登記日, 現在 所在地, 使用目的
- (3) 報告船舶의 推測價格 及 1945年 8月 9日以後 此에 關한 收支內容, 支出의 目的 及 收入의 處置를 明示할事.
- (4) 報告者 또는 代理人이 報告船舶의 所有 또는 管理를 繼續할 意思의 有無

다. 報告書의 提出, 漁船에 關한 報告書는 朝鮮政府農務部(注意水產局)에 直接 또는 書留郵便으로 送附할事, 其他 船舶에 關한 報告書는 朝鮮政府運輸部(注意海運局)에 直接 又は 書留郵便으로 送附할事, 海運局 及 水產局은 順次로 此 報告書를 各道別로 2通式 分化하여 管財處에 提出할事.

3. 船舶의 處置

管財處(또는 其 指示下 道管財課)는 此 報告書를 接한 後 報告된 各船舶의 處置에 關

하야 軍政長官의 指示 及 其他 現存 法律要件에 應하야 此를 決定하고 또는 特別命令을 發令함. 處置命令은 報告者의 此 船舶의 所有 또는 管理의 繼續 又は 指定한時 及 場所에 서 指定한 者에게의 引渡에 關하야 規定함. 如斯한 命令에 關하야는 下記 一般原則을 遵守할事.

가. 모든 漁船은 朝鮮水產協會에 讓渡 又は 引渡하거나 또는 利用, 保管責務에 關한 其 命令에 依하야 運營할事

나. 모든 其他船舶은 運輸部海運局에 讓渡 又は 引渡하거나 또는 利用 保管責務에 關한 其命令에 依하야 運營할事

다. 管財處(又は 道管財課)는 各 處置命令書의 寫書를 朝鮮水產協會 또는 運輸部海運局에 送附할事

4. 罰 則

茲에 要求하는 報告를 하지 않거나 또는 管財處(又は 道管財課)의 要求에 依하야 船舶의 所有權을 讓渡 又は 引渡하지 않거나 又は 所有權을 證明하는 適當한 合法的 書類 업시 如斯한 船舶의 不法所有를 繼續하거나 又は 其 規定에 違反하거나 또는 本令의 意圖를 忌避할야고 하는 者는 法令 第33號 及 其他 適當한 法律 又は 規則에 違反함과 如히 處罰됨.

5. 命令範圍 制限

本令은 登記監査許可, 標印, 交通 及 通關手續, 關稅, 航空 及 此에 關하야 從事하는 船舶 又は 職員에 關한 同様の 事項에 關한 法律의 現存 及 將來의 要件에는 影響이 無함.

6. 施行期日

本令은 發布日로부터 10日後에 效力을 生함.

1946年 7月 25日

管 財 處

美國陸軍中佐 칼 - 스 · 에치 · 멘저 -

(註) 本令에 있어서 漁船이라 함은, 1934年 2月附 改正, 日本政府遞信省令 第4號第3條 (1935年 2月附 總令 第20號에 依하야 朝鮮에도 適用함)에 依하야 此를 規定함.

- (1) 專히 漁艦에 從事하는 船舶
- (2) 漁艦에 從事하는 船舶으로서 漁獲物의 保藏 又は 製造設備를 有한 것.
- (3) 專히 漁獲物 又は 其他 製品의 運搬用船舶
- (4) 專히 漁業에 關한 試驗調査 또는 練習 又は 漁業의 取締에 從事하는 船舶으로서 漁獲設備를 有한 것

○ 管財書式及報告書에關한件 (管財令 第 7 號, 1946. 12. 26)

1. 管財書式的 告示

管財書式 第 15 號, 第 16 號, 第 17 號, 第 18 號, 第 19 號, 第 20 號, 第 21 號는 下記와 如히 定함.

- (1) 管財書式 第 15 號 動產調書
- (2) 管財書式 第 16 號 歸屬不動產修繕報告書
- (3) 管財書式 第 17 號 重要支出承認申請書
- (4) 管財書式 第 18 號 重要資產狀況變更報告書
- (5) 管財書式 第 19 號 預金證書에 添付될 預金領收證書
- (6) 管財書式 第 20 號 損益表 及 貸借對照表
- (7) 管財書式 第 21 號 略式的 損益表 及 貸借對照表

軍政廳所屬部, 處, 局, 署, 課 及 其他 各代行機關, 補助機關 또는 所屬職員은 下記에 該當하거나 其他 必要한 時는 其所要事項을 當該書式에 依하여 調製 提出함을 要함.

2. 管財書式 第 15 號 動產調書

本書式은 모든 動產을 記述함에 使用함. 但 商用在庫品, 또는 賈買, 讓渡, 讓受 其他 處分에 依하여 取得된 商品을 除外함. 本書式은 下記 各 境遇에도 使用함.

- (1) 財產管理官의 許可를 得하여 資產을 移轉하는 境遇에 그 報告하는 書類. 但 上記 許可는 財產管理官의 正當한 權限內에 屬한 것에 限함.
- (2) 動產, 不動產을 修繕 또는 改良할 目的으로 財產管理官의 許可를 得하여 動產 또는 不動產을 使用할 境遇에 그 資產의 移轉을 報告하는 書類. 但 上記 許可는 財產管理官의 正當한 權限內에 屬한 것에 限함.
- (3) 財產管理官의 承認을 得하기 前에 移轉한 重要資產에 關한 報告書類
- (4) 財產의 狀態, 價値 及 性質上 運搬, 貯藏, 使用에 過分の 費用을 要하는 動產 其他 腐敗하기 쉬운 物品을 財產管理官의 許可를 得하여 賣却 또는 其他 方法으로 處分할 境遇에 當該資產의 移轉을 報告하는 書類. 但 以上 賣却 또는 其他 處分할 必要가 有할 財產에 對하여는 財產管理官으로 하여금 當該 處分이 適切하며 正當하다는 것을 認識시킬 수 있게 各其 適當한 記述과 充分한 理由를 記載함을 要함. 急迫한 事情에 依하여 財產管理官의 承認을 得하기 前에 賣却 또는 其他 處分을 할 境遇에는 當該財產이 그 狀態, 價値 及 性質上 運搬, 貯藏, 使用에 過分の 費用을 要하는 動產 其他 腐敗하기 쉬운 財產임으로 不得已 此를 承認前에 處置함이 適切하였다는 것을 財產管理官이 諒解할 수 있도록 適當한 記述과 充分한 理由를 記載함을 要함.

3. 管財書式 第 16 號 歸屬不動產修繕報告書

本書式은 歸屬不動產의 修理 又は 改良에 關한 報告에 使用함. 但 本報告書는 當該不動產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道財産管理官을 經由하여 軍政廳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4. 管財書式 第 17 號 重要支出承認申請書

本書式은 重要資産을 買入하기 爲하여 그 支出의 許可를 財産管理官에게 申請함에 使用함. 但 以上の 許可는 財産管理官의 正當한 權限內에 屬한 境遇에 限함.

5. 管財書式 第 18 號 重要資産狀況變更報告書

本書式은 重要 資産狀況의 變動에 關하여 財産管理官에게 報告함에 使用함. 吸收關係로 因한 變動도 本書式 例에 依함.

6. 管財書式 第 19 號 預金證書에 添付될 預金領收證書

本書式의 報告書는 預金者 及 當該預金을 受人하는 銀行의 雙方이 軍政廳 卽 財産管理官 預金口座의 入金別 預金證書(管財書式 第 14 號)와 同時에 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7. 管財書式 第 20 號 損益表 及 貸借對照表

法人, 會社, 組合 及 其他 歸屬事業機關은 그 所管部, 處, 代行機關等を 經由하여 本書式에 依하여 半年 及 1 年間의 損益表와 貸借對照表(管財令 第 5 號에 依하여 提出함을 要하는 報告書外에)를 管財令 第 5 號에 依하여 年 1 回 乃至 2 회에 報告期日 經過後 60 日 以內에 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8. 管財書式 第 21 號 略式의 損益表 及 貸借對照表

管財令 第 5 號에 依하여 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할 各 報告期의 諸損益表 及 貸借 對照表는 1946 年 12 月 31 日以後에는 本書式(略式의 損益表 及 貸借對照表)에 依함.

1946 年 12 月 26 日

軍政廳財産管理官

美國陸軍中佐 해리·더·베손

○ 各種歸屬事業體運營에 關한件(管財令 第 8 號, 1946. 12. 31)

第 1 款 目的 及 範圍

1. 本令은 諸歸屬事業體의 運營을 爲한 利用, 保管, 財務에 關한 朝鮮軍政廳所屬 各 行政官 各 機關 及 其 代行機關의 責任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2. 軍政廳財産管理官은 現在 其 管轄下에 있는 歸屬된 各種 企業體, 會社, 組合 其他 事業 團體 一切(工業, 鑛業, 商業, 請負業, 漁業, 銀行業, 農業, 林業, 金融業, 私立學校, 保險業, 運輸業, 船舶業)의 管理의 監督權(其 運營權과 其 管理者 乃至 最高責任者의 任

命權을 포함함)을 管財處 管財手續要領에 規定한 手續에 依하여 軍政廳 各部, 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所管顧問官에게 此를 移管함.

3. 軍政廳財產管理官이 一定한 歸屬事業體를 運營하기 爲하여 任命한 所管顧問官은 此에 對한 管理를 監督함.
4. 一定한 歸屬事業體를 監督하기 爲하여 任命된 所管顧問官은 軍政廳財產管理官에 對하여 當該事業體에 適當한 管理人の 任命, 原料의 獲得, 生產品의 處分(但 其處分은 關係指示 法令 規則等에 依함을 要함) 資産의 維持保存에 關한 財政上 其他의 責任을 負擔함
5. 未發見 又は 隱匿된 資産으로 認定되는 歸屬事業體에 對한 管理의 監督權도 判見되는데로 所管顧問官에게 移官됨.

第2款 財政上 其他의 責任, 既存法令의 改正

1. 財產管理官이 發한 歸屬事業體 乃至 歸屬財產管理關係의 管財令 手續要領 其他 命令指示 其他 注意事項에 依하면 報告書 提出 其他 事務處理에 對하여는 歸屬事業體 乃至 歸屬財產을 管理하는 軍政廳所屬部處 又は 其 代行機關이 此를 行하게 規定되었든바 茲에 此를 改正하여 今後 如斯한 事務處理는 前記 部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最高責任者 乃至 其所 管長官의 顧問官으로 하여금 此를 行케 함.

當該歸屬事業體 乃至 歸屬財產의 維持, 保存, 保護, 安全, 處理 乃至 管理에 對한 責任者는 如何한 境遇에도 當該顧問官이 此에 當함.

本管財令의 各 規定은 既往 軍政廳所屬 部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管轄下에 있는 各 歸屬 事業體 乃至 歸屬財產의 管理에 對하여 此를 適用함.

第3款 文書及 會計

1. 서울市 財產管理官은 本令 適用上 此를 道財產管理官으로 看做함.
2. 軍政廳所屬 部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責任顧問官 監督下에 運營되고 있는 歸屬事業體로써 其 位置가 事實上 1道에만 所屬한 境遇에는 管財令 第5號에 依하여 各其 文書와 會計書類를 適當히 備置하고 所要報告書 5通을 所管顧問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當該顧問官은 其中 3通을 道財產管理官에게 提出하고 1通은 軍政廳所屬 部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所管顧問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道財產管理官은 언제든지 所要報告書 2通을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3. 軍政廳所屬 部處 又は 代行機關의 責任顧問官 監督下에 運營되고 있는 歸屬事業體로서 其 事務所가 2道以上 又は 全國에 亘한 境遇에는 各其 文書와 會計書類를 適當히 備置하고 所要報告書 2通을 所管顧問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所管顧問官은 언제든지 其中 1通을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4. 貸借對照表, 損益表, 固定財產購入承認申請書, 固定資産狀況變更報告書 其他 報告書는 管財令 第7號 又は 次後 制定할 管財令에 規定한 書式에 依하여 提出함을 要함.

5. 軍政廳財產管理官은 文書 及 會計書類에 對한 調査 乃至 監査의 權利가 有하며 必要에 應하여 追加 報告를 請求할 權利도 有함.

第 4 款 固定資產費 支出

1. 固定資產費를 支出할時는 事前에 軍政廳財產管理官의 承認書를 得함을 要함. 이러한 境遇에는 當該軍政廳所屬部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責任顧問官을 經由하여 軍政廳財產管理官에게 申請書 3 通을 提出함을 要함.

2. 當該歸屬事業體의 位置가 1 道內에 局限한 境遇에 固定資產費 支出申請書는 下記 手續을 取함을 要함.

當該歸屬事業體의 所管責任顧問官은 固定資產費支出申請書 5 通을 道財產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道財產管理官은 上 申請書 4 通을 當該道廳의 所管局 又は 其 代行機關을 管轄하는 軍政廳의 部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所管顧問官에게 自己의 推薦狀을 添附하여 提出함을 要함. 軍政廳의 所管部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顧問官은 上 申請書 3 通을 自己의 推薦狀을 添附하여 軍政廳財產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3. 固定資產費를 本令 施行日전에 支出한 境遇에는 所管顧問官이 本令 第 4 款 第 1 項第 2 項에 依하여 所要事項을 報告함을 要함. 當該顧問官은 언제든지 其中 1 通을 軍政廳財產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1945 年 8 月 9 日以後 本令 施行日까지 固定資產費를 支出한 事實이 無하면 無하다는 報告를 提出함을 要함.

4. 여기의 「固定資產費」라는 用語는 定着的 恒久的 固定資產을 取得 又は 非常修繕 又は 維持하기 爲한 現金支出을 意味함.

5. 軍政廳財產管理官이 固定資產費 支出을 承認함에는 其의 合法的 權限內에서만 此를 行함.

第 5 款 運營의 廢止

1. 歸屬事業體 及 歸屬財產의 諸運用に 對한 全責任者는 前述한 바와 如히 所管顧問官이 此에 當함.

2. 軍政廳所屬部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所管顧問官이 歸屬事業體의 一部 又は 全部의 運營을 廢止하여야 할 것으로 認定할 時에는 建議書 5 通을 作成하여 此를 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軍政廳財產管理官은 審査와 意見을 求하기 爲하여 여기 對한 同意書를 此에 添附하여 中央經濟委員會에 提出함을 要함. 軍政廳財產管理官은 如此히 한後에 正當한 權限內에서 適當히 此를 處理함.

3. 歸屬事業體의 全部 又は 一部의 運營廢止에 關한 申請手續은 本令 第 4 款에 規定한 歸

屬事業體의 位置가 1道內에 局限한 境遇의 固定資産購入費申請 手續方法에 準함.

4. 所管責任顧問官은 資産의 賣却 又は 減損, 無承認請算, 不當支拂, 不當移轉을 防止하기 爲하여 歸屬企業體의 運營을 極力 保護하며 注意함을 要함.

5. 歸屬事業體 運營의 廢止를 軍政廳財産管理官이 承認할時는 當該歸屬事業體의 重役會長乃至 管理人은 親히 此旨를 道財産管理官에게 報告하되 萬若 全國에 亘하여 運營되고 있는 歸屬事業體인 境遇에는 當該歸屬事業體 全部 又は 一部에 對한 運營을 廢止케 하는 指令書를 受하기 爲하여 此旨를 軍政廳財産管理官에게 報告함을 要함.

重役會長, 管理人 及 所管顧問官은 運營을 秩序있게 廢止케 하는 責任이 有함.

軍政廳財産管理官이 運營 廢止를 함에는 其의 合法的 權限內에서 此를 行함.

6. 本 管財令 施行日前에 發生한 歸屬事業體 又は 其 一部分의 運營廢止에 關한 報告書는 本令 第3款의 規定에 依하여 道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하고 當該歸屬事業體의 運營이 全國에 亘한 境遇에는 所管顧問官이 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其中 1通은 如何한 境遇든지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1945年 8月 9日 以後 本令 公布日까지 運營을 廢止한 事實이 無한 時는 無하다는 報告書를 提出함을 要함.

第6款 利 益

1. 法人會社組合 其他 歸屬事業體의 全利益은 軍政廳財産管理官의 別途 指示가 有할 때까지 此를 處分함을 不得함.

2. 軍政廳財産管理官의 承認書를 得하기 前에는 利益配當, 利益配當 目的의 株券發行, 賞與金, 給料, 贈與 其他 類似한 支拂, 處理等을 行함을 不得함.

軍政廳財産管理官이 承認함에는 其의 正當한 權限內에서 此를 行함.

3. 本令 公布前에 決定 乃至 支拂한 利益配當, 利益配當目的의 株券發行, 賞與金, 給料, 贈與 其他 類似한 支拂等에 關한 報告書는 本令 第3款의 規定에 依하여 所管顧問官이 道財産管理官에게 此를 提出함을 要함. 但 當該歸屬事業體의 運營이 全國에 亘한 境遇에는 此 報告書를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1945年 8月 9日 以後 本管財令 公布日까지 歸屬事業體에 關하여 前記 事實이 無한 時는 無하다는 報告書를 提出함을 要함.

4. 如何한 種類의 歸屬事業體의 管理人, 責任者 其他 職員도 自己 又は 第3者를 通하여 當該事業體에 屬하는 部類의 去來關係에 參與하거나 又は 此에 依한 利得 又は 利益을 取得함을 不得함. 但 軍政廳財産管理官에게 其 去來할 것의 內容及 性質을 明示하여 事前의 其의 許可書를 得한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함.

第7款 吸 收 關 係

1. 所管責任顧問官이 運營하고 있는 歸屬事業體에 所屬하는 機械 乃至 施設을 다른 歸屬事

業體에서 使用하는 것이 朝鮮을 爲하여 가장 有利하다고 決定할 時는 下記 手續을 取함을 要함.

- (1) 機械와 施設을 所有하는 歸屬事業體의 管理人 乃至 重役會長은 當該機械 又は 施設의 價格을 決定하기 爲하여 鑑定을 하게 하여야 함. 機械 又は 施設을 引繼하려는 歸屬事業體의 管理人 乃至 重役會長도 如斯한 機械 又は 施設의 價格에 關하여 鑑定을 받어야 할 所管責任顧問官은 獨自의 立場에서 鑑定을 할 責任이 有함.

右 鑑定書等은 各其 軍政廳財產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軍政廳財產管理官은 其의 合法的 權限內에서만 如斯한 使用權移轉申請에 對하여 各其承認 又は 不承認을 決定하고 또 其 使用에 對하여 各其 賃借料 其他 約定 乃至 條件을 決定함.

- (2) 軍政廳財產管理官의 承認書를 得하여 機械 其他 施設을 引繼 所管하게 된 責任顧問官은 即時 移轉物品名, 移轉期日 其의 前所在場所 及 現所在場所에 關한 報告書를 道財產管理官에게 提出하되 全國에 亘하여 運營하는 歸屬事業體에 關하여는 此를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如何한 境遇에라도 1 通은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 (3) 如此한 使用權 變更申請에 關한 承認申請書 3 通을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右 申請에 關한 手續은 本令 第 4 款에 規定한 固定資產 購入申請書手續에 準함.

- (4) 機械 乃至 施設을 引受한 歸屬事業體는 當該機械 乃至 施設의 使用에 對하여 受諾한 使用料를 支拂할 準備를 要함.

- (5) 前記 機械 乃至 施設에 關하여 어떠한 種類에 變更이라도 하려면 事전에 軍政廳財產管理官의 承認書를 得함을 要함. 此에 關하여는 管財令 第 7 號에 規定된 管財書式을 使用함.

當該使用의 變更은 軍政廳財產管理官의 正當한 權限內에 屬한 것에 限함.

軍政廳財產管理官은 管理人 乃至 重役會長이 去來關係로 2 種會社를 代表하는 等の 利害關係者로서 雙方代理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注意함이 必要함.

2. 本令 發令前에 機械 乃至 施設을 購買接受 賣渡移轉 乃至 移動한 歸屬事業體는 其 承認의 有無를 莫論하고 本令 第 3 款 規定에 準하여 其 事實을 明細히 報告함을 要함.

如何한 境遇라도 1 通을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所管顧問官은 當該報告書 提出에 關하여 責任이 有함.

1954 年 8 月 9 日以後 本令 公布日까지 當該事實이 無한 時는 無하다는 報告書를 提出함을 要함.

第 8 款 管理人 乃至 重役會會長의 保證金

特定한 歸屬事業體를 運營하기 爲하여 軍政廳財產管理官이 任命한 軍政廳所屬의 各部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顧問官은 管財處手續要領에 準하여 그가 任命한 管理人 乃至 重役會會長

에게 保證金을 請求함을 要함.

第9款 報告期日

所要報告 全部는 本令 公布日以後 30日以內에 書面으로 提出함을 要함. 後에 새로 報告를 要하는 事實이 發生할 때마다 10日以內로 此를 提出함을 要함. 所管顧問官은 如何한 境遇에도 當該報告書 提出과 그 內容의 正確性에 對하여 責任이 有함.

軍政長官 指令에 依하여 1946年 12月 31日

軍政廳財產管理官

美國陸軍中佐 해리·씨·비손

○ 管財令 第8號의 改正 (管財令 第9號, 1947. 3. 31)

管財令 第8號는 茲에 改正하여 下와 如히 定함.

各種 歸屬事業體運營에 關한件

第1款 目的及範圍

1. 本令은 各種 歸屬事業體의 運營을 爲한 利用, 保管, 財務에 關한 朝鮮軍政廳所屬 各行政官, 各機關 及其 代行機關의 責任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2. 軍政廳財產管理官은 現在 其管轄下에 있는 歸屬된 各種 企業體, 會社, 組合 其他 事業體 一切 (工業, 鑛業, 商業, 請負業, 漁業, 銀行業, 農業, 林業, 金融業, 私立學校, 保險業, 運輸業, 船舶業等等)의 管理權 (管理人 乃至 最高責任者의 任命權을 包含) 及 運營權을 管財廳管財手續要領에 規定한 手續에 依하여 軍政廳 各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의 所管長官에서 此를 委囑함.
3. 各種 歸屬事業體의 管理權은 軍政廳財產管理官이 一定한 歸屬事業體를 運營하기 爲하여 委囑한 所管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의 各長官이 此를 行使함.
歸屬財產에 關한 管理 乃至 監督, 法令, 指示 其他 任命에 關한 一切 事項은 所管顧問官의 同意書를 得함을 要함.
4. 一定한 歸屬事業體의 管理를 監督하기 爲하여 委囑된 所屬長官은 軍政廳財產管理官에 對하여 當該事業體에 適當한 管理人의 任命, 原料의 獲得, 生產品의 處分 (但其 處分은 關係指示, 法令, 規則等에 依함을 要함) 資產의 維持保存에 關한 財政上 其他의 責任을 負擔함)
5. 未發見 又は 隱匿된 資產으로 認定되는 歸屬事業體에 對한 管理의 監督權도 判明되는대로 所管長官에게 移管됨.

第2款 財政上 其他의 責任 既存法令의 改正

1. 軍政廳財産管理官이 發한 歸屬事業體 乃至 歸屬財産管理關係의 管財令, 管財手續要領 其他命令, 指示 及 注意事項中에 歸屬事業體 乃至 歸屬財産을 監督하는 軍政廳所屬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이 行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全部 前記 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의 長官이 其所管顧問官의 同意書를 得하여 此를 行하기로 茲에 改正함.

當該長官은 如何한 境遇에도 當該歸屬事業體 乃至 歸屬財産의 維持, 保存, 保護, 安全, 處理 乃至 管理에 對한 責任者로 看做함.

本管財令의 各規定은 既往 軍政廳所屬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의 監督下에 있는 各種 歸屬事業體 乃至 歸屬財産의 管理에 對하여 此를 適用함.

第3款 文書 及 會計

1. 서울市 財産管理官은 本令 適用上 此를 道財産管理官으로 看做함.
2. 軍政廳所屬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의 責任官 監督下에 運營되고 있는 歸屬事業體로써 其位置가 事實上 1道에만 所屬한 境遇에는 管財令 第5號에 依하여 各其 文書 及 會計書類를 適當히 備置하고 所要報告書 4通을 所管監督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當該監督官은 其中 2通을 道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하고 1通은 軍政廳所管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의 所管長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道財産管理官은 언제든지 所要報告書 1通을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3. 軍政廳所屬部, 處 又は 代行機關의 責任官 監督下에 運營되고 있는 歸屬事業體로써 其事務所가 2道以上 乃至 全國的으로 所在 運營하고 있는 境遇에는 各其 文書와 會計書類를 適當히 備置하고 事業體 全般에 關한 所要報告書 2通을 所管監督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所管監督官은 언제든지 其中 1通을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4. 貸借對照表, 損益表, 固定財産費 支出承認申請書, 固定資産狀況變更報告書, 其他 報告書는 管財令 第7號 又は 次後 制定할 管財令에 規定한 書式에 依하여 提出함을 要함.
5. 軍政廳財産管理官은 文書 及 會計書類에 對한 調査 乃至 監査의 權利가 有하며 必要에 應하여 追加報告를 請求할 權利도 有함

第4款 固定資産費 支出

1. 固定資産費를 支出할 時는 事前에 軍政廳財産管理官의 承認書를 得함을 要함. 이러한 境遇에는 當該軍政廳所屬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의 責任官을 經由하여 軍政廳財産管理官에게 申請書 3通을 提出함을 要함.
2. 當該歸屬事業體의 位置가 1道內에 局限된 境遇에 固定資産費 支出申請書는 下記手續을 取함을 要함.

當該歸屬事業體의 所管責任官은 固定資産費 支出申請書 5通을 道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함

을 포함.

道財産管理官은 右 申請書 4 通을 當該道廳의 所管局 又は 其代行機關에 該當하는 軍政廳의 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의 所管長官에게 自己의 意見書를 添附하여 提出함을 要함.

軍政廳의 所管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의 長官은 右 申請書 3 通을 自己의 意見書를 添附하여 軍政廳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3. 固定資産費를 本令 施行日前에 支出한 境遇에는 所管長官이 本令 第 4 款 第 1 項 第 2 項에 依하여 所要事項을 報告함을 要함.

當該長官은 언제든지 其中 1 通을 軍政廳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1945 年 8 月 9 日以後 本令 施行日까지 固定資産費를 支出한 事實이 無하면 無하다는 報告書를 提出함을 要함.

4. 여기의 固定資産費 支出이라 함은 定着的 恒久的 固定資産을 取得 又は 非常修繕 乃至 維持하기 爲한 現金支出을 意味함.

5. 軍政廳財産管理官이 固定資産費 支出을 承認함에는 其의 正當한 權限內에서 此를 行함.

第 5 款 運營의 廢止

1. 歸屬事業體 及 歸屬財産의 諸運用に 對한 全責任者는 前記와 如히 所管長官이 此에 當함.

2. 軍政廳所屬部, 處 又は 其代行機關의 所管長官이 歸屬事業體의 一部 又は 全部의 運營을 廢止하여야 할것으로 認定할 時에는 建議書 5 通을 作成하여 此를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軍政廳財産管理官은 審査와 意見を 求하기 爲하여 여기 對한 同意書를 此에 添附하여 中央經濟委員會에 提出함을 要함. 軍政廳財産管理官은 如此히한 後에 正當한 權限內에서 適當히 此를 處理함.

3. 歸屬事業體의 全部 乃至 一部의 運營廢止에 關한 申請手續은 本令 第 4 款에 規定한 歸屬事業體의 位置가 1 道內에 局限한 境遇의 固定資産費 支出申請手續 方法을 準用함.

4. 所管責任官은 資産의 賣却 又は 減損, 無承認清算, 不當支拂, 不當移轉을 防止하기 爲하여 恒常 歸屬事業體의 運營을 極力 保護하며 注意함을 要함.

5. 歸屬事業體 運營의 廢止를 軍政廳財産管理官이 承認한 時는 當該歸屬事業體의 重役會長 乃至 管理人은 當該歸屬事業體의 全部 乃至 一部에 對한 運營을 廢止케 하는 指令書를 受하기 爲하여 親히 此旨를 道財産管理官에게 報告하되 萬若 全國에 亘하여 運營되고 있는 歸屬事業體인 境遇에는 此旨를 軍政廳財産管理官에게 報告함을 要함.

重役會長, 管理人 及 所管長官은 運營을 秩序있게 廢止케 하는 責任이 有함.

軍政廳財産管理官이 運營 廢止를 함에는 其의 正當한 權限內에서 此를 行함을 要함.

6. 本管財令 施行日前에 發生한 歸屬事業體의 全部 又は 其 一部分의 運營 廢止에 關한 報

告書는 本令 第3款의 規定에 依하여 所管長官이 道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하고 當該歸屬事業體의 運營이 全國에 亘한 境遇에는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其中 1通은 如何한 境遇든지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1945年8月9日以後 本令 公布日까지 運營함을 廢止한 事實이 無한 時는 其認可의 有無를 不問하고 無하다는 報告書를 提出함을 要함.

第6款 利 益

1. 法人, 會社, 組合 其他 歸屬事業體의 全利益은 軍政廳財産管理官의 別途 指示가 有할 때 까지 各其 此를 積立함을 要함.

2. 軍政廳財産管理官의 承認書를 得하기 前에는 利益配當, 利益配當目的의 株券發行, 賞與金 給料, 贈與, 其他 類似한 支拂 乃至 處分等を 行함을 不得함.

軍政廳財産管理官이 此를 承認함에는 其의 正當한 權限內에서 此를 行함을 要함.

3. 本令 公布前에 決定 乃至 支拂한 利益配當, 利益配當目的의 株券發行, 賞與金, 給料, 贈與, 其他 類似한 支拂等에 關한 報告書는 本令 第3款의 規定에 準하여 所管長官이 道財産管理官에게 此를 提出함을 要함. 但 當該歸屬事業體의 運營이 全國에 亘한 境遇에는 此 報告書를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1945年8月9日以後 本管財令 公布日까지 各歸屬事業體에 關하여 前記 事實이 無한 無하다는 報告書를 提出함을 要함.

4. 歸屬事業體의 管理人, 責任者 其他 職員은 自己 又は 他人을 通하여 當該事業體에 屬하는 部類의 去來關係에 參與하거나 又は 此에 依한 利得 乃至 利益을 取得함을 不得함. 但 軍政廳財産管理官에게 其去來할 것의 內容 及 性質을 明示하여 事前에 其의 許可書를 得한 境遇에는 此 限에 不在함.

第7款 吸 收 關 係

1. 所管責任官은 運營中에 있는 歸屬事業體에 所屬하는 機械 乃至 施設을 他歸屬事業體에서 使用하는 것이 朝鮮을 爲하여 가장 有利하다고 決定할 時는 下記 手續을 取함을 要함.

(1) 機械와 施設을 所有하는 歸屬事業體의 管理人 乃至 重役會長은 當該機械 又は 施設의 價格을 決定하기 爲하여 鑑定을 하게 하여야 함. 機械 又は 施設을 引繼하려는 歸屬事業體의 管理人 乃至 重役會長도 如斯한 機械 又は 施設의 價格에 關하여 鑑定을 받게 하여야 함. 所管責任官은 獨自의 立場에서 鑑定을 할 責任이 有함.

右 鑑定書等은 各其 軍政廳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軍政廳財産管理官은 茲에 其 正當한 權限內에서 如斯한 使用權 移轉申請에 對하여 各其 承認 又は 不承認을 決定하고 또 其使用에 對하여 各其 賃借料 其他 約定 乃至 條件을 決定함.

(2) 機械 其他 施設을 引繼所管하게 된 責任官은 軍政廳財産管理官의 承認書를 得하는데

로 即時 移轉物品名, 移轉期日, 其의 前所在場所 及 現在場所에 關한 報告書를 道財產管理官에게 提出하되 全國에 亶하여 運營하는 歸屬事業體에 關하여는 此를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如何한 境遇에라도 其中 1通은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3) 如斯한 使用權의 變更을 하려함에는 當該承認申請書 3通을 軍政廳管財處에 提出함을 要함. 右申請에 關한 手續은 本令 第4款에 規定한 固定資產費 支出申請書手續에 準함.

(4) 機械 乃至 施設을 引繼한 歸屬事業體는 當該機械 乃至 施設의 使用에 對하여 受諾한 使用料를 支拂할 義務가 有함.

(5) 前記 機械 乃至 施設에 關하여 使用의 變更을 할려는 時는 事전에 軍政廳財產管理官의 承認書를 得함을 要함. 此에 關하여는 管財令 第7號에 規定된 管財書式을 使用함. 當該使用의 變更은 軍政廳財產管理官의 正當한 權限內에 屬한 것에 限함. 軍政廳財產管理官은 管理人 乃至 重役會長等이 去來關係가 有한 2種 會社를 代表하는 等々の 利害關係者로서 雙方代理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注意함이 必要함.

2. 本令 發令前에 機械 乃至 施設을 購買, 接受, 買渡, 移轉 乃至 移動한 歸屬事業體는 其 承認의 有無를 不問하고 本令 第3款 規定에 準하여 其事實을 明細히 報告함을 要함. 如何한 境遇라도 其中 1通은 軍政廳財產管理官에게 提出함을 要함.

所管 1長官은 當該報告書 提出에 關하여 責任이 有함.

1945年 8月 9日以後 本令 公布日까지 當該事實이 無한 時는 無하다는 報告書를 提出함을 要함.

第8款 重役會會長 乃至 管理人의 保證金

一定한 歸屬事業體를 運營하기 爲하여 軍政廳財產管理官이 委囑한 軍政廳 各部, 處 又は 其 代行機關의 長官은 管財處手續要領에 關하여 管理人 乃至 重役會會長에게 保證金を 請求함을 要함.

第9款 報告期日

所要報告 全部는 本令 公布日以後 30日以內에 書面으로 提出함을 要함. 後에 새로 報告를 要하는 事實이 發生할 때마다 10日以內로 此를 提出함을 要함. 所管長官은 如何한 境遇에도 當該報告書 提出과 그 內容의 正確性에 對하여 責任이 有함.

第10款 效力發生日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發生함.

1947年 3月 31日

軍政長官指令에 依하여

軍政廳財產管理官

陸軍中佐 해리·떠·삐숍

- 軍政廳財產管理官이 株式其他利權을 所有한 朝鮮內에서 創立된 各種法人運營에 關한 件 (南朝鮮過渡政府 管財令 第10號, 1947.12.6)

第1款 目的 及 範圍

1. 本令은 「朝鮮內에서 創立된 法人管理에 關한件」이라 附題한 1947年 9月 17日附 軍政長官指示를 完遂하여 其指示의 趣旨의 達成을 期함을 目的으로 함.
2. 本令은 1945年 12月 6日附 法令 第33號에 依하여 株式 其他 利權이 軍政廳에 歸屬된 朝鮮內에서 創立된 法人에 適用함. 但 軍政廳財產管理官 又は 其 上部의 指示에 依하여 特히 除外된 法人은 此限에 不在함.
3. 軍政廳財產管理官은 當該法人의 準據法令, 定款, 細則 及 軍政廳管財處 手續規定等에 依하여 正當히 被選되여 資格이 賦與된 理事會에 當該法人에 對한 管理權을 委囑함.

第2款 財政上 其他責任

1. 1947年 3月 31日附 管財令 第9號에 依하여 當該法人의 管理를 現在 委囑받고 있는 南朝鮮過渡政府 部處 乃至 其他 代行機關의 所管長官에게, 軍政廳財產管理官의 代理人으로 써, 株主總會에서 歸屬株式 其他 利權에 對한 議決權뿐 아니라 當該歸屬株式 其他 利權에 對한 各種 株主權의 行使를 茲에 委囑하며, 또 此에 對한 責任을 負擔케 함. 當該長官은 軍政廳財產管理官에게 如斯한 權利의 行使와 當該權利에 隨伴한 業務履行에 對하여 直接 財政上 其他 責任을 負擔함.
2. 當該長官이 歸屬된 株式 其他 利權에 對하여 議決權을 行使하는 時는 所管顧問官의 同意書를 得함을 要함.

第3款 管理權의 移管

理事會에 對한 法人管理權의 移管事務는 一定한 順序에 依하여 行함을 要함.

法人管理權을 理事會에 委囑하기 前에 下記 手續을 取함을 要함.

1. 軍政廳財產管理官이 設定한 既存 手續規定에 依하여 各其 法人에 關한 豫備調査를 行할事
2. 軍政廳財產管理官의 召集에 依하여 株主總會를 開催할事
3. 被選된 理事로 理事會를 組織하고 理事會의 資格을 賦與할事
4. 當該法人의 管理權은, 軍政廳財產管理官이 書面에 依하여 當該理事會에 正式으로 移管함.

第4款 記錄 及 報告書

1. 本令에 依하여 法人의 管理를 委囑받은 理事會는 下와 如한 記錄 及 會計文書에 作成保管의 責任과 報告書 作成의 責任을 負擔함.

(1) 朝鮮現行法令, 當該法人의 準據法令, 定款 乃至 細則에 依하여 要求하는 記錄 會計

文書 及 報告書 .

(2) 軍政廳財產管理官 其他 所管當局이 이미 要求한 又は 將次 要求할 記錄, 會計文書 及 報告書

2. 當該理事會는 軍政廳財產管理官에게 其의 指令, 指示에 依하여 要求하는 各種 報告書를 提出함을 要함. 但 當該法人의 事業을 健全히 運行 維持할 能力이 有함을 證明하는 特定 法人에 對하여 當該法人의 株主權의 行使를 委囑받은 當該長官의 所管顧問官의 同意를 得한 建議에 依하여 軍政廳財產管理官은 當該 所要報告書 提出回數를 減少함을 得함.

3. 軍政廳財產管理官은 如斯한 法人에 對하여 其가 必要로 生覺하는 監察과 會計檢査를 行할 權限을 保有함.

如斯한 權限은 軍政廳財產管理官 又は 本令 第2款 第1項에 依하여 株主權 行使를 委囑 받은 當該長官 乃至 所管顧問官이 此를 行使함을 得함.

第5款 特殊管理

1. 本令에 依하여 法人管理를 委囑받은 理事會는 軍政廳財產管理官의 事前 認可書를 得하지 않고 下記 行爲를 行할 權限이 無함.

(1) 固定資產費 支出을 爲한 債務의 負擔 또는 固定資產費 支出

(2) 運營中止 又は 運營方式의 變更

(3) 配當金, 賞與金 又は 其他 形式으로 利益金의 配當 乃至 支拂 又は 當該許可行爲

(4) 如何한 性質의 것을 莫論하고 贈物 乃至 寄附金의 支出 又は 當該許可行爲 又は 法人基金을 業務外에 貸付하는 行爲

(5) 接待費 支出 乃至 當該許可行爲, 但 此點에 關한 軍政長官 其他 所管當局이 發布한 既存指示 所定條件에 依한 境遇는 此限에 不在함.

(6) 固定資產의 取得 又は 處分行爲

(7) 合同, 併合, 解散 또는 當該法人의 組織 乃至 細則의 變更

(8) 理事, 監事 又は 管理人的 俸給 又は 手當金의 設定 乃至 其支拂

2. 前項 各號에 該當하는 行爲의 認可를 申請할 時는 歸屬企業體 其他 軍政廳財產管理官이 利權의 一部를 所有한 企業體의 管理를 爲하여 設定한 軍政廳管財處 手續規定에 依하여 行함을 要함.

第6款

本令의 規定에 依하여 法人管理權을 正式으로 理事會에 委囑할 時까지는 當該法人은 管財令 第9號에 依하여 兩朝鮮過渡政府 所管部處長 其他 代行機關의 長官이 軍政廳財產管理官의 代理人으로 所管顧問官의 同意下에 此를 繼續 管理함을 要함.

第 7 款 施 行 期 日

本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發生함.

1947 年 12 月 6 日

軍政長官의 指示에 依하야

軍政廳財產管理官
美 國 陸 軍 中 佐

해 리 · 띠 · 벵 슝

○ 管財令 第 4 號改正의 件 <管財令 第 11 號, 1948. 5. 4 >

1. 在朝鮮 美國陸軍部隊 또는 軍政廳機關에게 徵發된 林野의 管理權은 當該徵發部隊 乃至 當該 徵發機關이 繼續하여 此를 行使한. 但, 當該 部隊 乃至 當該 機關은 軍政廳 財產管理官에 對하여 當該 林野에 關한 會計, 保存及 利用을 適切히 行할 責任을 負擔함
2. 既往日本國人(自然人 또는 法人) 日本政府 또는 當該政府의 代行機關이 所有하였던 林野로써 1945年 12月 6日 附法令 第 33號에 依하여 1945年 9月 25日 附로 軍政廳에 歸屬된 林野中 現在 美國陸軍部隊 또는 軍政廳機關에게 徵發되지 안은 林野에 對한 管理權은 軍政廳 財產管理官이 當該財產에 對한 會計, 保存, 利用事務의 代行責任官으로 委囑한 農務部長이 所管顧問官의 諮問及 同意下에 此를 行使함
3. 前項 歸屬財產을 保護乃至 保存함에 必要한 資金 또는 優良한 造林事業을 營爲함에 必要한 資金은 農務部長이 歸屬林野의 木材 其他 生産品販賣에서의 年收入金及 歸屬土地에서 收入된 賃貸料中에서 所管顧問官의 同意를 得하여 此를 充當함. 但, 主要한 支出費에 對하여는 事전에 軍政廳財產管理官의 承認을 得함을 要함
4. 農務部長은 該當 3箇月 會計期間의 收入支出에 關한 會計文書를 道別로 作成하여 每 3箇月 會計期 終了後 45日 以內로 軍政廳財產管理官에게 提出함을 準함.
同時에 歸屬林野에 對한 重要한 林業活動에 關한 說明書와 營林, 木材販賣及 火災, 害蟲, 盜難等에 對한 防疫處置之 實效等々에 關한 經過報告書를 每 3箇月 期間後 60日 以內에 作成함을 要함
5. 歸屬林野의 收入金은 其一部라도 上記 第 3項에 所定한 目的外에 使用함을 不得함
6. 本令은 1946年 3月 8日 附 管財令 第 4號를 代身하여야 함. 公布日부터 其效力이 發生함.

1948年 5月 4日

軍政長官指令에 依하여

軍政廳財產管理官
美國陸軍中佐

해리 · 띠 · 뵘

○ 夏穀收集 (中央食糧規則 第 1 號 1946. 5. 29)

1. 目 的

本規則의 目的은 1946年度 夏季收穫期부터 秋收期까지의 4個月間 朝鮮人에 必要한 食糧을 確保하기 爲하여 夏穀收集에 關한 國家計劃을 完備함에 잇슴

2. 範 圍

約 2,094,830 石의 夏穀(주로 政府에 依하여 農夫로부터 公正及 正當한 價格으로 購買된)을 收集함을 目標로 하며 如斯히 收集된 夏穀은 政府統制系統을 通하여 朝鮮人에게 限定 配給하라함. 中央食糧行政官은 收集計劃遂行에 關한 全般的 統轄及 指示의 責任이 有함. 道知事는 各道內에서의 計劃의 成功的 遂行에 對하여 責任이 有함. 農會, 物價調整官, 道食糧配給所及 朝鮮政府의 모든 政治機關, 代行機關及 補助機關은 此計劃遂行을 援助, 協力할 事

3. 一般職務及 職能

左記 一般職務及 職能이 列記代行機關에 配定됨

(가) 中央食糧行政處

中央食糧行政處는

1. 農務部에 依하여 提供된 生産統計를 基礎로 各道 穀物收集計劃量을 定한 事
2. 夏穀의 運送及 小賣配給을 爲한 夏穀의 放出을 指示할 事

(나) 道知事, 各道知事는

1. 府尹, 郡守又は 農會及 道食糧配給所의 職員의 報告書를 基礎로 道夏穀收集割當量을 細別하여 各郡, 府, 邑, 面에 割當할 事
2. 府尹, 郡守에 依하여 指定된 倉庫에의 夏穀割當量의 蓄積及 引渡를 監督할 事
3. 收集된 夏穀의 重量, 品質에 關한 檢査를 監督할 事

(다) 物價調整官, 道食糧配給所

道食糧配給所를 通하여 行爲하는 物價調整官은

1. 農夫가 供出證을 提出한時는 即時其에 代金을 支拂할 事
2. 邑·面收集所로부터 指定倉庫로 夏穀을 運搬할 事
3. 中央食糧行政官의 指令이 有한時는 小賣配給을 爲하여 收集된 夏穀을 加工, 貯藏, 移動, 放出할 事
4. 公正價格으로 夏穀賣渡金을 小賣人으로부터 受取할 事
5. 要求에 따라 報告及 會計를 할 事

4. 第1段階 收集우로구람의 準備

各道內의 收集우로구람의 準備를 包含한 計劃의 第1段階는 적어도 收穫着手 前10日에 完了될 事

(가) 實施事項의 說明

郡守·府尹, 邑, 面, 區長又は 農會及 道食糧配給所의 地方代表人에 對한 道內實施事項說明은 各道知事의 責任임

(나) 夏穀收穫報告及 割當

邑·面·區長은 1946年 5月 31日內로 夏穀收穫豫見報告書를 郡守 또는 府尹에 提出하고 그는 即時此報告書를 所屬道知事에 提出할 事, 道知事는 此報告書 接受即時 各郡, 府에 道割當을 比例分配할 事, 郡守, 府尹은 其割當을 各邑, 面에 配當할 事, 邑·面·區長은 順次로 其管轄區劃內 各農地에 其割當을 配當할 事, 收集割當量은 各農夫가 次期農作期播種에 足한 夏穀과 그의 食口로서 常時且實際로 그와 同居하는 食口에 對하여 各種 夏穀의 綜合量 又は 夏穀의 總量이 每人當 300 合을 超過치 않는 數量의 夏穀을 保持할 수 있도록 決定할 事. 郡守及 府尹는 倉庫를 夏穀收集所로 指定할 事, 此倉庫는 適當히 火災及 盜難에 對하여 防護되어 있고 또 될 수 있는限 各生産地域의 中心에 位置한 適當한 貯藏場所이어야 함, 夏穀에 對하여 農夫에 支拂할 價格은 新聞紙上에 發表되고 各收集地에 郵送됨. 不流通性 供出證 3 通을 農夫에게 交附하기 爲하여 收集所에서 使用할 수 있도록 作成할 事, 此供出證의 考案, 印刷及 各收集所에의 分配는 物價調整官及 朝鮮農會의 連帶責任임. 此供出證의 印刷及 分配費는 朝鮮農會에 依하여 負擔되며 此는 朝鮮政府가 補償함. 茲에 規定한 收集을 1946年 6月 15日以內로 始作할 수 있도록 모든 準備를 完了할 事

5. 第2段階 夏穀의 收集

夏穀의 實際收集을 包含하는 計劃의 第2段階는 夏穀이 收穫됨과 同時에 始作할 事

(가) 個人所有者 即 農家の 依한 供出

各個人所有者 即 農夫는 其夏穀割當量과 (萬若 希望하면 그 以上の 數量)을 其地域內 指定收集所에 引渡하고 그 代身不流通性 供出證을 受取할 事, 政府 又は 政府가 權限을 賦與한 其代行機關以外에 對한 夏穀의 賣渡을 禁止함. 必要한 時는 邑·面·區는 個人農地에서 穀物을 收集함을 得함. 此時에 其에 附隨한 運搬費及 勞賃은 此農夫에 支拂할 穀物代金으로 부터 控除되며 此金額은 供出證에 記入할 事

(나) 小作人에 依한 供出

各小作人은 其夏穀割當量 (萬若 希望하면 그 以上の 數量)을 直接 收集所에로 引渡하든지, 如此한 境遇 어떤 數量의 夏穀이 地主에게 歸屬할時는 그 事實을 供出證에 記載함. 或은 먼저 正當한 小作料를 地主에게 支拂하든지 할 事

如斯한 境遇 個人地主가 小作料로써 夏穀을 接取한時는 그는 (此收入의 根源인 農場數에 關係없이) 其自用을 爲하여 그의 食口로써 常時且實際로 그와 同居하는 食口에 對하여 各種 夏穀의 綜合量 又は 夏穀의 總量이 每人當 300 合을 超過치 않는 數量의 夏穀을 保持함을 許可함.

以上에 對한 超過量은 收集所에 引渡되어야 하고 代價는 公定價格으로 地主에게 支拂됨. 地主가 1 個人이 아닌 時는 그가 小作料로써 受取한 夏穀 全數量 (次期農作期 播種을 爲하여 種子로써 必要한 夏穀數量을 除外함)은 所屬 收集所에 引渡되어야 하고 其

代價는 公正價格으로 支拂됨.

政府 又は 政府가 權限을 附與한 其代行機關以外에 對한 夏穀에 賈渡를 禁止함

(다) 夏穀檢査, 供出證, 代金支拂

收集所에 收集된 夏穀의 重量及 等級은 政府의 正規檢査官에 依하여 檢査되고 現穀物 檢査規則에 依하여 等別됨. 不流通性 供出證 3 通은 邑·面·區公務員에 依하여 各收集 所에 準備됨.

供出證原本은 農夫에게 交付되고 그는 其原本을 道食糧配給所에 呈示하고 代金을 受領 할 事, 寫本 1 通은 即時 道食糧配給所에 提出되고 他 1 通은 邑·面·區事務所에 依하 야 保管됨. 道食糧配給所는 代金을 得하기 爲하여 農夫가 呈示한 供出證 原本과 邑· 面·區公務員으로부터 接受한 寫本을 對照하여 此 2 證이 符合한時는 農夫에게 相當한 金額을 支拂하고 供出證에 支拂濟라고 記入할 事, 農夫는 支拂濟라고 記入된 供出證原 本을 保管할 事, 道知事는 上記穀物에 關한 代金을 農夫에게 支拂하기 爲하여 道內民 代行機關을 包含한 其他 代行機關을 利用할 수 있음

6. 第3段階 報告及 會計

報告及 會計를 包含한 計劃의 第3段階는 夏穀의 收集과 同時에 始作하고 1946 年 9 月 16 日以內로 完了됨

(가) 週間收集報告書

收集期間中 每 土曜日に 邑·面·區長은 所屬郡守·府尹에게 左記特別로

1. 所有者 卽 農民으로부터
2. 小作人으로부터
3. 個人地主로부터
4. 法人農場으로부터
5. 政府代行機關으로부터
6. 其他(名稱을 明示할 事)로부터

過去 7 日間 收集한 穀物의 數量及 種類及 每週道 食糧配給所에 引渡된 上記穀物의 數量及 種類를 記入한 整理된 報告書를 提出할 事, 各 郡守及 府尹는 上記 報告書를 整理하고 其報告書를 夏穀整理하기 爲하여 道知事에게 提出하고道知事는 更整理後 即時 朝鮮 軍政長官 - 中央食糧行政官 留意-에 提出할 事

(나) 最終的인 整理된 收集報告書

各郡守及 府尹은 邑·面·區長에 依하여 提出된 情報에 關한 最終的인 整理된 收集報 告書를 作成하여 1946 年 9 月 10 日以內로 所屬 道知事에 此報告書를 提出할 事 各道知事는 郡守及 府尹의 報告書를 整理하여 1946 年 9 月 16 日以內로 軍政長官 - 中央 食糧行政官 留意-에 到達하도록 最終的인 整理된 報告書를 提出할 事

(다) 附加報告書及 會計書

物價調整官, 道食糧配給所, 朝鮮農會는 各其事務遂行에 關한 文書를 保管하야 要求가 있을時는 其要求에 따라 其事務遂行에 關한 報告를 提出할 事

茲에 權限이 附與된 事務取扱에 依하야 生한 損害는 政府에 依하야 補償되며 그들은 그들에 依하야 支出된 모든 金額을 會計하여들 事

7. (夏穀)의 定義

茲에 使用된 (夏穀)은 小麥, 라이麥, 大麥, 裸麥을 意味함

8. 特別犯罰의 列舉

本規則及 如何한 法令의 條項을 制限함이 없이 左記事項은 特히 此規則의 違反이라 宣言함.

(가) 邑·面·區長에 依하야 割當된 收集量에 屬하는 夏穀의 蓄藏 不法貯藏隱匿 又は 惡意的 引渡의 不履行

(나) 夏穀收集에 關하야 發表된 計劃 又は 此收集에 關한 軍政府及 權限이 附與된 其代行機關의 發表된 프로그램, 政策, 命令 又は 要求의 妨害 又は 反對

(다) 軍政府의 許可及 認可가 있는 時以外的 夏穀의 賣渡, 賣渡勸誘, 購買, 購買勸誘 又は 公正價格以外的 賣買 또는 其他不法 又は 不正當한 夏穀의 處理

(라) 接受, 收集, 檢査, 等別, 貯藏, 保管, 運搬, 正當한 供出證의 發行, 正確한 文書及 會計書의 保管 又は 代金支拂 又は 收集프로그램에 依하야 引渡된 夏穀에 關한 報告의 不履行 又は 拒否 或은 其他官吏의 非行, 不履行 又は 故意的 職務怠慢

(마) 本規則 또는 此에 規定된 프로그램의 條項을 脫法 又は 廻避할 目的으로 하는 又は 同一結果가 發生하는 處分行爲及 行動及 或은 處分行爲의 未遂及 行動의 未遂

9. 處 罰

本規則 條項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其所定刑罰에 處함

10. 施行期日

本規則은 公布時日에 效力이 生함

1946年 5月 29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야

中央食糧行政官

美國陸軍中左 캐롤·부이·현

○ 米穀收集令 (中央食糧規則 第2號, 1946. 8. 12)

1. 目 的

本規則의 目的은 1946年12月1일부터 1947年8月1日까지의 8個月間 朝鮮人에 必要한 食糧을 確保하기 爲하여 米穀收集에 關한 國家計劃을 完備함에 있음

2. 範 圍

possible 最大量의 米穀(政府에 依하여 農家로부터 公正한 價格으로 購買함)을 收集하여 政府統制의 體系를 通하여 朝鮮人에게 限定配給함을 目標로 함

中央食糧行政官은 收集計劃遂行에 關한 全般的 統轄及 指示의 責任이 有함. 道知事는 各道內에서의 計劃의 成功的 遂行에 對하여 責任이 有함. 農會, 金融組合聯合會, 生活必需品管理局, 道食糧事務所及 朝鮮政府의 모든 政治機關, 代行機關及 補助機關은 此計劃遂行을 援助, 協力함이 可함.

3. 一般職務及 職能

左記 一般職務及 職能은 列記機關에 配定됨

(가) 中央食糧行政處

中央食糧行政處는

1. 農務部에서 提供된 生産統計를 基礎로 各道 米穀收集割當量을 定함
2. 米穀의 運送及 配給을 爲한 米穀의 放出을 指示함

(나) 道知事

各道知事는

1. 府尹, 郡守, 島司 또는 農會及 道食糧事務所의 報告를 基礎로 하여 道米穀收集割當量을 細別하여 各府·郡·島에 割當함
2. 府尹·郡守·島司에 依한 米穀의 收集及 指定된 倉庫에 引渡한 米穀의 貯藏을 監督함.
3. 收集된 米穀의 重量, 品質에 關한 檢査를 監督함

(다) 生活必需品管理局, 道食糧事務所

道食糧事務所를 通하여 取扱하는 生活必需品管理局은

1. 供出者가 供出證을 提出한時는 即時 其代金을 支拂함
2. 區廳·邑·面收集所로부터 指定倉庫에 米穀을 運搬함
3. 中央食糧行政官의 指令이 有한時는 配給을 爲하여 收集된 米穀의 加工, 貯藏, 移動 放出을 爲함
4. 公定價格에 依한 米穀賣渡代金을 配給所로부터 受取함
5. 要求에 따라 報告書及 計算書를 提出함

4. 第1階段 政策무로구람의 準備

各道內의 收集무로구람의 準備를 包含한 計劃의 第1階段은 적어도 收集着手前 20日에 完了함을 要함

(가) 實施事項의 說明

府尹, 郡守, 島司, 區廳, 邑·面長 又は 農會, 金融組合聯合會及 道食糧事務所等 地方代表者에 對한 道內實施事項의 說明은 各道知事의 責任으로 함

(나) 米穀收穫報告及 割當量

區廳·邑·面長은 1946年8月30日以內로 米穀收穫豫想報告書를 府尹, 郡守 又は 島司에게 提出하고 府尹, 郡守 又は 島司는 即時 此報告書를 綜合하여 所屬 道知事에게 提出함. 道知事는 此報告書 接受即時 各府郡, 島에 道割當量을 比例分配함. 府尹, 郡守, 島司는 其割當量을 各區廳, 邑面에 配當함. 區廳邑, 面長은 其管轄區域內의 各農區에 其割當量을 配當함. 收集割當量은 各農家의 次年農作期 播種에 足한 米穀과 그의 家族으로서 常時且實際로 그와 同居하는 者에 對하여 每人當 最小限度 600 合의 米穀을 保持할 수 있도록 今後 此를 決定함이 可함. 個人地主는 小作人으로부터 收領할 米穀小作料高를 收集所에 報告할 事

(다) 收集所

府尹, 郡守及 島司는 一定한 倉庫를 米穀收集所로 指定함. 此倉庫는 火災及 盜難에 對하여 適當히 防護되어 있고 또 될 수 있는限 各生産地의 中心部에 位置한 適當한 場所이어야 함

(라) 供出證

米穀收集所에서는 供出者에게 交附하기 爲하여 不融通性 供出證 3 通式을 作成함. 此 供出證의 考案, 印刷와 各收集所에의 分配는 生活必需品管理局의 責任임. 此 供出證의 印刷及 分配費用은 生活必需品管理局에서 負擔하여 朝鮮政府가 此를 補償함. 以上收集은 1946年9月15日부터 始作할 수 있도록 準備를 完了함을 要함

(마) 價 格

米穀에 對하여 農家에 支拂할 代金은 그 標準價格이 新聞紙上에 發表되며 各收集地에 도 通知함

5. 第2段階 米穀의 收集

米穀의 實際收集計劃의 第2階段은 米穀의 收穫과 同時에 始作함

(가) 個人所有者 卽 自作農家에 依한 供出

各個人所有者 卽 自作農家는 그 米穀割當量(希望에 依하여는 그 以上の 數量)을 그 地域內의 指定收集所에서 引渡하고 그 代身 不融通性 供出證을 受取함. 必要한時는 區廳·邑·面은 自作農家에서 直接 米穀을 收集함을 得함. 如斯한 境遇에 그 運搬費及 勞賃은 그 農家에 支拂할 穀物代金中에서 控除되며 此金額은 供出證에 記載함

(나) 小作人에 依한 供出

地主가 個人인 境遇에는 小作人은 그 農地에 對한 割當量을 直接 收集所에 供出하고

供出證을 受取함. 個人地主는 小作契約에 現物納, 其他 如何한 條件이 約定되어 있음을 不拘하고 米穀公定價格에 依한 代金으로 小作料를 領受할 事, 個人地主와 그 家族은 配給機關을 通하여 非農家와 同一한 方式으로 米穀配給을 受하되 第4條「나」에 規定한 各農業에 許與한 配給量을 超過하지 못함. 地主가 個人이 아닌時는 小作料로 受取한 米穀金數量(次年農作期播種을 爲하여 種子로서 必要한 米穀의 數量은 除外함)은 所屬收集所에 引渡하여야 하고 其代價는 公定價格에 依하여 支拂을 受함이 可함

(다) 米穀生産者는 政府 又は 政府에서 權限을 附與한 代行機關 以外에 對하여 米穀의 賣渡를 하지 못함

(라) 米穀檢査, 供出證, 代金支拂

收集所에 供出된 米穀의 重量及 等級은 政府의 穀物檢査員에 依하여 檢査되고 現穀物 檢査規則에 依하여 等別됨. 不流通性 供出證 3 通은 區廳·邑·面의 公務員에 依하여 各收集所에 準備됨

供出證 原本은 供出者에게 交付되고 供出者는 그 原本을 道食糧事務所에 呈示하고 代金を 受領함. 副本 1 通은 道食糧事務所에 提出되고 다른 1 通은 區廳·邑·面 事務所에 保管됨. 道食糧事務所는 代金を 得하기 爲하여 供出者가 呈示한 供出證 原本과 區廳·邑·面의 公務員으로부터 接受한 副本을 對照하여 兩者가 符合한時는 그 代金を 支拂하고 供出證에 支拂濟라 記載함. 農家는 此支拂濟라 記載한 供出證 原本을 保管함 道知事는 以上 供出穀物에 對한 代金を 支拂하기 爲하여 道內民間 金融機構을 包含한 各種代行機關을 利用할 수 있음

6. 第3階段報告及 計算

報告及 計算을 包含한 計劃의 第3階段은 米穀의 收集과 同時에 始作되고 1947 年 1 月 21 日以內 完了됨

(가) 週間收集報告

收集期間中 每 土曜日に 區廳·邑·面長은 所屬府尹, 郡守에게 左記種別로

1. 自作農家로부터
2. 小作農家로부터
3. 政府代行機關으로부터
4. 法人所有農場으로부터
5. 其他(名稱을 明示할 事)로부터

過去 1 週日間 收集한 米穀의 數量及 每週 道食糧事務所에 引渡한 供出米穀數量의 報告書를 提出함이 可함. 各府尹, 郡守及 島司는 上記報告書를 整理하여 其綜合報告書를 道知事에게 提出하고 道知事는 更이 此를 整理後 即時 朝鮮軍政長官 - 中央食糧行政處 - 에 提出함이 可함

(나) 最終收集報告

各府尹, 郡守及 島司는 區廳·邑·面長에 依하여 提出될 米穀收集報告書를 作成하여 1947年2月10日以內로 所屬道知事에 提出함이 可함

各道知事는 府尹, 郡守及 島司의 報告書를 整理하여 1947年2月20日以內로 軍政長官—中央食糧行政處—에 到達하도록 最終報告書를 提出함이 可함

(다) 附加報告書及 計算書

生活必需品管理局, 道食糧事務所, 朝鮮農會及 各金融組合은 其事務遂行에 關한 文書를 保管하며 要求가 有할時는 그 事務遂行에 關한 報告書를 提出함이 可함. 本規則에 因한 事務取扱으로 依하여 生한 支出은 政府에서 補償할 者임으로 그 支出된 金額을 計算하여 計算書를 作成함이 可함

7. 輸 送

모든 米穀輸送은 政府에 依하여 統制됨. 權限이 賦與된 政府代行機關 又は 政府의 輸送許可書를 所持한 者 以外에는 如何한 者라도 米穀을 輸送하지 못함. 但, 本規則에 依하여 收集所에 引渡하기 爲한 運送은 此限에 不在함

8. 犯罪의 列舉

左記事項은 特히 此規則의 違反이라 宣言함

(가) 區廳·邑·面長에 依하여 割當된 收集量의 米穀의 隱匿 또는 惡意의 供出不履行

(나) 米穀收集에 關하여 發表될 計劃 又は 收集에 關한 軍政廳及 權限이 附與된 代行機關이 發表한 프로그램, 政策, 命令 又は 要求의 反對 又は 妨害

(다) 許可없이 米穀의 賣買, 賣渡, 購買의 勸誘 又は 公定價格 以上の 賣買及 그의 勸誘 또는 其他不法 又は 不正한 米穀의 處分

(라) 收集, 檢査, 保管, 運搬, 正當한 供出證의 發行, 正確한 文書及 計算書의 保管, 代金 支拂收集 프로그램에 依하여 引渡된 米穀에 關한 報告의 不履行 又は 拒否 其他 官吏의 非行 又は 故意的 職務怠慢

(마) 本規則 又は 本規則에 依한 프로그램의 條項을 違脫 又は 迴避할 目的으로 하는 行爲及 그 未遂

9. 處 罰

本規則에 違反한者는 陸軍占領地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其所定 刑罰에 處함

10. 施行期日

本規則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生함

1946年8月12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中央食糧行政官

美國陸軍中佐 캐롤·뿌이·힐

○ 中央食糧規則第 2 號改正의件

米穀及其他食糧收集

小作料支拂手續 (中央食糧規則第 3 號, 1946. 9. 23)

1. 目的及 範圍

本規則은 1946 年 8 月 12 日附 中央食糧規則 第 2 號를 改正하며 朝鮮人民에게 必要한 米穀及 其他食糧의 小作料支拂手續을 規定하여 第 2 號의 範圍를 擴大하는 것을 目的으로 함

2. 4 (나)項의 改正

1946 年 8 月 12 日附 中央食糧規則 第 2 號의 4 (나)項은 左記와 如히 改正함

(나) 米穀收穫報告及 割當量

1946 年 8 月 30 日以內로 區廳·邑·面長은 米穀收穫豫想報告書를 府尹 又は 郡守에게 提出하고 府尹 又は 郡守는 即時 此報告書를 所屬道知事에게 提出함
道知事는 此報告書 接受即時 各府·郡에 道割當量을 比例分配함. 府尹, 郡守는 其割當量을 各區廳·邑·面에 配當함. 區廳·邑·面長은 其管轄區域內의 各農區에 其割當量을 配當함. 모든 地主는 小作人으로부터 收領할 米穀小作料의 總數量을 收集所에 報告하며 何地에 居住를 莫論하고 小作人 全部를 列記한 綜合報告書를 地主住所의 最近한 地方金融組合에 提出할 事

3. 5 (나)項의 改正

1946 年 8 月 12 日附 中央食糧規則 第 2 號의 5 (나)項은 左記와 如히 改正함

(나) 小作人에 依한 供出

各小作人은 그 農地에 對한 割當量을 (及其以上 所願量을) 直接 그 地域의 收集所에 供出함

但 本規定은 1946 年 6 月 15 日附 農務部命令 第 2 號에 依한 新韓公社 小作人의 米糧小作料 收集에는 適用되지 않이 함

4. 5 (라)項의 改正

1946 年 8 月 12 日附 中央食糧規則 第 2 號의 5 (라)項은 左記와 如히 改正함

(라) 米穀檢査, 供出證, 代金支拂

(1) 收集所에 供出된 米穀의 重量及 等級은 政府의 穀物檢査員이 檢査하고 現穀物檢査規則에 依하여 等別됨

穀物檢査員은 各收集所에서 檢査證을 發行함

區廳·邑·面の 公務員은 各收集所에서 不流通性 供出證 3 通을 準備함. 小作人이 米穀小作料를 直接 收集所에 供出하는 境遇以外에는 接受한 米穀全部의 供出證 原本은 供出者에게 交付되고 供出者는 그 原本을 道食糧事務所에 呈示하여 代金を 受領함.

副本 1通은 即時 道食糧事務所에 提出하고 다른 1通은 區廳·邑·面事務所에 保管함. 道食糧事務所는 代金を 得하기 爲하여 供出者가 呈示한 供出證原本과 區廳·邑·面의 公務員으로부터 接受한 副本을 對照하여 兩者가 符合하는 時는 그 代金を 支拂하고 供出證에 「支拂濟」라 記載함

農家は 此支拂濟라 記載한 供出證原本을 保管함.

道知事は 以上 供出穀物에 對한 代金を 支拂하기 爲하여 道內民間金融機關을 包含한 各種 代行機關을 利用할 수 있음. 小作人이 米穀小作料를 收集所에 供出하는 境遇에 는 其手續이 如左함

1. 供出證은 地主의 名義로 作成함
2. 副本 1通은 即時 道食糧事務所에 提出하고 다른 1通은 區廳·邑·面 事務所에 保管함
3. 供出證原本은 收集官員이 收集所에 保管함
4. 本令 2(나)項이 依하여 地主가 收領할 米穀小作料 報告書에 따라 各小作人이 地主에게 支拂할 米穀小作料 總數量을 收集所에 供出할때에는 供出證原本 全部를 地主에게 附與함. 米穀小作料를 供出한後 小作人에게 發行한 檢査證은 該米穀을 收集所에 供出한 證據가 됨
該供出로써 小作人은 小作料 契約 或은 其他 協約의 規定如何를 莫論하고 地主에게 何等物品 小作料를 支拂할 義務가 無함

(2) 政府가 所有 又は 管理하는 法人이 地主인 境遇에는 地主와 中央食糧行政處間에 別途 支拂手續을 規定함

其他 모든 地主는 그 法的住所에 가장 接近한 金融組合에 그 小作人 全部가 供出한 米穀供出證을 提出하므로 收領할 小作料 全量을 代身하는 代金を 受領함

가. 地方金融組合은

1. 地主가 이미 金融組合에 提出한 綜合報告書와 該供出證을 比較檢證함
2. 道內에 居住하는 地主의 小作人 全部에게 收領한 供出證을 道財務局에 提出하여 檢證承認을 受함

나. 道財務局은

1. 供出證의 效力을 檢證함
2. 該供出證을 課稅及 土地台帳과 比較하여 該供出證이 道內에 居住하는 該地主의 小作人等의 米穀小作料 供出證 全部인지를 檢證함
3. 地主가 提出한 供出證이 證示하는 米穀總量의 金額(政府制定의 公定價格에 依함)을 朝鮮政府財務部國庫局에 報告함
4. 「支拂許可」라 記載한 供出證을 通信員使이나 書留郵便으로 地方金融組合에 還

付함

如何한 境遇를 莫論하고 「支拂許可」라 記載한 供出證을 地主에게 附與함을 禁함
다. 地主의 米穀小作料 供出證 全部가 「支拂許可」의 記載를 받고 道財務局에서 부터
還付된때에 地方金融組合은 公定價格에 依하여 米穀代金を 左記와 如히 地主에게 支
拂함

1. 2萬圓未滿은 法貨로 支拂함
2. 2萬圓以上은 一部를 法貨로 支拂함. 다른 一部는 住所에 가까운 金融組合에 地
主名義의 封鎖勘定預金으로 左記表에 依하여 任置함

地主가 收領할 代金總額		封鎖勘定預金額
20,000 圓	25,000 圓	20,000 圓超過額의 2 割
25,001 圓	30,000 圓	1,000 圓加, 25,000 圓超過額의 2 割 5 分
30,001 圓	40,000 圓	2,250 圓加, 30,000 圓超過額의 3 割
40,001 圓	50,000 圓	5,250 圓加, 40,000 圓超過額의 4 割
50,001 圓	75,000 圓	9,250 圓加, 50,000 圓超過額의 5 割
75,001 圓	100,000 圓	21,750 圓加, 75,000 圓超過額의 6 割
100,001 圓	150,000 圓	36,750 圓加, 100,000 圓超過額의 7 割 5 分
150,001 圓	200,000 圓	74,250 圓加, 150,000 圓超過額의 8 割 5 分
200,001 圓	300,000 圓	116,750 圓加, 200,000 圓超過額의 9 割 5 分

○ 中央食糧規則第 3 號改正

小作料支拂手續 (中央食糧規則第 4 號, 1947. 3. 26)

1. 目的 本規則은 米穀收集令下에 施行되는 小作料 支拂手續의 改正을 目的으로
2. 小作料支拂 1946 年 8 月 12 日附 中央食糧規則 第 2 號 第 5 (라)項을 改正한 1946 年 9 月
23 日附 中央食糧規則 第 3 號 第 4 項은 左記와 如히 改正함
4.5 (라)項의 改正 1946 年 8 月 12 日附 中央食糧規則 第 2 號의 5 (라)項은 左記와 如히 改
正함

(라) 米穀檢査 供出證 代金支拂

1. 收集所에 供出된 米穀의 重量及 等級은 政府의 穀物檢査員이 檢査하고 現行穀物檢
査規則에 依하여 等別함

穀物檢査員은 各收集所에서 檢査證을 發行함

邑·面 又は 町會長은 各收集所에서 不融通性 供出證 3 通을 準備함

小作人이 米穀小作料를 直接 收集所에 供出하는 境遇以外에는 接受한 米穀全部의 供

出證原本은 供出者에게 此를 交付하고 供出者는 그 原本을 道食糧事務所에 呈示하여 代金を 受領함

副本 1 通은 即時 道食糧事務所에 提出하고 남은 1 通은 邑·面 又は 町會事務所에 保管함.

道食糧事務所는 供出者가 呈示하는 供出證 原本과 邑·面 又は 町會公務員으로 부터 接受한 副本을 對照하여 兩者가 符合하는 時는 그 代金を 支拂하고 供出證에 「支拂濟」라 記載함

小作人이 米穀小作料를 收集所에서 供出하는 境遇에는 其手續이 如左함

(가) 供出證은 地主의 名義로 作成함

(나) 副本 1 通은 即時 道食糧事務所에 提出하고 다른 1 通은 邑·面 又は 町會事務所에 保管함

(다) 供出證原本은 收集官員이 收集所에 保管하였다가 地主가 要求하면 地主에게 此를 交付함

本規則 施行期日전에 供出한 米穀小作料의 供出證原本은 地主의 要求에 따라 此를 地主에게 交付함

米穀小作料를 供出한 後 小作人에게 交付한 檢査證은 該米穀을 收集所에 供出한 證據가 되며 該供出로써 小作人은 小作料 契約 或은 其他 協約의 規定如何를 莫論하고 地主에게 現物小作料를 支拂할 義務를 벗어남

2. 新韓公社小作人이 收集所에 供出한 米穀小作料의 供出證原本은 新韓公社道支店이 道食糧事務所에 呈示하여 檢證을 受함

道食糧事務所의 各事務所는 以上の 檢證을 受한 供出證에 基礎한 記錄을 保管하고 대々로 新韓公社에 關하여 檢證을 受한 會計記錄을 生活品 道管理院 서울事務所에 傳送하며 該會計記錄의 寫本을 新韓公社道支店에 交付함

生活品管理院은 同院及 新韓公社間에 同意한 支拂期日表에 依하여 檢證된 會計記錄에 表示한 米穀小作料代金を 서울本院에서 公定價格으로 新韓公社에 支拂함

3. 政府가 所有 又は 管理하는 法人을 包含하여 其他의 모든 地主는 米穀小作料의 供出證原本을 어느 地方金融組合에든지 提出함을 得함

地方金融組合은 該供出證을 所屬道食糧事務所에서 檢證케한 後 檢證한 供出證에 表示한 米穀小作料代金全額을 公定價格으로 地主에게 支拂함

4. 1946年 9月 23日附 中央食糧規則 第3號 規定下에 封鎖되었든 勘定은 本規則 施行期日以後에 制限없이 此를 引出함을 得함

3. 米穀以外 食糧의 小作料 支拂手續에 適用함

以上の 改正은 必要한 變更을 加하여 1946年 9月 23日附 中央食糧規則 第3號第5項에 規定한 바 米穀以外 食糧의 小作料 支拂手續에 適用함

4. 施行期日

本規則은 公布日부터 有效함

1947年 3月 26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中央食糧行政官 池 鎔 殷
中央食糧軍政官 캐틀·뿌이·힐
美國陸軍中佐

○ 夏穀收集令 (中央食糧規則 第5號, 1947. 5. 8)

1. 目的

本規則은 1947年 4月 19日附 朝鮮過渡立法議院制定法律 第2號에 依하여 1947年 夏穀 收集을 實施함으로써 目的함. 前記法律 第2號의 內容을 如下함

第1條 中央食糧行政處夏穀收集令 草案은 本令 第2條要綱에 基한 修正을 加하여 施行개 함을 決議함. 同修正要綱은 同時에 發布하는 收集量의 一部가 됨

第2條 (修正要綱)

가. 夏穀은 朝鮮在來의 農村農穀인 實情을 考察하여 總生産高의 5分之1以內 程度에서 收集하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여 無理한 供出割當이 없도록 할 것

나. 割當의 公平을 期하기 爲하여 邑·面長은 洞里單位로 査定委員會를 設置하여 各農 家生産豫想高에 對한 正確與否를 審査케 할 것

다. 收集方法은 強壓的 手段을 禁하고 地方行政吏員만을 總動員하여 積極的으로 農民의 良心의 供出意識을 鼓吹하여 農民이 祖國에 對한 義務感에서 供出하는 方法을 講究實 施할 것. 但 中央食糧規則 第5號 「夏穀收集令」에 規定한 罰則은 法에 依하여 權威 所有者가 此를 施行함

라. 夏穀價格은 生産費, 最近物價數等을 參酌하여 適當한 收集價格을 決定할 것

마. 供出한 農民에게는 生活必需品配給에 對한 優先權을 特許할 것

바. 運輸機關을 督勵하고 倉庫를 整備하며 運營體系를 鮮明히하여 收集한 夏穀을 適當 히 保全하며 死藏狀態에 入치말게 할 것

2. 範圍

政府統制機關을 通하여 朝鮮人民에게 配給한 目的으로 夏穀을 收集 (政府가 農家로부터 買 上)함을 目標로 함

中央食糧行政處는 收集計劃遂行의 全般的統轄 及 指揮의 責任이 有함

道知事는 各所轄道內에서 此 計劃을 完遂할 責任이 有함

朝鮮農會, 新韓公社, 金融組合聯合會, 生活必需品管理院, 道食糧事務所 及 朝鮮政府所屬의 各行政機關, 代行機關 及 事業機關等은 本 收集計劃의 遂行에 對하여 援助, 協力함을 要함

3. 夏穀의 定義

本 規則에 夏穀이라 함은 小麥, 라이麥, 大麥 及 稗麥을 意味함

4. 一般職務 及 機能

下記 一般職務 及 機能을 各指定機關에 賦與함

가. 中央食糧行政處

1. 中央食糧行政處는 農務部와 協議하고 各道知事が 提出한 意見을 考慮한 後 道別夏穀割當量을 配定함. 但 道割當量의 總計는 1947年產 夏穀生産總豫想高의 20%을 超過하지 않음을 要함.

2. 夏穀搬出量을 定하고 一切의 夏穀의 移動 及 配給을 爲한 放賣를 指揮함

나. 道知事

1. 道知事는 府尹, 郡守, 農會長 及 道食糧事務所長의 調查報告를 基礎로하여 道夏穀 收集割當量을 各府, 郡, 邑, 面 及 區에 細別割當함

此 割當量은 넓이 公示함을 要함

2. 府尹 及 郡守가 指定한 倉庫에서 實施되는 夏穀의 收集 及 搬出에 關한 一切 事項을 監督함

3. 收集된 夏穀의 重量 及 品質에 關한 檢査를 監督함

4. 道에 割當된 收集量과 搬出量의 完遂와 管下行政官으로 하아금 全的으로 協力시킴에 對한 責任을 負함

5. 收集에 際하여는 可及的 一般行政官을 動員하고 違反者가 有할 時는 此를 告發함

다. 生活必需品管理院 及 道食糧事務所

生活必需品管理院은 道食糧事務所를 通하여

1. 出荷者가 出荷證을 提出하면 即時 其代金を 支拂함

2. 各邑, 面收集所로부터 指定倉庫에 夏穀을 運搬함

3. 中央食糧行政官의 指令을 받아 收集된 夏穀을 配給하기 爲하여 加工, 貯藏, 運搬 及 放出함

4. 夏穀의 政府賣渡金を 領收함

5. 指示에 依하여 報告書 及 計劃書를 提出함

라. 新韓公社

1. 新韓公社는 收集量 査定의 目的으로 地方行政官과 協力하여 所管小作人의 夏穀生産 豫想高를 決定함

各 農地에 對한 割當의 最後決定은 行政官이 此를 行함

2. 右 割當量에 對하여서는 新韓公社는 公的收集代行機關으로서 行動하며 道食糧事務所에 迅速히 收集된 糧穀을 引渡함

3. 同社 所有倉庫中에서 收集所로 適當한 것을 郡守, 邑面長에 推薦함

5. 第1段階 收集計劃의 作成

各道에서의 收集計劃作成을 包含한 計劃의 第1段階는 늦어도 夏穀收穫着手 10日前에 完了함을 要함

가. 實施細目の 說明

各道知事는 府尹, 郡守, 邑面 區長, 警察當局 又は 朝鮮農會, 新韓公社, 金融組合聯合會 及 道食糧事務所 등의 代表者에 道內實施細目を 說明할 責任이 有함

나. 夏穀收集量割當

1. 各道知事는 中央食糧行政處로부터 夏穀收集量の 割當을 受한 時는 管內 各府, 郡에 此를 細別割當함

府尹, 郡守는 迅速히 各邑, 面 及 區의 割當量을 決定함

邑, 面 及 區長은 늦어도 夏穀收穫期 10日以前에 管內 各 農地에 對한 書面割當通知書을 發함은 勿論, 各農民의 姓名 及 其 割當量의 一覽表를 作成하여 明瞭히 公示하고 各 農民이 收集所에 對한 其 割當量의 出荷完了日字를 其表에 記入함을 要함

2. 各 農家에 對한 收集割當量은 其 農家의 夏穀生産豫想高種子所要量 及 實際同居家族食糧所要量當等を 考慮한 後 提出함

3. 各邑, 面, 區長은 査定委員會(各委員은 名譽職으로 함)를 組織함. 此 委員會는 不當한 收集割當을 받은 農民의 異議를 審査하여 當該 邑, 面, 區長에게 此에 關한 意見書를 提出함

다. 收集所

1. 府尹 及 郡守는 一定한 倉庫를 夏穀收集所로 指定함

此等倉庫는 火災 及 盜難에 對하여 適當히 防護되어 있고 交通이 便利하고 可能한限 各 產地精米所에 接近하고 있는 保管에 適當한 場所이어야 함

2. 各 地方廳이 新韓公社倉庫 或은 朝鮮農會倉庫를 指定하여 收集所로 使用할 時는 必히 最少限度 1名의 地方廳官吏가 收集所로 出張하여 收集에 參加하여야 함

3. 5節다 1, 2에 指定된 倉庫에 收集 又は 貯藏된 夏穀은 道食糧事務所가 此를 管理

하고 中央食糧行政官의 指示에 依하여 配定함

라. 夏穀檢査

政府의 穀物檢査官은 收集所에 出荷된 夏穀의 重量 及 品質을 檢査하고 現行檢査規則에 依하여 等別을 定함

穀物檢査官은 穀物檢査證의 正本을 農民에게 交付하고 副本은 此를 保管함

마. 出荷證 及 代金支拂

收集所에서 使用할 不融通性出荷證 各 3 通式을 準備함. 該出荷證의 樣式을 決定하여 印刷하고 此를 收集所에 配布함은 生活必需品管理院의 責任임

生活必需品管理院은 該出荷證印刷費 及 分配費用을 負擔하고 朝鮮政府는 此를 補償함
本規則에 規定된 收集이 1947年6月15日 以前에 開始되도록 모든 準備를 完了하여야 함

各 收集所에 勤務하는 邑 又は 區의 公務員은 3 通의 出荷證을 作成하여 原本은 農民에게 交付하고 第1 副本은 道食糧事務所 代表에게 交付하고 第2 副本은 邑, 面, 區事務所에 此를 保管함. 道食糧事務所代表는 收集所에 出張하여 即時 代金を 農民에게 支拂하고 出荷證原本에 支拂濟라고 記載한 後 農民에게 此를 還付함.

바. 價 格

農民에게 支拂할 夏穀價格을 各 收集所에 明瞭히 揭示함을 要함

此 價格은 一般物價水準과 夏穀生産費等を 參酌하여 定함

夏穀收集에 協助한 農民에게 獎勵物資를 可能한限 配給할 豫定임

6. 第2階段

夏穀의 實際收集을 包含한 收集計劃의 第2階段은 夏穀의 收穫과 同時에 開始함

가. 割當된 穀物의 出荷 及 出荷에 不應한 穀物의 押收

割當된 穀物은 全部 1947年9月1日 以前에 收集所에 出荷함을 要함

1947年9月1日까지 出荷하지 않는 모든 割當된 穀物은 政府가 此를 押收함

政府는 自由裁量에 依하여 押收된 穀物代金의 一部 或은 全部를 支拂할 수 있음

나. 個人自作農의 出荷

各 個人自作農은 그 夏穀割當量(希望에 依하여는 그 以上の 數量)을 그 地域內의 指定收集所에 出荷하고 不融通性出荷證을 受取함

政府 又は 政府가 認定한 代行機關以外的 者의 夏穀의 賈買 及 移動을 禁止함

必要한 境遇에 區, 邑, 面는 直接 各個 農場에서 夏穀을 收集함을 得함. 如斯한 境遇에 其 運搬費 及 勞賃은 其 農家에 支拂한 穀物代金中에서 控除되며 此 金額을 出荷證에 記載함

다. 小作農의 出荷

小作農은 其 農地의 割當量을 直接 收集所에 出荷하고 不融通性出荷證을 受取함
個人地主 又は 法人地主는 小作契約에 現物納의 如何한 條件이 約定되어 있음을 不拘
하고 該穀物公正價格에 依한 代金으로 小作料를 領受함
個人地主 及 其 家族은 配給機關을 通하여 非農家와 同一한 方式으로 夏穀의 配給을 受
함(所定の 配給機關을 通하여)

7. 第3階段 報告 及 計算

報告 及 計算을 包含한 收集計劃의 第3階段은 夏穀의 收集과 同時에 開始하여 1947年
9月20日 以內에 完了함을 要함

가. 週間收集報告

收集期間中 每土曜日に 區, 邑 及 面長은 所屬府尹, 郡守에게 下記 種別로

1. 自作農으로부터
2. 小作農으로부터
3. 其他(名稱을 明記할 事)로부터

過去 7日間 收集한 穀物의 種別 及 數量과 同日間에 道食糧事務所에 引渡한 穀物의 種
別과 數量을 表示한 整理報告書를 提出함

各 府尹 及 郡守는 上記報告書를 整理하여 其 綜合報告書를 道知事에게 提出하고 道知
事는 更히 此를 整理하여 即時 中央食糧行政官에 提出함

나. 最終收集報告

1. 各 府尹 及 郡守는 區, 邑, 面長이 提出한 報告書를 最終으로 整理한 報告書를 作
成하여 1947年9月10日 以內에 所屬道知事에게 到着되도록 該報告書를 提出함
各 道知事는 各 府 及 郡 報告書를 整理하여 1947年9月20日 以內에 中央食糧行政處
에 到着되도록 最終整理報告書를 提出함
2. 各 邑, 面 及 區長은 夏穀收集割當量을 出荷하지 못한 各 農家에 關하여 下記 各項
을 記入한 報告書를 作成하여 늦어도 1947年9月10日까지 各 郡守, 府尹에게 到着
하도록 報告書를 提出함을 要함

ㄱ. 姓 名

ㄴ. 住 所

ㄷ. 夏穀割當量

ㄹ. 政府에 出荷한 夏穀量

郡守, 府尹은 上記 事實을 調査하고 違反者에 對하여 適切한 措處를 取함을 要함

다. 附加報告書 及 計算書

生活必需品管理院, 道食糧事務所, 朝鮮農會, 新韓公社 及 金融組合聯合會는 各自 事務遂

行에 관한 文書를 保管하며 要求가 有할 時는 其 事務遂行에 關한 報告書를 提出함
本 規則에 依한 事務取扱으로 因하여 生한 支出은 朝鮮政府에서 補償하는 故로 各自가
支出한 모든 食糧을 計算함을 要함

라. 政府 及 法人地主의 記錄 及 報告

夏穀을 生産하는 農地를 所有 又は 管理하는 新韓公社 其他 法人地主 及 政府各部署代
行機關 及 事業機關은 本 規則에 依하여 各自의 小作人이 出荷한 夏穀의 精密한 記錄
을 保管함. 權限을 有한 官憲은 隨時 該 記錄을 檢問함을 得함.

8. 運 搬

一切의 夏穀運搬은 政府가 管轄함. 權限을 有한 政府代行機關以外的 者는 夏穀을 運搬
치 못함. 但 本 規則에 規定된 收集所의 夏穀出荷는 此의 限이 不함

9. 特定犯罪의 列舉

本 規則 又は 其他法令의 規定을 制限함이 없이 下記 事項은 特히 本 規則의 違反으로
認定함

가. 區, 邑 及 面長이 割當한 夏穀의 死藏, 不法貯藏隱匿 又は 惡質의 出荷不應行爲(非
合法的手段으로 夏穀을 入手所有한 者에 對하여는 其 夏穀을 全部 沒收함)

나. 政府의 承認 또는 許可없는 又は 公定價格에 違反한 夏穀의 販賣, 販賣의 申込, 讓渡
讓渡의 申込, 買入 또는 買入의 申込 又は 其他 違反 또는 不適當한 夏穀의 賈買取引

다. 收集計劃에 依하여 指示된 夏穀에 關한 收納, 收集, 檢査, 割當量의 適合한 配定, 貯
藏, 等別, 保管, 運搬, 適當한 出荷證發行, 精確한 記錄 及 計算書의 保管, 代金支拂 또
는 報告等의 不履行 又は 拒否, 其他 此에 關한 公務上의 非行, 失策 又は 故意的 職務
懈怠

라. 本 規則의 規定을 違脫 或은 回避할 目的으로 하는, 又は 如斯한 效果를 招來하는 行
爲와 其未遂

10. 處 罰

本 規則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其所定 刑罰에 處함

11. 中央食糧規則 第1號의 廢止

1946年5月29日附 中央食糧規則 第1號는 此를 廢止함

12. 施行期日

本 規則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1947年5月8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中央食糧行政處長 池 鎔 殷
同 顧問 凱 崙 · 부이 · 힐

○ 米穀收集案(南朝鮮過渡政府, 中央食糧規則 第6號, 1947.8.18)

1946年5月28日附 法令 第90號第5條에 依하여 本規則을 制定發布함

1. 目 的

本規則은 1947年 秋期로부터 1948年 初期에 亶하여 米穀收集을 實施함을 目的

2. 範 圍

政府統制機關을 通하여 北韓38度以南에 朝鮮人民에게 配給할 目的으로 米穀을 收集(政府가 農家로부터 買上)함을 目標로함

中央食糧行政處는 收集計劃遂行의 全般的 統轄 及 指揮의 責任이 有함

道知事는 各 所轄道內에서 此 計劃을 完遂할 責任이 有함

朝鮮農會新韓公社金融組合聯合會生活品管理院道食糧事務所 及 朝鮮政府所屬의 各 行政機關 代行機關 及 事業機關等은 本 收集計劃의 遂行에 對하여 援助協力함을 要함

3. 一般職務 及 機能

左記 一般職務 及 機能을 各 指定機關에 附與함

가. 中央食糧行政處

1. 中央食糧行政處는 農務部와 協議하여 各 道別米穀割當量을 配定함

2. 米穀搬出量을 定하고 一切의 米穀의 移動 及 配給을 爲한 放出을 指揮함

나. 道知事

1. 道知事는 道米穀收集轄當量을 府郡에 公正히 細別割當함

2. 道에 割當된 收集量과 搬出量의 完遂와 管下行政官으로 하여곰 全的으로 協力시킴에 對한 責任을 負함

3. 違反者가 有할 時는 此를 告發함

4. 米穀의 收集과 府尹 及 郡守가 指定한 倉庫에 對한 引渡事務도 監督함

5. 收集된 米穀의 重量 及 品質에 關한 檢査를 監督함

다. 生活品管理院 及 道食糧事務所

生活品管理院은 道食糧事務所를 通하여

1. 供出者가 供出證을 提出하면 即時 그 代金을 支拂함.

2. 各 邑面收集所 及 新韓公社收集所로부터 指定倉庫와 精米所 及 搬出場所로 米穀을 運搬함

3. 中央食糧行政官의 指令을 받아 收集된 米穀을 配給하기 爲하여 加工貯藏運搬 及 放出함

4. 米穀의 政府賣渡金을 領受함

5. 指示에 依하여 報告書 及 計算書를 提出함

라. 新韓公社

1. 米穀供出量を 割當키 爲하야 地方官吏와 같이 그 小作人の 米穀收穫豫想高를 作成함. 各 農地의 正式割當量은 行政官이 決定함
新韓公社出張所는 各 邑面區長에게 그 管轄小作人の 住所 氏名義를 提出함. 그 小作人에 對한 割當量이 決定되는대로 地方官吏는 各 小作人에 對한 割當量을 그 表에 記入하야 新韓公社 出張所에 返還함
 2. 新韓公社는 新韓公社小作人이 小作하는 新韓公社土地와 其他 土地에 對한 全割當量을 收集하는 政府의 代行機關으로 行動함
此 收集量은 道食糧事務所에 引渡할 것이며 同 事務所는 新韓公社收集所로부터 迅速히 此를 運搬할 責任이 有함
道農務局에서는 專屬으로 新韓公社收集所에 穀物檢査員을 派遣할 것이고 道食糧事務所에서는 出荷證을 發行하고 代金を 支拂키 爲하야 各 新韓公社收集所에 專屬職員을 派遣함
 3. 新韓公社收集所를 同社 小作人을 爲하야 管理하며 道는 新韓公社가 管理하고 있는 收集所를 政府收集所로 指定함
 4. 新韓公社收集所近處에 居住치않는 新韓公社小作人の 米穀收集의 便宜를 圖謀하야 專屬 又は 兼務로서 政府收集所에 1名以上の 新韓公社 人員을 配置함을 得함
그 社員은 新韓公社小作人에 對한 米穀收集을 援助할 것이며 新韓公社小作人이 供出하는 米穀收集量을 記錄함
 5. 小作人으로부터 新韓公社小作料를 現金으로 徵收함
新韓公社小作人으로부터 收集할 米穀은 小作人이 納付할 全米穀數量임. 小作人은 그 全量에 對하여 道食糧事務所로부터 代金を 受함. 新韓公社小作料에 對한 小作人の 現金支拂은 米穀收集과는 全然 別個로 取扱함
 6. 新韓公社는 小作人과 交換하기 爲하야 優秀한 種子米租穀 5萬石 以內를 新韓公社 指定採種畝에서 產出한것 又は 新韓公社收集所에서 納受한 米穀中에서 保有함을 得함
收集되는 種子用米穀量은 各郡 食糧事務所에 報告함
郡은 此 數量을 既收集量으로 計算하고 種子交換後 新韓公社는 此를 追納할 것임
 7. 米穀收集費用의 帳簿를 備置함. 此에 對하여는 適當한 補償方法이 規定될 것임
4. 第1階段 收集計劃의 作成
各道內에서의 收集計劃作成을 包含한 計劃의 第1階段는 늦어도 米穀收穫着手 10日前에 完了함을 要함
- 가. 實施細目の 說明
各道知事는 府尹, 郡守, 邑面, 區長, 警察當局 又は 朝鮮農會新韓公社金融組合聯合會 及

道食糧事務所等の 代表者에 道內實施細目を 説明할 責任이 有함

나. 米穀收集量割當

1. 各 道知事は 中央食糧行政處로부터 米穀收集量の 割當通知를 受한 時는 管內 各郡府에 此를 迅速히 細別割當함
府尹, 郡守는 迅速히 各 邑面 及 區의 割當量을 決定함
邑面 及 區長은 늦어도 米穀收穫期 10日以前에 管內 各農地에 對한 書面割當通知書를 發함은 勿論 各 農民의 姓名 其割當量의 一覽表를 作成하여 明瞭히 公示하고 各 農民이 收集所까지에 其割當量의 出荷完了日字를 其表에 記入함을 要함
2. 各 農家에 對한 收集割當量은 各里洞에 府邑面長이 設置한 公平한 委員會(名譽職)에 推薦에 依할 것이며 其農民의 米穀生産豫想高種子所要量 及 實際同居家族의 食糧所要量等を 考慮한 後 決定함
3. 各 邑面區長은 審査委員會(各委員은 名譽職으로 함)를 組織함
此 委員會는 不當한 收集割當을 받은 農民의 異議를 審査함. 委員會는 異議의 正否를 決定하며 그 割當量을 變更할 權限이 有함. 委員會는 官吏및 民間有力者로 組織하며 委員長은 邑面區長으로 함

다. 收集所府

1. 府尹 及 郡守는 一定한 倉庫를 米穀收集所로 指定함
此等 倉庫는 火災 及 盜難에 對하여 適當히 防護되어 잇고 交通이 便利하고 可能한 限 各產地精米所에 接近함을 要함
2. 指定된 倉庫에 收集 又は 貯藏된 米穀은 道食糧事務所가 此를 管理하고 中央食糧行政官의 指示에 依하여 配定함

라. 米穀檢査

政府의 穀物檢査官은 收集所에 出荷된 米穀의 重量 及 品質을 檢査하고 現行檢査規則에 依하여 等別을 定함. 穀物檢査官은 穀物檢査證의 正本을 農民에게 交付하고 副本은 保管함

마. 出荷證 及 代金支拂

收集所에서 使用할 不融通性出荷證 各 3 通式을 準備함. 該出荷證의 樣式을 決定하여 印刷하고 此를 收集所에 配布함은 生活品管理院의 責任임
生活品管理院은 該出荷證印刷費 及 分配費用을 負擔하고 朝鮮政府는 此를 補償함
本 規則에 規定된 收集이 1947年 10月 1日 以前에 開始되도록 準備를 完了하여야 함
各 收集所에서 勤務하는 邑面 又は 區의 公務員은 3 通의 出荷證을 作成하여 原本은 農民에게 交付하고 第1 副本은 道食糧事務所代表에게 交付하고 第2 副本은 邑面區事務所에 此를 管理함. 道食糧事務所 代表는 收集所에 出張하여 即時 代金を 農民에게 支拂하

고 出荷證原本에 支拂濟라 記載한 後 農民에게 此를 還付함

바. 價 格

農民에게 支拂할 米穀價格은 各 收集所에 明瞭히 揭示함을 要함. 此 價格은 一般物價水準과 米穀生産費等を 參酌하여 定함

5. 第 2 階段

米穀의 實際收集을 包含한 收集計量의 第 2 階段은 米穀의 收穫과 同時에 開始됨

가. 割當된 米穀의 出荷 及 出荷에 不應한 米穀의 押收

割當된 米穀은 全部 1948 年 1 月 15 日 以前에 收集所에 出荷함을 要함

1948 年 1 月 15 日까지 出荷하지 않은 모든 割當된 米穀은 政府가 此를 押收하고 所定價格의 半額을 支拂함

나. 個人自作農의 出荷

各 個人自作農은 그 米穀割當量(希望에 依하여야는 그 以上の 數量)을 그 地域內의 指定收集所에 出荷하고 不融通性出荷證을 受取함

政府 又は 政府가 認定한 代行機關의 以外の 者の 米穀의 賣買 及 移動을 禁止함

다. 小作農의 出荷

小作農은 그 農地의 割當量을 直接收集所에 出荷하고 不融通性出荷證을 受取함

個人地主 及 法人地主는 小作契約에 現物納의 如何한 條件이 約定되어 있음을 不拘하고 該米穀所定價格에 依한 代金を 小作料로 領收함

個人地主 及 그 家族은 配給機關을 通하여 非農家와 同一한 方式으로 米의 配給給을 受함(所定の 配給機關을 通하여)

6. 運 搬

一切의 米穀運搬은 政府가 管轄함. 本 規則에 規定된 米穀收集所와 配給所以外에는 米穀 出荷는 權限을 有한 政府代行機關以外의 者は 運搬치 못함

無許可로 運搬한 米穀이나 配給所以外에서 販賣하는 米穀은 押收하여 道食糧事務所에 引渡하고 配給米로 提供함

7. 第 3 階段 報告 及 計算

報告 及 計算을 包含한 收集計量의 第 3 階段은 米穀의 收集과 同時에 開始하여 1948 年 3 月 10 日 以內로 完了함을 要함

가. 生活品管理院의 收集報告

收集期限中 每 土曜日마다 生活品管理院은 中央食糧行政處로 그間 各 道食糧事務所가 買上한 米穀量을 石으로 表示하여 報告함. 每月 10 日 20 日 及 30 日에 報告에는 各道の 府郡서 買上한 米穀들까지도 明示함

1948 年 3 月 10 日 最後의 報告를 提出함

나. 出荷未完了者의 報告

各 邑面 及 區長은 米穀收集割當量을 出荷치 않은 各 農家에 關하여 下記 各項을 記入한 報告書를 作成하여 늦어도 1948年1月20日까지 各 郡守 府尹에게 到着하도록 報告書를 提出함을 要함

1. 姓 名
2. 住 所
3. 米穀割當量
4. 政府에 出荷한 米穀量

府尹 郡守는 1948年1月15日까지의 出荷未完了者에 對하여 適切한 措處를 取함을 要함

다. 附加報告書 及 計算書

生活品管理院 道食糧事務所 朝鮮農會 及 金融組合聯合會는 各自 事務遂行에 關한 文書를 保管하며 要求가 有할 時는 그 事務遂行에 關한 報告書를 提出함

本 規則에 依한 事務取扱으로 因하여 生하는 損害는 朝鮮政府에서 補償하는 故로 各自가 支出하는 모든 金額을 計算함을 要함.

라. 政府 及 法人地主의 記錄 及 報告

米穀을 生産하는 農地를 所有 又は 管理하는 新韓公社 其他 法人地主 及 政府 各 部署 代行機關 및 事業機關은 本 規則에 依하여 各自의 小作人이 出荷한 米穀이 精密한 記錄을 保管함

權限을 有한 官憲은 隨時該記錄을 檢閱함을 得함

8. 特別犯罪의 列舉

本 規則 又は 其他 法令에 規定에 不拘하고 下記事項을 特히 犯罪로 認定함

가. 邑面 及 區長이 割當한 米穀의 死藏不法貯藏隱匿 又は 惡質의 出荷不應行爲(非合法的手段으로 米穀을 入手所持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米穀을 全部 沒收함)

나. 政府의 承認 又は 許可없는 或은 公正價格에 違反한 米穀의 販賣 販賣의 申込讓渡讓渡의 申込買入 又は 買入의 申込 其他 違法 又は 不適當한 米穀의 取引

다. 收集計劃에 依한 出荷米穀에 關한 收納收集檢査割當量의 適當한 配定貯藏等別 保管運搬適當한 出荷證發行, 正確한 記錄 及 計算書의 保管, 代金支拂 又は 報告等에 不履行 又は 拒否 其他 此에 關한 公務上의 非行失策 又は 故意的 職務懈怠

라. 本 規則의 規定을 違脫 或은 回避할 目的으로하는 又は 如斯한 效果를 超來하는 行爲와 其未遂

9. 處 罰

本規則의 違反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其所定 刑에 處함

10. 從前規則의 廢止

1946年 8月 12日附 中央食糧規則 第2號(米穀收集)

1946年 9月 23日附 中央食糧規則 第3號(中央食糧規則 第2號의 改正, 米穀 其他 食糧의 收集 小作料支拂手續 1947年 3月 26日附 中央食糧規則 第4號(中央食糧規則 第3號의 改正)「小作料支拂手續」은 茲에 廢止함. 但 그는 本規則施行前에 犯한 그 規則違反犯罪을 阻却시키는 趣旨는 아니며 그 犯罪에 對하여 現在 又は 將來의 訴追에는 何等 影響이 없음

11. 施行期日

本規則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1947年 8月 18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中央食糧行政處長 池 鎔 殷

○ 夏穀收集令(南朝鮮過渡政府 中央食糧規則 第7號, 1948. 5. 4)

1. 目 的

本規則은 1946年 5月 28日附 法令 第90號 第5條에 依하여 1948年 夏穀收集을 實施함으로써 目的함.

前記 夏穀이라함은 大麥, 稗麥, 小麥, 胡麥을 指稱함.

2. 範 圍

政府統制機關을 通하여 北緯 38度以南에 居住하는 朝鮮人民에게 配給할 目的으로 夏穀을 收集(政府가 農家로부터 買上)함을 目標로 함.

中央食糧行政處는 收集計劃의 綜合統轄 及 遂行의 責任이 有함.

道知事는 各 所轄道內에서 本計劃을 完遂할 責任이 有함.

朝鮮農會中央土地行政處 朝鮮生活品管理院 各道 食糧事務所 及 朝鮮政府所屬의 各 行政機關 代行機關 事業機關等은 本 收集計劃 遂行에 對하여 援助 協力함을 要함.

3. 一般職場 及 機能

下記 一般職務 及 機能을 各 指定 機關에 附與함.

가. 中央食糧行政處

(1) 中央食糧行政處는 農務部가 協議하여 各道別 夏穀收集 割當量을 配定함.

(2) 夏穀의 配給移動 貯藏 及 放出을 指揮 統轄함.

나. 道知事

(1) 各道 夏穀收集割當量을 府郡에 公正히 細別割當함.

(2) 各道에 割當된 收集量 完遂와 管下 一般行政官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協力케 할 責任이 有함.

(3) 收集場所에 있어 夏穀割當量 收集 及 出荷狀況을 監督함.

可能한 限 本割當量 收集에 行政官을 動員 利用함.

(4) 收集된 夏穀의 重量 及 品質에 關한 檢査를 監督함.

(5) 中央食糧行政處가 樹立한 配給計劃에 依한 配給目的에 限하여 夏穀을 放出함.

(6) 違反者에 對한 告發責任이 有함.

(7) 農家に 割當된 收集割當量이 過重 或은 不公正하지 않도록 保障함.

(8) 必要한 境遇에는 朝鮮農會 其他 機關의 倉庫를 夏穀의 收集 及 保管用으로 使用할 權限이 있음.

(9) 收集上 必要한 境遇에는 管內 政府機關所 有로서 使用할 수 있는 全貨物 自動車를 動員함.

다. 朝鮮生活品管理院 及 道食糧事務所

朝鮮生活品管理院은 道食糧事務所를 通하여

(1) 出荷者가 出荷證을 提示하면 即時 其代金を 支拂함.

(2) 各 里洞 及 邑面 收集場所로부터 指定 倉庫 精米所 及 搬出場所로 夏穀을 運搬함.

(3) 中央食糧行政處 指令에 依하여 配給할 夏穀을 加工貯藏 移動 及 放出함.

(4) 夏穀賣却 代金を 領受함.

(5) 指示에 依하여 報告書 及 計算書を 提出함.

라. 中央土地行政處

(1) 中央土地行政處는 割當量을 配定하기 爲하여 地方廳官吏와 協力하여 所管小作人 土地購買者의 夏穀收穫豫想高를 作成함.

各 農家 個人別 割當量은 地方官吏가 此를 決定함.

(2) 法令 第 173 號 規定에 依하여 中央土地行政處로부터 土地를 購買한 者는 各自의 配定된 割當量을 政府收集場所에 直接 出荷함.

配定된 割當量이 抵當權 設定契約書에 依한 年賦納入量보다 적지 않이하여야 함.

萬一 年賦納入量이 配定된 收集 割當量보다 적을 時는 該土地購買者는 收集 割當量과 中央土地行政處에 年賦로 納入하는 量과의 差額 又は 그 一部를 抵當權 設定契約에 依한 超過支拂로 納入하여 年賦期間을 短縮할 수 있음.

(3) 中央土地行政處 所管小作人は 配定된 割當量을 政府收集 場所에 直接 出荷하여야 함.

配定된 割當量은 小作料 契約書에 約定된 量보다 적지 않아야 함.

(4) 土地行政機關 職員은 各關係 收集所에 專屬으로 勤務하여야 함.

中央土地行政處 土地購買者(前記 2項) 又は 同小作人(前記 3項)은 各自의 割當量을 出荷한 時는 所定欄에 「中央土地行政處分 要納入數量」이라고 記入된 出荷證을 土地行政處員에 揭示하여 其帳簿에 그 事實을 記載케 한後 土地行政處의 領收證을 받아야 함.

每日 收集終結時에는 土地行政處員이 發行한 領收證에 記載된 總數量은 出荷證의 記載된 中央土地行政處分 要納入數量과 一致됨을 要함.

(5) 中央土地行政處 土地購買者(前記 2項) 同處所管 小作人(前記 3項)은 一般土地所有者 又は 小作人と 同一한 方法으로 取扱함.

中央土地行政處 土地購買者 又は 同小作人에 對한 個人別 割當量은 其購買 又は 小作契約書에 約定된 所要納入量 以上이어야 한다는 制限이 있는 以外는 그 近農地에서 耕作하는 一般農民의 割當量과 比等하여야 함.

(6) 土地行政處 職員은 小作料로서 又は 抵當權 設定契約에 依하여 受領할 糧穀(夏穀) 量을 所管 邑面長(或은 府尹)에게 報告하여야 함.

(7) 中央食糧行政處는 中央土地行政處所管 倉庫를 夏穀收集 及 貯藏場所로 使用할 수 있음.

마. 朝鮮農會

朝鮮農會는 各 道知事의 指令이 有한 時는 夏穀貯藏用으로 其倉庫를 提供하여야 함.

4. 夏穀收集對策委員會

地主自作農 小作農等 篤農家 其他 地方事情精通者로서 構成된 夏穀收集對策委員會 委員은 (名譽職) 卽어도 各道 夏穀收穫期 1個月以前에 任命함을 要함.

各府 邑面 收集對策委員會는 府尹 邑面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그 委員 約 14名은 洞會長 又は 邑面長의 推薦에 依하여 府尹 郡守가 此를 任命함.

本委員會는 各府尹 及 邑面長을 補佐하여 區洞(府 又は 邑)의 割當量 決定을 援助하며 其 邑面 又は 洞(府)內 各農民의 個人別 割當量에 關한 異議를 審査하는 審議委員會의 機能이 有함.

各區(面) 洞(府邑) 收集對策委員會는 區(面) 洞會(府)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그 委員 約 9名은 區(面) 洞會(府邑)長의 推薦에 依하여 府尹 邑面長이 此를 任命함.

本委員會는 區 又は 洞(府 又は 邑)會長을 補佐하여 農家의 糧穀生産豫想高食糧 所要

量 個人別 割當量等を 調査 豫定하여 其他 夏穀收集計劃에 關한 重要事項을 遂行함.

本 委員會는 區 又は 洞(府 又は 邑)長을 補佐하여 班長會에서 內定된 個人別 農家割當量의 承認 又は 修正을 建議함.

5. 夏穀收集割當量 配定에 關한 基準

各 農家에 對한 夏穀收集割當은 各該當 府尹 及 邑面長이 夏穀收集對策委員會(4項 參照)와 協議하여 決定함.

割當量 決定에 關與하는 公務員 又は 委員은 個人別 割當量이 公正 衡平하게 下의 手續에 依하여 決定됨을 細心의 注意를 다하여 保障함을 要함.

가. 夏穀(精穀) 1石 又は 其以下를 生産하는 農家에 對하여서는 其 生産量의 1割以內를 割當하여야 함. 그러나 그 以外에 食糧에 代用할 수 있는 夏雜穀을 生産하는 境遇에는 그를 考慮하여 1割의 率을 引上할 수 있음.

但 中央土地行政處 土地購買者 又は 小作人이 契約에 依하여 夏穀生産量의 1割을 超過한 數量을 納入하여야 할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함.

나. 夏穀(精穀) 1石을 超過하는 數量을 生産하는 農家의 個人別 割當量을 決定함에는 夏穀 及 其他 穀物의 生産豫想高 種子所要量 及 正式으로 實際 同居하는 家族의 食糧所要量等에 對하여 充分히 考慮함을 要함.

6. 第1段階 收集計劃 作成

各道內에서의 收集計劃 作成等 計劃의 第1段階은 늦어도 夏穀收穫着手 10日前에 完了함을 要함.

가. 實施細目의 說明

各道知事는 府尹 郡守 邑面洞會長 其他 下級官廳責任者, 夏穀收集對策委員會, 警察官署, 朝鮮農會中央土地行政處, 道食糧事務所等の 地方代表者에게 收集計劃에 對한 實施細目を 說明할 責任이 有함.

나. 收集割當量에 關한 明細指示

(1) 割當量 配定基準

各道知事는 中央食糧行政處로부터 夏穀收集의 割當通知를 接受한 時는 管內 各府郡에 此를 迅速히 細別割當함.

府尹 郡守는 迅速히 各洞(府) 及 邑面の 割當量을 決定함.

邑面長은 各區(面) 及 洞(邑所在地)의 割當量을 決定함.

各區 及 洞會長(邑 或은 府)은 各班의 割當量을 內定함.

各班長은 班內 各農家 個人別 割當量을 內定하며 必要한 時는 其班內 農民會를 開催할 수 있음.

(2) 農家個人 割當量 決定

各區(面)及洞會(府 또는 邑)長은 各府尹 邑面長으로부터 夏穀收集量의 割當通知를 接受한 時는 管下班長會를 開催하여 農家 個人別 割當量을 內定함.

各區 또는 洞(府 또는 邑)長은 各區 또는 洞 夏穀收集對策委員會와 協議하여 農家 個人別 割當量에 關한 管下班長會의 內申制를 承認 或은 修正하여 署名한 後 府尹 或은 邑面長에게 提出함.

各府尹 及 邑面長은 늦어도 其道內 夏穀收穫期 10日前에 管下區洞會(邑府)長의 提出한 內申書에 依하여 府 及 邑面 夏穀收集對策委員會에 諮問한 後 管內 各 農家에 對한 割當通知書를 各區 또는 洞(府 또는 邑)會長 及 各班長을 通하여 發送함.

(3) 割當量의 揭示

各府尹 及 邑面長은 管下 各區 또는 洞(府 또는 邑)의 割當量書를 各其 事務所 揭示板에 明瞭히 公示함을 要함.

各區(面) 또는 洞(府 또는 邑)會長은 各 農民의 姓名 及 割當量 一覽表를 各其 事務所 或은 農民公會堂 揭示板에 明瞭히 公示함을 要함.

各 農民이 其 割當量을 出荷한 日字는 其表에 出荷時 記入함을 要함.

前記 各行政機關 揭示板에 公示된 表는 收集期間中 揭示하여 둠을 要함.

다. 農民의 異議申立

各 農民은 割當通知書 接受後 5日以內에 書面으로 府尹 或은 邑面長에게 割當配定에 關한 再審査를 申請함을 得함.

申請書에는 不服의 理由를 仔細히 記載함을 要함.

府尹 邑面長은 調査하여 各府, 邑面 收集對策委員會와 協議한後 7日以內에 各關係區 或은 洞(府 또는 邑)會長에게 書面으로 그 決定을 通知함.

그 決定에는 不服을 不許함.

區, 洞會長은 即時 本人에게 此를 告知함.

決定이 不服를 是認하는 境遇에는 該區 또는 洞會長은 그 割當量을 改定함을 要함.

라. 收集場所

(1) 府尹 及 郡守는 一定한 倉庫를 夏穀收集所로 指定함.

如斯한 倉庫는 火災 及 盜難에 對하여 適當히 防護되어 있고 交通이 便利하고 可能한 限 各 生産地 精米所에 接近함을 要함.

(2) 指定된 倉庫에 收集 或은 貯藏된 夏穀을 道食糧事務所가 管理하고 中央食糧行政處의 指示에 依하여 配給됨.

마. 夏穀檢査

政府의 夏穀檢査員은 收集所 出荷된 夏穀의 重量 及 品質을 檢査하고 現行 檢査規則에 依하여 等級別을 定함.

穀物檢査官은 穀物檢査證의 正本은 農民에게 交付하고 副本은 保管함.

바. 出荷證 及 代金支拂

其場所에 不融通性 出荷證 各 3 通式을 準備함.

該出荷證의 樣式을 決定하여 印刷하고 收集場所에 配布함은 朝鮮生活品管理院의 責任임 如斯한 出荷證의 印刷 及 配布의 費用은 朝鮮生活品管理院이 此를 負擔함.

本規則에 規定된 收集이 1948 年 6 月 15 日以前에 開始되도록 모든 準備를 完了하여야 함.

各收集所에서 勤務하는 府, 邑面의 公務員은 3 通의 出荷證을 作成하여 原本은 農民에게 交付하고 第 1 副本은 道食糧事務所 代表者에게 交付하고 第 2 副本은 府廳 及 邑面 洞事務所에 保管함.

道食糧事務所 職員은 收集場所에 出張하여 即時 代金を 農民에게 支拂하고 出荷證 原本에 支拂濟라 記載한後 農民에게 還付함.

사. 價 格

農民에게 支拂할 夏穀價格은 各收集場所에 明瞭히 揭示함을 要함.

本價格은 朝鮮政府가 此를 決定함.

7. 第 2 段階

夏穀의 實際收集等 收集計劃의 第 2 段階은 夏穀의 收穫과 同時에 開始함.

가. 割當된 夏穀의 出荷 及 出荷에 不應한 夏穀의 押收

割當된 夏穀은 全部 1948 年 9 月 1 日以前에 收集場所에 出荷함을 要함.

1948 年 9 月 1 日까지 出荷하지 않은 모든 割當된 夏穀은 政府가 此를 押收하고 所定價格의 半額을 支拂함.

나. 個人自作農의 出荷

各 個人自作農은 그 割當量(希望에 依하여는 그 以上の 數量)을 그 地域內의 指定 收集所에 出荷하고 不融通性 出荷證을 受取함.

1948 年 9 月 30 日까지는 政府 又は 政府가 認定한 機關以外는 夏穀을 賣買 又は 移動하지 못함.

다. 小作農의 出荷

小作農은 그 農地의 小作料 及 割當量에 該當하는 夏穀을 直接 收集場所에 出荷하고 不融通性 出荷證을 受取함.

個人地主 及 法人地主는 小作契約에 現物納의 約定이 있는 境遇라도 本規則 第 3 項

「라」에 說明한 바와 如히 中央土地行政處에 納付할 小作料 以外에는 該夏穀 所定價格에 依한 代金을 小作料로 領受함.

個人地主 及 그 家族은 所定の 配給機關을 通하여 非農家와 同一한 方法으로 夏穀의 配給을 受함.

라. 運 搬

1948年 6月 15日부터 1948年 9月 30日까지의 期間中은 夏穀收集所 以外에의 夏穀運搬은 權限이 有한 政府機關 以外의 者는 此를 行하지 못함.

無許可로 運搬한 夏穀은 無償으로 沒收하여 所管道食糧事務所에 引渡하고 正式 配給機關을 通하여 配給됨.

마. 違法한 賣却

1948年 6月 15日부터 同年 9月 30日까지의 期間內에는 政府機關 以外의 者는 夏穀을 賣却 又は 그 申込을 하지 못함.

本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賣却 又は 그 申込을 한 夏穀은 沒收하여 所管道食糧事務所에 引渡하고 正式 配給機關을 通하여 配給함.

8. 第3段階 報告 及 計算

報告 及 計算等 收集計劃의 第3段階은 夏穀의 收集과 同時에 開始하여 1948年 9月 30日 以內로 完了함을 要함.

가. 收集報告

(1) 朝鮮生活品管理院

收集期間中 每 5日마다 朝鮮生活品管理院은 中央食糧行政處로 其間 各道 食糧事務所가 買上한 夏穀種別 數量을 精穀 石單位로 表示하여 報告함.

每月 10日, 20日, 30日의 各報告에는 各府 郡別 買上數量도 明示함.

1948年 9月 30日 最終報告를 提出함.

(2) 道知事

收集期間中 每 10日마다 各道知事는 收集된 夏穀의 種別數量을 精穀石 單位로 表示하여 中央食糧行政處에 報告함.

나. 出荷 未完了의 報告

各邑面 及 洞(府)會長은 夏穀收集割當量을 出荷期限까지 出荷치 않은 各農家에 關한 下記 各項을 1948年 9月 10日 以內로 各府尹 郡守에게 到着하도록 報告함을 要함.

(1) 姓 名

(2) 住 所

(3) 夏穀割當量

(4) 政府에 出荷한 夏穀數量

府尹 郡守는 9月1日까지의 出荷 未完了者에 對하여 適切한 措置를 取함을 要함.

다. 附加報告書 及 計算書

朝鮮生活品管理院, 道食糧事務所, 朝鮮農會는 各自 事務遂行에 關한 文書를 保管하여 要求가 有할 時는 그 事務遂行에 關한 報告書를 提出함.

라. 政府 及 法人地主의 記錄 及 報告

夏穀을 生産하는 農地를 所有 又は 管理하는 中央土地行政處 法人地主 及 政府 各機關 代行機關 及 事業機關은 本規則에 依하여 各自의 小作人이 出荷한 夏穀의 精密한 記錄을 保管함.

權限이 有한 官憲은 隨時 該記錄을 檢閱함을 得함.

9. 特別犯罪의 列舉

本規則에 違反함을 禁止함은 勿論 特히 下記 事項을 犯罪로 認定함.

가. 府尹 及 邑面長이 割當한 夏穀의 死藏, 不法貯藏, 隱匿 又は 惡質의 出荷 不應行爲나, 1948年 6月 15日부터 同年 9月 30日까지의 期間中の 政府의 承認 又は 許可없이 又は 公定價格에 違反하여 夏穀을 賈買 又は 買入의 申込移轉한 行爲, 그 申込 其他違法한 取引行爲

다. 收集計劃에 依한 出荷된 夏穀의 收納·收集·檢査·割當量의 適當한 配定·貯藏·等別·保管·運搬·出荷證發行·正確한 記錄 及 計算書의 保管·代金支拂 又は 報告書의 作成, 不履行 又は 拒否 其他 此에 關한 公務上의 職務 懈怠 及 非行

라. 本規則의 規定을 潛脫 或은 回避를 目的으로 하는 行爲 及 그 未遂

마. 夏穀收集을 妨害할 目的으로 夏穀收集對策委員會 及 公務員의 夏穀收集量 調査를 拒否 又は 妨害하는 行爲 或은 虛偽宣傳 又は 脅迫으로 農民의 出荷意識을 減損하는 行爲

10. 處 罰

本規則에 違反한 者는 裁判所가 各處罰法條를 適用하여 處罰함.

處罰法條가 없는 境遇에는 裁判所가 自由로 刑罰을 決定함.

11. 從前 規則의 廢止

1947年 5月 8日附 中央食糧規則 第5號(夏穀收集)는 茲에 廢止함.

但 本規則 施行前에 犯한 그 規則 違反犯罪를 阻却시키는 趣旨는 많이며 그 犯罪에 對하여 現在 又は 將來의 訴追에는 何等 影響이 없음.

12. 施行期日

本規則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1948年 5月 4日

軍政長官 指令에 依하여

中央食糧行政處長 池 鎔 殷

○ 朝鮮裁判所의 歸屬法人에 關한 訴訟에 對한 管轄權

(南朝鮮過渡政府 朝鮮서울, 1948. 7. 16)

管 財 處

司 法 部 長 貴 下

大 法 院 長

第 1 條 (目的) 本指令은 그 株의 全部 又は 一部가 軍政廳에 歸屬된 法人에 對하여 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條件을 規定함을 目的함.

第 2 條 (許容할 수 있는 訴訟) 1945年 12月 6日附 法令 第 33號 (朝鮮內 所在 日本人財產 權取得에 關한件)에 依하여 그 株의 全部 又は 一部分이 軍政廳에 歸屬된 法人에 關하여 1945年 9月 25日 以後에 該法人과의 去來에서 發生하는 訴訟을 朝鮮裁判所에 提起할 수 있음. 以下에 記載하는 要求와 條件을 如斯한 訴訟에 適用함.

第 3 條 (原告가 提出할 通知書) 法人에 對한 訴訟을 提起한 當事者가 該法人의 株의 全部 又は 一部가 軍政廳에 歸屬된 것을 知는 때에는 如斯한 訴訟을 提起한 後 5日以內에 人便이나 書留郵便으로 通知書を 該事件이 繫屬 되어있는 道の 管財處에 提出함.

通知書에는 如下한 事項을 記載함.

가. 原告의 姓名 住所

나. 被告法人名 及 所在地

다. 事件이 繫屬되어 있는 裁判所 及 訴訟提起日字

라. 訴訟價格 簡單한 訴訟內容 及 그 原因發生日字

마. 原告의 辯護士가 있을 時는 辯護士의 姓名 及 住所

바. 財產에 關한 權利가 訴訟에 包含되어 있는 與否

第 4 條 (被告가 提出할 通知書) 株의 全部 又は 一部가 軍政廳에 歸屬된 法人에 對하여 訴訟이 有할 時에는 民法 又は 商法上의 法人의 代表者가 아니라도 法人의 最高責任者는 如斯한 訴訟이 있을 後 5日以內에 人便 又は 書留郵便으로 事件이 繫屬된 地方의 道管財處에 通知書を 提出함.

通知書에는 如下한 事項을 記入함.

가. 原告의 姓名 及 住所

나. 被告法人名 及 所在地

다. 事件이 繫屬되어 있는 裁判所 及 訴訟提起日字

라. 訴訟價格 簡單한 訴訟內容 及 그 原因發生日字

마. 被告의 辯護士가 있을 때에는 그 辯護士의 姓名 及 住所

바. 財産에 對한 權利가 그 訴訟에 包含되어 있는 與否

사. 被告法人이 請求를 容認하는 與否 及 容認한다면 그 理由

아. 該法人 發行의 總株數 及 其中 軍政廳에 歸屬된 株의 數

第 5 條 (裁判所に 提出할 通知書) 前第 4 條의 通知書を 提出하는 外에 當時의 被告法人의 最高責任者는 訴訟에 對하여 答辯書を 提出할 時 又は 答辯書を 提出하지 않거나 出頭치 않을 時는 法律에 依하여 出頭 又は 答辯書を 提出하여야 할 期限內에 裁判所に 該財産이 軍政廳에 歸屬된 株의 百分率에 關한 陳述書を 提出함. 如斯한 陳述書を 提出한 境遇에는 道管財處에서 事實에 關한 調査를 할 充分한 時間을 갖기 爲하여 적어도 訴訟提起後 40 日이 經過하기까지는 如何한 判決도 하지 못함.

第 6 條 (假差押假處分) 1945 年 12 月 6 日附 法令 第 33 號 (朝鮮內 所在 日本人財産權 取得에 關한件)에 依하여 法人의 株의 全部 又は 一部가 軍政廳에 歸屬하는 境遇에는 假差押假處分을 할수 없음.

第 7 條 (判決의 執行) 指令 第 5 條에 依하여 其株의 全部 又は 一部가 軍政廳에 歸屬된 事實의 通知書を 會社가 裁判所に 提出하고 또 그後 그 法人이 敗訴할 時라도 原告가 判決한 裁判所 所在地의 道管財處에 人便 又は 書留郵便으로 如何한 判決이 있었다는 事實을 書面으로 通知하고 그 書面送達後 30 日이 經過하기까지는 그 法人의 土地建物 又は 其他 有形財産에 對하여 判決의 執行을 하지 못함.
通知書에는 如下한 事項을 記入함.

가. 原告의 姓名 及 住所

나. 被告法人名 及 所在地

다. 判決된 金額 及 그 裁判所

라. 原告가 辯護士로서 代理될 時에는 그 辯護士의 姓名 及 住所

마. 財産權이 訴訟에 包含된 與否

바. 아는 境遇에는 軍政廳에 歸屬된 被告人의 未拂株의 百分率

第 8 條 (時日制限에 關한 法令) 出訴期間을 規定한 法令은 軍政廳에 그 全部 又は 一部가 歸屬된 法人에 對하여 訴訟을 提起할 個人 又は 法人에 對하여는 歸屬된 法人에 對하여 訴訟이 禁止되어 있는 期間中 適用치 않음.

第 9 條 (有效期日) 本指令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함.

1948 年 7 月 16 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따 불 유 · 에 프 · 윈

○ 法令 第 33 號에 依하여 日本人 財産을 取得함으로 因한 法人 債務의 支拂에 關한件
(南朝鮮 過渡政府 朝鮮서울, 1946. 4. 27)

各 部 處 長
各 道 軍 政 長 官
前

1. 北緯 38 度 以南 朝鮮에 所在하는 地方法院에 登記된 法人으로 軍政廳이 其株式 又は 其他 所有權의 全部 又は 大部分을 取得한 法人은 本令에서는 「取得된 會社」라함.
軍政廳이 現在 經營, 管理하는 것을 除外하고 株式 又は 其他 所有權의 少數을 取得한 理由로 北緯 38 度 以南 朝鮮에 登記된 法人으로 軍政廳이 所有하는 法人은 本令에서는 「接受된 會社」라 함.
軍政廳이 取得하고 事業經營에 使用된 日本內에 登記된 法人으로 38 度以南 朝鮮에 所在하는 財産은 本令에서는 「取得된 日本人 法人財産」이라 함.
取得된 會社, 接受된 會社 及 取得된 日本人 法人財産은 取得할 時에 債務를 引繼하고 또 未收된 債權을 取得하였음.
2. 本指令에 別로 規定치 않은 限 모든 取得된 會社, 接受된 會社 及 取得된 日本人 法人 財産은 朝鮮內의 未收된 모든 債權을 回收하고 各其의 實際的 支拂能力에 依하여 38 度 以南 朝鮮 居住者에게 그 債務를 支拂함.
3. 朝鮮軍政長官 또는 軍政長官의 正當한 代理로부터 이러한 機關의 管理를 爲하여 任命을 받은 官吏가 取得된 會社, 接受된 會社, 取得된 日本人 法人 財産의 現在의 實際的 支拂能力에 依하여 其債務의 支拂을 決定함이 明白히 朝鮮에 있는 債權者에게 公平히 支拂치 못할 것을 認定할 때는 當該官吏는 自己意見으로서는 如斯한 機關은 本令 第 4 項에 依하여 管理하여야 된다는 適當한 立證材料를 添附한 證明書를 財産管理官에게 提出할事 財産管理官은 그러한 管理案을 是認 또는 否認할事
4. 財産管理官이 이를 是認할 때는 第 3 項의 모든 機關은 1945 年 9 月 25 日 以後의 債務나 物品代나 賃銀만을 支拂할 수 있음.
5. 法令 第 33 號 (朝鮮內에 있는 日本人 財産權 取得에 關한 件) 의 法人에 關한 取得效果에

關하여 日本 또는 日本國民(自然人, 法人)이 所有하였든 株式 及 其他 所有權은 軍政廳이 取得하였으나 如斯한 法人의 負債를 償還할 資産에 對한 權利는 如前히 該法人이 所有하였다는 것이 法制長官의 意見이다.

如斯한 意見이 本令의 基本觀念이 되었다.

6. 本令은 取得된 會社, 接收된 會社, 日本人法人財産 以外에 對한 朝鮮內 住民의 請求權 處理에는 無關함.
7. 本令은 政府에 對한 税金支拂, 金融機關에 對한 利子支拂에 關하여 以前에 本司令部로부터 布告된 政府方針을 左右하거나 廢棄치 못함.

1946年 4月 27日

朝鮮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代將 제이·알·씨 - 스

○ 財産管理人和 物資營團과의 關係 (1946. 5. 27)

全道知事(特히 財産管理人)及 物資營團 貴下

1. 現在 軍政廳에 取得된 前日本人 所有動産에 關하여 物資營團은 獨立機關이고 또 財産管理人の 代行機關임. 物資營團은 引渡된 日本軍財産 及 前日本人의 拋棄財産(所有權이 不明한 前日本人財産 又は 所有權에 關하여 拋棄할 意思가 明白히 推測되는 前日本人財産을 意味함)을 取扱하는 獨立機關임. 物資營團은 拋棄하지 안한 既知의 前日本人 所有財産으로써 軍政廳에 取得된 財産을 取扱하는 財産管理人の 代行機關임.
 2. 如斯한 引渡 及 拋棄된 財産에 關하여 物資營團은 其財産의 所有權의 記錄의 利用性 如何에 關하여 地方財産管理人の 報告書를 要求함을 得함. 文書가 無한 時에는 地方財産管理人は 物資營團代表者에 如斯히 報告할事, 其後 地方財産管理人は 適當한 行動을 取할事
 3. 物資營團은 茲에 1946年 2月 5日附 法制長官 意見 第5號(第1節 美文)의 範圍內에서 取得된 財産의 賣却에 關하여 財産管理人の 代行機關으로써 行動하는 權限이 賦與됨. 如斯한 財産의 販賣는 如下히 遂行됨.
- 가. 物資營團代表者가 所有하고 있는 時 又は 처음으로 發見한 時는 物資營團은 財産目錄과 財産에 前所有權에 關한 모든 利用할 수 있는 報告書를 作成하여 地方財産管理인에게 提出할事, 地方財産管理人は 必要한 時는 地方法務官과 相議하여 所有權에 關한 問題를 調査할事, 財産所有權이 法令 第33號에 依하여 取得되었다고 認定되는 時는 賣

渡을 認可함. 何人에게 賣渡하는가는 物資營團이 決定하고 財産管理人이 하지 못함.
物資營團은 賣渡을 完了한 時도 即時 地方財産管理人에게 賣渡에 關한 報告을 할事
나. 如斯한 財産을 地方財産管理人이 所有하고 있는 時 又は 처음으로 發見한 時는 地方
財産管理人은 必要한 財産目錄을 作成함. 其他 行動은 上記 第3節(가)項에 陳述된 바와
如히 할事

4. 1946年 1月 19日附 法到長官室 公文件名 「代行機關으로서의 行動하는 權限」을 茲에 廢止함.

1946年 5月 27日

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大佐 아 - 사 · 에스 · 림 페 니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제3집
농 립 법 령 (제Ⅱ권)

인쇄일 1999 년 12 월 23 일

발행일 1999 년 12 월 29 일

발 행 농 립 부

편 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록 1979년 5월 25일 제5-10호

전화 (02)3299-4000 팩스 (02)965-6950

인 쇄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전화 (02)737-2101~5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